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3171-01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개의 공격성 평가 방법 및 관리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총괄(주관)연구기관	(주) 카브 동물복지지원센터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이혜원 센터장

2020. 2. 5

농림축산식품부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농림축산식품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농림축산식품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개의 공격성 평가 방법 및 관리 방안 연구” (개발 기간: 2019. 07. 11 - 2020. 02. 05)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2월 5일

주관연구기관명: (주) 카브 동물복지지원센터 (센터장) 이 혜 원

책임연구원: 이 혜 원
연 구 원: 김 가 희
연 구 원: 박 아 름
연 구 원: 권 소 희
연구보조원: 신 세 진
보 조 원: 이 다 인

< 목 차 >

제1장 연구과제의 개요	01
제1절 배경 및 목적	0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04
제3절 추진 과정	10
제2장 위험 평가	15
제1절 위험 평가에 대한 이해	15
제2절 위험 평가 현황	34
제3절 위험 평가 제도 제안	56
제4절 위험 평가 방법 제안	67
제3장 개물림 사고 대응	87
제1절 개물림의 개념과 맥락	87
제2절 개물림 사고 대응 국내 현황	104
제3절 개물림 사고 대응 해외 현황	106
제4절 개물림 사고 대응 방안 제안	167
제5절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178
제4장 결론 : 효과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	187
제1절 위험 평가 및 관리대상건 관리 제도	187
제2절 반려인의 책임의식 강화 정책	188
제3절 안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제반 정책	191
제5장 참고문헌	195
제6장 부록	200

< 세 부 목 차 >

제1장 연구과제의 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1. 배경
2. 목적 및 목표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3절. 추진 과정

1. 추진 일정
2. 추진 보고

제2장 위험 평가

제1절 위험 평가에 대한 이해

1. 위험 평가의 개념
2. 위험 평가의 목적
3. 위험 평가의 주체
 - (1) 반려동물행동전문가의 개념
 - (2) 반려동물행동전문가의 지식, 기술, 태도
 - (3) 반려동물행동전문가 교육
 - (4) 반려동물행동전문가 국내 현황
4. 위험 평가의 대상
 - (1) 위험 평가의 요소
 - (2) 개의 공격성에 대한 이해
5. 위험 평가의 방법
6. 위험 평가 후 조치

제2절 위험 평가 현황

1. 국내 현황
 - (1) 관련 정책 부재
 - (2) 국내 사례 조사
 - (3) 국내 연구 동향
2. 국외 현황
 - (1) 독일
 - (2) 영국
 - (3) 미국

제3절 위험 평가 제도 제안

1. 개요
2. 위험 평가 대상
3. 위험 평가 전후 절차

제4절 위험 평가 방법 제안

1. 위험 평가 준비
2. 위험 평가 절차
3. 양식의 예

제3장 개물림 사고 대응

제1절 개물림의 개념과 맥락

1. 개물림의 개념
2. 개물림의 맥락
3. 개물림 관련 통계

제2절 개물림 사고 대응 국내 현황

제3절 개물림 사고 대응 해외 현황

1. 독일 (바이에른주)
 - (1) 개물림 사고 발생 전
 - (2) 개물림 사고 발생 후
 - (3) 기질평가(Wesenstest) 실시 자격 관련 근거
2. 영국
 - (1)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기에 앞서
 - (2) 주요 근거
 - (3) 대응 주체
 - (4) 대응 절차
 - (5) 대응 결과
 - (6) 사례
3. 미국 (캘리포니아 주)
 - (1)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기에 앞서
 - (2) 미국의 개물림 사고 대응 체계
4. 호주 (빅토리아 주)
 - (1) 반려인의 일반적 책무
 - (2) 관리 대상견의 분류
 - (3) 개물림 사고 처벌 수위
 - (4) 위험한 개 (Dangerous dog)
 - (5) 위협적인 개 (Menacing dog)

제4절 개물림 사고 대응 방안 제안

1. 목적 및 목표
2. 대응 체계
3. 대응 주체
4. 기타

제5절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1. 개물림 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
2. 교육·홍보 내용

제4장 결론 : 효과적 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

제1절 위험 평가 및 관리대상견 관리 제도

제2절 반려인의 책임의식 강화 정책

1. 반려인 교육의 중요성
2. 해외 성공 사례

제3절 안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제반 정책

1. 반려견 개체수 조절
2. 반려동물복지 제고

제5장 참고문헌

제6장 부록

제1절 행동 평가 국외 연구 동향

제2절 현장조사 세부 결과

제3절 시범시행 세부 결과

제4절 독일 니더작센 주의 개소유법에 대한 QnA

제5절 LA County 조례

제6절 호주 빅토리아주 제한품종견(Restricted Breed Dogs) 기준

< 표 목 차 >

제1장

<표 1-1>	인터뷰 일정 및 주요 내용	6
<표 1-2>	자문회의 일정 및 주요 내용	9
<표 1-3>	연구 세부 내용 및 월별 추진 일정	11

제2장

<표 2-1>	긍정강화 훈련과 기존 훈련의 차이점 비교	21
<표 2-2>	개로 인한 상해 가능성과 위험도를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	26
<표 2-3>	개의 공격성 유형	30
<표 2-4>	개의 공격성을 치료하는 일반적인 방법	34
<표 2-5>	관리대상견 구분 기준	61
<표 2-6>	위험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 관리 강화 조치	62
<표 2-7>	대상견 관찰 시 고려사항	75
<표 2-8>	행동 일관성 설문지의 예	77

제3장

<표 3-1>	개물림 정의 및 연구 용례	87
<표 3-2>	개물림의 개념과 범위에 따른 고려사항 및 접근법	90
<표 3-3>	2016년 ~ 2018년 연령별 개 물림사고 환자 현황	99
<표 3-4>	2016년~ 2018년 개 물림사고 환자 이송현황	99
<표 3-5>	2005년부터 2018년 미국 내 치명적인 개물림 사고 통계	100
<표 3-6>	캐나다 켈거리 시의 인구 대비 개물림 사고 수	100
<표 3-7>	자르란트주의 개물림사고 통계	103
<표 3-8>	개물림 사고 관련 형법 및 동물보호법	104
<표 3-9>	바이에른 형법 및 질서법 시행규칙	111
<표 3-10>	개법 (Dogs Act) 2장 한국어 번역 및 영어 원문	117
<표 3-11>	경찰과 공무원의 권한 비교표	118
<표 3-12>	공동체보호고지 (CPN)	135
<표 3-13>	공해및불쾌감유발방지를위한금지명령 (IPNA)	136
<표 3-14>	범죄행위금지명령 (Criminal Behaviour Order)	138

<표 3-15>	공공장소보호명령 (Public Spaces Protection Orders)	139
<표 3-16>	반사회적행위및범죄단속법의 집행주체를 위한 공무원 매뉴얼 ‘무책임한 반려인 대응책 Dealing with irresponsible dog ownership’에 제시된 사례 및 대응 방법	142
<표 3-17>	식품농업법 제 14편에서의 위험한 개 및 포악한 개의 정의	146
<표 3-18>	호주 빅토리아주 최소한의 동물복지 규정	156
<표 3-19>	호주 빅토리아주 개물림 사고 대응 시스템의 관리 대상건	157
<표 3-20>	형법과 가축법에서 개물림 사고를 처벌하는 수위	158
<표 3-21>	위험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 관리 강화 조치	168
<표 3-22>	해외의 관리 대상건 분류 사례	169
<표 3-23>	무책임한 반려인으로 규정되는 예와 대응방법의 사례	170

제4장

<표 4-1>	책임성 있는 개 소유자 의식의 영역 및 요소	189
---------	--------------------------	-----

제6장

<표 6-1>	SAFER® Test 평가 항목 및 목적	200
<표 6-2>	ATTS 기질 테스트의 평가 항목 및 목적	204
<표 6-3>	참여건의 입양 시 연령	213
<표 6-4>	참여건의 입양처	213
<표 6-5>	참여건의 체중	213
<표 6-6>	참여건의 성별 및 중성화 여부	213
<표 6-7>	참여건의 중성화 수술 시기	214
<표 6-8>	참여건의 기 참여 훈련	214
<표 6-9>	참여건의 동거견 현황	214
<표 6-10>	참여건의 거주 환경	214
<표 6-11>	참여건의 하루 중 실내 머무는 시간	215
<표 6-12>	참여건의 산책 횟수	215
<표 6-13>	참여건의 하루 중 소유자 없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	215
<표 6-14>	참여건의 반려인 중 미취학 아동의 유무	216

<표 6-15>	참여건의 부모건/동배건에 대한 정보 확인 정도	216
<표 6-16>	참여건의 방사선 촬영 결과	217
<표 6-17>	참여건의 첫 공격 행동 발생 시기	217
<표 6-18>	참여건의 공격 빈도	217
<표 6-19>	참여건의 공격 정도	218
<표 6-20>	참여건의 출혈을 동반한 공격 빈도	218
<표 6-21>	참여건의 공격 대상	218
<표 6-22>	참여건의 공격 대상 연령	218

< 그림 목 차 >

제1장

<그림 1-1>	반려동물 양육 현황	1
<그림 1-2>	개물림사고 병원 이송 환자 수	2

제2장

<그림 2-1>	일반적인 초크체인 (Choke chain)	21
<그림 2-2>	스파이크 (프롱) 칼라 초크체인 (Spike/Prong collar)	21
<그림 2-3>	위험 평가의 일반적인 진행 흐름	31
<그림 2-4>	위험 평가 절차 모식도	57
<그림 2-5>	안전관리 강화 조치 변경 및 해소 절차 모식도	58
<그림 2-6>	제도 운영 절차 모식도	59
<그림 2-7>	설문지에서 공격적인 행동 정보에 관한 문항 예시	72

제3장

<그림 3-1>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월별 개물림 사고 횟수	98
<그림 3-2>	독일의 월별 개물림 사고 빈도 비율	102
<그림 3-3>	기질 평가 절차	110
<그림 3-4>	초기 개입 편지 예시	130
<그림 3-5>	허용 행동 계약 예시 (1/2)	133
<그림 3-6>	허용 행동 계약 예시 (2/2)	134
<그림 3-7>	미국의 개물림 관련법 구분	145
<그림 3-8>	위험한 개의 목줄 예시	164
<그림 3-9>	위험한 개의 경고판 예시	164
<그림 3-10>	실외 견사의 예시	164

제6장

<그림 6-1>	행동평가 실험 준비물 예시. SAFER® test 준비물	202
<그림 6-2>	C-BARQ 중 Aggression 평가 운항 목록	203
<그림 6-3>	SAB-test의 위험 평가 공간 구성도	208

제1장 연구과제의 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1. 배경

-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인구는 증가 추세임. 2018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진행한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비율은 23.7%이며,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의 비중은 18%로 전체 반려동물 양육가구 중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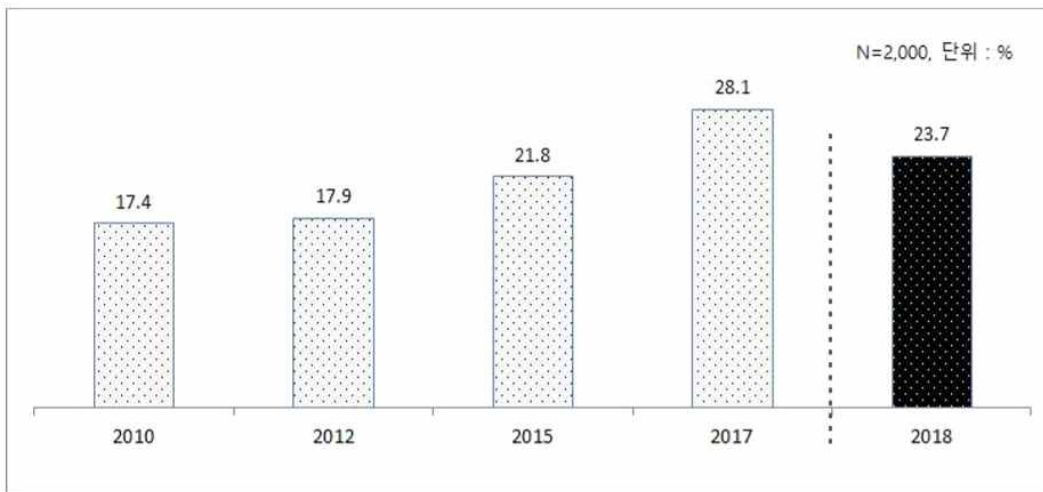


그림1-1 반려동물 양육 현황 (신종화 외,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2018)

-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개물림 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여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로 인한 119구급대의 병원 이송 환자수는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조사됨. (그림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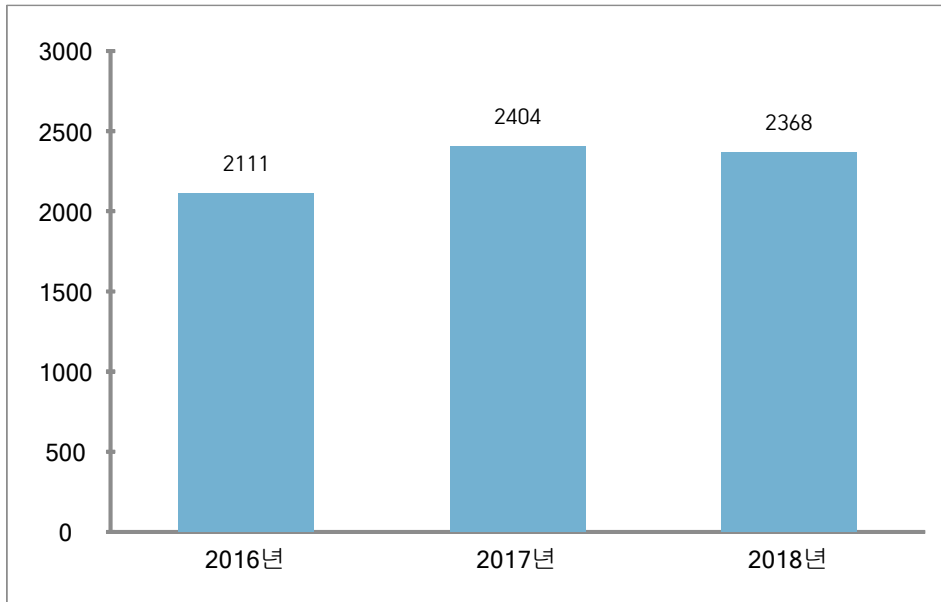


그림 1-2 개물림사고 병원 이송 환자수 (단위:명) 자료:소방청

- 개물림 사고는 공동 사회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초래하고, 사람과 개의 유대관계를 해치거나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수공통질병이나 감염원의 매개가 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음. 또한 상해를 입힌 개의 양육 포기, 유기 또는 안락사를 유발하여 동물복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동물 및 환경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을 포괄하는 공공의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학제적(transdisciplinary), 다층적 접근을 강조하는 원 헬스(One Health)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개물림 사고는 중요한 문제이며,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 2017년, 한 연예인이 기르는 반려견에게 물린 피해자가 사흘 만에 사망하면서 개물림 사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까지 접수되었으며, 반려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국내 법제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맹견으로 지정된 5종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 와일러와 그 잡종)에 대하여는 현재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가 의무화된 상태임.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 및 사망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2018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였고, 2019년 3월 21일부터는 맹견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의 시설에 맹견의 출입이 금지됨.(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품종에 상관없이 반려견의 목줄 착용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개의 기준 설정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보다 맹견법을 먼저 시행한 독일, 영국 등의 해외에서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맹견법의 한계를 깨닫고, 품종에 상관없이 위험성이 있는 개의 안전관리에 조기 개입하고, 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에서 맹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되었지만, 개물림 사고 중 다수는 맹견으로 지정된 5종의 다른 종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개물림 사고 발생 시 대응과 관련된 제도가 미비하고, 사고를 일으킨 개를 평가할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개물림 사고의 뚜렷한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개물림 사고 위험 관리를 위해 맹견 관리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재검토하고, 품종이 아니라 개의 행동과 사육환경에 근거하여 위험성 있는 개체를 선별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진적 정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개의 행동과 사육환경에 근거하여 위험 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해 향후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잠재적 위험성을 예상하기 위한 평가 및 이후의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동물행동 평가 영역은 수의학과 동물행동학에 그 주 근거를 두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동물행동 관련 프로그램과 전문가들이 미디어에 등장하면서 그 발전적 대중화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음. 특히 최종적으로 동물 개체에 대한 사회의 포용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 공적 위험 평가 제도가 생긴다면, 동물의 행동과 치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도의 전문성 뿐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데 필요한 진정성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동물복지에 있어 보다 선진적인 국가들의 경우, 개가 어릴 때부터 사회화를 위한 교육을 시작하고, 과도한 공격성을 보이는 개는 번식시키지 않는 등 동물이 탄생부터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한국보다 앞서 잘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공격성 등 반려견의 행동 평가 관련제도에 대한 연구 역시 선진적인 문화 전반을 함께 이해하는 맥락에서 이루지는 것이 바람직함.
- 동물복지 선진국의 개물림 사고 대응 절차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 영국의 경우 반려인이 미리 가입해 둔 보험으로 상대의 부상 치료비용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상이 심할 경우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하고, 이후 재판을 통해 징역형(물림사고로 사람이 사망 시 최대 징역 14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등 개의 행동에 대한 반려인의 책임을 점점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

- 해외 사례 및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개물림 사고 관련 위험 평가와 그를 통한 안전관리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함. 위험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견을 선정하고, 개의 행동 및 사육환경을 토대로 개물림 사고 발생 위험을 예측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반려인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안 개발이 필요함.

2. 목적 및 목표

<목적>

-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개의 위험 평가 방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관련 제도화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과 사람의 복지를 제고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함.

<목표>

-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개의 기준에 대해 연구함.
- 국내·외 반려견 공격성 평가(위험 평가) 현황을 조사함.
- 국외 개물림 사고 이후의 행정 처리 절차를 조사함.
-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개의 위험 평가 방법을 개발함.
- 질환성 공격성을 보이는 개는 평가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개의 위험 평가 관리 정책안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출함.
- 개물림 사고 이후의 행정 처리안을 제시함.
-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를 대상으로 위험 평가를 시범 실시함.
-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개의 위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교육 및 양성 계획안을 수립함.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위험 평가 관련
 - 국내·외 관리대상견 위험 평가 현황
 - 관리대상견의 기준
 - 관리대상견 위험 평가 방법
 - 관리대상견 위험 평가 운영안
 - 위험 평가 시 질환성 여부 확인 근거 및 방안

- 개물림 사고 대응 관련
 - 국내·외 개물림 사고 이후 행정 처리 절차
 - 개물림 사고 대응 방안

2.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온오프라인)

- 수의학, 동물행동학 등 관련분야 서적, 연구논문 등 열람
- 관련 언론 기사, 기타 웹문서 등에 대한 조사

(2) 표본 조사

- 동물행동 관련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동물행동치료 수의사, 훈련사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시행
-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개의 위험 평가 방법 설정 후, 이의 시범 시행을 통해 그 적절성 및 시행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표본 조사 실시

(3) 현장 조사

- 국내 위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병원, 교육 및 훈련기관 등 방문 조사
 -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동물병원 2곳, 교육 및 훈련기관 2곳 방문 조사
- 국외의 경우 유럽의 영국, 독일, 미국 등의 위험 평가 기관을 아래와 같이 방문
 - (독일) 기질평가(Wesenstest) 전문가, 동물복지연구소, 수의국
 - (영국) 행동치료전문병원, 런던 Wandsworth 공무원, 동물보호단체(RSPCA)

(4) 시범 시행

- 정형(定型)적 위험 평가 시범 시행
 - 위험 평가 방법 중 독일(니더작센주)식 정형(定型) 모델의 도입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시범 시행
 - 최근 3개월 내에 가족, 지인, 낯선 사람을 문 적이 있는 개 중, 현행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이 완료된 개 20마래와 그 반려인 대상 실시
 - 개의 공격성이 질병에 의해 유발된 것은 아닌지 진단하고, 질환성인 경우 치료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건강검진 실시
 - 반려인 설문과 상담, 상황 재연, 가정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 평가 시행

(5) 인터뷰

○ 표본 조사, 현장 조사, 시범 시행 시 유관 전문가 및 반려인 인터뷰를 진행

인터뷰 (1)	일시	2019년 9월 29일 (일)
	장소	독일 Schönbach 기질평가 장소 (야외공간)
	참석	Esther Schalke, 이해원, 김가희, 박아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senstest (기질평가) 개발 과정 - 니더작센 주 Wesenstest 방법 및 비용(260유로) - Wesenstest 수행 인력 및 관리방안 - 개물림 이후 경찰 조사 및 정부(안전유지국)의 요구에 따라 Wesenstest를 하게 되는 과정 - 반드시 off-pain 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실시. - 시민 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 - Wesenstest 결과 안락사를 권하는 경우 - Wesenstest에 적합한 환경 탐방
현장조사 (2)	일시	2019년 10월 1일 (화)
	장소	뮌헨 동물복지연구소
	참석	Angela Bartels, 이해원, 김가희, 박아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에른 주 Wesenstest 방법과 니더작센과의 차이점 (대상견의 집을 방문하여 평소의 환경 속에서 평가하도록 함) - 개물림 이후 Wesenstest를 바로 진행하기보다 행동치료수의사를 먼저 만나도록 함. - Wesenstest 결과 안락사를 권하는 경우 - 맹견법 품종을 증명하는 것의 어려움 - 시민 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
현장조사 (3)	일시	2019년 10월 1일 (화)
	장소	뮌헨 수의국
	참석	Florian Walsch, 이해원, 김가희, 박아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에른 주의 개물림 사고 인지 통로 - 바이에른 주의 개물림 사고 이후 절차 - Wesenstest 결과에 따른 조치의 종류 - Wesenstest 결과지에 포함되는 내용 - 바이에른 주의 맹견법 - 바이에른 주의 반려인 면허 도입 가능성

현장조사 (4)	일시	2019년 10월 3일 (목)
	장소	Behavioural Referrals (10 Rushton Dr., Upton, Chester)
	참석	Sarah Heath, 김가희, 박아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havioural Referrals 의 행동 평가 기조 (개의 감정적, 정서적 상태, 행동을 일으키는 감정적 원인에 집중) - Behavioural Referrals 의 행동 평가 원칙 (자극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가족과 생활공간을 방문하면서 인터뷰 시작) - 질환성 공격성 비율 (약 70~75%) - 문제 행동 대응 기조 (첫째, 소유자 교육, 둘째, 환경 변화, 셋째, 개 훈련 및 약물 치료) - 시민 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 - 강아지 훈련 방향 (사회화, 정서적 지능 제고 등) - 영국의 맹견법에 대한 의견 (법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개를 평가내리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현장조사 (5)	일시	2019년 10월 3일 (목)
	장소	6593+P4, Mickle Trafford, Chester
	참석	Laura Francis, Simon Robinson-Stynes, 김가희, 박아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havioural Referrals 의 행동 평가 방법 - Behavioural Referrals 의 행동 평가 공간 탐방 - 행동 평가 시 사용하는 도구 견학 - 개의 복지를 고려한 행동 평가 공간 설계 - 개의 훈련이 필요할 경우의 인력 연계 방법 - 고양이 행동 평가 방법
현장조사 (6)	일시	2019년 10월 4일 (금)
	장소	Warren Station 인근 (126 Tottenham Court Rd, Fitzrovia, London)
	참석	Paul Littlefair, 김가희, 박아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SPCA 동물복지조사관 (Animal Welfare Inspector)과 지역 공무원의 역할 차이 - 개물림 문제에 대한 조사를 위한 전문가 추천 및 협의 - 맹견법에 대한 RSPCA의 입장 - 시민 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
현장조사 (7)	일시	2019년 10월 7일 (월)
	장소	Dogs Trust (17 Wakley St., The Angel, London)

	참석	Jenna Kiddie, Charlotte Longster, 김가희, 박아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gstrust 입소시 행동 평가 과정 - 개물림사고 발생시 체계화된 절차의 필요성 - 행동평가자의 자질 평가/인증 시스템 필요성 - 현재 영국 맹견법에서 개선해야하는 점 (개물림 사고에 관한 자세한 정보 수집, 맹견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형성 개선) - 시민 교육, 특히 어린이 - 및 소유자 교육을 통한 개물림 사고 예방의 중요성 - 미디어가 개물림 사고를 다루는 관점에 있어서 문제점
현장조사 (8)	일시	2019년 10월 8일 (화)
	장소	Sudbury House (Wandsworth High Street, London)
	참석	Mark Callis, 김가희, 박아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물림 사고 인지 통로 - 개물림 사고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방법 -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 - 안락사 판결 사례 - 맹견법에 대한 의견 - 반려인 면허제도에 대한 의견 - 시민 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
현장조사 (9)	일시	2019년 10월 9일 (수)
	장소	RSPCA (Wilberforce Way, Southwater, Horsham)
	참석	Sam Gaines, 김가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를 관리하는 영국 법안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의견 - 행동 평가에서 증거기반 접근의 중요성 - 행동 평가를 담당할 전문가 표준화의 필요성 - 독일식 기질 평가에 대한 RSPCA의 입장 - 개물림 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통한 연구의 필요성 - 정부 주도 시민 교육의 필요성 - 반려인 책임의식 강화 기초와 반려인 면허제도에 대한 RSPCA의 지지
이메일 문의	일시	2019년 10월 31일 (목)
	장소	-
	참석	Jane Williams, 박아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 평가에서 사전 건강 검진을 통한 질환성 공격성 여부 판단의 중요성 - Association of Pet Behaviour Counsellors에서 질환성 공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의무 여부
--	-----------------

표1-1 인터뷰 일정 및 주요 내용

(6) 자문회의

- 수의학, 동물행동학, 동물훈련실무, 동물복지/동물권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자문회의 (1차)	일시	2019년 9월 3일 11시~12시30분
	장소	에듀넷
	참석	권혁필 에듀넷 대표, 김가희, 박아름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과제 추진과정에 대한 의견 2. 위험 평가 사례 문의 3. 위험 평가 시 체크리스트 문의 4. 위험 평가 및 위험건 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5. 해외 제도 도입 시 유의사항 혹은 아이디어 6. 징벌적 반려인 부담제 및 정부보조 필요성에 대한 생각 7. 향후 법제화 이후 정책을 실현할 스테이크 홀더에 관한 의견 8. 향후 법제화 이후 센터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
자문회의 (2차)	일시	2019년 9월 5일 11시~12시
	장소	어웨어 회의실
	참석	이형주 어웨어 대표, 김가희, 박아름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 평가 및 위험건 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2. 미국 위험건 관리 사례 3. 미국 반려견 동물복지 관련법 중 긍정적 사례 4. LA 카운티 애니컬컨트롤과 인터뷰 경과 5. 맹견법에 대한 의견 6. 향후 반려동물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자문회의 (3차)	일시	2019년 9월 5일 13시~14시30분
	장소	카라 회의실
	참석	전진경 카라 이사, 김가희, 박아름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 평가 및 위험건 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2. 반려견 의무교육, 반려동물인수제 등 개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제도 변화의 필요성 3. 맹견법에 대한 카라의 개정 제안 내용

		4. 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선결 과제로서의 진돗개, 투견, 식용견 문제 5. 향후 법제화 이후 카라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 6. 카라의 반려인 교육 사례
자문회의 (4차)	일시	2019년 9월 11일 15시~16시
	장소	바우라움 상담실
	참석	변성수 훈련사, 김가희, 박아름
	내용	1. 위험 평가 사례 2. 위험 평가 및 위험건 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3. 해외 제도 도입 시 유의사항 4. 징벌적 반려인 부담제 및 정부보조 필요성에 대한 생각 5. 담당인력 양성의 필요성
자문회의 (5차)	일시	2019년 10월 28일 15시~16시
	장소	그녀의 동물병원
	참석	설채현 수의사, 김가희
	내용	1. 전체 케이스 중 공격성 케이스의 비율 2. 약물 처방 및 안락사 비율 3. 공격성 진단 과정 4. 사전 검진의 중요성 5. 예후 평가 기준 6. 위험 평가 및 위험건 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표1-2 자문회의 일정 및 주요 내용

제3절. 추진 과정

1. 추진 일정

구 분	월별 추진 일정						비 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 내용							
연구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회							
(1)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개(관리대상견)의 기준							
(2) 국내·외 반려견 위험 평가 현황							

(3) 국외 개물림 사고 이후의 행정 처리 절차								
(4) 관리대상견 위험 평가 척도 개발								
(5) 개의 공격성이 질병에 의해 유발되었는지 확인								
(6) 관리대상견 위험 평가 운영안 개발								
(7) 개물림 사고 이후의 행정 처리안								
(8) 관리대상견 위험 평가 시범 시행								
↳ 시범 시행 참여견 모집					-	-		
↳ 설문 및 위험 평가 진행					-	-	-	
↳ 시행 결과 도출 및 평가 방법 수정						-	-	
(9) 관리대상견 위험 평가 수행 가능 기관 조사 및 양성 계획안								
자문 회의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추진진도 (%)	10	20	30	60	80	100	100	

표1-3 연구 세부 내용 및 월별 추진 일정

2. 추진 보고

(1) 착수보고회

-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13~15시 용산역 인근에서 착수보고회 진행
-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보호단체 행강,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애견협회, 애견연맹, 중앙경찰학교 등에서 15명 참석.
- 연구과제에 대한 참석자 주요 의견
 - (교육의 중요성) 공격성에 있어 개의 종보다는 소유자의 관계가 중요
개 품종, 크기 등에 의해 공격성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연구에 반영할 필요

- (지속적인 연구 필요) 내적요인 이외 공격성이 커지는 외적요인(사육환경 등)에 대한 조사 연구도 추가 필요
- (국내 실정 연구 추진) 국내 상황에 맞는 사고 예방 방식 연구 필요
- (위험 평가방식의 정확성 필요) 위험 평가방식이 정확하고 과학적인 방식에 의해 개발 될 필요

(2) 중간보고회

-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15~17시 서울역 회의실 AREX-2에서 중간보고회 진행
-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보호단체 행강, 비글구조네트워크,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애견협회, 애견연맹, 중앙경찰학교,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21명 참석.
- 연구과제에 대한 참석자 주요 의견
 - (과학적 연구의 중요성) 공격성 형성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 개의 품종, 크기 등에 의해 공격성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동향이 반영되어야, 위험 평가 매뉴얼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 필요
 - (교육의 중요성) 개물림 사고 이후의 조치보다 조기 사회화 교육이 중요, 교육을 통해 소유자가 반려견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품종이나 크기에 대한 편견을 줄여야, 개를 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나 캠페인이 가능해야, 서울과 문화가 다른 지방 소도시에서의 교육도 필요
 - (적절한 정책 수행주체의 중요성) 위험 평가자를 제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 제도의 정착을 위해 반려견의 문제 행동 교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뢰받는 기관이 평가를 수행해야, 독일의 안전국처럼 인증된 기관 소속의 훈련사가 평가하는 체계 필요, 경찰, 여러 연맹 및 협회가 다각도로 협동해야
 -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 필요) 문제 행동 예방을 위해 강아지 때부터 교육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문제 행동 발생 시 교정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해야, 소방청 등의 통계에서 나오지 않았던 경미한 물림사고 등 대한민국 반려견의 전반적 공격성 경향을 파악해야, 안락사 등의 행정 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해외 조사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충분히 모은 후에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필요) 개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 필요, 비용문제로 반려견 교육을 포기하는 소유자가 많기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필요, 차후 위험 평가 역시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평가를 받을 소유자는 많지 않을 것이므로 지자체 지원이 필요
 - (지속적 연구 필요) 개물림 관련 데이터 마련 중요, 개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추가 연구나 교육 필요, 위험 평가를 통해 수집한 소유자의 성향이나 사회화교육 및 중성화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후 교육 자료를 만들 필요
 - (기타) 위험 평가에 소유자의 성향이나 사회화교육 및 중성화 여부 등 사육 환경이나 관리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평가 결과에 대한 소유자의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위험한 정도에 따라 행정 처분의 세분화 필요, 위험하다는 평가는 1년마다 다시

재검하는 등 회복의 기회가 있어야, 해외의 경험적 사례들을 적극 참고하면 좋을 것

(3) 최종보고회

- 2020년 2월 3일 월요일 16~18시 서울역 회의실 AREX-1에서 최종보고회 진행
-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보호단체 행강, 비글구조네트워크, 애견협회, 경기도청 등에서 15명 참석.
- 연구과제에 대한 참석자 주요 의견
 - (위험 평가 표준화) 일괄적 위험 평가를 통해 실제 공격성을 보이는 개체를 선별할 수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 필요, 하나의 평가들을 통해서 공격성을 완전히 가려내는 검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누구나 합리적이라고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 (위험 평가 기타 의견) 개가 위험하다기보다 그 개를 그 소유자가 키우는 것이 위험한 경우가 많기에 소유자의 행동도 평가해야,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예방차원의 사회화교육보다는 문제 행동 발생 이후 개선 목적으로 교육에 임하는 반려인이 많고, 가장 큰 이유가 비용문제인 만큼, 지자체 예산으로 평가 후 교육을 지원하면 좋을 것
 - (평가자 자격) 수의사와 훈련사 협업 필요, 초크체인 및 전기칼라 등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 필요
 - (맹견 위험 평가 의무화 관련) 개에 대한 평가 이전에 맹견 소유주 교육이 확실히 되어야, 맹견들을 평가해서 위험도 낮은 경우 그린카드를 발급하는 방향도 고려 가능, 맹견이라도 평가를 통해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입마개 의무를 감면하는 식의 해외 제도 참고 가능, 맹견의 경우 예들들어 핏불은 반려견 보다는 투견 엽견 등으로 이용되는데, 이런 개들의 소유주는 맹견 관련 법규에 대해 알고 있지만 관심이나 준수 의지가 없어서 효과가 약할 수 있으며, 맹견을 유전자 검사로 가려낼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맹견 5종에 기반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우려, 사역견이 물었을 때와 말티즈가 물었을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해야 함
 - (대시민 교육의 중요성) 개를 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이 언급되어서 좋았으며, 어린이, 노약자, 업계 종사자 등 위험군에 대한 교육이 필요
 - (개물림의 정의) 동물병원 등에서 방어적으로 공격성을 보이는 상황까지 개물림으로 취급한다면 사회적 자원의 낭비일 것이므로 개물림의 정의를 잘 개념화해야, 우리나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인식의 역치가 너무 낮아 과도하게 이슈화되는 면을 고려해야 하며, 국내 개물림 사고에 대한 사례 분석을 해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 무책임한 반려인에 의해 사회화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개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반려인의 책임이 크므로 어떤 공격성을 문제삼을지 범위 정리 필요
 - (개물림 사고 대응) 개물림 사고 이후 위험 평가 등 대응은 명확한 프로세스와 스테이크홀더, 기준에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이후 소유자가 반려견을 안락사 등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면도 있을 것,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경미한 개물림도 과도하게 피해자화하고 개를 비난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 의사, 수의사, 훈련사 등이 공격성이 커서 위험하다고 판단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제도도 고려할 수

있음,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된 문제행동은 가벼운 물림이라도 위험 평가 대상이 되어야

- (개물림 사고 데이터) 개물림 사고 관련 견종, 지역, 도시여부 등에 대한 데이터 축적 필요
- (기타) 법적으로 최소한의 사육 및 소유자의 관리 기준이 있어야, 동물보호법에 사육기준 제시되고 처벌규정 마련되는 흐름과 함께 종합적으로 적용되어야, 엽견 문제에 대한 관심과 관리도 선행되어야 하며 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해 엽사들을 동원하여 엽견들로 하여금 잔인하게 공격성을 발휘하여 멧돼지들을 죽이게 했으면서 사냥이 끝나면 그 엽견들의 공격성을 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 투견에서 핏불에 진돗개와 풍산개를 믹스하는 상황이므로 투견 역시 적극적으로 막아야

제2장 위험 평가

제1절 위험 평가에 대한 이해

1. 위험 평가의 개념¹⁾

- 위험 평가(Risk assessment)는 주어진 상황에서 대상견의 행복에 대한 위험(Danger)의 형태와 정도를 설명하는 것임. ‘위험(Danger)’은 고통의 가능성, 고통, 상해, 죽음 등의 원인으로 정의되며, ‘위험한(Dangerous)’는 다른 누군가 또는 다른 무엇에게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그러므로 ‘위험(Danger)’이라는 용어는 어떤 존재가 해로운 것과 만나게 된 상황과 그 결과의 심각도를 의미함.
- 안전관리 방안으로서의 위험 평가는 개의 행동에 대한 관찰과 사육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토대로 대상견의 행동 근거를 확인하고 향후 사고 발생 가능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함.
- 개의 공격적인 행동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함. 그러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함.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해, 우리는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모아서 가장 최신의 전문 기술에 적용해야 함. 이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을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지식을 활용해야 함. 개물림 사고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사고들과 관련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증대될 수 있음.
- 위험 평가 시, 개가 보이는 공격성은 평가해야 할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 중의 하나, 즉 ‘부분’일 뿐이며, 개의 신체적 특징, 공격성 표출의 대상, 당시 상황의 맥락, 사육환경, 소유자의 핸들링 등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2. 위험 평가의 목적²⁾

- 안전관리 방안으로서의 위험 평가의 목적은 대상견이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개인지를 평가하기 위함임. 만약 개가 사람을 해치는 사고를 냈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대처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 수집

1) 참고자료

Mills, Daniel, and Carri Westgarth. Dog bites: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5M Publishing, 2017. 250p.

2) 참고자료

Mills, Daniel, and Carri Westgarth. Dog bites: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5M Publishing, 2017

및 검토를 바탕으로 위험 평가를 시도하게 됨.

- 개가 문제 행동(사람을 무는 등)을 보인다면, 위험 평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개의 복지 측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 교배 및 사육 환경과 같은 동물복지 차원의 문제들이 많은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되며, 개에 대한 통제, 체벌 등도 개의 복지에 악영향을 가중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악순환은 신체적, 정신적 상해 뿐 아니라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음. 따라서 위험 평가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개의 실질적인 위험을 확인하는 것 뿐 아니라, 그 개체와 다른 가능한 피해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역시 고려해야 함.
- 공격성이 있는 개를 행동학적으로 관리하는 것의 기본 목표는 공격성의 요인을 안전하게 최대한 제거하는 것임. (수의학적인 검사를 통해 질환에 의해 공격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배제되었다는 전제 하에) 개의 몸짓언어 및 신호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개를 둘러싼 환경을 통시적으로 충분히 살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평가), 이를 반려인과 반려견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효과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대응)이 개의 공격성에 사후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
- 개의 공격성에 대한 평가와 이후 조치와 관련된 정책을 세울 때에는, 반려인과 전문가가 함께할 때,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포함한 시민 일반이 함께 대응할 때에 이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따라서 ‘위험 평가’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동물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낙인찍기에 머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개의 공격성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겨냥하는 해결법을 고안해야 함. 무엇보다 ‘개물림’과 같은 개의 공격성으로 인한 문제 행동의 사후 대처 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반려인의 조기 사회화 및 반려견 주변 행동원칙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최우선으로 중시해야 함.
- 또한 위험 평가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반려인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의 공격성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해나갈 수 있도록, 또한 이 때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최대한 바람직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반려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들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어야 개의 ‘위험 평가’ 제도가 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음.

3. 위험 평가의 주체³⁾

-
- 3) ① Mills, Daniel, and Carri Westgarth. Dog bites: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5M Publishing, 2017.
 - ② American Veterinary Society of Animal Behavior(AVSAB)(2014), Position Statement on the Breed-Specific Legislation, AVSAB
 - ③ Lansberg, Hunthausen, Ackerman(2013), Behavior Problems of the Dog and Cat, Sanders

- 위험 평가를 직접적으로 실시하고 주관하는 주체는 반려동물의 행동 및 행동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즉 ‘반려동물행동전문가’여야 함.
- 개의 문제 행동에서 개가 보인 공격성이 정상 수준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격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 유전, 학습,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 여러 요인을 신중하게 살펴야 함. 공격성의 예후를 판단할 때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개는 지각력이 있는 동물이기에 그 행동을 100%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함. 무는 행동 직전까지 그 개는 ‘문 적이 없는 개’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과거의 행동만으로 이후의 행동을 예측한다면 그 결과가 부정확할 것임. 따라서 개의 현재 감정적·인지적 상태를 바탕으로 건강과 복지, 공격성 예후를 보다 최신의 정확한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각별한 주의를 통해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함.
- 또한 위험 평가 시에는 개의 공격성이 신체 질환에서 유발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기에 수의학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통증이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역치를 낮추고, 방어적인 공격성을 일으킬 수 있음⁴⁾을 고려하여 수의학적 진단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함. 이 때문에 영국의 반려동물행동상담가연합(Association of Pet Behaviour Counsellors, 약칭 APBC)의 경우 모든 동물행동 평가 및 수정은 수의사에 의해 다른 수의학적 요인이 없다는 것이 먼저 확인된 후에 행하고 있음.⁵⁾

(1) 반려동물행동전문가의 개념

- 대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함으로, 개의 공격성을 평가할 수 있으려면, 곧 개를 포함하는 반려동물행동전문가여야 할 것임. 상기 전문성과 전문직의 개념을 토대로 개의 공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전문가군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반려동물 행동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최신 기술(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직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윤리의식을 지니며, 역량을 자율적으로 행사하고, 자치 조직을 통해 발전적 집단지성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는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음.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동물행동 전문 수의사와 충분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훈련사가 ‘반려동물행동전문가’로 호명될 수 있을 것임.
- 이는 ‘전문성’과 ‘전문직’이 어떻게 정의되고,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판별하기 조건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개의 공격성을 정히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를 설정해 본 것임.

④ 서지형 기자, 2016년 7월 1일, [서지형의 클릭클릭] 클릭러 트레이닝, 무엇이 다른가, 노트펫, (상) https://www.notepet.co.kr/news/article/article_view/?groupCode=AB400AD921&idx=5312&page=1
(하) https://www.notepet.co.kr/news/article/article_view/?idx=5313&groupCode=AB400AD921

4) Camps, Tomás, et al. "Pain-related aggression in dogs: 12 clinical cases." *Journal of Veterinary Behavior: Clinical Applications and Research* 7.2 (2012): 99-102.

5) 영국 반려동물행동상담가연합(Association of Pet Behaviour Counsellors) 대표 제인 윌리엄스(Jane Williams)의 2019년 10월 31일 이메일 문의 결과

○ 전문성의 정의

전문성의 정의 (출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p>전문성(professionalism, expertise)</p> <p>① 전문적인 성질 또는 특성</p> <p>② 어떤 영역에서 보통사람이 흔히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수행 능력을 보이는 것. 연구자들은 전문성이 매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고 본다.</p>

○ 전문직의 정의

전문직의 정의
<p>리버만(Myron Lieberman)의 전문직에 관한 정의⁶⁾</p> <p>① 유일하고 독특한 종류의 사회적 봉사 기능을 가지고 있다.</p> <p>② 그 직능의 수행에 있어서 고도의 지적 기술을 요한다.</p> <p>③ 상당히 장기간의 준비 교육을 요한다.</p> <p>④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광범한 자율권을 행사한다.</p> <p>⑤ 자율의 범위 안에서 행사한 행동과 판단에 대하여 종사자의 광범한 책임을 묻는다.</p> <p>⑥ 자치 조직을 가진다.</p> <p>⑦ 경제적 보수는 사회적 봉사보다 우선되지 않는다.</p> <p>⑧ 그 자체의 직능을 수행하는데 준수할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다.</p>

(2) 반려동물행동전문가의 지식, 기술, 태도

- 반려동물 행동에 대한 ‘지식’이라 하면, 개와의 관계를 서열이나 우위로만 바라보는 단편적인 이해 방식을 폐기하고 존중과 규칙(약속)을 통해 관계를 설정하는 새로운 이론적 배경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는 첨단인 여러 연구 정보에 대한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할 부분임. 최신 ‘기술’의 경우에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면서 또한 윤리적이기로 정평이 난 긍정강화(Positive reinforcement) 훈련 방식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음. 또한 생명과 지각력 있는 존재를 대하는 일인 만큼, 대상을 존중할 수 있는 윤리 의식을 필요로 함.
- 위에 언급한 ‘지식’의 예는 복수의 반려동물 임상행동의학 관련 서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아래 발췌함.

<p>반려동물행동학연구회(2016), 「반려동물 임상행동의학 실전 매뉴얼」, 서울특별시수의사회 제4장, 개와 고양이의 실질적인 문제행동과 치료 - IX. 기본 행동 교육 中 (92쪽 ~ 96쪽)</p>
--

6) 정영수(1998), 교사와 교육, 문음사

2) 우위성은 이미 폐기된 이론이다.

존중과 우위성은 전혀 다르다. 우위성에 기초한 교육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늑대를 포함해서 개과 동물의 정상적인 사회에서 서열을 위해 다투는 일은 극히 드물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극도의 악조건이 아니라면 다툼보다는 타협과 존중에 따라 행동한다. 다툼은 그 자체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우위성에 기초한 교육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에게 강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고 사람에게도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

3) 사람은 개들의 우두머리가 아니다

원래 개들 사회는 밀접한 친족관계로 구성된다. 우리는 이를 무리라고 한다. 사람은 개들과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므로 당연히 무리라는 개념은 맞지 않는다. 함께 사는 대부분의 반려동물들도 무리 개념과는 다르다. 하지만 소유자를 개와 한 무리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사람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강압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중략)

7) 벌칙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이유

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이용되는 신체적 처벌 기술은 대부분 학대에 해당된다. 진정한 벌칙은 통증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포기하게 하고 미래에 행동빈도가 줄어들 만큼 충분히 강력한 자극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대개의 벌칙은 통증을 수반하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충분히 강력하지 않게 된다.

통증을 수반하게 되면 벌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다치게 되고 반대로 충분히 강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교육효과가 없는 것이다.

벌칙은 교육적 효과가 없고 역효과만 나타나게 된다.

8) 처벌하지 말고 무시하기

문제행동을 막을 수 없을 때는 처벌을 하지 말고 무시해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개에게 신체적인 처벌이나 학대보다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하고 진정한 벌칙이다. 무시는 문제행동과 관련된 사람들의 우연한 보상을 막을 수 있다.

Lansberg, Hunthausen, Ackerman(2013), 「Behavior Problems of the Dog and Cat」, Sanders

○ Punishment and its possible effects on aggression

(처벌이 공격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Escalate aggression (공격성을 증대시킴)

- Lower the threshold for aggression (공격적의 역치를 낮춤)
- Cause redirected aggression (전환 공격성을 유발함)
- Destroy the bond between the owner and the pet (반려인과 반려견 사이의 유대감을 파괴함)
- Lead to fear-related aggression (공포 기반 공격성을 초래함)
- Cause conflict-related aggression (갈등 기반 공격성을 초래함)
- Result in injuries (부상을 입을 수 있음)
- Decrease warning signals before bites (물기 전의 경고 신호를 감소시킴)
- Increase the risk of euthanasia (안락사 가능성을 증가시킴)

- 아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기존 훈련방식을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 그러한 기법들이 있었기에 더 인도적인 방법의 트레이닝 기법을 연구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음. 그러나 기존 훈련방식을 살펴보면, 개가 사람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초크체인(Choke chain)⁷⁾을 이용해 목을 조이거나 전기충격칼라(E-collar)⁸⁾를 이용해 충격을 주는 등 사람이 개의 신체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거나 구속하여 자세와 행동을 교정하려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포와 불쾌감을 유발하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함. 이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학습효과가 떨어지고,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에 동물행동 관련 기술의 발전적 방향 혹은 지향점으로서의 가치가 없음.
- 서열 이론이나 강압적 방법에 기반하는 기존 훈련방식은 비과학적이고,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폐기되어야 함. 기존 훈련방식은 사람이 원치 않는 행동에 대해 체벌을 가하는 방법으로 행동을 교정하고자 함으로써, 종종 동물의 공포심 및 공격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이지 않으며, 종종 동물학대로 이어짐. 실제로 2019년 11월, 기존 방식의 훈련(위탁 훈련) 중 파이프를 때리는 등의 극단적인 동물학대 끝에 반려견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음.⁹⁾
- 기존 훈련방식이 비과학적일 뿐 아니라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최신의 긍정강화 방식을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윤리의식’과도 직결되는 부분임. 따라서 이 부분은 개의 위험 평가 전문가의 기준을 선정 시 매우 중요

7) 길이가 조절되는 체인 소재로 만들어진 목줄로, 사람이 줄을 잡아당기면 목을 졸리게 됨. 안쪽에 스파이크를 달아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의 스파이크/프롱 칼라 등 다양한 변형 제품들이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동물학대이며, 공포를 증가시키는 방식은 공격성 억제에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아지면서 그 사용의 정당성 및 필요성이 없어지고 있음. 반려동물 행동수의학, 동물행동학, 동물권 및 동물복지 단체의 국제적인 여론은 초크체인 폐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이러한 방법을 고수하는 훈련사들이 전세계에 남아있음.

8) RSPCA의 Sam Gaines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E-collar는 웨일스(Wales)에서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RSPCA는 이를 잉글랜드(England) 등에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9) 김기범 기자, 2019년 11월 21일, "반려견 훈련소에서 훈련받던 반려견 폭행치사" 동물구조119,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1211749001 위 기사에 따르면, 훈련사가 '훈련소에서 개가 죽으면 보통 500만 원 정도에 합의하고 공개 사과를 하라는 말은 하지 않더라'고 말했다는 부분이 나오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훈련방식을 사용하는, 특히 위탁훈련을 받는 훈련소에서 동물학대나 사망이 상당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음.



그림2-1 일반적인 초크체인 (Choke chain)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SlipCollar_wb.jpg



그림2-2 스파이크(프롱) 칼라 초크체인 (Spike/Prong collar)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ProngCollar_wb.jpg

하게 점검되어야 함.

- 기존 방식과는 달리,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보상 혹은 무시를 통해 개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 긍정강화 훈련 방식은 학습효과가 뛰어나 뿐 아니라 사람과 동물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며, 개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면에서 바람직함. 긍정강화 훈련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집중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에 집중하여 보상하는 방식을 씀. 예를 들어, 개가 차분히 앉아서 기다리는 바람직한 행동에는 보상(간식)을 더하여(플러스) 앉은 행동의 빈도를 늘리고, 점프하고 뛰어오르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마이너스) 해당 행동을 줄어든게 하는 방법임.

	강화 (Reinforcement)		처벌 (Punishment)
긍정 (Positive, 무언가를 더해주기(+))	긍정강화	목표	긍정처벌
	앉은 행동에 보상을 더해 앉는 행동을 증가시킴	예시	점프하는 행동을 할 때 초크체인으로 목을 조여 불쾌한 자극 때문에 점프하는 행동을 감소시킴
	긍정강화 훈련	훈련법	기존 훈련
부정 (Negative, 무언가를 빼주기(-))	부정강화	목표	부정처벌
	앉는 행동을 할 때 초크체인의 압박을 풀어줘 앉는 행동을 증가시킴	예시	점프하는 행동을 할 때 반려견에게 관심을 끊어 점프하는 행동을 감소시킴
	기존 훈련	훈련법	긍정강화 훈련

표 2-1 긍정강화 훈련과 기존 훈련의 차이점 비교¹⁰⁾

- 이 방법은 그 효과¹¹⁾와 인도적인 측면에서 매우 가치있으며, 특히 개에게 있어 모호하

고 불투명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의 말소리 대신, 간결한 소리로 청각에 보다 명확히 포착되는 클릭 소리를 활용하고 있어, 보다 빠르고 정확한 교육이 가능함. 클릭어 트레이닝의 대표적인 교육 및 공인 전문기관은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K(약칭) 아카데미’이며, 2007년 이후 전세계의 5,000명 이상의 훈련사가 교육과정을 수료했고, 1,400명 이상의 파트너가 공인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음.¹²⁾

(3) 반려동물 행동전문가 교육

- 반려동물 행동전문가는 생명과 지각력이 있는 존재로서 개를 대하고, 그의 삶의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행동과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라는 점에서 ‘개의 교육자’로 볼 수 있음. ‘교육자’는 학계의 연구에 의해 계속 갱신되는 지식을 다루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론 역시 그러한 갱신 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교육 전문가의 경우 재교육과 연수가 필요한 ‘지속적 전문가’로 받아들여짐.

지속적 전문가 집단의 기준¹³⁾

- ① 장기간에 걸친 준비교육
- ② 구성원 공식 자격 제도
- ③ 지속적 재교육과 연수
- ④ 표준화된 공식 경력인정 제도
- ⑤ 봉사기능의 지속성
- ⑥ 결속성

- 반려동물 행동 분야의 연구 역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행동전문가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 역시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함. 특히 반려동물 행동전문가로서 ‘위험 평가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바람직한 평가자의 태도 원칙이 제시되어야 함. 또한 정기 보수 교육을 편성하여 전문가들이 지식과 기술을 새로이 보완하고, 상호 교류함으로써 이상적인 전문가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반려동물 행동전문가 국내 현황

1) 수의사

10) 서지형 기자, 2016년 7월 1일

11) clickertraining.com 에 따르면

원문 : The evidence from dog training schools that have tried both methods suggests that dogs and their owners learn about 50% more rapidly when the marker signal is a click instead of the word "yes."

출처 : <https://clickertraining.com/node/275>

12) 출처 : <https://karenpryoracademy.com/about/>

13)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5),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 수의사의 경우 학위소지자와 관련교육이수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의 설명과 연구 과정에서 파악된 규모는 아래와 같음.

○ 학위소지자

- 동물(반려동물) 행동 관련 석·박사 학위¹⁴⁾ 또는 전문의 자격증을 보유한 수의사
- (규모) 현재 해외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3~4명, 국내 학위 소지자 1명, 총 4~5명 추정

○ 관련교육이수자

- 반려동물 행동 훈련사 자격증을 보유한 수의사
- 반려동물 행동 관련 국내·외 교육과정 및 세미나를 이수하고, 반려동물 행동진료 경험이 있는 수의사
- (규모) 서울특별시수의사회 산하 반려동물행동학연구회 소속 수의사 13인 등 총 20여명 가량 추정

2) 훈련사

○ 훈련사의 경우 국내 인증 훈련사와 국외 인증 훈련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 인증 훈련사의 경우 ‘애견협회’ 인증 훈련사와 ‘애견연맹’ 인증 훈련사로 구분할 수 있음. 애견협회 인증과 애견연맹 인증을 함께 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수를 단순히 합산할 수 없음을 고려해야 함.

가. 국내인증 훈련사 규모

○ 애견협회

- 애견협회에는 2018년말 기준, 3급 훈련사 5,112명, 2급 훈련사 931명, 1급 훈련사 400명이 소속되어 있음.
- 훈련사들은 수도권에 60% 이상 포진해 있으며, 이어서 부산, 대구, 대전 등에 많음.
- 훈련사 교육은 하지 않고, 자격검증 제도만을 운영함.
- 자격검증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짐.
- 3급 훈련사 자격증 취득 후 추천을 받아 3~5년 정도 활동하면 2급 훈련사에 도전할 수 있으며, 2급 훈련사 자격증 취득 후 추천을 받아 3~5년 정도 더 활동하면 1급 훈련사에 도전할 수 있음.

○ 애견연맹

14) ‘동물행동학’은 소동물 임상학 한 분과로 여겨지는 ‘반려동물행동학’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수의학의 범위를 넘어 생물학이나 생태학에 속할 수도 있음. 현재 국내에는 동물행동학 혹은 반려동물행동학을 전공한 교수가 운영하는 석박사 과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 동물행동학 혹은 반려동물행동학 석박사 학위의 경우 다수가 유럽, 미국 등 국외에서 취득된 경우임. 국내학위의 경우, 2019년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에서 야생동물 전공 교수의 지도하에 반려동물행동학 박사학위 취득이 이루어진 바 있음.

- 애견연맹에는 2019년 11월 17일 기준, 3등 훈련사 2,737명, 2등 훈련사 397명, 1등 훈련사 93명이 소속되어 있음.
- 자격검증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짐.
- 3등 훈련사 자격증은 만16세 이상이 도전할 수 있고, 3등 훈련사 자격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만 20세 이상의 훈련사는 2등 훈련사에 도전할 수 있으며, 2등 훈련사 자격증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만 25세 이상의 훈련사는 1등 훈련사에 도전할 수 있음. 그리고 1등 훈련사 자격증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만 35세 이상의 훈련사는 사범에 도전할 수 있음.
- 3등 훈련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앉자, 이리와, 끈 없이 나란히 걷기, 집으로 들어가, 나와, 기다려 등 10개 정도의 행동을 시킬 수 있어야 하며, 등수가 올라갈수록 보다 어려운 행동을 시킬 수 있어야 함.

○ 애견협회와 애견연맹의 훈련사 수를 급/등수에 따라 예상해 보면 아래와 같으며, 이는 국내 인증 훈련사의 전문성 판별 기준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음. 다만, 동물학대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이들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 애견협회 2급(931명), 애견연맹 2등(397명) 이상 훈련사의 경우 최대 약 1,200여명
- 애견협회 1급(400명), 애견연맹 1등(93명) 이상 훈련사의 경우 최대 약 500여명
- 두 가지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수는 중복될 수 있음.

나. 국외인증 훈련사 규모

○ K(약칭) 아카데미 공인 파트너

- 현재 국내에는 6~7명의 K(약칭) 아카데미 파트너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수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K(약칭) 아카데미 공인 파트너 자격 이외에도 해외 각국에 긍정강화 훈련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인증 시스템이 있으며, 이러한 체계 역시 검토를 통해 반려동물행동전문가 후보군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참고자료] 독일 헤센 주의 기질평가(Wesenstest) 실시 자격 관련 근거

- 독일 전역에서 기질평가는 인증받은 전문가들(수의사 또는 훈련사)에 의해서 진행되며 이는 감독 관청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실시하게 됨.
- 독일의 기질평가 실시 자격을 부여하는 곳은 최소 주 단위, 최소 주수의사회, 독일에 견협회의 사역견훈련시험, 국제애견연맹이 인정한 반려견스포츠협회의 심판시험임.
- 훈련사는 특정학교를 입학/졸업하여 공인인증되는 직업은 아니나 민간자격증으로 훈련사가 되고 별도 세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세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기질검사를 실시명령은 지자체(시 단위)의 공무원이 행함. 대부분의 경우 공무원의 결정권에 따라 며칠 이내에 기질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음.
- 기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법으로 명시해놓은 주는 헤센 주임.
- 헤센주의 반려견 사육 관련 위험방지법(Gefahrenabwehrverordnung ueber das Halten und Fuehren von Hunden, HundeVO)의 제6조와 제7조의 의하면 기질평가는 독일애견협회(Deutsche Hundewesen e.V.)와 헤센수의사회가 진행하는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함.
- 훈련사의 경우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독일애견협회의 사역견훈련 시험에 합격한 자이거나 국제애견연맹이 인정한 반려견스포츠협회에서 5년 이상 심판을 지낸 자임.
- 수의사의 경우 행동학 전문의이거나 행동치료 전문의 또는 3년 이상 소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위험한 개와 관련된 외부 세미나 60시간을 참여한 수의사, 현재 일하고 있는 동물병원에서 최소 10개의 행동치료를 진행한 수의사(10개중 5개는 Reference를 포함하여 자세한 케이스 리포트가 작성되어 있어야 함) 평가자격증 시험은 이론과 실습으로 나뉨. 이론시험은 필기와 구두시험으로 진행됨.
- 이론내용은 반려견 행동의 이해, 인간과 반려견 관계, 반려견 학습행동, 반려견과 공공질서, 반려견과 법, 반려견 사육 및 건강관리에 대한 것임.
- 시험에 모두 합격할 경우 합격증명서를 해당 지자체 질서부에 제출해야 함. 스스로 평가자격증을 포기할 수 있으며 만 70세가 넘은 경우에도 평가자로 활동할 수 없음.
- 독일애견협회와 헤센수의사회는 평가자격증을 박탈할 수 있는 이는 평가자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할 때, 기질평가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때, 2년 이상 임상수의사로서 활동하지 않을 때, 2년 이상 국제애견연맹의 심판활동을 하지 않을 때임. (출처: Standards sowie Benennung von Sachverständigen zur Durchführung von Sachkundeprüfungen und Wesensprüfungen gemäß der Gefahrenabwehrverordnung über das Halten und Führen von Hunden (HundeVO) vom 22.01.2003 (GVBl. I S. 54)

4. 위험 평가의 대상

(1) 위험 평가의 요소

- 개의 위험 평가의 대상은 개를 둘러싼 환경, 개의 반응, 잠재적 상해가능성, 반려인의 개 입 의지와 능력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의 행동을 관찰할 뿐 아니라 반려인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청취하게 되며, 따라서 반려인의 솔직하고 성실한 협조야말로 개의 위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이 됨.

고려 사항	주요 내용
흥분 잠재기 (Latency to arous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극 요인이 있을 때 개가 스트레스 반응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까지의 시간
예측가능성 (Predict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및 자극 요인 예측 가능 여부 • 경고 사인의 유무(얼굴 표정과 몸짓 행동) • 공격성을 유발하는 자극 요인에 대한 반응의 일관성
잠재적 상해가능성 (Potential to do ha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의 크기와 힘 • 흥분의 강도 • 흥분 대상에 대한 집중도 • 개물림 사고 당 물은 횟수 • 이전 개물림 사고의 심각도 • 무는 힘을 조절하는 정도 • 공격 대상을 쫓는 정도 • 공격성의 대상 • 공격성의 종류
주변 환경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견의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위한 반려인과 주변인들의 이해도 • 반려인과 주변인들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 가족구성원의 수 • 생활 습관 • 유아·어린이 또는 노인의 유무 • 반려인이 동물과 살아본 경험이 충분한지 여부
상황의 복잡성 (Complexity of the sit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성 진단 경험 및 횟수 • 기존 행동학적 진단 결과 • 공격성을 유발하는 상황 및 자극 요인의 수 • 갈등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
기질 (Tempera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의 안정성(불안정한 기질을 갖고 있는 개는 더 위험할 수 있음)

표 2-2 개로 인한 상해 가능성과 위험도를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 (Considerations for assessing danger and risk of injury)¹⁵⁾

15) Lansberg 외(2013)

- 따라서 개의 위험 평가가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의 행동에 대한 고도로 전문적인 진단 뿐 아니라, 반려인의 지식·경험, 의지·태도, 능력·자질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 평가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2) 개의 공격성에 대한 이해¹⁶⁾

- 위험 평가 시에는 개의 공격성이 그 결과 측면에서뿐 아니라 원인 측면에서도 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함. 개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유전, 학습, 신체적·정신적 건강, 사회화 적기 및 생애 전반의 경험 등 다양함.
- 특히 이러한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름아니라 개가 거쳐온 ‘사람’임. 실제로 개물림 사고 피해자 63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물림 사고가 개의 탓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2.7%밖에 되지 않았으며, 84.5%의 응답자는 사람(자신 또는 개 주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응답함.¹⁷⁾ 개의 공격성이 문제적 행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람’의 행동이라는 점을 주지한 상태에서 개의 공격성에 접근해야 함.

1) 개의 공격성의 개념

○ 공격성의 정의¹⁸⁾

- 공격성은 한 개체가 상대의 자유 혹은 태생적 안녕을 감소시키는 신체적 행동이나 그러한 위협을 보이는 것임. 이는 얼굴 표정이나 섬세한 몸의 움직임부터 폭발적인 공격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행동을 포괄함.
- 개의 공격성에 대한 판단 근거는 무는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으르렁거림(growl), 달려들(lunge), 물기(snap), 입질(nip), 혹은 긴장하고 있는 신체 자세로도 공격성을 판단함.

○ 공격성의 원인¹⁹⁾

- 유전적 요인

16) 참고자료

① American Veterinary Society of Animal Behavior(AVSAB)(2014), Position Statement on the Breed-Specific Legislation, AVSAB

② Lansberg, Hunthausen, Ackerman(2013) Behavior Problems of the Dog and Cat, Sanders

17) Oxley(2018), Contexts and Consequences of Dog Bites Incidents, Journal of Veterinary Behavior, 23, 33-39

18) 원문 : Aggression is defined as a physical act or threat of action by one individual that reduces the freedom or genetic fitness of another.⁷ This definition encompasses a wide variety of behaviors, from subtle body postures and facial expressions to explosive attacks. Dogs don't have to bite to be characterized as aggressive. A growl, lunge, snap, nip, or even tense body posture can be viewed as aggression. Most types of aggression are treatable, but many are not curable.

- Lansberg, Hunthausen, Ackerman(2013) Behavior Problems of the Dog and Cat, Sanders : 20. Canine Aggression : Introduction

19) Lansberg 외(2013)

- 학습 및 강화
- 태아기, 신생아기, 발달 초기의 건강 문제
- 사회화의 부족
- 만성 스트레스
- 공포, 불안, 갈등, 좌절 등을 일으키는 상황에의 반복적인 노출
- 병태생리학적 원인
- 정신장애적 요인

- 공격성은 개가 상황에 대해 보이는 반응의 일환이며, 다양한 동기에 의해 촉발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공포에 기인함. 개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또는 자원의 확보를 방해하는 요소를 물리치기 위해 공격성을 보이곤 하는데, 한 번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후로도 계속되는 경향이 있음. 공격성은 대부분의 경우 치료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음. 특히 어린 강아지 때 적절한 사회화 및 조기 공포심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행동 최소화와 직결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 및 시민 교육·홍보가 필수적임.
- 개의 공격성은 인류와의 공진화 과정에서 집을 지키고, 사냥을 돕는 등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현대적 주거문화, 반려문화 속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음. 개의 공격성은 주변 존재, 특히 사람이 부상을 입을 위험과 연결되고, 특히 주로 어린아이들이, 주로 아는 개에 의해 물리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개의 공격성은 사람과 개 사이의 유대감을 손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가족견(Family dogs)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사회화, 교육 등을 통해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이러한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개들(일종의 ‘거주견 Resident dogs’)은 소유자가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동안 고립되어 있고, 심지어 학대 상태에 놓이기도 함.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거나, 묶여있거나, 사람들과의 적절한 상호작용의 기회가 없으며, 조기 사회화의 기회도 없었던 개들은 결과적으로 사람과 다른 동물에 대한 공포심을 보일 수 있으며, 새로운 상황에 자발적, 유연적 대처보다는 공포심에 기인한 공격성을 보일 수 있음.
- 거주견(Resident dogs) 상태의 개들은 반려견들에 비해 소홀한 관리를 받거나 방치되기 쉽고, 그로 인해 주변을 더 보호하려고 하거나, 영역 공격성을 드러내기 쉬움.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미국에서 일어난 치명적인 개물림 사고의 76.2%는 거주견에 의해 발생했으며, 87.5%는 수컷, 그리고 84.4%는 중성화하지 않은 개들이었음. (이는 중성화하지 않은 수컷이 유전적으로 더 공격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떠돌아다니며 사고에 연루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기 더 쉽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개의 과도한 공격성은 결과적으로 개의 복지에도 악영향을 미침. 이는 미국에서 개의 안

락사를 초래하는 가장 큰 행동학적 이유가 개의 공격성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음. 특히 치명적인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언론은 사람에게 초래된 결과 위주로 단편적인 보도를 다수 생산하고, 그러한 사고가 초래된 맥락이나 이러한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과 결부되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물은 개를 무조건 사형(안락사)에 처하라는 식의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도 함. 이는 개의 공격성에 대한 몰이해 상태에서 매우 드문 치명적 개물림 사고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만을 조장할 수 있어,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가 시급함.

- 개의 공격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유전적으로 더 공격적인 품종이 있다’는 믿음임. 개의 공격성의 원인은 품종, 크기와 상관없으며, 사회화 시기의 경험, 유전, 학습,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음. (품종, 크기, 힘에 영향을 받는 것은 공격성으로 인해 실제 공격이 나타날 경우의 잠재적 위험성을 판단할 때임)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각국의 ‘맹견법(Bread Specific Legislation)’으로 이어져 비효과적인 정책과 특정 종에 대한 차별적 시선, 막대한 비용의 오용으로 이어지고 있음. 실제로 Denenberg(2005)가 미국, 캐나다, 호주에 있는 세 군데의 행동학 전문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격성으로 내원한 가장 많은 종은 ‘맹견’과는 거리가 멀다고 인지되는 잭러셀테리어, 래브라도리트리버, 골든리트리버 등이었음. 이는 개의 공격성이 유전적 요인 뿐 아니라 주로 과거 경험, 사육 환경, 사람과의 관계에 등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드러냄.
- 개의 공격성을 다룰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점의 하나는, 공격성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공격성을 평가하거나 치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임. 공격성을 평가할 때 개에게 과도하고 인위적인 자극을 가하거나 지나치게 도발하는 방식은 개의 복지 및 평가의 정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함. 또한 개의 위험 평가 과정 혹은 이후 치료·교육 과정에서 개를 꾸짖거나, 체벌하거나, 충격을 주는 목줄(Shock collar) 등을 이용하여 훈련하는 방식 역시 개의 복지 및 훈련의 효과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함.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폭력적인 접근은 개의 공격성, 특히 소유자에 대한 공격성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피해야 함.

2) 개의 공격성의 유형

- 전문가들은 개가 보이는 공격성의 유형을 개가 겪는 내적 갈등, 공포, 영역·자원·새끼에 대한 보호 본능 등 개의 감정과 욕구를 기반으로 분류하고 있음. 이 유형들은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공포는 다수 유형의 공격성의 기저원인으로 주목되므로, 공격성의 평가, 치료 등의 과정은 공포를 유발하지 않고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함.

유형	설명	사람 대상 유무
갈등 기반 공격성 (Conflict-related)	내적 갈등이나 욕구의 좌절로 인해 나타나는 공격성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자원 보호 공격성 (Resource guarding/Possessive)	음식, 장난감 등 자신이 가치있게 여기는 대상을 점유하고 있거나, 그 대상에 가까이 있을 때 접근하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보이는 공격성	
공포 기반 공격성 (Fear-related)	자동차, 낯선 사람 등이 무서워서 보이는 공격성. 이를 처벌하려 하거나, 비일관적으로 대하거나, 회피하거나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게 되면 악화됨. 공포는 다수 유형의 공격성의 기저원인임.	
영역 공격성 (Territorial protective)	and 집 등 개가 자신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공간이나 대상에 들어오거나 접근하는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해 보이는 공격성	
놀이 공격성 (Play)	놀이 중에 보이는 공격성. 어린 강아지의 놀이 관련 공격성은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짐.	
모성 공격성 (Maternal)	새끼에게, 혹은 새끼와 가까이 있을 때 접근하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보이는 공격성	
전환 공격성 (Redirected)	과도한 흥분, 좌절 등으로 인하여, 유발 원인이 아닌 사람이나 대상에 발현되는 공격성	
고통 관련 공격성 (Pain-Induced Irritable)	and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통증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공격성	
병태생리학적 공격성 (Pathophysiological)	호르몬 문제 등 병태생리학적 증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공격성	
포식성 공격성 (Predatory)	쫓기 등 사냥 본능으로 인해 보이는 공격성	어린이를 대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나 매우 드뭄.
지배적 공격성 (Dominance-related)	밀고 경로를 막는 등의 행동을 통해 반려인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처럼 지배적인 성향과 관련된 공격성. 자원 보호 공격성, 갈등 기반 공격성 등이 오진되는 경우가 많음.	매우 드뭄.
동종 의사소통 오류로 인한 공격성 (Intraspecific miscommunication)	개들 간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나타나는 공격성. 다양한 다른 개들에 대한 사회화가 잘 되지 않은 개들에게 나타날 수 있음.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

동종 지배적 공격성 (Intraspecific dominance/status-related)	개들 간에 보이는 공격성으로, 서열 경쟁으로 비쳐지기도 함. 같이 사는 개들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	
--	--	--

표 2-3 개의 공격성 유형²⁰⁾

5. 위험 평가의 방법

- 위험 평가의 일반적인 진행 흐름은 아래 표와 같음. 위험 평가에는 기본적으로 평가자, 소유자, 대상견이 참여하며, 필요한 경우 소유자 외 다른 가족 구성원 또는 평가 보조자가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위험 평가의 과정은 공정한 실행, 차후 재검토 가능성 등을 위해 문서, 영상 등으로 최대한 기록되어야 하며, 위험 평가 이후에는 적절한 행동학적 관리 조치가 뒤따라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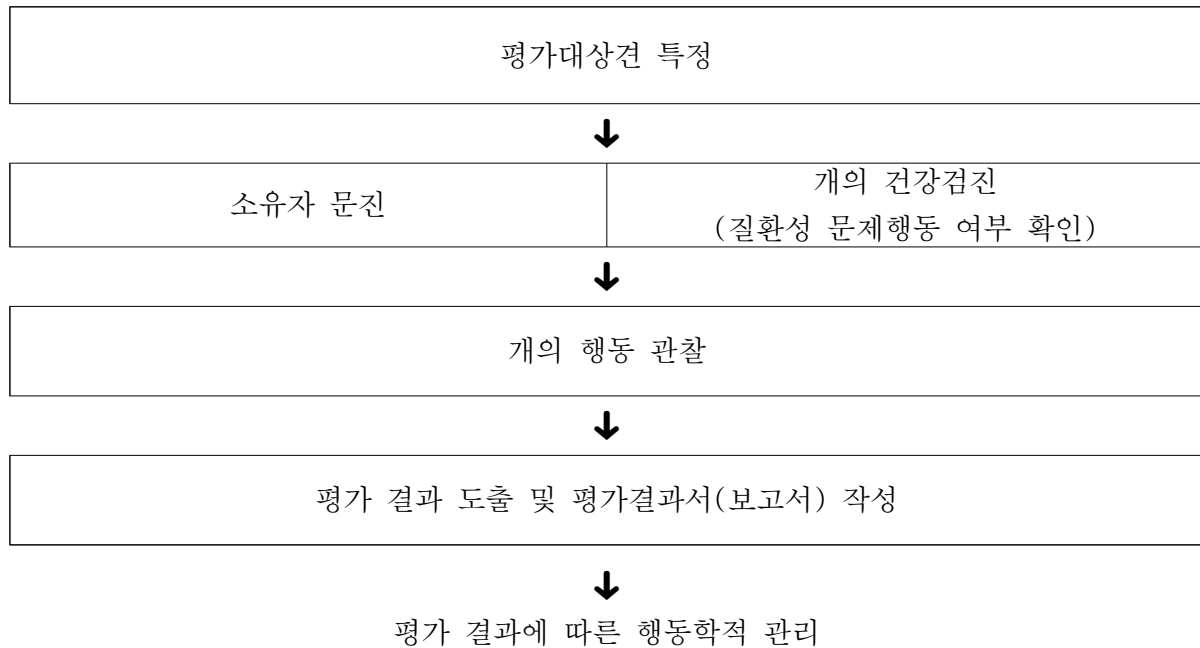


그림 2-3 위험 평가의 일반적인 진행 흐름

- 위험 평가 시에는 개의 공격성이 신체 질환에서 유발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기에 수의학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통증이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역치를 낮추고, 방어적인 공격성을 일으킬 수 있음²¹⁾을 고려하여 수의학적 진단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함. 실제로 공격성을 주증상으로 동물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서 디스크 척수염이 진단되었으며, 만성 디스크 척수염에 준한 치료 후 공격성이 개선됨.²²⁾

20) Lansberg, Hunthausen, Ackerman(2013)

21) Camps, Tomás, et al. "Pain-related aggression in dogs: 12 clinical cases." Journal of Veterinary Behavior: Clinical Applications and Research 7.2 (2012): 99-102.

22) Affenzeller, Nadja, et al. "Human-directed aggressive behaviour as the main presenting sign in dogs subsequently diagnosed with diskospondylitis." Veterinary Record Case Reports 5.4 (2017):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개에서는 공포 기반 공격성 (Fear-based aggression - 소음, 천둥/번개, 분리불안 등), 과잉 행동, 학습 능력 저하, 강박 행동, 공격성(예: 소유자를 향한 공격성, 소유성 공격 행동)등의 행동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었음.²³⁾

○ 위험 평가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과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평가 요소를 매뉴얼로 제시하여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평가 공간이나 세부적인 평가 방법은 평가자 자격을 갖춘 수의사, 훈련사 등 전문가 스스로 자율성을 발휘하여 계획 및 실행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임.

○ 평가자에게 제시되는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평가해야 할 항목(평가계획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요소와 권고되는 요소)
- 위험 평가 기준(공격성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
- 필요한 도구(평가 및 기록에 필요한 준비물 등)
- 반려인 설문 양식
- 평가보고서 양식 및 작성 방법
- 제도에 대한 기본 정보(관련법, 제도의 취지, 평가자 의무, 교육 안내, 자문 정보, 담당부서, 연락처 등)
- 평가자 유의사항(상담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평가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 지양할 태도, 주의해야 할 부분 등)

○ 위험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동 평가에서 보인 개의 행동이 반려인이 작성한 설문지의 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가정 방문, 평소 산책 관찰, 보다 상세한 문진 및 상담과 같은 추가 절차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 위험 평가 후 조치²⁴⁾

○ 공격성이 있는 개를 행동학적으로 관리하는 것의 기본 목표는 공격성의 요인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평가 이후에는 앞으로 취해야 할 행동의 변화 방향이 반려인에게 정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외출 시 입마개 착용’과 같은 간단한 하나의 원칙만으로도 효과적으로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 개의 공격성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행동 교육·훈련에 임하는 것임. 사회적 동물들은 상호작용을 위해 어떤 형태의 규칙을 만들며, 사람과 개 역시 같은 종은 아니지만 교육·훈련을 통해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²⁵⁾ 소유자와 반려견 모두가 정보를 주고받는 능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e000501.

23) Aronson, Linda P., and W. Jean Dodds. "The effect of hypothyroid function on canine behavior." Proc. Int. Vet. Beh. Med (2005).

24) Mills, Daniel, and Carri Westgarth. Dog bites: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5M Publishing, 2017

개의 공격성 제거 및 감소를 위한 사후 조치를 권고, 혹은 강제할 때에는 반려견과 반려인 양측이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함.

○ 반려동물의 공격성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유일한 방법은, 개물림 사고를 80%나 감소시킨 캐나다 켈거리처럼 강력한 정책과 시민교육을 통해 반려인의 책임의식을 강화함으로써 개의 공격적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임. 그리고 개물림 사고의 반복을 예방할 수 있다고 검증된 유일한 방법은,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는 개의 반려인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임.²⁶⁾ 개물림 사고를 100% 막을 수는 없지만, 반려인의 책임 강화와 바람직한 행동원칙을 알리는 시민교육 통해 예방적 정책을 펴는 것과, 자원을 투입할 근거가 명확한 대상, 즉 이미 한번 공격성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개에게 자원을 집중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막을 수 있음.

○ 개의 공격성을 확인하고 이의 유발 요인을 제거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행동 수의학에서 개의 공격성을 어떤 과정을 통해 치료하는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개의 공격성을 치료하는 일반적인 방법

Step	설명 (Comments)
안전 (Saf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소유자에게 해당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지시함 • 무는 행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의 몸의 언어를 소유자가 읽을 수 있도록 교육함 • 공격성을 유발하는 자극이 있을 때 개와 자극을 분리시킴 • 개를 어린이, 노인, 낯선 사람, 희생자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부터 격리시킴 • 소유자에게 법적 책임을 경고함 •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마개나 헤드 할터로 개를 통제해야 함
조직/예측/제어 (Structure/predictability/contr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는 모든 교류와 보상에 침착하게 앉아있어야 함 • 관심유도형 행동은 무시하거나 단념시켜야 함 • 물리적 처벌은 중단하여야 함
탈감작/역조건형성 (Desensitization and counterconditio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방식은 경험이 있는 행동전문가의 감독 하에 시도되어야 하며 적절하고 필요한 방식이어야 함. • 훈련 기간 중 공격성이 유발되지 않도록 훈련과정을 천천히 진행함. 만약 공격성이 시작되며 즉시 멈추고 다른 날 좀 더 천천히 진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함
수술 (Surge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손에게 공격성을 유전시킬 수 있는 기질을 가진 개들은 중성화 수술을 고려해야 함. 또한 일부의 경우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음
약물/보조제/영약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RI 계통의 약물이 흥분성, 충동성, 반응성을 감소하는데 도움을

25) 반려동물행동학연구회(2016)

26) Janice Bradly(2014)

(Drug/supplement/diet therap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 수 있음. • 약물은 행동 교정과 안전 권고와 함께 처방되어야 함. • 단백질 공급을 감소하는 것과 특정 공격성의 경우 트립토판 보조제가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 단백질량을 고려한 홈 메이드 사료도 나쁘지 않음 • 합성 페로몬이 불안도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물리적인 제어 및 처벌 (Physical control and punish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에는 갈등(대립)이 포함되어서는 안됨 • 물리적 체벌, 목을 조이거나 충격을 가하는 도구, 갈등을 일으키는 기술, 서열을 애기하거나 개의 목덜미를 잡고 흔드는 것을 모두 위험하며 공격성과 공포를 강화시킬 수 있음.
안락사와 재입양 (Euthanasia and rehom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때에는 안락사를 고려해야 함 •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위험한 사고를 다른 환경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입양을 고려하는 것은 옳지 않음

표 2-4 개의 공격성을 치료하는 일반적인 방법 (General guidelines for treatment of aggression in dogs)²⁷⁾

- 개의 위험 평가 이후 이루어지는 조치의 방향은 공공장소에서의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는 것과 가정에서의 개물림 사고 방지하는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음. 공공장소에서의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현행법이 맹견을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과 같이 ‘외출’ 시의 통제로써 가능할 것임. 외출 시에 목줄 뿐 아니라 입마개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게 하거나 공격성 발현의 대상이 될 경우 매우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분포가 높은 어린이집 등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임. 그러나 이는 외재적인 환경을 통제하는 것에 그쳐, 개의 공격성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조치에 이르지 못하는 것.
- 한편, 가정에서는 대부분의 개들이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기 때문에, 공격성의 근본적 요인이 치료되지 않을 경우 가족 구성원이 개물림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 가정에는 어린이나 노인과 같이 개물림 공격에 취약할 수 있는 구성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에, 공격성 발현의 내재적인 요소에 개입하는 것이 꼭 필요함. 또한 개가 가정에서나 공공장소에서나 최상의 자유와 복지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도 개가 적절하게 사회화되는 것이 필요함.

제2절 위험 평가 현황

1. 국내 현황

(1) 관련 정책 부재

- 국내법을 살펴보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의 ①항-25(위험한 동물의 관리

²⁷⁾ Lansberg 외(2013)

소홀)에서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여기서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라는 표현은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개의 위험 평가에 대한 국내의 관련법 및 정책은 아직 공백 상태에 가까우며, 개의 공격성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음.

(2) 국내 사례 조사

- 기질평가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공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기관의 현황을 문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A 동물병원 (서울 성동구)

- 행동전문수의사(독일 동물행동학 박사)가 평가 진행
- 1차적으로 소유자가 작성한 공격성 검진 문항지(체크리스트)를 통해 환경의 공격적 행동을 판단, 2차적으로 이를 토대로 상황 재연을 통한 반응을 살핍으로써 추가 정보를 파악하여 위험 평가 및 치료
- 내원 환경 중 공격성 사례가 가장 많음

나. B 훈련사 (서울 강남구)

- 반려동물훈련사가 평가 진행
- 공격성만 단독으로 평가하기보다 문제행동의 양상과 인과관계 파악
- 1차적으로 유선상담을 진행 후, 2차로 내원 시 체크리스트 작성, VCR녹화가 진행되는 실내 및 실외 테스트를 진행함. 필요한 경우 가급적 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교육 방향을 제시
- 전체의 30~40%가 공격성 사례이며, 대개 산책할 때 다른 개에게 달려드는 부분 등으로, 공격성 문제라기보다 사회성 부족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음.

다. C 동물병원 (서울 중구)

- 훈련사(미국 K(약칭) 아카데미 공인 트레이너) 자격을 갖춘 수의사가 평가 진행
- 표준화된 검사를 시행하기보다 인형에 대한 반응, 소유자 유무에 따른 반응 등을 보면서 평가하는 편임. 국내에는 동맹공격성 케이스가 많다고 보기에, 소유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행동을 기본적으로는 확인. 목줄을 잡고 있는 사람에 따른 반응, 목줄 유무에 따른

반응 등도 살피며 대상에 대한 공격성(어린아이, 노인, 오토바이)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보통 문진을 통해 확인함.

- 간혹 병원에서는 개가 문제 행동을 숨기는 경우가 있기에 일상적 산책 공간, 자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장소에서 관찰해야 하는 케이스가 있음.
- 물린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물림 정도(biting grade)를 확인함.
- 공격성이 있는 개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반려인이 개물림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편.
- 개의 공격성에 대한 대처로는 입마개, 젠틀리더, 이지위크하네스, 핸즈프리 등을 권하는 편이며, 필요한 경우 약물을 처방함.

(3) 국내 연구 동향

- 김영기 외(2009)
 - 국내에서는 2009년 진돗개 43마리를 대상으로 12가지 행동 테스트에 노출시켜 행동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107가지의 행동 변수를 4가지 기질 (사회성, 공격성, 두려움, 복종성) 카테고리 분류함. 실험에서 진돗개들은 낯선 사람의 위협적 접근, 인형의 접근, 우산 펼침, 주인이 낯선 개와 함께 접근, 낯선 사람이 낯선 개와 함께 접근하는 상황에서 공격성을 보임²⁸⁾

2. 국외 현황

(1) 독일

- 반려인 면허제도 등 반려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가 잘 정비된 니더작센 주와 맹견법이 처음 도입된 바이에른 주를 중심으로 살펴봄.

1) 기질평가(Wesenstest)의 배경

- 독일의 경우 1992년 바이에른 주에만 맹견법이 제정됐는데, 2000년 6월 함부르크에서 6살 어린아이가 개물림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에 16개 주 전체로 확대됨.
- 개물림 대응을 위해 공공 안전을 위해 반려견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것의 필요성이 대두됨.
- 기질평가는 1998년 아메리칸스태플져테리어와 불테리어 클럽에서 모견의 기질 테스트를 위해 고안되어, 1999년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 시초임.
- 2000년 맹견법 확대 제정과 함께 기질평가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안전관리가 필요한 개의 기질평가에 확대 적용되었고, 맹견법에 포함된 품종(예: 핏불테리어)의 경우 기질평

28) 김영기 외(2009), 진돗개의 행동 테스트에 의한 예소그램, 한국임상수의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지 26.3 (2009): 238-245.

가가 의무화됨.

2) 기질평가의 개요

- 목표 : 반려견이 어떤 상황과 자극에서 공격성을 어느 정도 표출하는지 파악하는 것
- 대상
 - 맹견법에 포함된 품종견 : 니더작센주의 경우 최소 15개월령, 바이에른주의 경우 최소 18개월령
 -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문 적이 있는 개들 :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문 적이 있는 반려견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사고 발생 이후 기질평가를 받게 됨.
- 평가 인력 : 행동전문 수의사나 인증받은 훈련사 (매년 검사 자격을 갱신해야 함), 주된 평가자는 한 명이 보조인력은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수가 변경이 될 수 있음.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는 보조자, 상황 재연에 필요한 보조자 등이 필요하며 최소 2명 이상의 보조 인력이 필요함.
- 소요시간 : 대략 2~3시간
- 비용 : 소유자 부담 (니더작센 주의 경우 260유로 가량)

3) 기질평가의 방법

- (사전 설문) 본격적인 기질평가 전에 소유자를 대상으로 반려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조사
- (평가 시행) 반려견이 익숙한 장소와 처음 가보는 낯선 장소에서 두 번 시행.
- (준비물) 상황 재현을 위하여 처음 보는 반려견들과 인원들이 동원됨. 그 외에도 유모차, 자전거, 지팡이, 축구공, 우산, 다양한 환경소음재생기 등이 사용되는데, 수의사나 훈련사에 따라 세부적인 상황재연은 일부 차이가 있음.
- (공간) 평가자가 정한 실내·외 공간을 활용하되, 바이에른 주의 경우 대상견의 집을 방문하여 일상적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음.
- (기록) 기질평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되어야 하며 기록과 증명을 위해 장기 저장됨.

4) 기질평가의 활용

- 예후 및 치료
 - 사람이나 개를 문 반려견의 경우 기질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치료, 훈련이 될지의 여부가 결정되며 극소수의 경우 공격성 치료나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진단되어 안락사되기도 함.
- 재판 참고자료
 -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 연루된 개의 기질평가를 법원이 의뢰할 경우 기질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전문가 의견으로 제출

5) 니더작센 주의 정형적 기질평가 모델 연구

가. 니더작센 주의 정형적 기질평가 방법

- 독일 니더작센 주에서 시행하는 정형(定型)적 위험 평가 모델
- 기질평가 매뉴얼²⁹⁾

니더작센

개를 위한 기질평가

편집인(Herausgeber) : 니더작센(로워색스니) 주 농림식품소비자보호부 (Niedersächsisches Ministerium für den ländlichen Raum,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3판 2003년 3월

목차

1. 들어가면서
 - 목적
 - 평가 대상 연령
 - 평가의 특징
 - 상황
 - 장소
 - 준비물
 - 소유자 설문 및 상담
2. 평가 실행
3. 평가 점수 체계
4. 평가결과서 필수 요소
5. 소유자 설문지
6. 평가 상황표
7. 평가 결과 서술
8. 평가검사 개발자 목록

1. 들어가면서

29) 니더작센주 홈페이지

https://www.ml.niedersachsen.de/startseite/themen/tiergesundheit_tierschutz/tierschutz_allgemein/halten-von-hunden-4745.html

2002년 12월 12일부로 시행된 니더작센 주의 개사육법(Niedersächsischen Gesetzes über das Halten von Hunden, NHundG)의 § 3 Abs. 1(Nds. GVBl. 2003 p. 2)에 따르면, 위험한 개(gefährlichen Hundes)를 키우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개의 이동 및 수입 규제법(2001년 4월 12일 개정)에 따르면 위험한 개는 Bull Terrier, 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 Staffordshire Bull Terrier and Pit Bull terriers 와 그 잡종이다. 이에 더하여, 품종에 상관없이 과도한 공격성(반려견을 위협하지 않은 상황임에서 반려견이 물려고 시도를 하거나 실제로 무는 행동)을 보이는 개의 경우, 면허 취득과 비슷한 맥락에서 지역 공무원이 해당 개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동 양상을 보이는지 살피는 기질 평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질 평가는 전문 부서에서 명단을 공개하는 고도의 행동 전문 수의사들에 의해 행해진다.

기질 평가 방법은 전문위원회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이 방법에 따라 기질 평가를 수행할 수의사들이 개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가 기질 평가를 통과했다라도, 소유자가 개를 집 또는 탈출불가한 견사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한 돌봄과 감독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정히 인지해야 한다.

(1) 목적

부적절한 공격성 척도 양상을 보이는 개체(허용 불가능한 공격적 행동(반려견을 위협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반려견이 물려고 시도를 하거나 실제로 무는 행동)을 보이는 개)를 구분하는 것

공격행동이 생물학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닌 용납할 수 없는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임.

199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11b조에 의거하여 문제 있는 공격적 언어를 표현하는 개는 문제 행동으로 인해 주변환경에 잠재적 위험요소가 됨.

(2) 평가 대상 연령

15개월령 이상

(3) 평가의 특징

이 평가에서 개들은 다양한 자극, 특히 개가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공격적인 행동은 개의 자연스러운 행동 중 하나이다.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주지만, 공격적 행동만을 떼어낼 수는 없다. 공격성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촉발된다. 즉 공격적 행동을 초래하는 계기는 다양하며, 이러한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를 향해 자극을 제공하는 것은, 개가 사람 또는 다른 개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겪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평가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4) 상황

이 평가는 사회적 행동과 의사소통 행동을 검사한다. 개들은 (사람, 동종 및 이종 동물들과 같은 사회적 파트너들)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자극 및 사물로 이루어진 환경에 노출된다.

(5) 장소

독파크처럼 개가 훈련 등을 통해 친숙하게 아는 장소는 피한다.

개들은 가급적 자신의 영역(집, 정원)과 낯선 곳(공원, 야외 상황)에서 2차례에 걸쳐 평가하는 것이 좋다. 이는 특히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개의 경우 도움이 된다.

(6) 준비물

- 수컷, 암컷이 포함된 2마리 이상의 개
- 4명 이상의 사람³⁰⁾
- 유모차, 오디오플레이어(아기 울음소리 재생용), 사용된 기저귀, 풍선, 장난감차, 우산, 공, 자전거 벨, 자동차, 대걸레(밀대), 지팡이(맹인용), 술(취객용), 긴 코트, (술을 문힐) 낡은 자켓, 라이터, 비디오 카메라, 안전 장치(개물림 사고는 방지하지만 개의 얼굴 표정은 살펴볼 수 있는 입마개, 개를 통제하기 위한 이중 목줄 등)

(7) 소유자 설문 및 상담

소유자 설문 및 상담을 통해 개의 사전 병력 및 행동력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 소유자 설문 결과는 행동 관찰 결과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2. 평가 실행

이 검사는 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검사 후에 진행한다.

그 후에, 학습능력을 줄이기 위한 진정제 예비 처방을 결정하기 위해서 좌절감과 학습 테스트(첨부 “학습 행동, 좌절감과 위협” 참고)를 실행할 것이다.

그 후에, 개는 목록에 있는 평가 상황을 겪는다.

소유자가 목줄을 한 개를 이끌고, 개는 평가자들(수의사와 보조자)에게 관찰되고 촬영된다. 보조자는 검사할 상황을 준비한다. 상황들은 일상처럼 “평범”해야한다. 상황들은 이어서 진행되어야하고, 개는 각각의 검사상황에서 자극들에 노출되어야한다. 위협하는 상황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거리를 줄이면서, 행동과 소리가 증가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안전 장치들이 있어야한다(만약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안전 선 그리고 또는 입마개). 가능하다면, 개는 입마개 없이 검사받아야한다. 입마개는 개의 얼굴 표현을 평가하는 것을 방해하고 다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검사가 진행되는 전체 시간은 약 50-60분이다. 이 시간에는 개의 안정을 위한 긴 휴식 시간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개와 소유자가 각각의 새로운 상황 재연을 위해 기다려야하거나 “시작점”으로 이동하기 위한 휴식 시간이 있음에도. 검사는 개가 몇 년간 겪을 모든 관련된 상황을 정확히 되풀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바람직하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더 긴 휴식시간은 불필요하다.

개가 반응하지 않았다면, 개가 자극을 인지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야한다. 각각의 상황에서 변화된 양상들을 다뤄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연장; 강도의 변화; 방향 변화; 사람의 변화. 평가자는 전반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해야하기 때문에, 평가자는 특정 상황에서

만 상황재연에 참여해야한다 (예 - 개를 위협하는 상황).

자동리드줄은 주요한 안전 위험을 끼친다. 검사시에 프롱칼라를 착용하는 것 역시 안전을 위협하고 평가를 어렵게 한다: 1.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개를 잘 통제하는 것인지 또는 프롱칼라로 인한 통증이 개의 행동을 막는 것인지 의문점이 남는다. 2. 통증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스트레스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 개는 통제된 스트레스 유발 요인에만 노출되어야하므로, 예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 요인에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유자의 행동은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한다. 소유자가 개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중립적인 소유자”와 함께 또는 소유자 없이 다시 테스트를 받아야한다.

소유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 인터뷰에서 테스트 상황들과 배경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평가 점수 체계

(Netto, W.J. and Planta, D.J.U. (1997)이후 수정)

반응에 대한 등급:

1. 공격적인 신호 보내지 않음 (예. 개가 피하려고 하거나 공포 행동을 보임) (“행동 표현” 참고).
2. a) 청각적 신호 (으르렁 거림 그리고/ 또는 낮게 짖음/ 쉬익거리는 소리/ 깝 소리)
b) 시각적 신호 (이를 드러냄, 위협적으로 예. 으르렁거림, 짖음 등과 함께) 멈춰있거나 뒤로 후퇴하면서.
3. (상대와 떨어진 거리에서) 입질, 으르렁거림, 짖음, 이빨 보임 등을 동반하거나 그렇지 않은 채 응시하는 등 몸의 언어가 경고를 표현하는 상태. 이때 개는 한 자리에 머물고 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시도할 수 있음.
4. 3과 같으나 불완전한 접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멈춤). 개가 스스로, 혹은 목줄에 의해 멈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물거나 공격 (시도한 공격: 으르렁거림, 짖음, 이를 드러냄과 함께 빠른 속도로 접근하여 공격).
6. 5번과 같으나 얼굴 표정 또는 청각적 신호 없이.
7. 6번과 같으나 흥분 후 진정에 10분 이상 소요.

4. 평가결과서 필수 요소

평가결과서는 법적으로 적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 법적 근거 제시
- 관련 용어의 정의 (적어도 “공격적인 행동”)
- 검사 과정 제시

- 등급 “1” 이상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대한 서술
- 진단으로부터의 연역적인 평가

전문가는 주어진 자극에서 대상견의 공격적인 행동의 수와 정도가 사람에게 중대한 위험을 가할 정도인지를 평가해야한다. 전문가는 문제 행동에 대해 추천할 의무가 없다 (예를 들어 소유자와 개의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훈련 참가 등).

검사 과정은 동영상 촬영 되어야 한다 (증거로 사용).

동영상에는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어야한다.

영상이 전체 상황을 담기 위해서 평가자는 촬영을 동시에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참여자는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 특히 개와 개의 반응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적인 검사 상황을 확인하는 것(예. 상황 번호 제시)은 명확하게 진행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각각의 상황에서 관련된 정보를 놓칠 수 있으므로, 카메라는 삼각대에 설치된 채로 세워져있으면 안 된다.

5. 소유자 설문지

소유자 설문지

(각각의 반려견에 대해서 설문지 빈칸을 채워주세요.)

소유자 이름 및 주소:

반려견 정보:

품종:

이름:

나이:

성별:

마이크로칩 번호:

문신 번호:

특징 (피모색, 특이사항 외 짧은 설명):

혈통서 사본을 첨부함 (가능하다면)

이 개는 당신의 첫번째 반려견입니까?

네

아니오

입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에 이 품종과 같은 개를 키운 적이 있다.

이 품종의 장점을 많이 들었다.

이 품종의 외모를 좋아한다.

친구/지인이 이 품종의 개를 갖고 있는데 내가 그 개를 좋아했다.

불쌍해서

많이 생각해보지 않고 일시적으로 결정했다.

다른 이유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입양 당시 개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어디에서 이 개를 입양했습니까?

브리더

판매업자

개인

보호소에서

개가 나한테 달려왔다.

개를 선물로 받았다.

다른 경로

개의 동복 형제는 몇 마리였습니까?

총 수 : 수컷 수 암컷 수

모견이 새끼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봤습니까?

네 아니오

여러 마리의 강아지 중에서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면, 특별히 이 개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개가 이전에 다른 소유자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네. 몇명입니까?

이전 소유자로부터 소유자가 바뀐 이유를 아십니까?

아니오 네, 이유:

개가 주로 있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집안 쉼터 안 마당

다른 동물도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오

네

그렇다면, 품종, 이름, 나이, 성별을 적어주세요:

가족구성원, 개와 규칙적으로 접촉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적어주세요 (이름, 나이, 성별, 소유자와의 관계, 개에게 하는 일을 적어주세요):

매일 얼마나 자주 개를 데리고 산책합니까?

산책은 얼마나 길게 합니까?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개를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한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전혀 없음
- 네, 공원에서
- 네, 들판이나 풀밭에서
- 네, 항상
- 네, 그러나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만
- 네, 그러나 개가 없는 장소에서만
- 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만:

목줄을 하면 개가 잡아당깁니까?

- 아니오, 전혀
- 아주 드물게 이런 상황에서만:
- 네, 대체적으로
- 네, 개를 마주칠 때
- 자주, 이런 상황에서:

목줄을 하면 개가 다른 개나 사람에게 짖는 경향이 있습니까? 네 아니오
개가 하루에 혼자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

개가 강아지 시기에 체계적인 강아지 놀이그룹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네 아니오

만약 그렇다면, 강아지 놀이그룹에서 진행한 내용은 무엇이였습니까? (복수 표시 가능)

- 다른 강아지들과 어울려 놀기 성견과 어울려 놀기
- 사람과 놀기 조기 교육을 위한 훈련
- 환경 경험 훈련

교육을 시작할 때 개는 몇 살이었습니까?

누가 주로 교육을 담당했습니까?

개의 교육은 하루에 몇 시간 지속되었습니까?

교육에서 사용한 도구들은 무엇입니까?

- 가죽 또는 천으로 된 목걸이 초크칼라 프롱칼라 가슴줄
- 당김방지 가슴줄 전기목걸이 Halti 목줄 장난감 간식
- 기타:

개가 훈련받은 명령어는 무엇입니까?

“이리와”와 “앉아”를 시키기 위해서 몇 번 정도 반복을 해서 말합니까?

개가 명령어를 따르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까?

네 아니오

개와 함께 교육을 받으려 갑니까? 네 아니오

개가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니오 네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교육을 이수했습니까? 네 아니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개를 문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네

사람을 문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네, 가족 구성원

네, 낯선 사람

만약 그렇다면, 그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해주세요:

개가 질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네, 다음과 같은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개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친 밀 하게	침 착 하게	짖음	공 격 적임	자 신 감 있음	뛰 어 오름	겁 먹 음	SQA JOU
낯선 남자를 만났을 때								
낯선 여자를 만났을 때								
아이들을 만났을 때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스케이트를 타는 사 람, 휠체어를 탄 사람을 만 났을 때								
차 내에서								
시끄러운 소음 (예를들면 새 해 전날)								
대중 교통 수단 안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세요)

개가 달려나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없습니다. 네, 개가 사냥중이었습니다.

네, 개가 발정기에 있는 암컷입니다. 네, 기타 이유:

개가 사냥 본능이 강합니까?

아니오

네, 다음과 같은 동물이나 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개를 다시 사육하실 계획입니까?

네

아니오

대답의 이유를 각각 적어주세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표시해 주세요:

명령어에 제대로 반응했을 경우 보상으로 효과적인 방법:

간식주기

같이 놀기

쓰다듬기

장난감 주기

칭찬하기

뼈간식 주기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기

함께 산책하기

더 이상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음. 명령어를 잘 알고 있음

과거 잘못에 대해 효과적인 처벌 방법:

개에게 소리치기

복종할 때까지 때리거나 발로 차기

목털을 잡고 흔들기

무시하기, 필요시 감금하기

밥을 적게 주기

걸어나가기 또는 장난감 뺏기

엄격하게 복종하게 하기

개의 등을 돌리기.

개를 바닥에 누르기

목줄이나 귀를 잡고 꾸짖기

말 없이 스프레이 뿌리기 또는 멀리서 물건을 던지기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처벌하기

손이 아닌 신문지 같은 것으로 때리기

제안: 개의 모습 (표현형 행동) 평가 to judge dog pictures (expressive behavior)

날짜

소유자 서명

알맞은 상자에 표시해주세요

6. 평가 상황 목록

(Netto, W.J. and Planta, D.J.U. (1997), Wilson, E. and Sundgren, E. (1997)에 따라 수정)

개를 소유하기 위한 Lower Saxony법에 따른 개의 기질 평가

- 번호순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나 순서를 제시하는 것은 아님

		등급	설명 (행동에 대한 서술)
1	소유자가 게임을 시작하려는 시각적 신호를 주면서 개와 함께 놀기를 시도함		
2	한 사람이 개의 앞에서 개를 응시하면서 다가감		
3	개가 기둥(예를들면 가게 앞)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50cm 떨어진 곳에서 걸어서 지나감		
4	긴 검은 코트와 모자를 착용한 사람이 개를 지나가면서 코트 옷깃이 개를 스침		
5	지팡이를 든 사람이 절뚝거리면서 개와 소유자를 지나감		
6	한 사람이 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팔을 뻗고 말을 함 (0.5m + 목줄 거리유지)		
7	개와 목줄을 잡은 사람이 테스트 영역으로 들어갈 때 한 사람이 바닥에 누워있다가 (또는 쭈그려 앉아있음) 갑자기 일어남 (이 때 거리는 2m)		
8	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개를 지나쳐감. 개와 사람의 거리는 약 1m		
9	조깅하는 사람이 양쪽 방향에서 걸어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개 앞에서 뒹		
10	막대기를 든 사람이 땅을 짚으면서 걸음 (2m거리)		
11	술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지나감(2m 거리)		
12	한 사람이 개에게 말을 함		
13	한 사람이 화가 나서 개에게 소리침		
14	한 사람이 어린 아이처럼 울음		

가능하다면, 더 짧은 거리에서 그 상황을 반복해봐야 함.

		등급	설명 (행동에 대한 서술)
15	한 사람이 개를 지나가면서 개에게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크게 칠 때 소유자는 개를 어루만지면서 친절한 목소리로 말을 걸음		
16	소유자가 개의 목이나 등에 손을 올리고 부여 잡음 (개가 편안한 반응을 보인다면)		
17			

	한 사람이 개를 지나가면서 개의 몸을 스윽 스쳐 지나가듯 만짐		
18	한 사람이 개 앞에서 놀리는 움직임 보임		
19	여러 사람 (네 명)이 개에게 다가감 (고의적이지 않음) 그리고 개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 (엘리베이터 같은 상황)		
20	한 낮은 사람이 개의 등을 스윽 스치듯이 어루만지려 함 (말을 하면서)		
21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개 옆에서 말을 하고 가끔씩 살짝 개를 만짐 (가능한 상황인 경우에만)		

		등급	설명 (행동에 대한 서술)
22	짖고 있는 개가 개와 소유자 앞에 서있음 (2m 거리)		
23	평가 대상견이 처음 보는 각각 암컷, 수컷이며 크기, 색이 다른 두 마리의 개가 평가견을 지나감 (2m 거리)		
24	그 이후 곧바로 소유자가 비틀거리다가 개를 만짐		
25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동성의 개와 마주침		
26	개가 소유자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동성의 개를 마주함		

** 개가 소유자에게 공격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안전에 주의해야함!

		등급	설명 (행동에 대한 서술)
27	여러 명의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개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		
28	목줄을 잡은 사람과 개가 여러 색깔을 풍선다발을 지나감		
29	개 앞에서 우산을 펼침 (위협적인 의도보다는 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정도로)		
30	공이 개를 향해 굴러감		
31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유모차가 지나감		
32	자전거가 개를 지나가면서 벨을 울림 (2m 거리)		

		등급	설명 (행동에 대한 서술)
33	한 사람이 개에게 다가와 위협하고 개에게 소리를 칩		
34	한 사람이 막대기로 개를 위협 (서있는 자세에서 - 쫓고 그리고 앉지 말 것!)		
35	한 사람이 불 붙은 라이터를 가지고 개에 접근		
36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이 소음을 내면서 청소함		

복종 개를 잡고 있는 사람의 통제가 보여야 함. 개는 신호에 따라야 하고, &끝&이라는 신호에 끝난다.		
--	--	--

7. 평가 결과 서술

8. 평가 개발자 목록

Dr. Johan Altmann	Amtstierarzt; Vorsitzender des Niedersächsischen Tierschutzbeirates Veterinary officer; Chairman of the Lower Saxony Animal Welfare Advisory Council
Rudolf Dettmar	Vertreter des VDH Niedersachsen, Harsum Bullterrier-Züchter Representative of the VDH Niedersachsen, Harsum Bullterrier-breeder
Dr. Dorit Feddersen-Petersen	Ethologin, Fachtierärztin für Verhaltenskunde und Tierschutzkunde; Institut für Haustierkunde, Christian-Albrechts-Universität zu Kiel Ethologist, veterinary specialist for behavioral science and animal welfare studies; Institute for Pet Science, Christian-Albrechts-University Kiel
Dr. Barbara Gottstein	Tierärztin; Niedersächsisches 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Veterinarian; Lower Saxony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
Prof. Dr. Hansjoachim Hackbarth	Leiter des Tierschutzzentrums der Tierärztlichen Hochschule Hannover Head of the Animal Welfare Center of the University of Veterinary Medicine Hannover
Ortlieb Lothary	Bullterrier-Züchter Bull Terrier Breeders Gesellschaft der Bullterrier-Freunde e. V., Maxhütte, staatl. geprüfter Sachverständiger

	Society of Bull Terrier Friends e. V., Maxhütte, state-certified expert
Dr. Sabine Petermann	Tierärztin, Leiterin des Tierschutzdienstes Niedersachsen Veterinarian, Head of the Animal Welfare Service Niedersachsen
Dr. Esther Schalke	Tierärztin: Tierschutzzentrum der Tierärztlichen Hochschule Hannover Veterinarian: Animal welfare center of the University of Veterinary Medicine Hannover
Dr. Barbara Schöning	Fachtierärztin für Verhaltenskunde und Tierschutz, Hamburg Veterinarian for Behavioral and Animal Welfare, Hamburg

나. 니더작센 주의 정형적 기질평가 시범시행

○ 시범 시행 목적

- 개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 평가의 한 모델로 니더작센 주의 정형적 기질평가 방법을 시범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입가능성을 살피고 보완점을 도출함.

○ 대상

- 최근 3개월 내에 가족, 지인, 낯선 사람을 문 적이 있는 개 중, 현행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이 완료된 개 20마래와 그 반려인

○ 시행 내용

- 위험 평가 도구는 독일 니더작센 주의 기질평가(Wesenstest)를 기초로 평가안을 설계함.
- 기초설문지는 뮌헨 루드비히막시밀리안대학교 수의대 동물복지연구소의 설문지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UPenn) 수의대 동물병원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마련함.
- 기본적인 지시어 수행 여부, 간식 급여 중지에 대한 반응, 그 외 옥외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의 재연에 대한 반응, 야외(한양대 정문 근처, 성동구 서울숲더샵 부근 길가 등)에서의 여러 자극에 대한 반응 등을 관찰하여 행동을 평가함.

30) 평가자 1인에 더해 4명의 보조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임.

- 건강 검진에는 소유자 문진, 엑스레이 검사 (흉부 및 복부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어깨 관절, 앞다리 굽이 관절, 앞 발목 관절, 무릎 관절, 뒷 발목 관절, 대퇴 관절 엑스레이 추가), 혈액 검사 (일반 혈액 검사, 혈청화학검사 (Glucose, Alanine aminotransferase(ALT), Alkaline phosphatase(ALP), Blood Urea Nitrogen(BUN), Creatinine, Total Protein), 갑상선 호르몬 검사 (Thyroxine, T4), 심장사상충 항원 검사)
- 동물 병원 연속 방문으로 인한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기 위해 1차 방문으로부터 최소 4일 이후에 2차 방문 진행
- 2차 방문시에는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문진, 개발된 위험 평가 척도를 활용하여 실제 평가를 실시
- 평가 과정은 재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모두 녹화됨
- 행동 평가는 바우라움 동물병원 내 야외 테라스, 대로변, 쇼핑몰 내부에서 진행되었으며 약 1시간에 걸쳐서 평가 진행.
- 평가 후 설문지, 문진, 평가를 통한 결과를 상담하고, 필요시 치료 과정을 권고함
- 2차 방문 완료 후, 소유자가 자신의 반려견의 행동이 실제 집 근처를 산책할 때와 행동 평가시에 차이가 크다고 진술한 2마리를 선정하여 집근처로 방문하여 산책하는 것을 관찰함.

○ 추진 과정 및 일정

- ① 참여 신청자 모집(2019년 11월 5일까지)
- ② 선정건 통보 (2019년 11월 6일)
- ③ 시범 시행 진행 (2019년 11월 8일 ~ 12월 16일)
 - [1차 내방] 반려인 : 연구 참여 동의서, 설문지 작성 및 상담 (약 60분 소요)
 - 반려견 : 건강검진
 - [2차 내방] 행동평가 진행 (90~120분 소요)
 - ※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차] 가정방문 검사 추가 시행 (약 60분 소요)
- ④ 결과 분석 (2019년 12월)
- ⑤ 도출 결과 반영 (2019년 12월)

○ 시범시행 결과

- 자세한 시범시행 결과는 '제6장 부록 - 제3절 시범시행 세부 결과'에 수록함.

○ 시범시행 결과에 대한 검토

A. 일반적인 검토 결과

- 총 20마리의 참여견 가운데 가장 많이 참여한 견종이 포메라니언(5마리)이고, 체중 5kg 미만이 7마리, 5kg 이상 10kg 미만이 8마리에 달하는 등 참여견은 대체로 도시내 중·소형견의 비율이 컸으며, 이는 가정견으로 대형견보다 중·소형견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라의 문화³¹⁾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 대부분 소유자 대상 공격성을 보여, 반려인 대상으로 개의 행동과 욕구에 대한 교육과 기본적인 훈련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수 있음이 드러남.

B. 도입가능성에 대한 판단

- 낮선 장소에서의 일원화된 위험 평가는 개의 평소 행동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실제로 시범시행 참여견 20마리 중 14마리의 소유자가 개의 행동이 평소와 차이가 있다고 밝힘.(5마리는 평소보다 덜 예민하게 반응, 8마리는 평소보다 더 과민하게 반응, 1마리는 평가장소 내 테라스에서는 평소보다 안전하고, 건물 주변 야외에서는 평소보다 더 과민하다고 답함.) 현장조사 인터뷰에서 동물행동전문가 사라 히스는 '낮선 장소에서의 일원화된 평가는 그 시점에서, 그 상황에서 사람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는지만 알려줄 뿐, 정작 개의 복지와 감정 상태에 대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상황에서 그 개를 만날 다른 이들이 겪을 위험에 대해서는 정보를 줄 수 없다'며 평소 행동에 기반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상황을 재연하는 방식의 위험 평가는 장소를 세팅하고, 배역을 위해 인력을 준비하여 대기시켜 놓아야 하며, 이 인력이 개의 행동 및 재연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갖고 평가에 임할 수 있어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 독일 니더작센 주의 경우 암수 포함 2마리 이상의 개와 4명 이상의 사람을 평가를 위한 상황재연에 동원하도록 하고 있어, 상황 재연 방식은 원활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 포함 5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향후 국내에서 실제 평가제도 운용 시, 보조 평가자를 다수 요하는 상황 재연 방식은 평가비 단가 상승 및 평가 보조자 섭외의 어려움 등의 난점을 초래하게 될 수 있으므로 정형적 위험 평가 모델은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C. 보완점에 대한 판단

- 니더작센주 이후 정립된 바이에른주의 기질평가에서는 평가대상견의 집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항목이 추가된 것을 고려할 때, 정형적이고 일괄적인 평가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평소 생활공간(집, 산책로 등)에서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반려인 질문지에서, 개를 자극한 요인을 반려인이 예상하거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공격 행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항, 중성화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그 이유를 묻는 문항 등 니더작센주의 질문지에는 빠져있으나 다른 행동 평가 기관에서는 중요하게 체크하는 요소들을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임.

31)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8), '2018 반려동물보고서 -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양육실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이 키우는 품종은 몰티스(23.9%), 푸들(16.9%), 시추(10.3), 포메라이안(9.3%), 치와와(8.4%), 믹스견(8.4%) 순으로 나타나, 중·소형견 선호 문화가 드러남.

(2) 영국

1) 위험 평가의 배경

- 영국은 1991년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을 도입. 이 법의 1장(Section 1)은 맹견법(Breed Specific Legislation, BSL)에 해당하며, 핏불테리어, 일본 도사견, 도고 아르헨티노, 필라 브라질리에로의 4개 품종견에 대한 소유를 금지하는데, 해당 품종으로 의심되면 판별 완료시까지 격리보호되며, 해당 품종으로 판별 시 안락사함.
- DDA 3장(Section 3)은 모든 개에 적용되며, ‘위험하게 통제 밖에 난(Dangerously out of control)’ 개가 누군가 부상입히는 것 뿐 아니라,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³²⁾만으로도 반려인이 기소될 수 있게 함. 반려인의 통제 미흡으로 누군가 사망했을 경우 최고 징역 14년, 부상입었을 경우 최고 징역 5년, 안내견 등의 사역견이 공격당했을 경우 최고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음.
- 형법인 DDA에 의거한 기소가 발생하거나, 시민들 간의 반려견 관련 갈등으로 인해 민사재판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에게 개의 향후 문제 행동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의뢰하는 경우가 생기며, 이때 공격적 행동의 재발 가능성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짐.
- 이러한 시도, 즉 소유자가 있는 개의 문제 행동을 평가하는 것은 보호소에 입소하는 유기견을 평가하는 것과는 달라서, 소유자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 역시 소유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음.
- 영국에는 독일과 같이 행정 당국에서 제시하는 위험 평가의 기준은 없으며, 여러 전문가들이 각각의 사례에 맞추어(case by case) 평가를 진행함.
- 영국을 비롯한 영미권 국가에는 비교적 많은 동물행동 관련 전문인력이 활동하고 있지만, 모두가 개의 행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과학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접근을 하는 적합한 전문가인 것은 아님. 영국 역시 행동치료(behaviour therapy) 분야에 대한 규제가 아직 신뢰받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단계임.

2) 위험 평가의 방법

- 동물행동치료의 권위자 사라 히스(Sarah Heath)³³⁾가 운영하는 영국의 행동전문동물병원인 Behavioural Referrals의 평가 방법에 따르면, 공격성 등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증상 자체보다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감정적 원인에 주목하여 접근.
- 내원하는 동기를 살펴보면, 대다수는 개의 문제 행동으로 당황하거나, 공공장소에 동반하기 어렵다고 느낀 주인 가족이 (개물림 사고를 포함한 더 큰 문제의 예방 및 반려생

32) ① 영국 공무원 매뉴얼 ‘무책임한 반려인 대응책 Dealing with irresponsible dog ownership’에 제시된 사례 : 개가 집 앞을 지나가는 행인을 위협하고, 그것을 이웃이 신고한 일

② 영국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사례 : 뒷마당에 묶여있던 개가 줄이 풀린 틈을 타 근처 집으로 들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주인이 개를 보자마자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야 했던 일

33) 사라 히스(Sarah Heath) : 유럽동물복지행동의학 전문의, Behavioural Referrals 대표, 유럽행동의학자격인증위원회(Behavioral Medicine Credentialing Committee) 위원장, 前 유럽동물복지행동의학회(European College of Animal Prevention and Behavioral Medicine) 총장

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원을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수의사가 권해서 오는 경우나 법적 절차에서 개에 대한 평가를 제출하기 위해 내원하는 경우도 있음.

- 개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에 초점을 맞추되 신체적 건강과 인지 상태 (cognitive state)를 함께 평가하는 진단을 함.
- 자극을 유발하는 방식의 테스트를 하지는 않음
- 평가 대상 : 가족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내원하는 경우, 혹은 법원에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평가 인력 : 행동전문 수의사, 훈련사, 기타 행동 전문가 등³⁴⁾
- 진행 과정
 - (방문 상담) 1차로 소유자의 집에 방문해서 인터뷰 진행. 가능한 많은 가족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 이를 통해 개의 의학적, 행동학적 히스토리를 얻고, 손님을 맞을 때, 방에 들어갈 때 등과 같은 상황에서 개를 관찰하면서 그 개의 감정 상태를 진단.
 - (소요 시간) 1차 진료의 경우 보통 2.5~3.5 시간 소요
 - (도구 및 기록)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은 소유자에게 사전에 비디오로 촬영하길 요구함. 또한 진료 중에도 비디오를 녹화함.
 - (준비물) 검사자가 검사자인 동시에 ‘낯선 이’의 역할을 담당하며, 경우에 따라 자전거, 오토바이, 유모차 등을 동원하여 개의 반응을 살핌.
 - (공간)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실내와 야외 공간 모두에서 평가를 실시

3) 위험 평가의 활용

- 예후 및 치료
 - 치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유자 교육, 두 번째는 환경을 알맞게 변화시키는 것, 그 다음이 개에 대한 훈련임.
 - (예후 판단) 예후를 평가할 때는 개 자체와 환경이라는 두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
 - (약물 치료) 내원하는 환건의 65% 정도가 항진신성 약물 치료를 받는데, 이는 환건의 감정적인 상태가 정상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약물 반응이 필요하기 때문.

○ 재판 참고자료

- 재판에서 평가를 요청한 경우,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제출하며, 반려인이 재판을 위해 평가, 문서, 증언을 요청했을 경우 각각의 전문 서비스마다 전문가가 반려인에게 비용을 청구함. 기본적인 평가 및 조언 비용은 시간당 130.5파운드이며, 문서나 증언의 경우 각각 추가금이 청구됨.

34) 영국에는 학부에서 다른 전공을 하고, 수의대 대학원에서 ‘동물행동’ 분야를 전공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비수의사, 비훈련사 행동전문가도 있음.

(3) 미국

1) 위험 평가의 배경

- 미국의 맹견법은 특정 품종견이나 믹스견에 대한 소유를 규제,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맹견 소유자에게 중성화수술, 공공장소에서의 입마개, 특별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임.
- ‘맹견’으로 지정되는 품종에는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폴드셔테리어, 스타폴드셔블테리어 등 대개 핏불류(핏불처럼 생긴 개)가 포함되며, 로트와일러, 도베르만핀셔, 불마스티프, 마스티프, 아키타, 저먼셰퍼드 등도 종종 포함됨.
- 1970년대에 특히 핏불에 의한 물림 사고가 더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입안에 나서게 되었고, 보스턴, 덴버, 캔자스시티, 미주리주,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등에 이런 법이 생겨남.
- 하나의 지표를 이용한 일괄적인 위험 평가는 진행하지 않고, 포괄적인 행동 진료만 내에서 함께 평가하는 경향.

2) 위험 평가의 방법

- 동물병원(UC Davis, 오하이오주립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의 수의대 부속 동물병원 반려동물행동진료과)의 경우 공격성만을 평가하기보다 포괄적인 행동 진료를 진행
- (진단 방법) 진단 방법은 질문지 작성, 소유자 상담, 환자 관찰 등임.
- (평가 인력) 수의사와 테크니션(훈련사)이 파트너쉽을 이루어 진행함.
- 보호소(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시 보호소 Columbus HSUS)의 경우 입소 시 기질평가를 시행하여 공격성이 확인된 개의 경우 입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표준화된 검사도구인 SAFER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음.
 - 입소한 모든 개에게 2회(입소 후 2일~10일 이내, 이로부터 1~2주 후) 실시
 - 1회에 약 15~2-분 정도 소요
 - 2명의 평가자에 의해 진행됨

3) 위험 평가의 활용

- 법원에서 개에 대한 심리 또는 행정 청문회가 진행될 때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가 왜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또는 포악한 개로 신고받으면 안 되는지 주장하는 것의 일환으로 동물행동전문가의 위험 평가 결과 제출하거나 동물행동전문가가 증언 참여.
- 동물병원에서 개의 공격성이 진단될 경우, 진단에 따른 처치는 공격적 행동의 횟수, 심각성, 개의 히스토리, 생활 환경, 소유자 협조도 등에 따라 약물치료, 환경 개선, 교육 등의 조치가 내려짐.
- 보호소에서의 공격성 테스트 결과, 공격성이 확인된 개의 경우 입소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고, 입소했는데 보호소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락사되기도 함.

- 보호소에서 공격성 테스트 결과 관리 가능한 수준의 공격성으로 평가되는 경우,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소유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입양시킴.

제3절 위험 평가 제도 제안

1. 개요

(1) 주요 개념

- 위험 평가
 -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개체의 행동과 복지를 조사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하고자 하는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 위험 평가 제도는 문제행동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리대상건을 선정하고, 전문성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평가자를 선정하며, 평가대상건의 행동 및 사육환경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위험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반려견 안전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전문가(위험평가전문위원회)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완 및 관리되어야 함.
- 관리대상건
 -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어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개
- 평가대상건
 -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위험 평가 및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개
- 평가자
 - 위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신청하여, 위험평가전문위원회로부터 심사받고, 제도를 운영하는 부처(예-광역시자체)에서 인증받은 반려동물행동전문가
- 반려동물행동전문가
 - 동물행동 전문 수의사, 충분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훈련사 등 반려동물의 행동 및 행동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안전관리 강화 조치
 -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외출 시 입마개 착용' 혹은 '맹견에 준한 관리' 등 소유자의 안전 관리 강화를 의무화하는 조치
- 위험평가전문위원회

- 반려동물행동전문가 중 특히 위험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 3~5인으로 구성되어, 정기 회의를 통해 위험 평가자 승인 및 재승인 심사, 재평가 결과보고서 심사 및 승인, 평가자 문의에 대한 자문 제공, 위험 평가 제도 보완, 최신 전문자료 회람 및 주요자료 선정을 통한 평가자 교육 콘텐츠 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

(2) 제도의 흐름

○ 위험 평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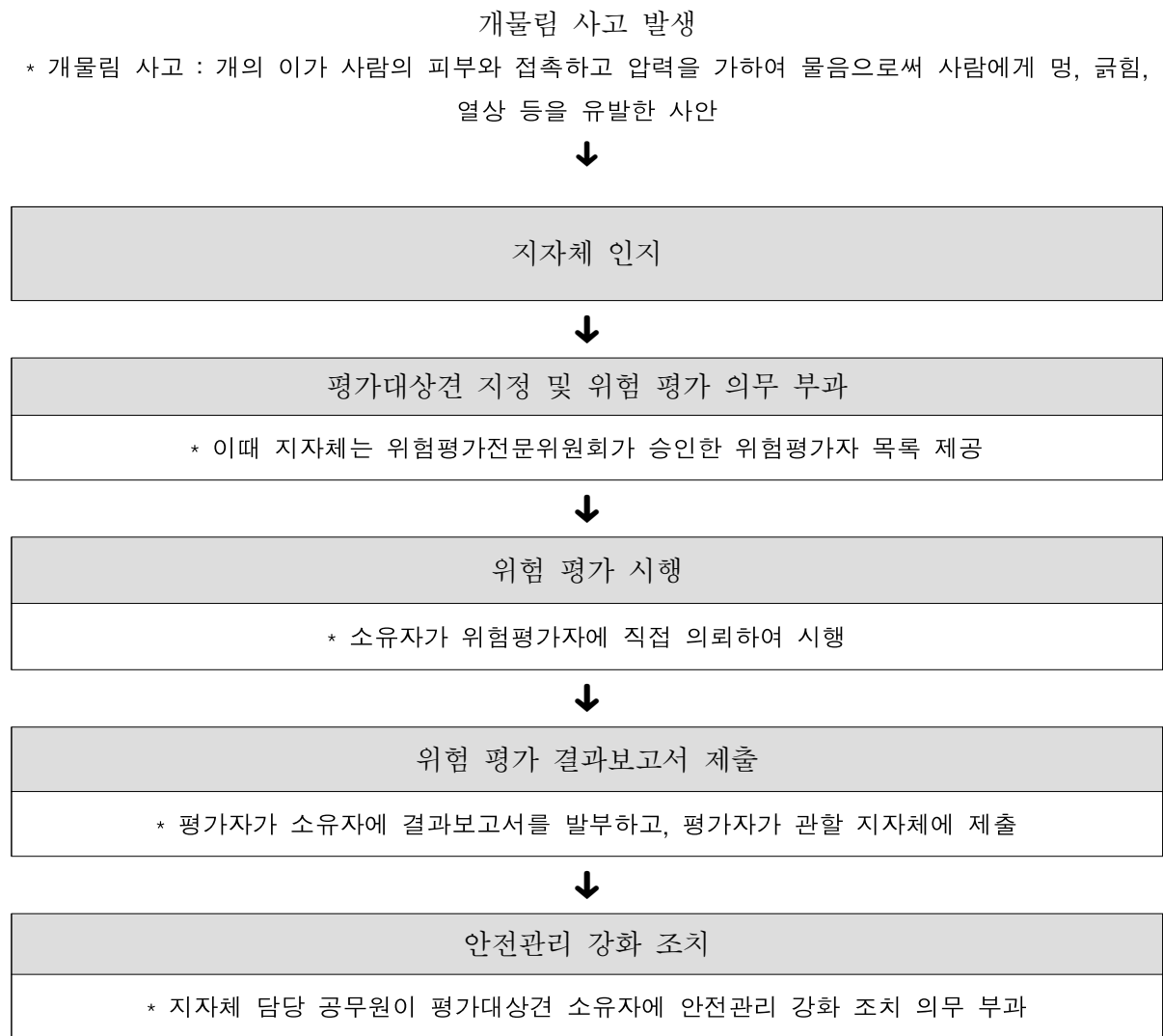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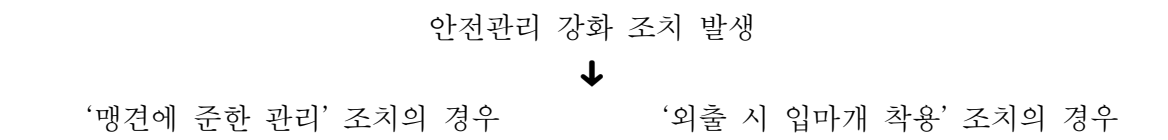


그림 2-4 위험 평가 절차 모식도

○ 안전관리 강화 조치 변경 및 해소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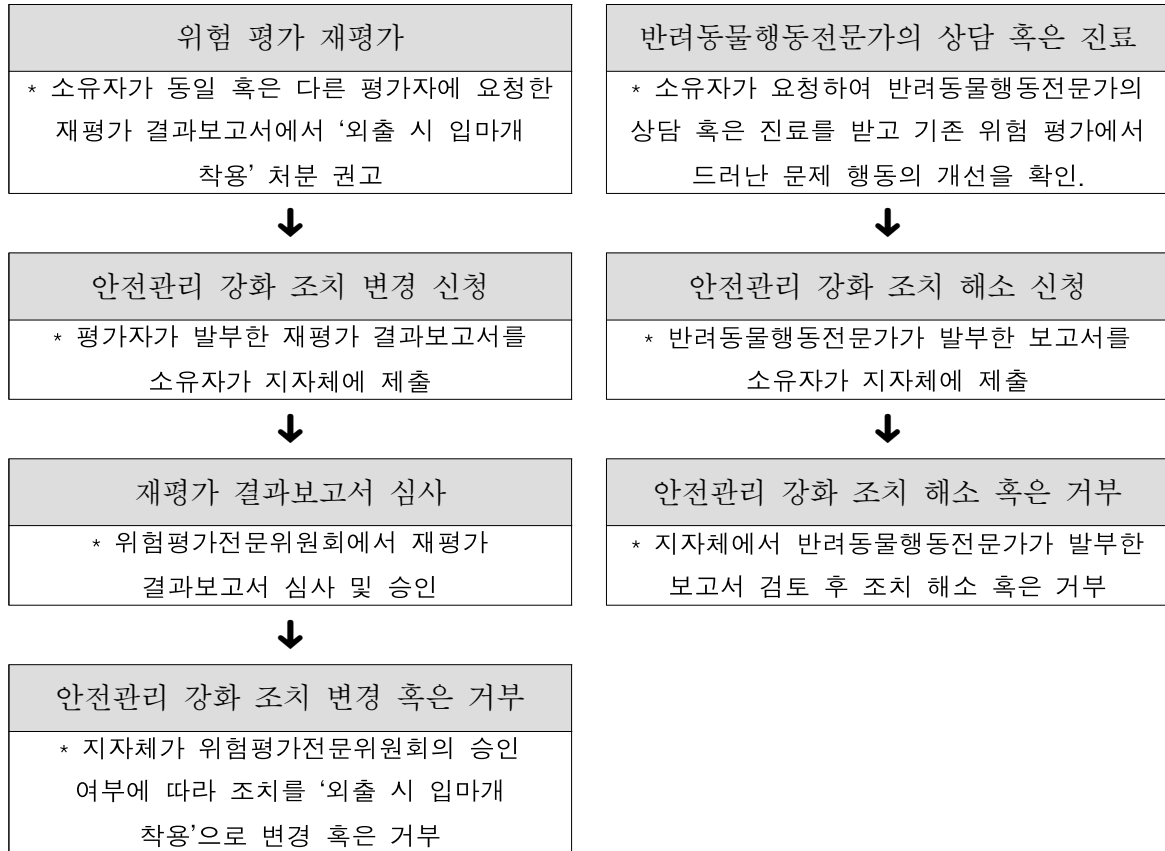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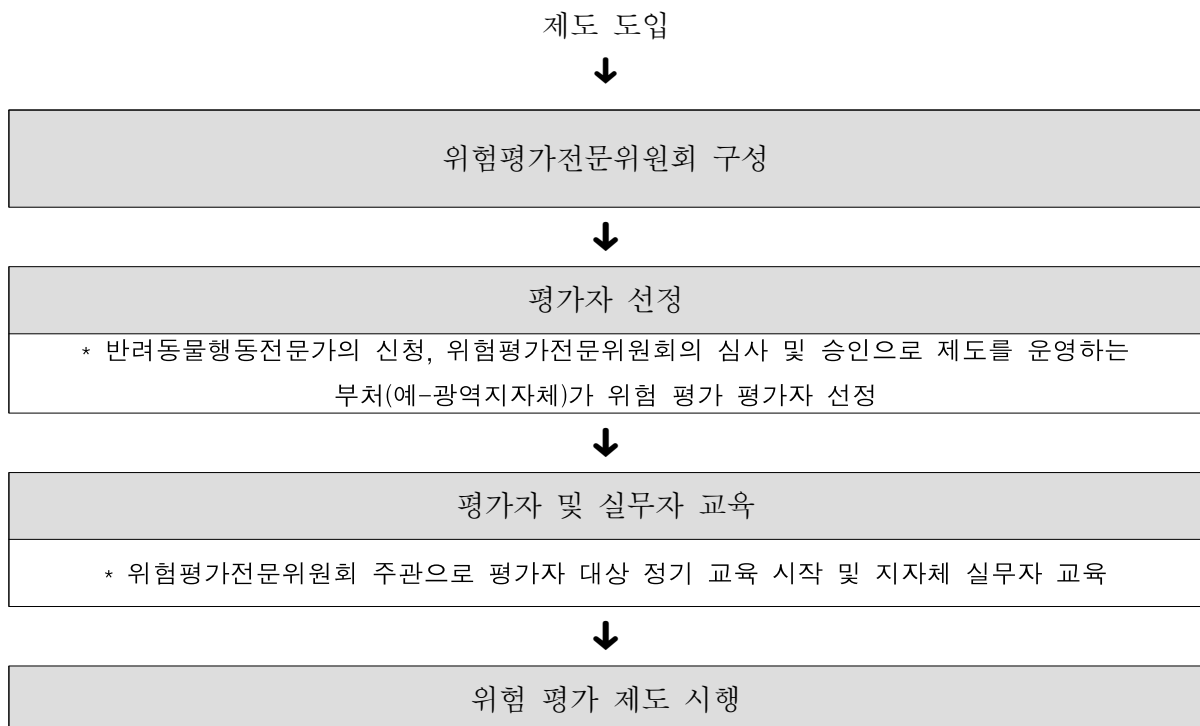


그림 2-5 안전관리 강화 조치 변경 및 해소 절차 모식도

○ 제도 운영 절차



* 평가대상건 발생 시 위험 평가 시행 및 결과보고서에 따른 조치 부과



제도 시행 평가를 통한 보완 및 데이터 수집

그림 2-6 제도 운영 절차 모식도

(3) 제도의 의의

○ 제도의 특성

- 위험 평가를 하고자하는 평가자가 제출한 평가계획서를 심사하여 평가자 선정
-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식을 바탕으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지닌 평가자를 선정
- 위험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통해 공공안전을 지키고, 반려견과 소유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
- 위험 평가 과정에 대한 기록물(설문지, 동영상 파일 등)은 평가자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며,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파기함.
- 위험 평가 자격 인증(및 재인증)과 평가수준 관리(평가자 보수교육)를 위한 위험평가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 운영 전반에 자문 제공

○ 제도의 역할

-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소유자 및 반려견이 따라야 할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위협 최소화
- 정부는 위험 평가 결과를 개물림 사고 및 반려견 안전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
- 사법부는 위험 평가 결과를 개물림 사고와 관련된 재판의 판단 근거로 활용
- 소유자는 위험 평가 결과를 반려견의 문제 행동 교정 및 개선을 위해 활용

2. 위험 평가 대상

(1) 관리대상건 및 평가대상건의 개념

- 관리대상건의 개념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어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개를 의미함.
- 평가대상건은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어 위험 평가 및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개를 의미하며, 관리대상건 2단계 이상으로 지정된 개들이 이에 해당함.

(2) 관리대상건의 구분

- 관리대상견의 구분 기준은 개물림 사고 대응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개의 행동, 사람의 피해, 문제성, 이후 어떤 절차로 유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이 1~3단계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개’를 개념화하고자 함.
- 관리대상견 1단계는 도발이 없었는데도, 개가 으르렁거림, 이를 드러냄, 등털 세움 등 공격적 행동을 보이면서 개 몸길이의 5배 이내의 거리로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달려들었으나 물지 않았거나, 개의 이와 사람의 피부가 접촉했으나 압력이 피부손상 등 부상을 유발할 정도로 세지 않았던 사안으로 인해 사람의 공포와 방어적 행동을 유발한 상황에 해당하며, 안전조치 강화, 교육 및 훈련 등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봄.
- 관리대상견 2단계는 개의 이와 사람의 피부가 접촉하였고, 압력을 가하여 물음으로써 사람에게 멍, 긁힘 등 경미한 피부손상, 열상, 출혈 등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며, 안전조치 강화, 교육, 및 훈련 등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소유자에게 위험 평가 의무를 부과하게 됨.
- 관리대상견 3단계는 개의 이와 사람의 피부가 접촉하였고, 압력을 가하여 물음으로써 사람에게 골절, 수혈이 필요한 과다출혈, 신체기능이나 감각의 영구적 손상, 신체 일부 절단 등 심각한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며, 안전조치 강화, 교육 및 훈련 등 개입이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개의 안락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소유자에게 위험 평가 의무를 부과하게 됨.

단계	개의 행동	사람의 피해	문제성
1 단계	도발이 없었는데도, 개가 으르렁거림, 이를 드러냄, 등털 세움 등 공격적 행동을 보이면서 개 몸길이의 5배 이내의 거리로 사람에게 접근	공포와 방어적 행동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림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공공안전의 위협과 시민의 불편 발생 - 공격적 행동이 강화되면 무는 행동으로 발전 가능 - 안전조치 강화, 교육 및 훈련 등 개입이 필요한 상황
	물려고 달려드나 물지는 않음		
	부상을 입히지 않은 입질 (개의 이와 사람의 피부가 접촉했으나 압력이 피부손상 등 부상을 유발할 정도로 세지 않음)		
2 단계	개의 이와 사람의 피부가 접촉하였고, 압력을 가하여 물음	멍, 긁힘 발생(경미한 피부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물림 사고로 인한 공공안전의 위협과 시민의 직접적 피해 발생 - 안전조치 강화, 교육 및 훈련 등 개입이 필요한
		열상 발생, 출혈	
		다발성 열상 발생	

3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절, 수혈이 필요한 과다출혈, 신체기능이나 감각의 영구적 손상, 신체 일부 절단 등 심각한 상해 발생 - 사망 초래 	<p>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물림 사고로 인한 공공안전의 심각한 위협과 시민의 중대한 피해 발생 - 안전조치 강화, 교육 및 훈련 등 개입이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개의 안락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
<p>○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빅토리아주]의 ‘위협적인 개(Menacing Dog)’ : 사람에게 돌진하거나, 사람을 쫓아가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심각하지 않은 부상을 초래하여 의회에 의해 ‘위협적인 개’로 등록된 개. ‘돌진’이라 함은 <u>사람의 반경 3미터 이내로 위협적으로 접근한 것을 의미하며, 으르렁거리거나(growl),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거나(snarl), 등털(hackles)을 세우는 것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을 포함함.</u>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Potentially dangerous dogs)’ : <u>도발이 없었는데 3년 내에 2회 이상 집 밖에서 다른 사람이 상해를 막기 위해 방어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 개, 도발이 없었는데 상해를 입힐 정도로 사람을 문 개, 가축을 물어서 죽이거나 상해를 입게 한 개</u> <p>○ 설정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발이 없었는데도’라는 조건과 사람의 ‘방어적 행동 유발’이라는 조건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정의 참고 - ‘으르렁거림, 이를 드러냄, 등털 세움 등 공격적 행동’ 조건은 호주 빅토리아주의 ‘위협적인 개’ 정의 참고 - ‘개 몸길이의 5배 이내의 거리’는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지정하는 ‘3미터’가 호주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견종³⁵⁾인 래브라도 리트리버의 평균 몸길이 57~62cm³⁶⁾의 중간값(57.5cm)의 약 5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착안함. 기준 거리를 유동적으로 정한 것은 우리사회가 서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형견 선호 비율이 높아 위협 거리 편차가 클 수 있기 때문임. 			

표 2-5 관리대상견 구분 기준

3. 위험 평가 전후 절차

35) Comparethemarket에 따르면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견종 1~10위는 래브라도리트리버, 스타폴저볼테리어, 프렌치불독, 저먼셰퍼드, 보더콜리, 골든리트리버, 카발리에킹찰스스패니얼, 아메리칸스타폴저볼테리어, 로트와일러, 미니어처슈나우저 순이었음.

출처: <https://www.comparethemarket.com.au/dog-breeds-aussies-love/>

36) 영국의 반려동물보험업체 Pet Care

출처: <https://www.petcare.com.au/dog-breed/labrador/>

(1) 평가대상견 발생 (위험 평가 의무 부과)

- 관리대상견 2단계 이상으로 지정되어 소유자에게 위험 평가 의무가 부과된 평가대상견 발생
- 평가대상견 소유자에게는 다음의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위험 평가 자격을 - 제도를 운영하는 부처(예-광역시자체)에서 승인한 평가자 목록 제공
○ 위험 평가 실시(위험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예- 2개월 이내)
○ 기한 도과 및 미실 시 불이익 (과태료 등)

- 위험 평가가 정해진 기한(예-2개월)에서 지연되는 경우, 위험 평가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른 정식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함.

(2) 위험 평가 시행 및 보고

- 관리대상견 2단계 이상으로 지정되어 평가대상견이 된 개의 소유자가 평가자에게 직접 위험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
- 건강검진 과정을 통해 문제 행동이 질환성 공격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치료가 우선시되는 경우, ‘위험 평가 보류군’으로 분류하여 질환에 대한 치료를 선행하도록 하고 건강검진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위험 평가 실시
- 소유자 문진과 행동관찰, 생활공간 방문 등 평가자가 평가계획서로 제출하여 위험평가전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방법을 통해 개의 행동 및 성향, 사육환경, 반려인의 컨트롤 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림
- 소유자는 평가자에게 개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 안내 받음.
- 평가자는 위험 평가 결과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소유자에게 발부함.

(3) 위험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조치

-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결과보고서 상에 권고된 후속 조치를 검토하여 소유자에게 안전관리 강화 조치 의무를 부과함.

단계	개의 행동	사람의 피해	문제성	안전관리 강화 조치	
				개의 소유자	개
1 단계	도발이 없었는데도, 개가 으르렁거림, 이를 드러냄, 등털 세움 등 공격적 행동을 보	공포와 방어적 행동 유발	-(물림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공공안전의 위협과 시민의 불편	(사안 인지 시) - (위험평가 의무는 부과하지 않음) -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 부과	- 외출 시 입마개 착용

	<p>이면서 개 몸길이의 5배 이내의 거리로 사람에게 접근 물려고 달려드나 물지는 않음</p> <p>부상을 입히지 않은 입질 (개의 이와 사람의 피부가 접촉했으나 압력이 피부손상 등 부상을 유발할 정도로 세지 않음)</p>		<p>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적 행동이 강화되면 무는 행동으로 발전 가능 - 안전조치 강화, 교육 및 훈련 등 개입이 필요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행동전문가 상담 권고 (반복 시) - 과태료 처분 (조치 해소 요청) - 반려동물 행동전문가의 상담 혹은 진료를 받고 개선 확인 시 입마개 의무 조치의 해소 요청 	
2 단계	<p>개의 이와 사람의 피부가 접촉하였고, 압력을 가하여 물음</p>	<p>멍, 긁힘 발생(경미한 피부손상)</p> <p>열상 발생, 출혈</p> <p>다발성 열상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물림 사고로 인한 공공안전의 위협과 시민의 직접적 피해 발생 	<p>(사안 인지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평가 의무 부과 <p>(위험 평가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맹견에 준한 관리 의무 부과 가능 - 일회적 사고로 판단되어 향후 공격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거나 잠재적 상해가능성이 낮은 경우 맹견에 준한 관리 의무에 비해 경감된 조치인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 부과 가능 <p>(조치 변경, 해소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맹견에 준한 관리 의무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출 시 입마개 착용 - 맹견에 준한 관리

				<p>위험 평가 재평가를 통해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로 변경 신청</p> <p>- 반려동물 행동전문가의 상담 혹은 진료를 받고 개선 확인 시 입마개 의무 조치의 해소 요청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시)</p> <p>- 소유자는 등록 대상동물의 관리 의무(13조, 13조의2 등) 위반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현행법 상 조치)</p>	
3 단계		<p>- 골절, 수혈이 필요한 과다출혈, 신체기능이나 감각의 영구적 손상, 신체 일부 절단 등 심각한 상해 발생</p> <p>- 사망 초래</p>	<p>- 개물림 사고로 인한 공공안전의 심각한 위협과 시민의 중대한 피해 발생</p>	<p>(사안 인지 시)</p> <p>- 경찰 조사 및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시)</p> <p>- 소유자는 등록 대상동물의 관리 의무(13조, 13조의2 등) 위반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p>	<p>- 안락사 여부 결정</p> <p>- 안락사 하지 않고, 소유자 측에서 보호 가능한 경우, 위험 평가 후 2 단계에 준하는 처분 부과</p> <p>- 안락사 하</p>

				<p>입힌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케 한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현행법상 조치)</p> <p>(기소 시, 피해자 측 혹은 검사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몰수 및 안락사 여부 판단)</p> <p>- 다음에 대한 고려와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판사가 몰수 및 안락사 여부를 결정 : 개가 놀림이나 학대의 결과, 또는 누군가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확인 (위험 평가)</p> <p>- 안락사 하지 않기로 결정되고, 소유자 측에서 보호 가능하며, 소유자, 평가자 등 그 개를 다</p>	<p>지 않고, 소유자가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호 조치 및 입양 추진</p> <p>- 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외출시 입마개 착용</p>
--	--	--	--	---	---

				루는 담당자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다고 당사자 전원이 판단할 경우, 위험 평가 진행 후 2 단계에 준하는 처분 부과	
--	--	--	--	--	--

표 2-6 위험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 관리 강화 조치

(4) 위험 평가 결과에 따른 기타 조치

- 위험 평가 결과, 평가대상건의 신체적·정신적 복지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포착되고, 소유자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의 여지가 매우 희박하고, 사회에 지속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안락사를 권고할 수 있음.
 - 개물림 사고로 위험 평가에 부처지고, 평가 결과 안락사를 권고할 정도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소유자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위 표에 언급된 것처럼 피해자 혹은 검사 측의 요청에 따라 몰수 및 안락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수 있음.
 - 소유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소유자가 스스로 안락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수 있으며, 소유자가 안락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안전관리 강화 조치 중 가장 강한 조치인 ‘맹견에 준한 관리’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향후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또는 관리 미비로 인한 ‘몰수형’이 동물보호법에 신설되면, 평가대상건 자체의 문제보다 소유자의 보호 및 관리 상의 심각한 문제로 ‘맹견에 준한 관리’ 이상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몰수하여 보호하다가 재입양보내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5) 위험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

- 소유자는 평가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가짐.
 - ‘맹견에 준한 관리’ 처분을 받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재평가 결과, 위험 정도나 권고 조치에 차이가 있을 경우, 즉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처분으로도 충분하다는 재평가 결과가 나왔을 경우, 위험평가전문위원회의 심사 후 지자체가 용인할 수 있도록 함.
 -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처분을 받은 소유자가 이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 해소를 위해 반려동물행동전문가의 진료 및 상담을 통해 개선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이를 용인하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처분을 해소할 수 있음.

음.

- 소유자가 위험 평가 후 1달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며, 각각 최대 3회의 안전관리 강화 조치 변경 및 해소 요청 기회가 주어짐.

제4절 위험 평가 방법 제안

1. 위험 평가 준비

(1) 제도 운영 부처(예-광역시자체) 준비 사항

1) 위험평가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험평가전문위원회 구성

- 반려동물행동전문가 중 특히 위험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 3~5인으로 구성

- 위험평가전문위원회 운영

- 위험평가전문위원회 정기 회의를 통해 위험 평가자 승인 및 재승인 심사, 재평가 결과보고서 심사 및 승인, 평가자 문의에 대한 자문 제공 등 위험 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역할 위임
- 위험평가전문위원회 협의를 통해 신규 승인 평가자에 대한 교육 및 재승인 교육 콘텐츠 마련, 위험 평가의 전문성과 관련된 주요자료 및 최신 전문자료를 선정토록 하여 평가자에 제공함으로써 평가 및 주요자료 선정을 통한 평가자 교육 콘텐츠 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
- 위험평가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위험 평가 제도 보완 의견을 수렴 및 제출하도록 하여 향후 제도 보완 시 활용

2) 평가자 목록 제공

- 평가자 목록 제공

- 위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신청하여, 위험평가전문위원회로부터 심사받고, 제도를 운영하는 부처(예-광역시자체)로부터 인증받은 평가자들의 목록을 작성하여 지자체 및 시민에 제공

(2) 지자체 준비 사항

1) 담당 인력

○ 위험 평가 담당 인력 배치

- 제도를 숙지하고 관심대상건 지정 대상 사안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후 관심대상건을 지정하고, 평가대상건의 경우 소유자에게 위험 평가 의무를 부과하고 평가자 목록 등 적절한 안내를 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

(3) 평가자 준비 사항

1) 위험 평가 기관 인증

- 인력(평가자 자격 충족), 공간(평가 장소 확보)이 마련된 경우,
- 위험 평가 기관 인증신청서(혹은 재인증신청서), 평가계획서, 서약서를 기한 내 제출
- 위험 평가 전문위원회 심사 통과 시 인증(재인증) 완료

2) 교육 이수 및 최신정보 확인

- 위험 평가 기관 대상 교육(필수·정기) 이수
- 재인증 이후에도 교육 이수
- 전문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최신 참고자료 목록 및 내용 확인

3) 평가 준비물

○ 평가 도구

- 평가계획서 : 평가자가 인증신청 시 작성한 내용
- 평가계획에 따른 준비물 : 평가자가 필요로 하는 도구, 평가보조 인력, 공간, 환경 등을 준비
- 평가항목표(양식)

○ 각종 양식

- 기초 설문(양식) : 반려인 작성
- 행동일관성 설문(양식) : 반려인 작성
- 평가보고서(양식) : 평가자 작성

○ 기록 도구

- 영상 녹화 장치 : 캠코더 혹은 스마트폰카메라, 삼각대 등
- 기록 저장 장치 : 외장하드, USB, 웹하드 등

(4) 소유자 준비 사항

- 위험 평가 및 안전관리 강화 조치에 대한 협조
 - 위험 평가 의무가 부과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평가대상건이 위험 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조치에 대해 협조할 준비
- 위험 평가 소요 비용
 - 위험 평가 소요 비용에 대한 준비

2. 위험 평가 절차

(1) 위험 평가 의뢰 접수

- 개물림 사고의 신고 등으로 지자체에 ‘관리대상건’으로 등록된 동물의 위험 평가 의뢰 접수 (지자체로부터 혹은 반려인 직접 의뢰)

(2) 질환여부 확인

- 수의학적 건강검진 결과 질환성 공격성으로 확인되고 치료가 우선시되는 경우, ‘위험 평가 보류군’으로 분류하여 질환에 대한 치료를 선행하도록 함.
- 질환성 공격성 확인 방법
 - 공격성이 질병에 의해 유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건강검진 후, 이상이 없는 개를 대상으로 공격성을 평가함.
 - 신체검사
 - X-ray 검사 : 흉부, 복부 및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 (예: 골반, 무릎 등)
 - 혈액검사 : CBC, Chemistry profile, 호르몬 계열
- 평가자는 소유자가 미리 준비한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평가자가 수의사이며 대상건의 건강검진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평가자가 건강 검진을 직접 할 수 있음. 소유자가 과거 건강검진 자료를 제시할 경우에 1차 방문 기준 일정 기간(예-1개월) 이내의 자료만 인정해야 할 것.
- 질환성 공격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위험 평가 평가대상건으로 확정 및 평가 진행

<p>질환 확인 관련의 필요성</p> <p>반려동물행동학연구회(2016), 반려동물 임상행동의학 실전매뉴얼, 서울특별시 수의사회</p> <p>행동학 진료에서 동물의 건강 상태를 평가해 신체 질환을 우선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p>
--

관절염 등의 통증으로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함.

행동학적 진료를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 건강 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실제 행동학적 질병인지 여부를 감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한 사례에서 이유 없이 짖어대는 증상으로 내원한 피그는 내원 이후 2주 만에 비만세포종이 확인되었고 3주만에 사망. 파괴행동으로 내원한 잉글리시 세터는 어느날 갑자기 강아지들처럼 파괴행동을 보였는데 내원 당시 간 관련 효소치가 매우 상승해 있었고 4일만에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망함.

소양감의 경우 공격성을 나타낼 수 있음. 치과질환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다 치료 후 사라지기도 함.

행동 증상을 보일 수 있는 신체적 질환을 우선 확인한다. 주요 예는

- 공격행동 : 불쾌감을 동반하는 질환(통증, 소양감 등), 내분비질환, 신경질환 등을 우선 확인
- 강박장애 : 불쾌감을 동반하는 질환(통증, 소양감 등), 신경질환
- 부적절한 대소변 배설 행위 : 비뇨기 질환, 위장관 질환

(3) 기초 설문 실시

- 평가대상견과 소유자가 평가자가 지정한 장소(예-평가자가 일하는 기관)에서 만나 기초 설문 및 상담 진행
- 기초 설문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실시함
- 설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기본 정보 : 반려견 품종, 생년월일, 성별, 중성화 여부 및 중성화 시기
 - 행동 정보 : 문제 행동, 문제 행동이 시작된 연령 및 심각한 정도
 - 현재 복용하고 있거나 과거에 복용했던 약물 여부
 - 문제 행동을 보인 최근 사건에 대한 자세한 기술
 - 일상 상황, 목욕 및 미용을 할 때의 상황, 음식 및 다른 자원이 있을 때의 상황, 휴식 상황, 훈육을 받는 상황, 자기 영역 및 외부에서의 상황, 어린이가 있을 때의 상황에서의 공격적인 행동 여부 및 행동 정보
 - 공포 및 불안 반응에 관한 정보
 - 입양 전후 배경에 대한 정보
 - 거주 환경에 대한 정보
 - 일상 생활에 대한 정보
 - 식이에 대한 정보
 - 의학적 배경 정보

- 교육 및 훈련 정보
- 그 외 기타 정보

○ 설문 시에는 다음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대상견 방문 전 고려사항]³⁷⁾

1) 개가 왜 평가 받는가?

- 특정 종에 속한 개인가?
- 사역견이 될 예정인가?
- 개물림 사고에 연루된 개인가?

이러한 정보는 평가자가 평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떻게 평가를 실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이다. 대부분의 사역견 단체들은 자체적인 평가 과정을 갖추고 있다. 그런 평가 과정에 대해 조사하고 과학적 맥락에서 평가하는 것은 다음 과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물림 사고에 관한 정보

- 사건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가
- 특히 사고 전, 사고가 일어나는 동안, 사고가 일어난 직후 피해자, 대상견, 소유자가 무엇을 했는지
- 피해자의 상처의 정도와 의료진단서

3) 개에 대한 정보

- 나이, 성별, 품종, 체중, 체고
- 배경 정보 (입양처, 사회화 및 교육 이력 등)

개의 사회성, 공포, 좌절감, 스트레스 내성의 정도, 의사소통 능력, 무는 힘 조절, 복종, 이번 사고와 비슷한 과거의 상황에서의 경험 등과 같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 사고가 일어날 당시의 거주 환경
- 사고가 일어난 후의 거주 환경
- 건강 상태 및 이력

4) 소유자, 주소유자, 사고가 일어날 당시 개를 돌보고 있던 사람에 대한 정보. 이들의 개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지식,

5) 피해자에 대한 정보, 나이, 성별, 건강 상태, 피해자의 개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지식, 개에 대한 태도

37) 참고자료

Mills, Daniel, and Carri Westgarth. Dog bites: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5M Publishing, 2017. 363-364p Table 27.1 Logical procedure and points for consideration in a risk assessment 번역하여 수록함.

[공격성 행동 정보]

아래 제시된 상황에서 반려견이 한 번이라도 보였던 행동에 대해서는 모두 체크해주세요.

- 친숙한 사람: 가족 구성원(사람)을 포함해서 친한 친구, 친척 등 반려견이 규칙적으로 마주치는 사람
- 낯선 사람: 반려견이 처음 본 사람 또는 가끔 마주치는 사람

상황	가족 구성원(사람)	비대면(사람)	단거리(사람 포함)	중거리(사람 포함)	이탈(사람 포함)	추가 설명(필요시)
일반적인 상황						
1 친숙한 사람이 반려견을 응시할 때						
1-1 낯선 사람이 반려견을 응시할 때						
2 친숙한 사람이 반려견을 향해 손을 뻗을 때						
3 낯선 사람이 반려견을 향해 손을 뻗을 때						
4 친숙한 사람이 반려견을 향해 허리를 뻗을 때						
5 낯선 사람이 반려견을 향해 허리를 뻗을 때						
6 친숙한 사람이 반려견을 쓰다듬을 때						
7 낯선 사람이 반려견을 쓰다듬을 때						
8 친숙한 사람이 반려견을 껴안을 때						
9 낯선 사람이 반려견을 껴안을 때						
10 친숙한 사람이 반려견을 들어올릴 때						
11 친숙한 사람이 반려견의 어깨/등/ 엉덩이를 누를 때						
12 친숙한 사람이 개의 배가 하늘을 보도록 누를 때						
13 친숙한 사람이 목줄을 매거나 풀을 때						
14 낯선 사람이 목줄을 매거나 풀을 때						

그림 2-7 설문지에서 공격적인 행동 정보에 관한 문항 예시

(4) 대상견 관찰 및 평가

- 평가자가 평가 필수 항목 및 평가 권장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서에 제시하여 위험 평가전문위원회로부터 인증받은 내용에 따라 대상견을 관찰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견 관찰 및 평가 과정은 영상으로 기록해야 함.

평가 필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설문 및 상담을 통해 대상견이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특정 상황에 대한 평가 ② 소유자 유무에 따른 행동 차이 ③ 낯선 사람과의 사회화 능력 평가 ④ 성별, 연령, 체격 등의 차이에 따른 반응 (예- 남성/여성, 어린이, 노인) ⑤ 빠른 움직임이 있는 물체에 대한 반응 (예-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공) ⑥ 갑작스러운 시각 및 청각적 자극으로 인해 깜짝 놀랄만한 상황에서의 반응 및 놀란 후 회복 능력 (예- 시끄럽게 얘기하면 지나가는 행인, 펼쳐지는 우산, 아기 울음 소리가 나는 유모차, 갑자기 지나가는 오토바이, 자동차 등) ⑦ 가까운 거리에서의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 ⑧ 흥분 상태에서 소유자가 집중을 전환시키기 위한 행동에 대한 반응 (예- 간식, 또는 소유자의 명령어 등) ⑨ 도구에 대한 반응 (예-청소기, 대걸레, 지팡이, 휠체어 등) ⑩ 소유자와 낯선 사람이 접촉할 때
평가 권장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상견이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익숙한 공간과 낯선 공간에서의 행동 차이 ② 상냥한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 위협적인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 차이 ③ 신체 접촉에 대한 반응

- 평가계획서와 다르게 수정하여 진행한 부분은 평가보고서에 언급
- 대상견 관찰 중에 반려인이 평소의 행동과 비슷한지 관찰할 수 있도록 평가 전에 행동일관성 설문지를 미리 지급
-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은 평가자가 미국의 SAFER Test, 미국 펜실베니아수의대에서 개발한 C-BARQ, 니더작센의 Wesenstest 등 기존의 방법 및 이에 준하는 자신의 평가 방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전문위원회가 이에 대해 감정 및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평가 방법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의 공격적 반응의 여부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 평가 양식은 세 가지 상황으로 분류됨 - 소유자와 목줄 착용을 한 개가 서 있고, 행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나갈 때의 반응을 평가하는 상황으로, 단일 자극에 대한 반응을 평가 - 대로에서 소유자와 목줄 착용한 개가 걷는 상황. 개가 소유자와 산책을 하는 일상적인 상황과 가장 유사하며, 외부 환경에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평가

- 실내 쇼핑몰에서 소유자와 목줄을 착용한 개가 걷는 상황. 사람이 밀집해 있으며 실내 소음이 있는 곳에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평가
- 소유자가 손으로 간식을 주다가 손에 간식을 쥔 채로 멈추고 주지 않을 때
- 개의 앞쪽에서 개를 응시하면서 다가갈 때
- 긴 검은 코트, 마스크, 검은 모자를 착용한 사람이 개를 지나가면서 코트 옷깃이 펄럭거릴 때
- 지팡이를 든 사람이 땅을 짚으면서 절뚝거리면서 지나갈 때
-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지나갈 때
- 조깅하는 사람이 달리면서 지나갈 때
- 화가 난 큰 목소리를 통화하는 사람이 지나갈 때
- 지나가는 사람이 우산을 펼 때
- 행인이 공을 차면서 지나갈 때
-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유모차가 지나갈 때
- 낯선 사람이 소유자에게 다가와 말을 걸고 악수를 할 때
- 낯선 사람이 대걸레질을 하면서 지나갈 때
- 휠체어가 지나갈 때
-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 좁은 실내에서 낯선 사람이 예고 없이 입장할 때
- 자전거가 지나갈 때
-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 어린 아이가 지나갈 때

○ 개물림 사고로 접수된 대상견은 사고 장소에서의 평가 또는 사고 당시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평가와 같은 평가 진행이 추가적으로 추천됨.

○ 평가 방법에는 직접적인 검사 (공격적인 행동 관찰 평가)와 간접적인 검사 (설문지, 소유자 상담)을 모두 포함해야하며, 평가 필수 항목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함.

- 교육가능성/반응성 : 대상견에 과거의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대상견이 기존의 관계 내에서 또는 만약 적합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상황에 다른 사람의 보호 아래에서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하므로 평가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통해서 소유자의 보호 아래 개의 반응성과 개의 학습능력을 살펴봐야함. 예를 들어, 개는 명령어에 대해 평가 초반과 평가 후반에 모두 반응하지 않았는가? 소유자는 앞으로의 개선을 위해 조언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고,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엄격한 훈육이 방법이 아니라, 개의 전반적인 복지 향상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가? 대상견은 이미 잘 교육되어 있으나 역설적으로 소유자가 잠시라도 부재한 상황에 남겨진 경우 더 혼란스러워하는가(잘못된 타이밍에 무는 많은 경찰견들이 이 카테고리에 속함)? 등에 관한 정보들이 평가를 통해 얻어져야함
- 반려견의 입마개, 머리를 제어하는 다른 형태의 도구(예-머리 고삐)에 대한 순응도 :

대상견의 신체적 제압에 대한 내성에 따라 소유자의 조치 순응도 및 재사고 위험 예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도구들에 대한 대상견의 순응도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입마개나 머리를 제어하는 다른 형태의 도구가 지시된다면, 이러한 도구들을 인도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도 안내해야 함.

○ 대상견 관찰 시에는 다음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순서	고려 사항
대상견 관찰	<p>대상견을 보지 않고 ‘유효한 위험 평가’는 불가능하다. 대상견 관찰은 관찰 전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되어야 한다. 가능한 표준화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무는 힘 조절 능력과 학습 능력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건강 검진은 가능한 평가 전 혹은 평가 당일에 진행되어야 한다. (물림 사고의 가해견은 사고 발생일과 가까운 시일 내의 건강검진은 필수적이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p> <p>1) 이상적인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타리가 쳐지고,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 - 개와 사람들이 각각 안전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공간; 개가 몇 미터를 걸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 - 필요시 개를 붙들 수 있는 캐치폴(catch-pole, 끝 부분이 갈퀴처럼 생긴 막대기형 무기), 접근이 쉬운 출입구, 물그릇 - 조용한 공간 (소음이 없고 구경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곳) - 개가 원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약간의 공간 <p>2)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 3명의 인력이 필요 : 평가자, 촬영자, 개를 묶거나 돌보는 사람 - 평가하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동영상 촬영되어야 한다. 촬영을 하는 사람은 개와 검사 상황을 촬영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시야를 얻기 위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촬영하는 사람은 개를 다뤄본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들은 개를 자극하거나 평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개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평가자와는 별개로, 개의 목줄을 잡을 사람이 적어도 한 명 필요하다. 평가자는 평가에 집중하기 위해 이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 때에 따라서는 두 명의 사람이 개를 잡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평가 내내 개를 막대에 묶어 놓는 것은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p>3) 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성을 평가하는 많은 검사는 다른 개와 마주치는 상황을 포함하며, 적어도 개를 공격한 사건에 연루된 되는 대상견은 개를 만날 때의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p>- 상대역을 맡을 적합한 개를 찾는 것은 중요하다. 사회성이 없고 겁이 많은 개를 상대역으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개의 복지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향후 그 개로 하여금 개를 상대할 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p> <p>4) 안전</p> <p>- 평가 대상견은 넓고 평평하며 잘 맞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해야 한다 (프롱칼라, 초크 칼라 등은 사용해서는 안 됨). 머리 고삐 (Head halter)의 경우는 이미 훈련이 되어있고, 다른 방법으로 개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용한다.</p> <p>- 입마개는 중요한 안전장치지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입마개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마개는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얼굴을 평가하기 어렵게 한다; ‘대상견은 이 특별한 평가 상황에서 정말로 물었을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강렬하게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p> <p>- 목줄은 튼튼하며, 너무 길어서는 안 되며, 개에게 1.2m의 반경을 주어야 한다.</p> <p>- 개를 막대에 묶을 경우 두 개의 줄을 두 사람이 잡고 있는 것을 추천한다. 하나의 줄은 목줄에, 다른 줄은 가슴줄에 연결해야 한다.</p> <p>- 두꺼운 옷이다 개 스포츠를 위해 고안된 특수한 보호복은 개와 가까이 접촉하는 상황에서 상해를 예방한다. 케블라 토시(Kevlar sleeves)는 특히 무는 힘 조절이나 개가 정말로 물려고 했는지를 평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p> <p>5) 평가자와 대상견의 복지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스트레스 정도가 매우 높아 보이는 경우에는 평가가 중단되어야 한다. 검사는 먼 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거리로 조금씩 좁혀나가야 한다. 평가로 인해 대상견이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 다른 개를 대상으로 한 문제 행동이 더 심해지거나, 없던 문제 행동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는 평가로 인한 모든 부정적인 경험을 수정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예-탈감작)</p>
대상견 관찰 후	<p>평가 동영상을 확인하고 평가 보고서를 쓰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철저한 평가를 위해서는 첫째, 모든 관찰된 것들이 기록되어야 하며(어떤 상황에서 대상견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이것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는 관찰과 해석을 바탕으로 대상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를 다루고 교육하고 사육하는 데에 있어서 적절한 조언을 제공해야 하며,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한다. 모니터링과 재평가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믿을만하며 유효한 예후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p>

--	--

표 2-7 대상견 관찰 시 고려사항³⁸⁾

(5) 행동일관성 설문 실시

- 위험 평가 실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행동일관성 설문 실시
- 기관의 위험 평가에서 보인 대상견의 행동이 반려견이 인지하는 평소의 행동과 비교할 때 얼마나 일관적이었는지 설문을 통해 확인

행동 일관성 설문지의 예					
평가에서 진행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평소의 반응과 오늘 반응의 차이에 대해 표시해주세요.	매우	다소	다소	매우	추가 서술
	불일치	불일치	일치	일치	
개의 앞쪽에서 개를 응시하면서 다가갈 때					
긴 검은 코트, 마스크, 검은 모자를 착용한 사람이 개를 지나가면서 코트 옷깃이 펄럭거릴 때					
지팡이를 든 사람이 땅을 짚으면서 절뚝거리면서 지나갈 때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지나갈 때					
조깅하는 사람이 달리면서 지나갈 때					
화가 난 큰 목소리를 통화하는 사람이 지나갈 때					
지나가는 사람이 우산을 펼 때					
행인이 공을 차면서 지나갈 때					
아기 울음 소리가 나는 유모차가 지나갈 때					
낮선 사람이 소유자에게 다가와 말을 걸고 악수를 할 때					
낮선 사람이 대걸레질을 하면서 지나갈 때					
휠체어가 지나갈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좁은 실내에서 낮선 사람이 예고 없이 입장					

38) 참고자료

Mills, Daniel, and Carri Westgarth. Dog bites: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5M Publishing, 2017. 363-364p Table 27.1 Logical procedure and points for consideration in a risk assessment 번역하여 수록함.

할 때					
자전거가 지나갈 때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어린 아이가 지나갈 때					
전반적인 비교					
소유자가 생각하는 일치 또는 불일치의 원인 또는 기타 사항 기술 (예- 이동시간이 길어서 예민한 상태였음)					

표 2-8 행동 일관성 설문지의 예

(6) (필요 시) 추가 평가 실시

- 대상견 관찰 및 행동일관성 설문 결과, 대상견의 평소 행동과 관찰 과정에서의 행동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소유자가 답한 경우, 기존의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가 평가를 실시함. 가정 방문, 대상견이 익숙한 장소(예-평소 산책 장소)에서의 재관찰, 반려인이 직접 일상생활을 촬영한 동영상 확인, 보다 상세한 반려인 인터뷰 등 추가적인 대상견 관찰 기회를 마련하여 평가를 보완할 수 있음.
- 가정방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p>가정방문 평가 방법의 예</p> <p>가정방문에서는 평가자가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일상적 산책 상황에서 반려인과 대상견의 행동을 먼저 거리를 두고 관찰한 후, 필요하다면 산책 종료 후 집을 방문하여 익숙한 영역에서의 행동을 추가로 관찰함.</p> <p>산책, 집안 등 기관 내원 평가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대상견의 문제적 행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위험 평가를 보완함.</p> <p>- 가정방문 평가 순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일 및 시간 약속 2. 가정방문 평가 시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평가자의 도착을 알리고, 일상적으로 산책을 시도할 것을 요청 ② 평가자는 가까이 접근하거나 인사를 건네지 않고 거리를 두며 관찰을 시작 ③ 대상견이 산책을 하는 동안, 필요한 경우 직접 접근하거나 특정 역할을 하는 평가 보조자를 투입 ④ 산책 평가 종료 후, 필요한 경우 집안으로 이동하여 익숙한 영역에서의 행동을 관
--

찰

- ⑤ 관찰 및 상담을 충분히 진행한 후, 가정방문 평가 종료
3. 내원 평가와 가정방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평가 보완

(7) (필요 시) 2차 의견 요청 및 수령

- 대상건의 상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특정 등급 이상의 조치 대상이 되는 심각한 공격성을 진단하는 경우, 다른 위험 평가 기관 혹은 전문위원의 2차 의견을 요청하여 동의를 얻어야 함.

(8) 마무리 상담

- 소유자와 대상건은 평가를 바탕으로 평가자로부터 평가결과, 앞으로 필요할 수 있는 행동학적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안내 받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마무리 상담을 진행.
- 평가자는 소유자에게 개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 안내 받음.
- 대상건 관찰을 마무리하는 날, 혹은 결과보고서를 발부하는 날에 마무리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음.

(9) 위험 평가 결과보고서 발급 및 지자체 보고

- 대상건의 위험 평가 결과, 즉 예후에 대한 의견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유자에 결과보고서를 발급하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함.
- 평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
 -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 개물림 사고로 인해 신고된 대상건이라면 사고 경위서 포함
 - 반려견의 의학적, 행동학적 이력, 가족 구성원, 교육 이력
 - 소유자가 개선을 위해 시도했던 것들에 대한 서술
 - 행동 평가 과정 외에 추가적으로 관찰한 대상건에 대한 평가
 - 평가 계획서와 다르게 진행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기술
 - 행동 평가를 통해 확인한 공격성의 종류, 유발 요인, 심한 정도 및 예후 평가
 - 평가에 따라 지시되는 사항
- 미래에 대한 예후 평가는 단순하게 예/아니오로 진술될 수 있는 것이 불가능 하지만, 최신의 지식과 실질적 경험을 갖춘 평가자는 대상건의 복지에 타협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위험이 수용가능한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이 요구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허용할 수 있는 유효성을 가진 예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평가 후 얻은 정보에 따라 필요시에 대상견에 대한 권장 사안이 수정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평가자의 진술서는 결론 도출 과정의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 필수적임.

- 평가보고서에서 예후는 대상견의 주변 환경, 흥분 잠재기, 잠재적 상해가능성, 예측가능성, 감정적 안정성, 상황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함.
 - (주변 환경) : 대상견의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위한 반려인과 주변인들의 이해도, 반려인과 주변인들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가족구성원의 수, 생활 습관, 유아·어린이 또는 노인의 유무, 소유자의 동물과 살아본 경험 유무
 - (흥분 잠재기) : 자극 요인이 있을 때 개가 스트레스 반응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 까지의 시간
 - (잠재적 상해가능성) : 개의 크기와 힘, 흥분의 강도, 흥분 대상에 대한 집중도, 개물림 사고 당 물은 힘, 이전 개물림 사고의 심각도, 무는 힘을 조절하는 정도, 공격 대상을 쫓는 정도, 공격성의 대상, 공격성의 종류
 - (예측가능성) : 상황 및 자극 요인 예측 가능 여부, 경고 사인의 유무(얼굴 표정과 몸짓 행동), 공격성을 유발하는 자극 요인에 대한 반응의 일관성
 - (감정적 안정성) : 불안정한 기질을 갖고 있는 개는 일반적으로 더 위험한 경향이 있음
 - (상황의 복잡성) : 공격성 진단 경험 및 횟수, 기존 행동학적 진단 결과, 공격성을 유발하는 상황 및 자극 요인의 수, 갈등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
 - 설문지, 소유자 상담, 평가 과정을 거친 후 종합적인 평가를 서술하며,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 반려견의 전반적인 이력, 문제 행동이 시작된 연령, 문제 행동 시작 당시와 비교해서 악화 여부, 그 외 관련 있는 다른 문제 행동 여부, 소유자가 개선을 위해 시도했던 것들, 행동 평가 과정 외에 추가적으로 관찰한 대상견에 대한 평가, 행동 평가를 통해 확인한 공격성의 종류, 유발 요인, 심한 정도 및 예후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 필요한 경우, 평가계획서와 다르게 진행된 부분을 기술
- 필요한 경우, 행동일관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가정방문 평가 등 추가로 진행한 부분을 기술
- 필요한 경우, 2차 의견과 해당 의견 제출자를 기술

(10) 기록 보관

- 정해진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포함한 위험 평가 관련 기록 일체를 보관
 - 기초 설문지 원본
 - 행동일관성 설문지 원본
 - 위험 평가 과정 녹화 영상 (내원 평가, 가정방문 평가 모두) 원본(화질) 파일
 - 평가보고서

○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파기해야 함.

3. 양식의 예

[양식1]

위험 평가 계획서

1. 평가자 정보

행동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개의 의사소통에 관한 지식, 안전하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개를 다루기 위한 경험과 지식, 건강한 신체를 갖춘 사람인지 평가

			이력서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현 주소					주택 전화	
근무지			직급		근무지 전화	
E-mail					휴대 전화	
년	월	일	학력 및 위험 평가와 관련한 경력 사항			발령처

위 이력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확실합니다.

년 월 일

2. 평가 계획

1) 개요

(1) 평가 방법 (복수 선택)

- ① 설문지 작성 (필수 사항)
- ② 소유자 상담
- ③ 상황 재연 평가
- ④ 실외 산책 평가 (설정 공간)
- ⑤ 가정 방문 평가
- ⑥ 기타 - 서술

(2) 예상 소요 시간 : 시간 분

2) 평가 장소

주소 및 위치	
시설 명칭	
넓이 (m x m)	
공간의 원래 주목적	
사진	

3) 평가 준비물

(1) 평가에 필요한 보조 인력: 명

(2) 평가에 필요한 준비물

평가에 필요한 준비물들에 대해 서술함. 기록 장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도구 목록	목적	사진

4) 평가 항목 및 방법

(1) 평가 필수 항목과 평가 권장 항목은 다음과 같음

평가 필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설문 및 상담을 통해 대상견이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특정 상황에 대한 평가 ② 소유자 유무에 따른 행동 차이 ③ 낯선 사람과의 사회화 능력 평가 ④ 성별, 연령, 체격 등의 차이에 따른 반응 (예- 남성/여성, 어린이, 노인) ⑤ 빠른 움직임이 있는 물체에 대한 반응 (예-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공) ⑥ 갑작스러운 시각 및 청각적 자극으로 인해 깜짝 놀랄만한 상황에서의 반응 및 놀란 후 회복 능력 (예- 시끄럽게 얘기하면 지나가는 행인, 펼쳐지는 우산, 아기 울음 소리가 나는 유모차, 갑자기 지나가는 오토바이, 자동차 등) ⑦ 가까운 거리에서의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 ⑧ 흥분 상태에서 소유자가 집중을 전환시키기 위한 행동에 대한 반응 (예- 간식, 또는 소유자의 명령어 등)
평가 권장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상견이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익숙한 공간과 낯선 공간에서의 행동 차이 ② 상냥한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 위협적인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 차이 ③ 신체 접촉에 대한 반응

평가 방법

5) 평가 결과 방법

대상견의 행동을 등급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평가 방법을 제시

평가 결과 방법

6) 보완 및 추가 평가 계획

(1) 보완 및 추가 평가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기준 서술

소유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토대로 파악한 대상견의 행동 정보와 행동 평가를 통해 판단한 대상견의

행동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2) 추가 평가 계획

① 평가 장소 (위에 작성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 세부사항은 생략 가능)

주소 및 위치	
시설 명칭	
넓이	
공간의 원래 주목적	
사진	

② 평가 준비물 (위에 작성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 세부사항은 생략 가능)

(1) 평가에 필요한 보조 인력: 명

(2) 평가에 필요한 준비물

평가에 필요한 준비물들에 대해 서술함. 기록 장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도구 목록	목적	사진

③ 평가 항목 및 방법 (위에 작성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 세부사항은 생략 가능하나 추가 평가에서 기존 평가와의 차이점을 상세히 기술)

평가 방법

④ 평가 결과 방법 (위에 작성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 세부사항은 생략 가능하나 추가 평가에서 기존 평가와의 차이점을 상세히 기술)

평가 결과 방법

*평가 계획서에는 설문지와 행동일관성 양식이 첨부되어야 함.

[양식2]

위험 평가 결과보고서

1) 반려견 기본 정보

반려견 기본 정보			
이름		품종	
생년월일		성별	
등록 번호		중성화 여부	

2) 소유자 기본 정보

소유자 기본 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3) 평가 결과

평가 일시 (00:00 ~ 00:00, 총 0 시간 0 분)	
평가 장소	
평가 과정 (추가 평가 시행시 모든 평가 과정에 대해 서술)	
평가 결과	
총평 -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 - 반려견의 전반적인 이력, 문제 행동이 시작된 연령, 문제 행동 시작 당시와 비교해서 악화 여부, 그 외 관련 있는 다른 문제 행동 여부 - 소유자가 개선을 위해 시도했던 것들에 대한 서술 - 행동 평가 과정 외에 추가적으로 관찰한 대상견에 대한 평가 - 평가 계획서와 다르게 진행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기술 - 행동 평가를 통해 확인한 공격성의 종류, 유발 요인, 심한 정도 및 예후 평가 - 평가에 따라 지시되는 사항 (통제 및 관리 방법 외에 치료가 필요한 가에 대한 서술) - 소유자가 안전을 보장하고 제시된 권고사항들을 따를 의지와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 - 개가 거주지를 탈출하거나 소유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예방할 안전시스템 - 현재 소유자가 앞으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상견을 사육하기에 현재 소유자가 적합하지 않다면 대상견은 새로 분양될 수 있는가 여부	

평가 결과 및 지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제출 포함

2차 평가자 이름	
평가 방법	
평가 결과	
총평 및 1차 평가자가 제시한 결과 및 지시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	
서명 (인)	

*평가 보고서에는 건강검진결과 및 소견, 소유자가 작성한 설문지와 행동 일관성 평가지를 첨부해야 하며, 사고로 접수된 대상견인 경우 사고 경위서도 첨부해야함.

제3장 개물림 사고 대응

제1절 개물림의 개념과 맥락

1. 개물림의 개념

○ ‘개물림(dog bite)’은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무는 것³⁹⁾’으로 볼 수 있으며, 개에게 신체를 물려 상처를 입을 경우, 힘줄, 신경 등에 손상을 입거나 장애, 감염, 심리적·감정적 트라우마, 입원치료, 그리고 드물게는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음.⁴⁰⁾

▶ 키워드 : 개물림, dog bite

○ 선행 연구에서 ‘개물림’을 다룰 때는, 종종 정확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고⁴¹⁾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 머무는 수준으로 다루는 경우도 있었으나, 아래 표의 ‘연구 용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음의 기준 혹은 쟁점에 따라 보다 세부적이거나 단계적인 정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음.

- 다 음 -

- 놀이 중에 무는 경우도 ‘개물림’에 포함시킬 것인가
- 갑작스러운 압력을 가하지 않았어도 일단 입을 대는 경우 ‘개물림’에 포함시킬 것인가
- 개가 공격 의도를 보였는지로 ‘개물림’을 구분할 것인가
- 직접적인 무는 행동이 없더라도 공격적인 행동이 시작되면 ‘개물림’에 포함시킬 것인가

구분	출처	정의	원문(해당 시)
사전적 의미	우리말샘	▶용어 : 개물림 ▶설명 : 개에게 신체를 물려서 입은 상처	
	Wikipedia	▶용어 : dog bite ▶설명 :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무는 것	a bite upon a person or other animal by a dog.
	https://www.medicinenet.com/ (의학사전)	▶용어 : dog bite ▶설명 : 개가 물어서 생긴 상처 (중략) 개가 턱으로 무는 동안 발생하는 압력은 뼈, 근육, 힘줄, 혈관, 신경 등의 피하 조직에 심각한 손	A bite wound inflicted by a dog. ... The pressure exerted by the dog's jaws during the bite can cause significant

39) 위키피디아

40) Park(박중완)(2019), Dog-bite injuries in Korea and risk factors for significant dog-bite injuries: A 6-year cross-sectional study, PLOS ONE

41) Oxley(2018), What is a dog bite? Perceptions of UK dog bite victims, Journal of Veterinary Behavior, 29, 40-44

		<p>상을 입힐 수 있다. 개물림으로 인해 제기되는 주된 문제는 피부 손상, 근육이나 신경, 뼈와 같은 기저 조직의 손상, 그리고 상처의 감염에 대한 상당한 가능성이다.</p>	<p>damage to the tissues under the skin, including bones, muscles, tendons, blood vessels, and nerves. The main medical issues to be addressed with dog bites are the skin damage; any injury to underlying tissues such as muscle, nerve, and bone; and the significant potential for infection of the wound.</p>
연 구 용 례	Beck and Jones (1985)	<p>▶용어 : bite, during play ▶설명 : 보건 당국은 ‘물림’을, 동물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의 이에 의해 생긴 피부의 상처로 보기에, 놀이 중에 물리는 경우는 제외시켰으므로, 어린 학생들이 물리는 실제의 비율은 제시된 것보다 높다.</p> <p>※ ‘놀이 중에 물리는 경우’를 ‘개물림’에서 제외</p>	<p>Since health officials consider a “bite” as any break in the skin caused by an animal’s teeth, regardless of the intention, the true bite rate for younger students was higher than indicated, as bites received during play were not considered.</p>
	Guy(2001)	<p>▶용어 : dog bite, sudden pressure ▶설명 : 피해자의 피부에 윗니나 아랫니가 닿은 채 압력이 가해져서 피부의 패임, 부음, 긁힘, 멍, 창상, 찢김 등의 가시적인 부상이 발생한 것. 개가 입을 댄지만 피부에 갑작스러운 압력을 가하지 않은 경우는 개물림으로 보지 않음.</p> <p>※ ‘놀이 중에 물리는 경우’ 포함, ‘갑작스러운 압력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p>	<p>the upper or lower teeth making contact with the victim’s skin with sufficient pressure to cause a visible injury such as an indentation, welt, scrape, bruise, puncture, or tear in the skin. A dog mouthing a person’s skin without applying sudden pressure is not considered a bite</p>
	Cornelissen and Hopster (2010)	<p>▶용어 : intentional/unintentional bite ▶설명 : 의도적인 물음은 사전 경고 행동(짖음, 으르렁거림, 이를 드러냄)의 유무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생각하기에 개가 의도</p>	<p>Intentional bites are those bites where the victim thought that the dog bit intentionally, either with or without giving warning signs (barking, growling</p>

		적으로 물었다고 여기는 물음이며, 비의도적인 물음은 피해자가 보기에 개가 놀이의 일환 혹은 실수로 물었다고 여기는 물음이다.	and/or showing of the teeth), whereas unintentional bites are those bites where the victim believed the dog bit during play or by accident.
Oxley(2018)	<p>▶용어 : dog bite</p> <p>▶설명 :</p> <p>1a. 불쾌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만 이를 대지는 않음.</p> <p>1b. 개가 옷만 접촉함.</p> <p>1c. 개의 이가 피부에 닿았지만 피부에 상처나 멍이 생기지는 않음.</p> <p>1d. 개의 이가 피부에 닿아 멍이 생겼지만 상처는 나지 않음.</p> <p>1e. 한 번의 개물림으로 4개 이하의 상처가 발생했으나, 개의 송곳니 길이의 절반 이상 깊이의 창상은 발생하지 않음.</p> <p>1f. 한 번의 개물림으로 4개 이하의 상처가 발생했으며, 개의 송곳니 길이의 절반 이상 깊이의 창상이 1개 이상 발생함.</p> <p>1g. 여러 번 물어 2개 이상의 깊은 물림 상처가 발생함.</p>		<p>1a. Obnoxious or aggressive behavior but no contact by teeth</p> <p>1b. Dog only made contact with clothing</p> <p>1c. Skin contact by teeth but no skin puncture or bruising</p> <p>1d. Skin contact by teeth and bruising but no skin puncture</p> <p>1e. One to four punctures from a single bite with no puncture deeper than half the length of the dog's canine teeth</p> <p>1f. One to four punctures from a single bite with at least one puncture deeper than half the length of the dog's canine teeth</p> <p>1g. Multiple bite incident with at least two deep bites</p>

표 3-1 개물림의 정의 및 연구 용례

○ 이는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할 ‘개물림’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와 연결되며, 위에 제시된 선행 연구에서 제기한 쟁점들 및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다음 등의 사항에 대한 고려를 통해 각각의 기준 설정에 따른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할 수 있음.

구분	쟁점	고려사항	접근법
개물림 대상	사람으로 국한할 것인가	이 경우, 다른 반려동물이나 맹인안내견과 같은 사역견 ⁴²⁾ 을 공격하는 문	현행법에서는 <u>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의25(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u> 에

	<p>다른 동물까지 포함할 것인가</p>	<p>제를 다루기 어려움.</p> <p>길고양이, 비둘기 등 도심에 서식하는 동물 뿐 아니라 교외 지역의 가축을 공격하는 경우까지 다를 수 있음.</p>	<p>서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에 처하도록 하여, 개 등이 다른 동물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범죄의 일종으로 보고 있음.</p> <p>안전관리 정책에서 다물개물림 대상을 <u>사람으로 국한하지 않도록</u> 하되, 인간과의 관계나 사회안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간, 사역견, 반려동물, 가축, 기타 동물 등 대상에 따라 그 심각성에 <u>차등을 두어 정책을 설정할 수 있음</u>. 이를 통해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견이 보이는 공격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피고 제어할 의무를 부과하고, 반려견의 사회화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임.</p>
<p>개물림 정도</p>	<p>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국한할 것인가</p> <p>경미한 ‘입질’이나, 개의 이가 피부에 닿았지만 상당하고 급작스러운 압력이 가해지지 않아 피부의 손상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도 포함시킬 것인가</p>	<p>이 경우, 실질적이고 명백한 손해의 발생으로 인해 정책적 개입의 근거가 보다 명확해진다고 볼 수 있음.</p> <p>한편 상해는 경미한 고통부터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그 폭이 매우 클 수 있음.</p> <p>입질이나, 일단 이를 대는 행동이 경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더라도, 반복된다보면 상황에 따라 보다 정도가 심각한 개</p>	<p>상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물림 대응 정책에서 다물 필요가 있으며, 그 <u>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인 조치가</u> 필요할 것임.</p> <p>실질적이고 명백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적인 안전관리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려견 사회화에 대한</p>

		물림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관리가 필요할 수 있음.	대시민 교육·홍보 시, 단순한 입질이라도 반복되도록 방지하는 방식으로 두거나 놀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음.
개물림 원인 및 맥락	외부적인 위협이나 개가 갖고 있는 공포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개물림만 다를 것인가	이 경우, 개의 사회화가 잘못 이루어져, 공격 의사가 없이도 상해를 입히는 개물림 사고를 다루기 어려움.	개가 공포나 불안, 보호 본능 등으로 인해 개물림 공격에 나서는 경우 그 정도가 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물림 대응 정책에서 각 사안의 맥락을 파악하고 개의 복지 역시 충분히 고려하는 방식으로 면밀히 다를 필요가 있음.
	놀이의 일환이나 실수로 발생하는 개물림까지 다를 것인가	개의 사회화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 놀이나 실수로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할 수 있음.	개물림이 놀이의 일환이나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물림 대응 정책에서 다를 필요가 있되, 처벌보다는 반려견이나 반려인의 교육 이수 및 행동시정, 자체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u>재발을 방지하고 문제의 악화를 예방하는</u> 방식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개물림 범위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국한할 것인가	이 경우, 실질적이고 명백한 손해의 발생으로 인해 정책적 개입의 근거가 보다 명확해진다고 볼 수 있으나, 보다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조치가 어려워지거나 포기됨.	실질적이고 명백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적인 안전관리는 어려울 수 있지만,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시민이 개로 인해 합리적으로 위험을 느낄만한 상황이 일단 발생했다면, 반려인의 관리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⁴³⁾ , 이를 위해서는 ‘합
	개물림 발생의 임박 신호로 여겨질 수도 있는 공격적 행동(짖음, 으르렁거림, 이를 드러냄 등)까지 다를 것인가	개의 특정 행동(이를 드러냄, 몸을 앞으로 기울여 바짝 긴장한 자세 등)은 물기 직전의 공격 임박 신호로 받아들여지	

		<p>기에, 사람 등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음.</p> <p>실제로 개가 입으로 실질적으로 물지 않은 상황까지도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⁴⁴⁾가 있으며, 여기에는 사회적 합의 등의 조건이 필요할 수 있음. 또한 공격 임박 신호를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동물행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을 고려해야 함.</p>	<p>리적 판단 근거'에 대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p> <p>또한 <u>개물림사고 예방에 대한 대시민 교육·홍보</u> 시, 대표적인 공격 임박 신호에 대한 지식과 위험상황 전후의 명확한 행동원칙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음.</p> <p><u>반려견 사회화에 대한 대시민 교육·홍보</u> 시에도, 사회안전과 반려가족 및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 공격적 행동을 그냥 지나치고 방치함으로써 강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런 행동이 발현되는 초기부터 훈련·교육 등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민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피력할 필요가 있음.</p>
개물림 사안 접수 경로	<p>신고(지자체 전화, 인터넷, 119, 112 등의 신고 접수 경로) 등을 통해 소극적, 수동적으로 접수한 사안만 다를 것인가</p>	<p>민간 차원에서 해결되는 경미한 사안이 행정망으로 유입되지 않아 정책 수행이 간편화될 수 있음.</p> <p>한편, 개물림사고에 대한 통계 등 정책 평가 및 수정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에 있어 한계가 심화될 수 있음.</p>	<p>개물림 사고 대응책의 기초, 즉 대응 목표와 신고 이후의 절차 및 향후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맞도록, <u>개물림 사안의 접수 경로를 정비</u>하고 <u>관련 행정기관의 협조</u> 및 준비(교육, 훈련 등)를 요청할 필요가 있음.</p>
	<p>신고를 의무화(수의사, 의사, (어린이집)교사 혹은 시민 전체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적극적으로 사안을 취합하여 다룰 것인가</p>	<p>개물림 사안에 대해 보다 폭넓은 사안이 수집될 수 있음.</p> <p>그러나 의료인의 신고의무화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스위스의 사례⁴⁵⁾에서볼 수 있듯, 개물림사고 발생 이후 벌어질 수 있는 반려인 제재, 반려동물의 압수나</p>	

		안락사 명령 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부상에 대한 치료를 꺼리게 됨으로써 시민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개물림 조장 여부	반려인이 개물림을 조장·방조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개물림 사안을 동일하게 다룰 것인가	이 경우, 반려인의 무책임함이나 악의의 정도가 심하여도 처벌이 어려워서 비합리적임.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인이 개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상해 발생 시나 맹견 유기 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또한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맹견을 일정 기간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재판부의 양형기준을 통해 투견 훈련을 통해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킨 경우나, 개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공격한 경우의 경우 <u>형량을 상향</u> 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어 처벌할 수 있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u>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의26(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u> 에서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은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에 그치고 있으며, 개가 달려들어 상해 등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게
	개가 공격 훈련을 받아왔거나, 현장에서 공격 신호를 받은 등의 경우 반려인의 책임을 보다 무겁게 해야 할 특수 사안으로 다룰 것인가	반려견 통제 미비로 인한 일반적 사고와 투견 훈련한 개의 공격적 행동을 방조하거나, 개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등의 보다 심각한 악행을 차등적으로 다룰 수 있음.	

			<p>되면 경범죄처벌법이 아닌 동물보호법을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p> <p>이러한 기존 법제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물림 사고 대응책에서 역시 이러한 특수 사안을 차등하여 다룸으로써 물림사고 발생 시의 위험도를 잠재적으로 증가시키는 행동을 제어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검토의 여지가 있으나, 개물림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정책을 세운다면, 개물림이 사람에 의해 조장되었는지 여부를 다룰 필요는 있어 보임.</p>
개물림 반복 및 방조 여부	개물림 사고의 반복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개물림 사안을 동일하게 다룰 것인가	이 경우, 반복됨으로써 더욱 큰 위해를 초래하는 사안의 위중성에 맞는 대응이 어려워짐.	<p>현행법에서는 <u>경범죄처벌법</u> 제3조1항의25(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에서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은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에 그치고 있고, 사후 관리 여부는 정하고 있지 않음.</p> <p>개물림 사고의 반복 양상에 따른 대응은,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유연한 조치를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준수 여부를 사후에 추적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만 유의미하게 작동할 수 있음.</p>
	개의 무는 성향을 인지하고 있는 반려인의 무책임한 방조 혹은 무력한 방치로 인해 개물림 사고가 반복될 경우 차등하여 다룰 것인가	이 경우, 반려인의 무책임함이나 무력함에 대해 필요한 개입,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고, 교육이나 훈련에의 요구, 최악의 경우에는 몰수 등 예상가능한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가능함.	

		<p>이를 위해서는 사안이 심화되고 악화되는 양상의 흐름에 대한 시나리오, 알고리즘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u>유연하고 단계적인 접근법</u>이 필요함.</p> <p>따라서 여기에는 사후적 조치 뿐 아니라 <u>상해 발생 이전 단계의 문제행동부터 교육, 경고 등의 대안적인 개입</u>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p>
--	--	---

표 3-2 개물림의 개념과 범위에 따른 고려사항 및 접근법

- 이처럼 개물림 사고, 혹은 개물림은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무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할 수도 있지만, 개물림의 대상, 정도, 원인 및 맥락, 범위, 사안 접수 경로, 사람의 조장 혹은 방조 여부, 반복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사고 발생 양상을 살펴서 개념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섬세하게 정책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개물림의 맥락

- 우선 ‘모든 개는 물 수 있다’, 그러나 ‘사람과 개 모두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면서 반려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사회적 합의로 공유될 필요가 있음. 미국의 질병관리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모든 개는

42) 영국의 경우 한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 ‘반사회적행위및범죄단속법(Anti-social Behaviour, Crime and Policing Act 2014)’을 통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법행위로 다루는 반면, 사역견에 대한 공격은 ‘위험한개법(Dangerous Dogs Law 1991)’을 통해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음.

43) 영국 현장조사에서 반려동물 행동 분야의 권위자이자 ‘Behavioural Referrals’의 대표 수의사인 Sarah Heath는 “개물림 전의 위협에 대해서도 법이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단순히 피해자가 무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동물 사이의 거리, 목줄 여부, 주인의 컨트롤 여부 등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한 바 있음. 참고로 호주의 경우 위협적인 개가 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사람에게 달려드는(Rush at) 경우’를 ‘위협적인 태도로 사람의 3m 반경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가 으르렁거리거나,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거나, 등털을 바짝 세우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을 포함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44) 영국의 경우 ‘위험한개법’에서 개가 ‘위험하게 통제 밖에’ 나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 혹은 사역견에게 상해를 입힌 것 뿐 아니라, 상해의 위협을 느낀 것(any occasion on which there are grounds for reasonable apprehension that a dog will injure any person)까지 포함하여, 위협을 느꼈다는 정황이 합리적이라면 실제 상해 없이도 기소가 가능함.

45) 독일 현장조사에서 뮌헨동물복지연구소에 따르면, 스위스의 경우 의사가 개물림사고 인지 시 관련당국에 신고하여 정부가 개입하도록 한 이후, 개물림이 발생해도 병원에 치료를 받으려 내원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생겨나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함.

물 수 있다(Any dog can bite)”고 웹사이트에 명시⁴⁶⁾하고 있으며,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 역시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는 동일한 원칙하에 「개보유법(Hundegesetz)」에서 개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기르고 감독하도록 하고 있음.⁴⁷⁾

-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는 사실이 반려인이나 비반려인 시민들의 공포나 불안을 일으키는 문제적 선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 자신이나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 구성원 일반이 인지하고, 모종의 삶의 복잡성 내지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인 채로 현재를 살아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이, 개물림 사고 가능성 역시 개와 반려생활을 하는 인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감수해야 할 대상, 적절한 사회화 과정과 충분한 교감을 통해 일상 속에서 최대한 예방하고 제어해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여겨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는 말은 개물림 사고는 개의 크기, 성별, 품종과 상관없다는 의미임.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미국에서 일어난 256건의 치명적인 개물림 사고에 대한 연구 결과 치명적 사고를 일으킨 개들의 품종은 20종류와 그 잡종들로 매우 다양했음. 좀 더 오래된 1979년에서 1998년 사이에 미국에서 발생한 238 건의 치명적인 개물림 사고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31개의 품종 및 그 잡종이 집계되었으며, 아메리칸코커스파니엘 등 가정친화적이라고 알려진 종들이 다수 포함됨. 독일에서도 맹견법에 제시된 종과 핏불 계열의 개가 실제로 종 소인으로 인한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증거가 있는지 찾기 위한 연구가 2008년 진행된 바 있으나, 개의 공격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극에 오직 9%의 개들만 위협행동을 보이며 공격하였으며, 95%의 개는 적절한 수준의 공격성을 드러내어, 결국 개물림 사고는 품종이 아닌 반려견의 책임 강화와 개의 훈련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낸 바 있음.⁴⁸⁾
- 개물림 사고는 지역 사회의 큰 문제이며, 지역사회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임. 많은 사례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이 특정 개가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느꼈을지라도, 공무원은 그러한 항의에 응답하지 않거나, 구성원들은 그 개와 소유자에 대해 항의를 하는 것에 겁을 낸다는 사실이 드러남. 특정 품종이 인기가 많게 되면, 증가된 수요는 부적합한 교배 시설을 유발하고 이는 건강 및 행동학적 문제를 야기하게 됨. 따라서 개를 소유하거나, 교배하거나, 기르거나, 교육하거나, 치료하는 것(의학적 또는 행동학적으로)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책임감 있는 소유자 의식, 공공 교육을 지지하여 사람과 개 모두에게 더 안전

46)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질병관리센터, 미국) 웹사이트에는 ‘Preventing Dog Bites(개물림 예방)’이라는 웹문서의 말미에 ‘Any dog can bite, but if you understand the risks for dog bites and know how to protect yourself, you will reduce your likelihood of getting sick or injured(모든 개는 물 수 있지만, 개물림 발생 가능성을 이해하고, 대처법(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안다면, 그로 인해 질병이나 부상을 입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적고 있음.

출처: <https://www.cdc.gov/features/dog-bite-prevention/index.html>

47) 국회도서관(2019), 개물림사고 방지 입법례(김나영), 최신외국입법정보, 제99호

48) Schalke, Esther, et al. "Is breed-specific legislation justified? Study of the results of the temperament test of Lower Saxony." Journal of Veterinary Behavior 3.3 (2008): 97-103.

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⁴⁹⁾

3. 개물림 관련 통계

(1) 한국⁵⁰⁾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개물림에 의한 응급실 방문이 증가했으며, 개에 물린 부상이 발생하며 부상당한 모든 환자의 0.6 ~ 0.8 %를 차지함. 이 환자들 중 3.7 %는 입원이 필요했고 2.3 %는 수술을 받았음.
- 이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연령대가 제일 많이 물렸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인, 중·고등학생, 유치원생 순이었음.
- 주로 물리는 부위는 사지의 상부(33.3%)이며 머리와 목(21.9%), 사지의 하부(15.7%), 여러 부위(3.2%) 그리고 몸통(0.9%) 순이었음.
- 대부분 연령대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공간으로 집(72.3%), 실내공간(60.5%)이 주된 장소임. 반면 유치원생 대상 개물림 사고 중 48.7%는 야외에서 발생함.
- 개의 소유자나 가족이 물리는 경우가 31.6%인 반면 유치원생(11.9%)와 초등학생(10.9%)는 낯선 개로부터 물렸음.

49) AVSAB(2014)

50) Park JW, Kim DK, JungJY, Lee SU, Chang I, Kwak YH, et al. (2019) Dog-biteinjuries in Korea and risk factors for significant dog-bite injuries: A 6-year cross-sectional study. PLoS ONE 14(2): e0210541.<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10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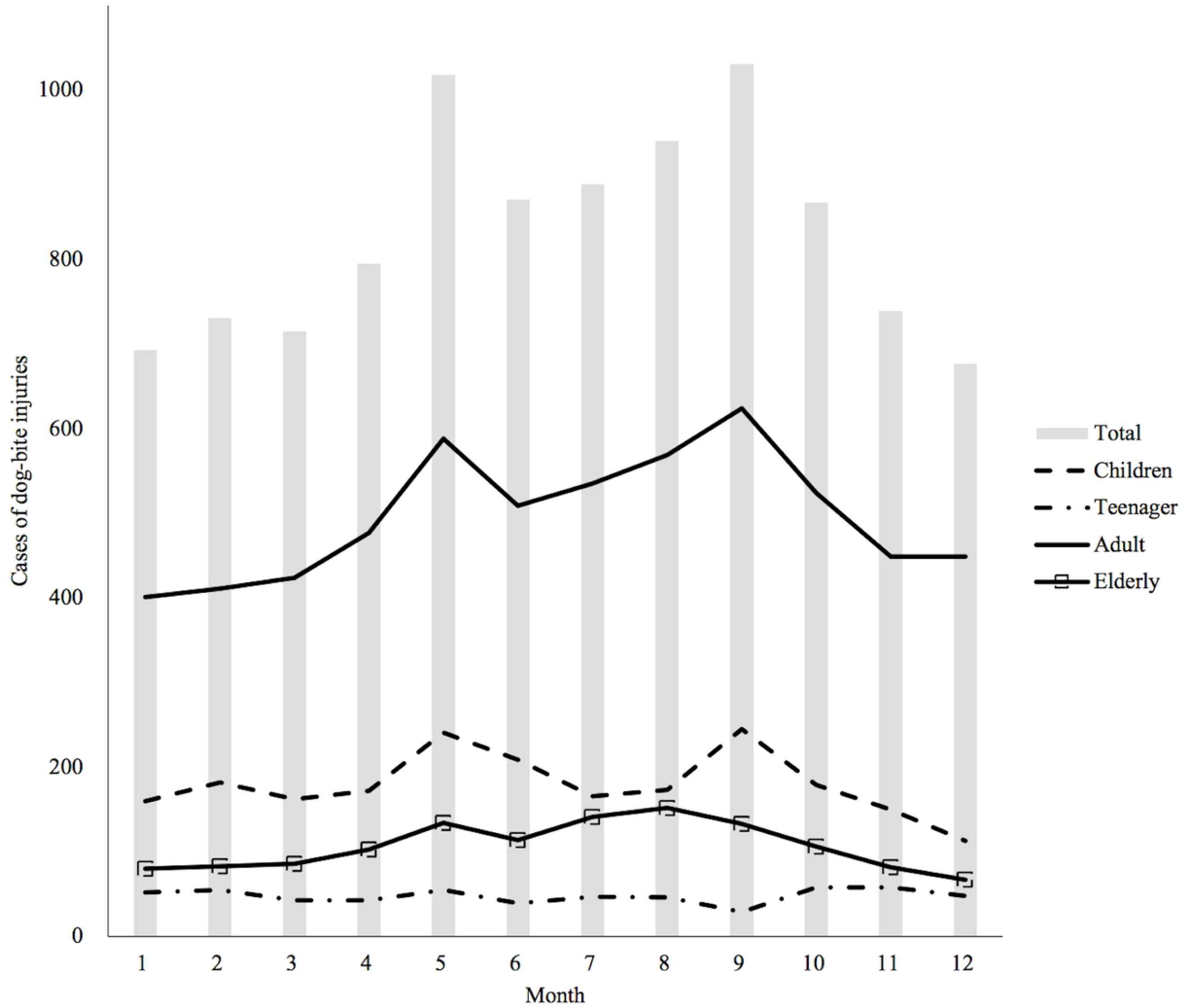


그림 3-1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월별 개물림 사고 횟수

(출처: Park JW, Kim DK, JungJY, Lee SU, Chang I, Kwak YH, et al. (2019) Dog-bite injuries in Korea and risk factors for significant dog-bite injuries: A 6-year cross-sectional study. PLoS ONE 14(2): e0210541.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10541>)

- 이 연구에 의하면 어린 연령대의 개물림사고는 증가세이며 낯선 개로부터 물리는 것보다 친척, 이웃, 친구의 개로부터 물리는 사고가 더 위험하다고 함.
-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19구급대가 개물림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가 6,883명임.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2017년 보다는 약간 감소(△1.4%)하기는 했으나, 매년 2천여 명 이상이 사고를 당하고 있음.⁵¹⁾
- 계절별로는 야외활동이 많은 5월부터 10월까지가 월 평균 226명으로 연 평균 191명 보다 18%(35명)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됨.

51) 소방청 보도자료 <하루 6명꼴 개 물림사고로 119 구급대 출동> 2019.2.13

인원 (명)	10세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이상
6,883	436	312	550	700	1,241	1,550	962	718	365	46	3

표 3-3 2016년 - 2018년 연령별 개 물림사고 환자 이송현황 (출처: 소방청)

연도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6,883	382	362	524	590	699	685	725	682	667	604	512	451
2018	2,368	127	125	204	203	233	246	262	230	211	190	167	170
2017	2,404	139	115	182	207	250	232	244	228	224	229	205	149
2016	2,111	116	122	138	180	216	207	219	224	232	185	140	132

표 3-4 2016년 - 2018년 개 물림사고 환자 이송현황 (출처: 소방청)

(2) 북미52)

- 2013-2014년 미국 반려동물 산업 연합 반려견 소유자 조사 (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National Pet Owner Survey)에 의하면, 미국의 반려견의 수는 8330만 마리로 추정되며, 5670만 가구에서 적어도 한 마리의 개를 키우는 것으로 조사됨.
- 개물림 사고의 관한 자료는 매우 광범위한데, 이는 모든 개물림 사고가 보고되는 것이 아니며, 보고된 사고들조차 모두 자료로 저장되어 서류화되지 않기 때문임.
- 질병통제예방센터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2001-2003년 매 해 미국 내에서 450만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며 5건 중 1건은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고라고 밝혔음. (Janis Bradley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캘거리 시에서 201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75% 이상은 가벼운 창상 (only minor puncture wounds)에 그침.)
- 미국에서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방문은 2006-2008년 매 해 평균적으로 311,000 건(대부분은 어린 아이)이지만, 이중 2.3%만이 입원치료가 요구됨.
- 개물림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매우 낮은 편임. 1999년-2006년 사이, 미국 내에서 한 해 평균 27건의 치명적인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대략적으로 매 해 1000만 마리의 개 당 3건의 치명적인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는 것임.

52) AVSAB(2014)

	1st Period 2005-2009	2nd Period 2010-2014	3rd Period 2015-2018	Change Between 1st and 3rd Periods
Total Deaths	149	179	143	
Victims				
Children ≤ 9	51.678%	49.721%	39.860%	-23%
Infant 0-4 months	8.054%	9.497%	10.490%	30%
Infant 0-12 months	11.409%	13.408%	14.685%	29%
Children 0-2	30.201%	26.816%	23.077%	-24%
Children 3-4	10.738%	11.732%	4.895%	-54%
Children 5-9	10.738%	11.173%	11.888%	--
Adults ≥ 10	48.322%	50.279%	60.140%	24%
Adults 10-29	8.054%	2.793%	4.895%	-39%
Adults 30-49	10.067%	13.408%	11.888%	--
Adults 50-69	13.423%	17.318%	24.476%	82%
Adults ≥ 70	16.779%	16.760%	18.881%	--
Female victims	46.309%	49.721%	56.643%	22%
Female 0-9	21.477%	17.877%	16.783%	-22%
Female 30-49	4.027%	8.939%	8.392%	108%
Female 50-69	8.054%	8.939%	15.385%	91%
Female 70+	10.067%	12.291%	12.587%	25%
Female victims of pit bulls	38.824%	50.833%	53.774%	39%

표 3-5 2005년부터 2018년 미국 내 치명적인 개물림 사고 통계 (출처: Dobsbite.org)

-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와 대시민 교육이며,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에 미국 네바다 주에서는 개물림 사고를 대략 15% 정도 줄일 수 있었음. 캐나다 캘거리 시에서는 2~3차례로 이루어진 한 시간의 안전 교육만으로 개물림 사고를 80%까지 줄임.

년도	확인된 개물림 사고	인구 10만명 대비 개물림 사고	캘거리 시 인구
1985	621	99	625,143
1990	439	63	692,885
1995	366	49	749,073
2000	251	29	860,749
2001	282	32	876,519
2002	224	25	904,987
2003	285	31	922,315
2004	279	30	933,495

2005	253	26	956,078
2006	199	20	991,759
2007	137	13	1,019,942
2008	145	14	1,042,892
2009	58	5.4	1,065,455
2010	102	9.5	1,071,515
2011	127	12	1,090,936
2012	203	1	1,129,225
2013	198	17	1,149,552
2014	252	20	1,195,194

표 3-6 캐나다 캘거리 시의 인구 대비 개물림 사고 수⁵³⁾

(3) 독일⁵⁴⁾

- 독일 전역 전체에 대한 모든 개물림 사고 통계는 없으며 주마다 공개 및 실시 여부의 차이가 있음. 바이에른, 메클린부르크-포어폼머른은 물림사고 통계가 있으나 공개하지 않으며 바덴 뷔르템부르크는 물림 사고 통계를 진행하지 않음.
- 독일 전역의 개물림으로 인한 사망 통계는 존재하며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치명적인 사고는 49건이었음.
- 2012년 독일의 개물림 사고 통계를 공개한 지역 중 브란덴부르크 주의 경우 593 건 (이 중 사람 대상 323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2457건 (이 중 사람대상 827건), 베를린 시의 경우 1123건(이 중 사람 대상 680건), 헤센 주의 경우 581건 (이 중 사람 대상 312건) 임.
- 봄과 여름에 개물림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통계를 보면 겨울 중 12월에 개물림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 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크리스마스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53) Ryan Jestin(Director, Animal & Bylaw Services, City of Calgary), Animal & Bylaw Services - Information for Australian Parliament (Victoria), 2015년 11월 18일

54) Kathrin Roiner (2016) Beißvorfälle unter Berücksichtigung der Hunderassen in Deutschland und Umfrage bei Hundebisspatienten in vier Berliner Klinik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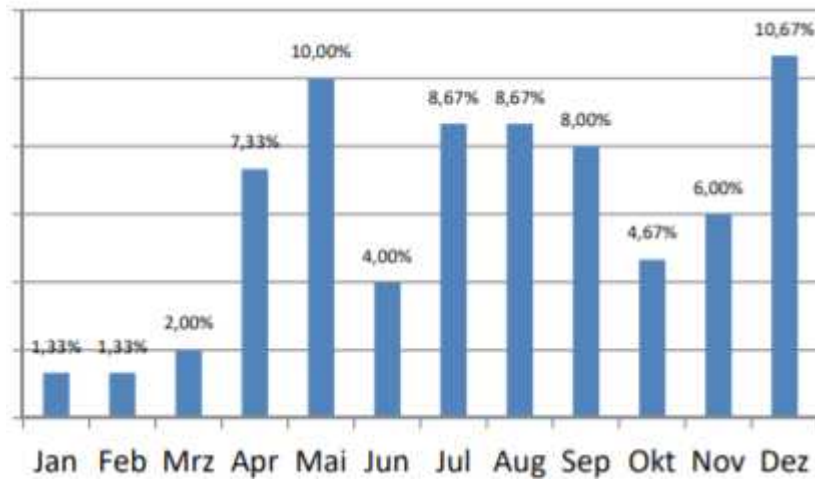


그림 3-2 독일의 월별 개물림 사고 빈도 비율 (출처: Kathrin Roiner (2016) Bei Bvorfälle unter Berücksichtigung der Hunderassen in Deutschland und Umfrage bei Hundebisspatienten in vier Berliner Kliniken)

- 품종별로 보았을 때 2012년 베를린의 개물림사고 중 믹스견이 사람을 문 경우가 269건, 개 대상 물림사고는 125건이었음. 그 다음으로 많은 개물림사고를 일으킨 품종은 저먼 셰퍼드로 사람대상 75건, 개 대상 62건이었음.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포드셔 테리어에 의한 물림 사고는 사람 대상 15건, 개 대상 29건이었음.⁵⁵⁾
- 개물림사고 통계 중 품종을 공개하는 주와 품종을 언급하지 않는 주가 있는데 품종을 공개하는 주들의 개물림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품종은 저먼 셰퍼트이며 이 품종은 독일에서 많이 키우는 품종 중에 하나임.⁵⁶⁾
- 개물림사고 통계를 공개하는 자르란트주(Saarland)의 경우 맹견으로 지정된 품종보다 맹견이 아닌 품종에 의한 개물림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음. (그림 참조)

55) Berlin, Bissstatistik 2012

56)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57643/umfrage/todesfaelle-durch-hundebisse-nach-bundeslaendern/>

연도	개물림 사고 수	맹견품종의 물림 수	경상	중상	사망
2004*	20	2	7	1	-
2005	59	3	27	3	1
2006	93	13	29	10	2
2007	103	12	56	7	-
2008	140	7	51	1	-
2009	132	10	51	-	-
2010	113	5	45	5	-
2011	134	-	59	3	-
2012	123	17	59	3	1
2013	123	4			

사람 대상 개물림 사고

표 3-7 자르란트주의 개물림사고 통계 (출처: SZ-Infografik)

제2절 개물림 사고 대응 국내 현황⁵⁷⁾

- 700만 마리에 이르는 개가 양육되면서 개물림(dog bite)도 증가 추세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수가 2016년 2,111건, 2017년 2,404건, 2018년 2,368건으로, 지난 3년 개물림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6,883명에 이릅니다.
- 공공안전 관리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은 시행규칙 제12조에서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정의) 제3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맹견의 범위)에서 정의하는 도사견, 핏볼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의 경우 3개월 이상이라면 목줄 뿐 아니라 입마개도 채우도록 하고 있음.
- 목줄이나 입마개의 미착용으로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13조 위반으로 해당 개의 주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개물림 피해자가 상해를 받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심각한 상해를 남긴 개물림을 한 개의 주인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논란이 되면서, 2017년에는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불구로 만든 핏볼 테리어의 견주가 중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음.⁵⁸⁾

형법	동물보호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266조(과실치상)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후략)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57) 참고자료

① 형법 ② 동물보호법 ③ 경범죄처벌법

④ 조성자(2019), 미국 동물법 발전현황과 시사점 - 미국 개물림법(Dog Bite Law)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65호,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58) 출처 : 2017년 9월 21일 동아일보 정지영 기자 ‘맹견에 물린 70대女 다리절단... ‘핏볼테리어’ 견주 금고형 선고’

<http://www.donga.com/news/voice/article/all/20170921/86450694/9>

내용 : 수원지법 형사10단독(최환영 판사)은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뜯어 다리절단 수술을 받게 한 ‘핏볼테리어’ 견주 이모 씨(58)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는 않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 경기 용인시의 이 씨 집 근처를 지나던 주민 A 씨(77·여)는 목줄이 풀린 핏볼테리어에게 신체 곳곳을 물어 뜯겼다. 발등뼈 골절 등 심각한 상처를 입은 A 씨는 결국 오른 쪽 다리와 왼손가락 일부를 절단했다.

이 씨는 핏볼테리어 1마리를 포함해 모두 8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었지만 철장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호전적 성향이 있어 투견에 이용되는 핏볼테리어를 기르는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제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	---

표 3-8 개물림 사고 관련 형법 및 동물보호법

-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하고, 제2항에서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여 개물림을 한 개의 점유자, 관리자에게 피해자의 책임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경범죄처벌법을 살펴보면, 제3조(경범죄의 종류)⁵⁹⁾의 ①항-25(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에서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를 풀어놓아 나다니게 하는 행동이나, ①항-26(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에서 개를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하는 행동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협적인 개의 관리 부실과 개를 시켜 공격하게 하는 행위는 둘 다 매우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람의 조장이나 방조에 의해 개가 무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상황을 ‘경범죄’로만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
- ‘맹견’에 대해서는 반려인의 안전 관리 의무를 더욱 강하게 부과하고 있음.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개들이 ‘맹견’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맹견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특정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제3절 개물림 사고 대응 해외 현황

1. 독일 (바이에른주)

(1) 개물림 사고 발생 전

59)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26.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 바이에른의 경우, 바이에른주 형법(Landes-Straf-und Verordnungsgesetz, LStVG)의 제37조에 의거하여 맹견을 사육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함. 맹견은 특정 품종 또는 사람이나 동물을 위협하며 불필요하게 과한 공격성을 보이는 개로 정의함.
- 바이에른주 형법(LStVG) 제37조에 따르면 맹견을 허가받지 않고 사육할 경우 10.000유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바이에른주 형법 37조와 관련된 하위법인 바이에른주 공격성과 위험성을 가진 개법 (Verordnung über Hunde mit gesteigerter Aggressivität und Gefährlichkeit)의 제1조 제1항에는 핏불, 반독, 아메리칸 스탠포드셔 테리어, 스탠포드셔 불테리어, 도사견과 그 잡종들은 맹견 카테고리 1로 지정함. 카테고리 1의 품종은 기본적으로 사육을 금지하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기질평가를 실시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바이에른주 공격성과 위험성을 가진 개법 (Verordnung über Hunde mit gesteigerter Aggressivität und Gefährlichkeit)의 제1조 제2항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사람과 동물에게 위협하지 않다는 것이 기질평가를 통해 증명될 경우 사육 가능한 맹견 카테고리 2의 품종들이 나열되어 있음.
- 카테고리2의 품종은 알라노, 아메리칸 불독, 불마스티프, 불테리어, 케인 코르소, 도고 아르헨티노, 도그 드 보르도, 필라 브라질레이로, 마스티프, 마스틴 에스파뇰, 마스티노 나폴레타노, 페로 데 프레사 칸리오(도고 카나리오), 페로 데 프레사 말로르킨, 로트와 일러와 그 잡종들임.
- 카테고리2 품종의 개들은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기질평가를 받아야 함.
- 바이에른주 공격성과 위험성을 가진 개법 (Verordnung über Hunde mit gesteigerter Aggressivität und Gefährlichkeit)의 제1조 제3항에는 품종과 무관하게 개가 심각한 공격성을 지니고 공공사회의 위협요소로 간주될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음. (심각한 공격성이란, 이웃들에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입질을 하거나 달려드는 행동을 보이거나 실제로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품종과 상관없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음. 이는 이웃의 신고로 공무원이 해당견이 사는 곳을 방문하여 기질검사를 받게 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됨)
- 바이에른주 공격성과 위험성을 가진 개법 (Verordnung über Hunde mit gesteigerter Aggressivität und Gefährlichkeit)의 제1조 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맹견의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입마개 의무 착용 여부가 결정되고 사육할 수 있음.

- 기질평가는 독일수의사회 소속의 각 주의 수의사회가 인증한 행동치료나 행동학전문 수의사, 기질평가에 필요한 별도 세미나에 참석하여 기질평가 자격증을 취득한 훈련사가 진행할 수 있음.
- 기질평가 비용은 250유로에서 300유로 사이로 실시하는 평가자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별도의 예산은 없음.
- 기질평가 평가자는 소유자 대상 설문조사와 직접관찰의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실시함.
- 바이에른의 기질평가는 전문가에 따라 세부적 내용이 다름.
- 평가자가 직접관찰을 실시할 때 주된 내용은 집 안에서의 행동, 집 주변의 익숙한 환경에서의 행동, 처음 가본 공간에서 일상적 상황(뛰는 사람, 자전거, 말을 거는 사람 등)에 놓였을 때의 행동을 평가함.
- 기질평가를 진행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을 촬영함.
- 기질평가에 참여하는 인원의 수는 평가자에 따라 다름. 그러나 많은 경우 평가자 이외에 보조역할의 수행자가 최소 2명이 있음.
- 기질평가를 받는 개는 쇼크 체인이나 전기충격기 등과 같은 목걸이를 착용하여서는 안되며 진정효과가 있는 약을 투여한 상태여서는 안됨.
- 기질평가를 진행한 이후 담당부서(또는 공무원)에게 진단서의 내용과 함께 차후 해당 견의 조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함. 그 내용으로는 입마개/목줄 의무, 행동치료 또는 훈련 의무, 가족 중에 개를 산책시킬 수 있는 사람 지정 등이 있음.
- 소유자가 기질평가를 통과하는 것을 원할 경우에 차후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음.
- 맹견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바이에른 지자체 내 안전부와 상황에 따라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국임.

(2) 개물림 사고 발생 후

- 개물림 사고 이후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 사건이 접수가 됨.

-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목격자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음.
(https://formulare.muenchen.de/process.php?path=kvr/kvr_beissvorfall//kvr_beissvorfall)
- 목격자가 지자체 홈페이지에 신고를 할 경우 목격자의 개인정보, 해당 사고가 발생한 장소, 시간, 가해견에 대한 정보 등을 작성하여야 함.
- 목격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견 소유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한 경우 사건이 경찰에 접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개물림 사고 신고를 경찰이 받게 되면 가해견이 사는 지역을 담당하는 안전유지부서에 연락을 취하고 안전유지부에 사건이 기록됨.
- 안전유지부과 수의국의 협력을 통해 전문가에게 기질평가(Wesenstest)를 의뢰하고, 전문가는 평가를 진행하는데, 비용은 가해견의 소유자가 부담함.
- 가해견 소유자가 기질평가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250유로에서 300유로로 전문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별도의 예산은 없음.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실시하는 전문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소 2시간에서 최대 8시간임.
- 기질평가를 진행한 이후 담당부서(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 있어야 함.

기질평가 진단서에 포함되는 내용
1. 해당 개물림 사고와 관련된 상황 정황 설명
2. 평가가 이뤄진 장소와 날짜
3. 진단서를 작성한 날짜
4.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5. 반려견 등록번호
6. 반려견의 과거 훈련 경험 유/무 조사
7. 반려견의 사육 목적
8. 소유자가 옆에 있을 때 반려견이 낯선 사람에게 하는 행동 평가
9. 소유자가 옆에 없을 때 반려견이 낯선 사람에게 하는 행동 평가
10. 지시에 보이는 반응

- 11. 목줄을 맨 채로 산책하는 모습 평가
- 12. 다른 반려견/동물을 대하는 행동 평가
- 13. 낯선 소리나 움직임과 같은 자극에 반응하는 행동 평가
- 14. 다양한 상황에서 소유자나 친분이 있는 사람을 대하는 행동 평가

- 진단서를 바탕으로 개의 사육과 관련하여 소유자가 사육하면서 행동치료를 받을지, 사육포기서를 받아 보호소로 넘길지, 안락사를 진행할지 결정함.
- 기질평가 결과 안락사 결정이 난 경우는, 가해견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해 공격성이 발현된 경우를 제외하고 없었음.



그림 3-3 기질 평가 절차

- 반려견에게 물린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사후 절차로 경찰은 안전 및 질서부(이하 질서부)에 사건을 이첩함. 반려견의 소유자로부터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고, 전문가(행동치료 수의사, 위험 평가 진행 자격을 가진 훈련사)에게 반려견의 위험 평가를 의뢰하고, 위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견과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 조치의 범위는 반려견 소유자의 의무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훈계하는 것에서부터 소유자로부터 반려견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까지 있음. 조치의 종류로 목줄 의무화, 입마개 의무화, 활동공간의 제한(예를 들어 집마당에서 소유자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금지), 다른 반려견/다른 사람/다른 어린이와의 접촉 금지 등이 있음.
- 질서부의 기질평가 실시 요청에 소유자가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기질평가 요청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반려견의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사육 금지 처분을 하기까지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질서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됨.
- 소유자가 질서부의 반려견과의 격리(사육 금지 처분)에 불응할 경우 질서부는 강제로 소유자로부터 반려견을 압수하여 보호소로 입소시키게 됨.

바이에른 형법 및 질서법 시행규칙(Vollzug des Landesstraf- und

Verordnungsgesetzes, VollzBekLStVG)	
제37조 제3항 제2호 (기질검사 관련 내용)	사람이나 동물에게 공격성을 보이고 위험할 경우에 기질평가(Wesenstest)의 증명 의무와 비용 부담은 해당 반려견의 소유자에게 있음. 기질평가의 의무를 소유자가 거부할 경우 반려견 사육 권리를 박탈할 수 있음.
제37조 제3항 제3호 (기질검사 실시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	기질평가(Wesenstest)를 진행하는 사람은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야 함. 수의사의 경우 수의사회로부터 동물행동 관련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함. 바이에른 수의사회의 반려견면허증 세미나를 참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경찰견을 다루는 경찰의 경우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제37조 제3항 제4호 (기질검사 후 진단서(소견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전문가의 소견서에는 소견서를 작성한 날짜, 기질평가를 진행한 장소, 검사를 진행한 시간, 소유자의 인적사항, 반려견의 인적사항, 등록번호, 반려견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의 주소, 검사 결과, 반려견의 사육 목적, 사육 환경, 소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행동, 소유자의 지시에 대한 반응, 목줄 상태에서 걸어나는 모습, 목줄을 한 상태에서 다른 반려견을 볼 때의 행동, 익숙하지 않은 소리나 시각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영역적 행동 등이 언급되어야 함.
제37조 제3항 제5호 (소견서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행정조치)	기질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필요한 행정조치(입마개 의무, 행동치료 의무, 사육 포기)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기질평가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 수의국이 참여함.
제37조 제4항 제2호 (신뢰성)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되는 소유자의 경우 맹견을 사육할 수 있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 - 거주지가 없는 경우 - 미성년자일 경우 -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 정신과 질환

	<p>에 시달리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신체적 역력이 되지 않는 경우 - 동물 사육하는 것을 여러차례 반복해서 포기하는 경우 <p>....</p>
<p>제37조 제5항 (벌칙)</p>	<p>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맹견을 소유하거나 허가에 필요한 사항들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만유로(10,000Euro)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이는 주연방의 질서위반법 (Gesetz ueber Ordnungswidrigkeiten, OWiG) 제121조, 주연방의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TierSchG) 제18조 제1항 제20호, 주연방의 도로교통법 (Strassenverkehrsordnung, StVO) 제49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함.</p>

표 3-9 바이에른 형법 및 질서법 시행규칙 (Vollzug des Landesstraf- und Verordnungsgesetzes, VollzBekLStVG)

(3) 기질평가(Wesenstest) 실시 자격 관련 근거

- 독일 전역에서 기질평가는 인증받은 전문가들(수의사 또는 훈련사)에 의해서 진행되며 이는 감독 관청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실시하게 됨.
- 기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된 법으로 헤센주의 반려견 사육 관련 위험방지법(Gefahrenabwehrverordnung ueber das Halten und Fuehren von Hunden, HundeVO)이 다른 주에 비하여 상세하며 이는 다음과 같음.
- 헤센주의 반려견 사육 관련 위험방지법(Gefahrenabwehrverordnung ueber das Halten und Fuehren von Hunden, HundeVO)의 제6조와 제7조의 의하면 기질평가는 독일에 견협회(Deutsche Hundewesen e.V.)와 헤센수의사회가 진행하는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함.
- 훈련사의 경우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독일에 견협회의 사역견훈련 시험에 합격한 자이거나 국제애견연맹이 인정한 반려견스포츠협회에서 5년 이상 심판을 지낸 자임.

- 수의사의 경우 행동학 전문의이거나 행동치료 전문의 또는 3년 이상 소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위험한 개와 관련된 외부 세미나 60시간을 참여한 수의사, 현재 일하고 있는 동물병원에서 최소 10개의 행동치료를 진행한 수의사(10개중 5개는 Reference를 포함하여 자세한 케이스 리포트가 작성되어 있어야 함) 평가자격증 시험은 이론과 실습으로 나뉨. 이론시험은 필기와 구두시험으로 진행됨.
- 이론내용은 반려견 행동의 이해, 인간과 반려견 관계, 반려견 학습행동, 반려견과 공공질서, 반려견과 법, 반려견 사육 및 건강관리에 대한 것임.
- 시험에 모두 합격할 경우 합격증명서를 해당 지자체 질서부에 제출해야 함. 스스로 평가자격증을 포기할 수 있으며 만 70세가 넘은 경우에도 평가자로 활동할 수 없음.
- 독일애견협회와 헤센수의사회는 평가자격증을 박탈할 수 있는 이는 평가자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할 때, 기질평가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때, 2년 이상 임상수의사로서 활동하지 않을 때, 2년 이상 국제애견연맹의 심판활동을 하지 않을 때임. (출처: Standards sowie Benennung von Sachverständigen zur Durchführung von Sachkundeprüfungen und Wesensprüfungen gemäß der Gefahrenabwehrverordnung über das Halten und Führen von Hunden (HundeVO) vom 22.01.2003 (GVBl. I S. 54)

2. 영국

(1)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기에 앞서

1) 영국의 개물림 사고 및 문제행동 대응 기초

- 영국은 반려견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에 다양한 층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규를 가지며, 반려견이 아니라 ‘반려인(ownership, individual)’에 집중함. 개가 계속 짖음으로써 유발되는 소음 문제부터, 공원에서 산책하는 다른 개를 위협하는 공격적인 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우를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개의 행동을 통제해야 할 반려인의 의무를 강화하여 개가 ‘위험하게 통제 밖에 나서(dangerously out of control)’ 누군가 부상입히는 경우 뿐 아니라 상대가 위협을 느끼기만 해도, 그 반려인은 기소될 수 있음.
- 반려인의 통제 미흡으로 인한 개의 공격으로 누군가 사망했을 경우 최고 징역 14년, 부상입었을 경우 최고 징역 5년, 안내견 등의 사역견이 공격당했을 경우 최고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는 등 개물림 사고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함.

- 개가 연루된 반사회적 행위의 경우 ‘예방이 처방보다 우선’이라는 기초 하에 신속한 조기 개입을 통해 사안의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반려인을 늘리고, 개물림 사고 및 기타 반려견 관련 민원을 줄이고자 함.
- 이러한 대응체계를 위해서 지역 공무원과 경찰, 검찰 등의 업무 협력이 강조됨. 특히 개물림 사고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에는 경찰이 주도 기관(lead agency)으로서 적극 대응함.

2) 영국의 개물림 사고 및 문제행동 대응 특징

- 개물림 사고 및 문제행동에 대한 영국의 대응체계를 살펴보면, 개별적 상황이나 반려인의 반응에 맞추어 단계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며, 이로 인해 반려견과 관련된 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임.
- 그러나 개물림 사고, 맹견법 등 반려견 문제와 관련된 영국의 법안이 여러 법안에 흩어져 있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포괄성 및 통합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함. 실제로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와 같은 동물단체에서는 개를 관리하는 법안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체계를 통해 예방적인 수단을 강화해 나갈 것을 오랫동안 주장해 옴.
- 영국의 일선 공무원과 동물복지운동가들은 반려인을 겨냥하고 예방적 대응에 집중하는 것, 제도의 유연성 및 공무원과 경검의 협업관계 등에 대해서는 참고하되, 산발적인 법체계와 같이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거나, 최신의 국제적 흐름과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받지 말라는 조언을 하는 편.

3) 독일과의 차이점

- 독일은 니더작센 주의 경우 일괄적으로 위험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기질평가(Wesenstest) 매뉴얼을 운영하면서 개물림 사고 발생 이후의 예후를 판단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당국이 그러한 일괄적 장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각각의 반려동물행동전문가들이 개별 사건에 대응하고 있음.

(2) 주요 근거

1) 위험한개법 (Dangerous Dogs Act 1991)⁶⁰⁾ 제3장⁶¹⁾

60) 위험한개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세 웹사이트를 참고함.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1/65/contents>
<https://www.gov.uk/government/news/dangerous-dogs-owners-face-tougher-sentences-for-attacks>
<https://deednotbreed.org.uk/index.php/0-dog-laws/dangerous-dogs-act-section-3>

- 품종에 상관없이 개를 어떤 장소에서든 위험하게 통제 밖에(dangerously out of control) 두는 행위는 형법 상 범죄에 해당하며, 해당 범법행위 시점의 책임자와 소유자 모두를 처벌함.⁶²⁾
- 개가 ‘위험하게 통제 밖에’ 나는 것의 개념은 사람, 혹은 사역견에게 상해를 입힌 것 뿐 아니라, 상해의 위협을 느낀 것(any occasion on which there are grounds for reasonable apprehension that a dog will injure any person)까지 포함하여, 위협을 느꼈다는 정황이 합리적이라면 실제 상해 없이도 기소 가능.
-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공공장소 뿐 아니라 사유지에서도 법이 적용됨. 길거리, 다가구건물의 계단, 엘리베이터, 차량 내부 등 누구나, 혹은 돈을 내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공장소 뿐 아니라, 사유지 역시 포함됨.
-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음.
 - 공격에 대한 우려를 하게 만든 것과 같이 ‘위험한개법’이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가장 낮은 처벌의 수위는 적정주급⁶³⁾의 50% 수준의 벌금과 약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혐의없음’ 판결 제외)
 - 즉결 심판(summary conviction)에 회부됐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5수준의 벌금
 - 기소될 경우(conviction on indictment) 2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
 - 반려견 통제 미흡으로 누군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징역 5년
 - 반려견 통제 미흡으로 인한 개의 공격으로 누군가 사망했을 경우 최고 징역 14년
 - 안내견 등의 사역견이 공격당했을 경우 사역견의 생사와 관계없이 최고 징역 3년

61) 위험한개법(Dangerous Dogs Act)의 1장은 맹견법(Breed Specific Legislation)을, 3장은 모든 개의 반려인에게 적용되는 안전관리의무 위반사항을 다룸. 법의 전체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음.

1. Dogs bred for fighting. (싸움을 위해 품종개량된 개)
2. Other specially dangerous dogs. (기타 위험한 개)
3. Keeping dogs under proper control. (개를 적절히 관리할 의무)
4. Destruction and disqualification orders. (안락사 및 동물소유금지 명령)
- 4A. Contingent destruction orders. (조건부 안락사 명령)
- 4B. Destruction orders otherwise than on a conviction. (유죄판결이 아닌 안락사 명령)
5. Seizure, entry of premises and evidence. (압수, 전제조건, 증거)
6. Dogs owned by young persons. (어린 사람이 소유한 개)
7. Muzzling and leads. (입마개와 줄 착용)
8. Power to make corresponding provision for Northern Ireland. (북아일랜드 적용 관련 규정)
9. Expenses. (경비 규정)
10. Short title, interpretation, commencement and extent. (표제, 해석, 개시 및 범위)

62) 소유자가 해당 범법행위 시점의 책임자를 개에 대한 책임을 맡길 적절한 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 이유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음. 소유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그 부모나 후견인과 같이 해당 가족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63) 영국 양형위원회(Sentencing Council) 웹사이트의 ‘적정주급의 정의(Definition of relevant weekly income)’를 살펴보면, 적정주급은 범법자의 유일한 수입원이 정부보조금(state benefit)이거나, 월급 혹은 자영업 수익에서 세금과 국가보험금을 제외한 주급이 120파운드 이하일 경우 120파운드로, 그 외(월급 혹은 자영업 수익에서 세금과 국가보험금을 제외한 주급이 12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주급으로 계산함.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explanatory-material/magistrates-court/item/fines-and-financial-orders/approach-to-the-assessment-of-fines-2/3-definition-of-relevant-weekly-income/>

- 이와 함께 개에 대한 입마개, 줄(lead), 특정 장소 출입 금지와 같은 관리 명령 혹은 안락사(desctruction) 명령이 포함될 수 있음.
- 법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동물소유금지(disqualification) 명령이 포함될 수 있음.

2) 반사회적행위및범죄단속법 (Anti-social Behaviour, Crime and Policing Act 2014)⁶⁴⁾

- 물림 정도가 경미하거나 개가 개를 무는 등의 경우 대개 2014년에 제정된 ‘반사회적행위및범죄단속법(Anti-Social Behaviour, Crime and Policing Act)’에 의거하여, 공동체 보호고지(Community Protection Notice), 공해및불쾌감유발방지를위한금지명령(Injunctions to Prevent Nuisance and Annoyance), 범죄행위금지명령(Criminal Behaviour Order), 공공장소보호명령(Public Spaces Protection Orders) 등의 단계적 조치를 통해 문제 행동의 심각성에 따라 대응하도록 함.
- 이 법은, 문제상황 포착 시 “예방이 처방보다 우선”이라는 기치 아래 교육이나 행동계약 등의 방식을 통해 초기에 개입하는 비법적 대응과 법적 대응이라는 이원적인 행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은 다시 경고, 고지, 명령 등 대응수준을 달리함으로써 유연한 대응을 추구하고 있음. 조사에 따르면 반사회적 행위의 76%⁶⁵⁾가 초기 개입을 통해 개선되었음.
- 계속된 짖음, 소유물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 반려견의 공간을 청소해주지 않는 행위 등 여러 반려동물 관련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64) 반사회적행위및범죄단속법 (Anti-social Behaviour, Crime and Policing Act 2014)의 전체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음.

- Part1 Injunctions (금지명령)
- Part2 Criminal Behaviour Orders (범죄행위금지명령)
- Part3 Dispersal Powers (출입금지명령 권한)
- Part4 Community Protection (공동체 보호)
 - Chapter1 Community Protection Notices (공동체보호고지)
 - Chapter2 Public Spaces Protection Orders (공공장소보호명령)
 - Chapter3 Closure of Premises Associated with Nuisance or Disorder Etc (불쾌감 혹은 무질서 등과 관련하여 기발행한 명령의 폐기)
- Part5 Recovery of Possession of Dwelling-Houses: Anti-social Behaviour Grounds (거주권의 회복: 반사회적 행동 관련)
- Part6 Local Involvement and Accountability (지역/지자체의 개입과 책무)
- Part7 Dangerous Dogs (위험한개)
- Part8 Firearms (총기류)
- Part9 Protection from Sexual Harm and Violence (성적 위해 혹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Part10 Forced Marriage (결혼 강요)
- Part11 Policing Etc (기타 단속)
- Part12 Extradition (본국 송환)
- Part13 Criminal Justice and Court Fees (형사사법제도 및 법정수수료)
- Part14 General (일반 조항)

65)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2014), Dealing with irresponsible dog ownership - Practitioners’ manual

3) 개법 (Dogs Act 1871)

- 1871년에 제정된 개법은 유기동물에 관한 1장과 광견병에 걸린 개에 관한 3장이 다른 법률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어, 현재는 2장(Section 2)만이 유효함. 2장은 치안법원 (Magistrates' court)에 어떤 개가 위험하다는 불만(complaint)이 접수되면, 그 개를 안락사하도록 하거나, 개를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국어	영어 원문
<p>2장. 위험한 개는 폐기(안락사 destroy)될 수 있음.</p> <p>즉결(약식)재판정이 어떤 개가 위험하며, 적절한 관리 하에 있지 않다는 불만을 인지하게 되고, 그 인지한 법원이 판단하기에 그 개가 위험하다면, 법원은 그 개의 주인으로 하여금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거나 폐기(안락사)하도록 하는 명령을 약식으로 내릴 수 있다.</p>	<p>Section 2. Dangerous dogs may be destroyed.⁶⁶⁾</p> <p>Any court of summary jurisdiction may take cognizance of a complaint that a dog is dangerous, and not kept under proper control, and if it appears to the court having cognizance of such complaint that such dog is dangerous, the court may make an order in a summary way directing the dog to be kept by the owner under proper control or destroyed,</p>

표 3-10 개법 (Dogs Act) 2장 한국어 번역 및 영어 원문

(3) 대응 주체

1) 경찰

- 개가 사람을 물거나, 사람이 물릴 것 같은 위협을 느낀 경우 ‘위험한개법(Dangerous Dogs Act)’에 의거해 경찰이 주체가 되어 조사 및 대응을 진행함.
- 경찰은 주로 내무부(Home Office) 산하의 지방 경찰이며, 핏불 간의 심각한 싸움이 계속 되고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산하 경찰(MDP)과 같은 무장경찰을 부르는 경우도 있음.
- 영국의 국방부경찰(MDP)은 개부서(Dog Section)를, 런던경찰국(London’s Metropolitan Police)은 개지원단(Dog Support Unit)을 운영하며, 여기에는 다수의 훈련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등 영국 경찰은 개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있음.

2) 지역공무원

- 지역의 반려동물 부서(예를 들어 지역 의회council 소속 공무원)에서는 ‘위험한개법’에 따

66) <http://www.legislation.gov.uk/ukpga/Vict/34-35/56/section/2>

라 기소되는 반려인의 민원 히스토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경찰 조사에 협력.

–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사회적행위및범죄단속법(Anti-social Behaviour, Crime and Policing Act)’에 따라 서면경고(written warning)를 하거나 고지(notice) 및 명령(order)을 발부함.

상황 혹은 방법 (Situation/measure)	경찰 (Police)	공무원 (Local Authority)
위험한 개 법에 따른 범죄 대응 : 맹견, 위험하게 통제 밖에 난 개	O	X
가축을 위협한 개 대응 : 개법(1953)(가축의 보호)에 따른 범죄	O	X
LEAD	O	O
반사회적행위및범죄단속법에 따른 공동체보호고지(CPN), 범죄행위금지 명령(CBO) 요청	O	O
반사회적행위및범죄단속법에 따른 공공장소보호명령(PSPO) 요청	X	O
개법(1871)에 따라 ‘관리 밖에 놓인 개(dog not kept under control)’에게 내려지는 명령(Orders) 요청	O	O
불쾌감을 유발거나, 심하게 짖거나, 풀려서 돌아다니는 개	공무원과의 협의나 LEAD 차원에서가 아니면 거의 개입하지 않음	O
개의 마이크로칩핑	X	O
유기동물 서비스 제공	X	O

표 3-11 경찰과 공무원의 권한 비교표⁶⁷⁾

3) 검사

○ 검사

- 경찰이 조사 후 기소를 요청할 경우 왕립기소국(Crown Prosecution Service) 소속 검사가 치안법원 혹은 형사법원에 기소를 진행함.
- 검사는 경찰이나 지역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소 과정 중에 범죄행위금지명령(Criminal Behaviour Orders)을 발부하여 18세 미만의 경우 1~2년, 18세 이상의 경우 2

67)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2018), Guidance on Dog Control and Welfare for Police and Local Authorities

- 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음.
- 개를 계류시키게 된 사건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판사에게 진행 촉진을 요청함.

4) 판사

○ Magistrates Court⁶⁸⁾ (치안법원)

- 모든 형사 사건은 일단 치안법원으로 접수되며, 여기서는 교통범죄, 절도, 마약 등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 다루어, 6개월 이하의 징역(복수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 12개월)이나 벌금, 사회봉사나 금지령(운전금지 혹은 동물사육금지)을 내릴 수 있음.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 범죄는 형사법원(Crown Court)으로 이관함. 영국의 형사사건의 95%는 치안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됨.⁶⁹⁾
- 잉글랜드와 웨일스에는 900여 개의 치안판사법원이 있으며, 1명의 지방판사(District judge), 혹은 2~3인의 비법률전문가인 명예직 치안판사(Magistrates)의 합의체가 주재함. 치안판사들의 경우 법률적 쟁점에 관해 치안판사 보좌관으로부터 조언을 얻음.
- 치안법원의 일부는 소년법원(Youth Court)로서 10~17세의 범죄 사건을 다룸. 소년에 의한 강력사건의 경우 형사법원으로 이관됨.

5) 기타 협력 주체

- 반려동물행동전문가 : 반려견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정보를 제공할 수의사, 연구자, 훈련사 등이 필요에 따라 개물림 사고 대응의 각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함.
- 사회적 지주 (Registered social landlords) : 영국 정부가 시민들의 주택마련자금(대출금)의 규모를 줄여 주택 자가소유율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정부 주택공동소유 정책에서, 시민과 함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역할을 맡은 이를 '사회적 지주'라 함. 이들은 정부지원주택의 공동소유자 격으로, 거주 시민에게는 마치 임대주택의 집 주인 내지는 관리인과 비슷한 영향력을 갖게 됨.

(4) 대응 절차

1) 위험한개법

- 개가 위험하게 통제 밖에 난 상황이 경찰에 신고되면,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 후 치안법원의 재판에 넘겨짐.

※ 영국 양형위원회(Sentencing Council)에서 공지한 '위험한개법' 위반 사례

68) <https://www.gov.uk/courts>

69) <https://ko.wikipedia.org/wiki/치안법원>

[사례1]

공공장소에서 위험할 정도로 통제가 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을만한 개를 가진 소유자 (Dangerous Dogs Act 1991 (Section3(1)))

Bruce (34)는 그의 집 근처 공원에서 그의 스탠포드셔 불테리어(Staffordshire Bull Terrier) (금지된 종이 아님)와 함께 있다. 개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고, Bruce는 가서 가지고 오도록 막대기를 던지고 있다. 공원은 다른 시민들로 제법 북적거리고, 어린 아이가 있는 한 가족이 그 주변을 지나갈 때, 개가 그 가족으로 튀어나간다. 개가 어린아이의 다리를 물어 잡고, 개의 이빨로 살이 뚫린다. 아이의 부모들이 개를 아이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시도하지만, 개는 Bruce가 달려와서 개를 떼어내기 전까지 아이를 물고 놓지 않는다. 이 4살짜리 남자 어린이는 다리에 생긴 3군데의 상처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아야하고, 이 상처들은 영구적인 흉터로 남을 것이다.

Bruce는 위험한 개(dangerous dog offence) 관련 전과가 없지만, 지난 2년간 공공질서 위배에 대한 2개의 전과가 있으며 이는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심리에서 개가 이전에 신고를 당한 적이 없다는 것과 Bruce가 개를 6년간 잘 보살폈다는 점을 확인한다. Bruce는 첫 번째 법정 출두에서 유죄를 인정한다.

1단계

위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공공장소에서 위험할 정도로 통제가 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을만한 개를 가진 소유자를 적용한다.

이 케이스에서, 피해자가 어린 아이였고, 꽤 심각한 열상을 겪었기 때문에 법원은 큰 규모의 피해였다고 평가할 것이다.

법원은 Bruce에게 낮은 과실이 있음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있다고 판결을 내릴 것이다. Bruce는 개를 다시 제어하기 위해 시도했고, 그 어린 아이가 더 큰 상해를 입지 않도록 개입했다.

큰 피해와 낮은 과실이라는 이러한 평가들에 따라, 법원은 이 범죄를 카테고리 2로 판결을 내릴 것이다.

2단계

카테고리 2의 시작점은 중간 단계의 사회봉사명령이다; 범죄 범위는 band B 벌금부터 6개월 구속이다.

법원은 Bruce의 전과기록을 고려해야 한다 - 얼마나 최근인지와 이번 사건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또한 사건의 발생 장소가 봄비는 공원이었고, Bruce가 개를 계속해서 통제하기 위해 조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영구적인 흉터라는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여파가 있음은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법원은 개가 이전에 어린 아이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할 징조가 없었고, 여러 면에서 Bruce가 그 스스로가 책임감 있는 소유자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 역시 고려할 것이다.

결국, Community order에서 유죄로 판결되어 중간 단계의 사회봉사 명령이 적절한 선고인 반면, 법원은 구속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3 단계

감형할 만한 요인은 없다.

4 단계

가급적 빨리 유죄 인정을 하는 것은 Community order의 처벌 요소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예상되는 선고는 적절한 요구조건과 함께 12개월간의 중간 단계의 사회봉사 명령이다.

5 단계

법원은 다른 보조 명령과 함께 배상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이 케이스에서는 신체적 상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법원은 배상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고의 영향을 고려해야하고, 가능하다면 피해결과진술을 참고해야한다. 이 케이스에서 피해자의 소유자들은 그들의 진술에서 그 공격이 그들의 가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상세히 열거한다. 경범죄 판결 지침에는 범죄상해보상청의 양형체제 (경범죄 판결 지침 165-167쪽 참고)와 일치하는 보상의 시작점에 대한 지침이 제한되어 있다. 법원은 또한 Bruce의 수입을 고려해야한다.

법원은 Bruce에게 개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이 케이스에서 법원은 Bruce가 책임감있는 소유자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소유권 박탈 명령할 가능성은 낮다.

이것은 가중처벌이 가능한 s.3 offence이므로, 법원은 공공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납득되지 않는 한, Bruce의 개에 안락사 명령을 할 수 있다. 사건 상황을 고려하면, 그

개가 연루된 이전의 사건과 개의 소유자로서의 Bruce의 기록에 이전 사건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안락사를 명령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법원은 Bruce가 개를 적절한 통제 하에 관리하지 않으면 개는 안락사 될 수 있다는 조건부 안락사 명령을 해야 한다. 명령에 포함되는 적절한 조건은 Bruce는 차후 공공장소에서 개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6 단계

단일 행위이기 때문에 전체 원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7 단계

법원은 판결의 이유를 제시해야한다.

8 단계

피고는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구금을 위한 조정 시간이 요구되지 않는다.

[사례2]

개가 허용되지 않은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 개를 데려와 다른 사람이 상해의 두려움을 겪게 한 소유자 (Dangerous Dogs Act 1991 (Section3(3)(b))

Donna (52)는 로트와일러(Rottweiler) (금지된 종이 아님)의 소유자며, 그녀는 그 개를 그녀의 테라스식 주택의 뒷마당에서 기른다. 로트와일러는 보통 집의 뒷문 근처에 묶여 있으나, 줄이 풀린 어느 때, 뒤쪽 경계 울타리 사이의 틈을 통해서 뒷마당을 탈출했다. 그녀는 근처 마당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고, 그 마당에서는 이웃 주민이 빨래를 널고 있었다. 개가 그녀의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이웃 주민은 집으로 달려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개는 문으로 달려가서 10분 이상 크게 짖으면서 자리를 지켰다. 상황은 Donna가 개를 데려가면서 종료되었고, 개의 행동에 대해 몇 주 전에 Donna에게 불만을 표출한 그 이웃주민에게 Donna는 사과하지 않았다.

Donna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녀는 재판 후 유죄선고 되었다.

1 단계

위법 행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개가 허용되지 않은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 개를 데려와 다른 사람이 상해의 두려움을 겪게 한 소유자를 적용한다.**

이 케이스에서는 큰 피해를 나타내는 요소는 없고, 목졸된 개가 나타나는 것은 공공에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그 이웃주민이 Donna에게 이전에 그 개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표한 적이 있고, Donna는 그 우려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법원이 이 케이스에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작은 피해와 높은 과실이라는 이러한 평가들에 따라, 법원은 이 범죄를 카테고리 2로 판결을 내릴 것이다.

2 단계

카테고리 2의 시작점은 band B 벌금이다; 범죄 범위는 band A 벌금부터 낮은 단계의 사회봉사명령이다.

Donna는 전과 기록이 없으나 개가 탈출하는 것을 예방할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요인으로 인해 시작점으로부터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band C 벌금판결을 내릴 것이다.

3 단계

감형할 만한 요인은 없다.

4 단계

참작할 유죄 인정이 없다.

5 단계

법원은 다른 보조 명령과 함께 배상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이 케이스에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사고의 영향을 고려해야하고, 가능하다면 피해결과진술을 참고해야한다. 이 케이스의 피해자는 그녀의 진술에서 그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 손실 또는 상해에 대해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법원은 개인적 상해가 없기 때문에 보상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Donna에게 개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이 케이스에서 법원이 소유권 박탈 명령할 가능성은 낮다.

법원은 Donna의 개에 안락사 명령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안락사 명령을 결정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상황, 이전의 확인된 공격성, Donna의 성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약 법원이 안락사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법원은 조건부 안락사 명령을 할 것이며, 이의 예로는 Donna는 개가 뒷마당에서 묶여있고, 개의 탈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울타리가 있어야하고, 공공장소에서는 개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6 단계

단일 행위이기 때문에 전체 원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7 단계

법원은 판결의 이유를 제시해야한다.

8 단계

피고는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구금을 위한 조정 시간이 요구되지 않는다.

[사례3]

금지된 개 광고 (Dangerous Dogs Act 1991 (section 1(2)))

Gary (2)는 유명한 광고 사이트에 도고 아르헨티노(Dogo Argentino) 판매 광고를 했다. 경찰이 이 광고를 신고받고, Dangerous Dogs Act 1991에 따라 도고 아르헨티노는 금지종이라는 사실에 따라 Gary를 그의 아파트에서 체포했고, 그 아파트에서 문제의 개를 발견했다. 개는 앞다리와 머리에 투견으로 의심될만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 아파트에서 더러운 담요, 마스티프(Mastiff) 종에 관한 서적들, 튼튼한 개 목걸이 사슬과 같이 이 아파트에서 최근 다른 개들을 살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Gary는 개를 광고한 것은 시인했으나, 금지된 종이였다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개의 품종이 도고 아르헨티노라는 것이 확인된 후 그는 범죄를 인정했다. Gary는 과거 맹견 소유(핏불테리어)와 관련한 하나의 전과가 있고, 지난 12개월동안 대마초 소지로 인한 두 개의 전과가 있다.

1 단계

위법 행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금지된 종의 교배, 판매, 교환 또는 광고를 적용한다.

이 케이스에서는 큰 피해를 나타내는 요소는 없다.

법원은 그가 광고에서 개의 종을 정확하게 명시했고, 그 종과 관련된 문헌들을 소지했다는 점에서 그가 그의 개가 금지된 종이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알고 있었다고 결론 내리기 쉽다.

따라서, 법원은 이 범죄를 카테고리 2로 판결을 내릴 것이다.

2 단계

카테고리 2의 시작점은 band C 벌금이다; 범죄 범위는 band A 벌금부터 중간 단계의 사회봉사명령이다.

법원은 개가 요구로 하는 복지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증거가 있다는 사실 뿐 아니라 Gary의 전과를 고려하기를 원할 것이다.

Gary의 아파트에서 발견한 것들과 그의 금지된 종 소유로 인한 과거 전과를 고려할 때, 법원은 이 케이스가 낮은 단계의 사회봉사명령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결할 것이다.

3 단계

감형할 만한 요인은 없다.

4 단계

유죄 인정을 하는 것은 Community order의 처벌 요소를 줄이거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결을 내리도록 할 것이다.

5 단계

법원은 다른 보조 명령과 함께 배상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이 케이스에서 Gary의 범법 행위와 개의 복지 측면에서 적절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Gary로부터 개의 소유권을 2년간 박탈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Gary의 개가 공공이 위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안락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개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개의 복지를 위한 요구사항들이 충족되지 않고, Gary의 소유자로서의 지난 행적들을 고려할 때, 법원은 안락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게다가, 법원은 Gary가 안락사 진행 전까지 계류기간동안의 비용과 관련한 타당한 비용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6 단계

단일 행위이기 때문에 전체 원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7 단계

법원은 판결의 이유를 제시해야한다.

8 단계

피고는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구금을 위한 조정 시간이 요구되지 않는다.

○ 개의 계류가 필요한 경우⁷⁰⁾

- 위험한개법에 의해 금지된 맹견으로 의심받는 개들, 위험하게 통제 밖에 난 개로 규정된 개, 그리고 주인이 구속된(in custody) 경우 경찰이 개를 계류함(kennelled).
- 대부분의 경찰서는 경찰견을 보호하기 위한 계류장(kennels to house police dogs)을 갖추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경찰서의 경우 사설 켄넬에 위탁함.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7천 마리 이상의 개가 영국의 잉글랜드 지역에서 경찰에 의해 계류되었으며 이는 5백만 파운드의 비용을 소요함. 같은 기간 55,000 마리의 경찰견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백만 파운드가 소요됨. 경찰견의 경우 그들의 담당 핸들러(handler)가 휴가 중이 아니라면 그와 함께 지내기 때문에 보호 비용이 더 적음.
- 이 기간 잉글랜드에서 가장 오래 압수된 개는 985일(Hertfordshire) 간 계류되었으며, 가장 짧게 압수된 개는 1일 간 계류됨. 노팅엄셔(Nottinghamshire) 경찰에 따르면, 개의 계류 기간은 범죄 유형, 소유자, 재판에 따라 다르며, 계류 비용은 하루 10~12파운드 정도라고 밝힘.
- 맹견으로 의심되면 일단 압수되어 계류되어 DLO 등에 의해 판별 절차에 들어감. 판별과 상관 없이 주인이 맹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판사는 반환 명령을 내림. 주인이 그걸 증명하지 못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로 다뤄짐. 주인은 맹견 소유 이유

70) BBC News Online(2015), Cliaire Jones, Kennelling seized dogs places 'burden' on police budgets, 2015년 9월 6일 <https://www.bbc.com/news/uk-england-33009044>

로 상한액 없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둘 다에 처해지고, 개는 안락사에 처해짐.

- 재판에서 개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려지면 개는 예외견목록(Index of Exempted Dogs)에 등록되고 반환됨. 2015년 2월 20일 기준, 이 수는 총 3,010마리(Pit bull terrier - 3001, Dogo Argentino - 6, Fila Brasileiro - 0, Japanese Tosa - 3)이며, 같은 날 기준 156마리가 예외견 지정 과정에 있었음.⁷¹⁾
- 왕립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 대변인에 따르면, 소유주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압류된 개의 미래에 대한 결론이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가능한 한 빨리 내려질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개를 압류하여 계류시키는 것 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힘.
- 전국경찰서장회(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 NPCC) Careth Pritchard 는 재판이 종결되었어도 반환이 미뤄졌던 개들의 경우, 반환이 적절하다면 반환하도록 하기 위한 지침(advice)이 곧 마련될 것이며, 반환 결정은 각 서의 엄정한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함. 또한 동물복지의 증진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공공 안전의 위협이나 재판 과정에서의 장애요소가 없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계류 중인 개들의 수를 줄이고자 한다고 함.
- Dogs Trust charity 의 Charlie Horsely 에 따르면, 현재 NPCC 가이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맹견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단 집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stay at home policy)을 적용하도록 한다고 밝힘. 최근 위험한개법 개정에서 bail period 가 도입되어, 개가 맹견으로 의심받더라도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주인과 머무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경찰에 부여하게 되었으며, 이는 계류장에 머무를 뻔 한 개들의 복지를 현격히 향상시킬 뿐 아니라, 계류에 소요되는 경찰 및 공공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판결 전후 개의 계류여부에 대한 공무원 의견 [현장조사 결과]

- 현장조사 결과, 5~6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리치몬드완스워스(Richmond and Wandsworth Council) 산하 개관리사무소(Dog Control Service Office)에서는 개를 지역 행정단위에서 계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경찰의 경우 재판에서 명령을 받고 개를 데려가서 계류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고 있음.
- 개를 압수하고 소유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경찰 등이 동행하는 압수 전까지는 주인과 함께 있도록 함. 개를 재입양(rehome)보낼 수 있는 경우, 압수 당일에 바로 지역의 동물단체로 데려가서 거기서 보호함.
- 뱀과 같은 특수 동물의 압수와 계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작은 동물원에 부탁한 적도 있음.
- 공무원의 사저로 데려가서 보호하는 경우는 없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내에서 계류하는 일은 피하고 있음.

7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umbers-of-dogs-on-the-index-of-exempted-dogs>

2) 반사회적행위및범죄단속법

- 반사회적행위및범죄단속법은 개의 문제행동(공격적 행동 등)에 대해 공동체보호고지, 공해및불쾌감유발방지를위한금지명령, 범죄행위금지명령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은 포착된 문제 상황에 대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러한 조치 여부를 결정함.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 개 전문 공무원이 아닌 경우 개 전문 공무원/연락관(DLO)이나 동물행동훈련회 등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문제행동에 대한 조치로 입마개 등의 조치를 결정하게 될 수 있지만, 이는 수 시간의 상담과 관찰을 토대로 문제행동 양상 및 예후에 대한 분석을 담은 보고서(진단서)를 도출하는 동물행동전문가의 위험 평가와는 차이가 있음.
- 법적 조치 이전에 교육, 허용행동계약 등 비법적 조치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사건에 유연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A. 비법적 조치 - 교육

- 2010년에 사망사건을 초래했던 개물림 사고 이후, 런던의 서튼 시(Borough of Sutton) 와 런던경찰국(Metropolitan police)은 ‘리드(LEAD; Local Environmental Awareness on Dogs 개에 대한 지역환경의 인식)’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개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정비한 사례가 공무원 매뉴얼에 실림.
 - 일단 개 소유주 혹은 책임자가 경찰이나 지역 공무원의 관심을 끌게 되면, 범법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담당자가 연락을 취함.
 - 경찰은 문제점을 설명하는 서면을 발송하며, 반려인이 사회주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복사본이 담당자(provider)에게도 보내져 7영업일 이내에 대응하도록 함.
 - 이때 리드팩(LEAD pack)이 함께 제공되는데, 여기에는 해당 반려견의 품종에 대한 정보, 켄넬클럽에서 제공하는 ‘좋은 시민 가이드(Good Citizen Guide)’,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의 안내문, 개의 사회화와 훈련 및 공원 에티켓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반려인과의 모든 접촉은 경찰이 녹음하며, 추후 문제가 계속되어 사건화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화함.

[예시] 초기 개입 편지

안녕하십니까.

‘더안전한서튼협력체’는 모든 반사회적 행위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 중 하나는 반려인들이 자신의 개뿐 아니라, 보다 폭넓은 공동체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즐거운 반려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당신이 (언제-일시)에 (어디-위치)에서 (누구-개의 품종과 이

름)가 일으킨 사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지주를 포함한 다수의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는 _____에게 공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은 사회적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당신의 개의 문제로 인해 당신의 임대 상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따라, _____가 당신에게 7 영업일 이내에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당신은 결국 '허용행동계약'에 서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개의 행동이 지역의 '더안전한이웃팀'에 의해 면밀하게 관찰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것이든 논의하고 싶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사회적행위대응팀 드림

London Borough of Sutton
Chief Executive's Group
Warren Shadbolt, Exec Head of Community Safety & Youth Engagement



ZT – Sutton Police Station

To the owner of

Anti-Social Behaviour Unit
Sutton Police Station,
6 Carshalton Road
Sutton
Surrey
SM1 4RF

Telephone: 0208-649-0660
Date:

Dear (Name of Owner of Dog)

With a RSL

The Safer Sutton Partnership is targeting all forms of Anti-Social Behaviour. One of its objectives is to work with dog owners so they may enjoy their dog/s in such a way that owners are aware of their responsibilities to their pet and the wider community.

With the above in mind, I would like to bring to your attention an incident that happened with (name and breed) on, (date, time) at (location).

Please note that as we work in partnership with a number of agencies, including Registered Social Landlords. This information has therefore been shared with ----- . You may or may not be aware that as you live in social housing the actions of your dog could have implications in regards to your tenancy. As part of this process, ----- will be contacting you within the next seven working days.

If such behaviour continues, it may eventually result in you being invited to sign an acceptable behaviour contract. The outcome of such action will mean the behaviour of your dog being closely monitored by the local Safer Neighbourhoods Team.

If you wish to discuss any areas of concern, please contact the unit on the number quoted above.

Yours sincerely,

Anti-Social Behaviour Unit



Chief Executive
War Shadbolt

그림 3-4 초기 개입 편지 예시 (출처: “Dealing with irresponsible dog ownership- Practitioner’ s manual” ,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2014. 10. 32p.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64314/dog-ownership-practitioners-manual-annexes-a-d.pdf)

B. 비법적 조치 - 허용행동계약

- 허용행동계약(Acceptable Behaviour Contracts, ABCs)은 문제에 조기 대응하고, 공식화를 피하는 방식으로 반사회적 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역 공무원, 경찰관, 사회적 지지자들이 활용하는 도구임. 허용행동계약은 비구속적(non-binding), 비법적(non-statutory) 합의를 통해 당국이 개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일찍 개입하여 대화를 열고 적절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개인이 인지할 수 있게 함.
- 허용행동계약은 개인에게 여러 조건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료 시 잠재적으로 자동갱신됨.
- 허용행동계약의 위반은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이후 이어지는 공동체보호고지(Community Protection Notice, CPN), 공해및불쾌감유발방지를위한금지명령(Injunction to Prevent Nuisance and Annoyance, IPNA), 또는 개법(the Dogs Act 1871)의 2장에 의거한 관리명령 등의 법적 조치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 허용행동계약은 행동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악화될 여지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적 조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문제가 처음 발생했다거나 반려인이 당국에 협조할 의지를 보이는 등 공무원이 판단하기에 법적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용함.
- 이스트레이 버로우 의회와 햄프셔 경찰(Constabulary, 경찰 혹은 보안대)의 허용행동계약 사례가 공무원 매뉴얼에 실림. 이스트레이 의회는 개입의 최초 시기부터 경찰과 함께 일을 진행하며, 계약서에도 양측 협력기관의 직인을 모두 날인함으로써 절차에 무게를 더함. 이들은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허용행동계약의 이름을 ‘개행동계약’으로 수정하는 것도 고려 중임.

<p>[예시] 허용행동계약</p> <p>개 행동 계약 (Dog Behavior Contract)</p> <p>이 계약은 ____년 __월 __일에 이루어져, 개의 사망 시(혹은 특정 날짜)까지 유효합니다.</p> <p>햄프셔 경찰과 _____(개의 이름, 품종, 마이크로칩 번호 등)의 주인/책임자인 _____ 사이의 계약입니다.</p> <p>_____ (문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사건과 관련하여, 또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_____(개의 이름)의 성격을 고려하여, 나는 다음을 지킬 것에 동의합니다.</p> <p><다음>의 예시</p> <p>- 상기 개는 산책 시나 공공장소에서 항상 적절한 줄을 착용할 것입니다.</p>

- 상기 개는 공공장소에서 항상 입마개를 착용할 것입니다.
- 상기 개는 개에 대한 전적인 관리 책임을 가진 적절한 사람과만 외출할 것입니다.
- 상기 개는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동물등록을 할 것입니다.
- 상기 개는 어떤 식으로든 번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상기 개는 중성화할 것입니다.
- 상기 개는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들)와만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추가> _____(개의 이름)의 주인은 _____가 타인(들)을 괴롭히거나, 놀라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 혹은 줄 수도 있는 행동 및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행동을 하도록 두지 않을 것을 경찰에 약속합니다.

<위반> _____가 이 계약을 통해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행동을 할 경우, 경찰은 그것이 반사회적 행위에 준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공격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여겨, 다음과 같은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1. 경찰이 치안관사에게 요청하여 개에 대하여 조건(명령)이나 안락사 명령을 요청함.
2. ‘위험한개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됨.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선언]

나는 이 계약의 의미와 위반 시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실하게 이해 하였습니다.

이름 서명 날짜

경찰

이름 서명 날짜

관계 당국 공무원

이름 서명 날짜

기관 문서 번호 :



DOG BEHAVIOUR CONTRACT

This contract is made on ***** until (specify either a date or the death of the dog)

Between Hampshire Constabulary and *****, the owner/ keeper of ***** (specify name, breed and microchip number if applicable).

Address:

In respect of the following occurrence(s), (specify ***** and in respect of the probable dangerous nature of ***** (dog) behaviour, I hereby agree the following in respect of future conduct (specify conditions agreed, examples given below).

- The said dog will always be kept on an appropriate lead when being walked OR in a public place.
- The said dog will be muzzled with an appropriate muzzle at all times when in a public place.
- The said dog will never be taken out other than in the presence of an appropriate person who has full control of the dog.
- The said dog will be micro-chipped and registered as such.
- The said dog will not be bred from in any circumstances.
- The said dog will be neutered.
- The said dog will not be left alone with children at any time.

Further the owner(s) of ***** enter into a commitment with the Police not to allow ***** to act in a manner that causes or is likely to cause harassment, alarm or distress to one or more persons not in the same household or commit an act of aggression against any person or animal.

그림 3-5 허용 행동 계약 예시 (1/2) (“Dealing with irresponsible dog ownership- Practitioner’ s manual” ,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2014. 10. 32p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64314/dog-ownership-practitioners-manual-annexes-a-d.pdf)

Breach: If ***** does anything which has been agreed it will not do under this contract and the police consider that the act amounts to anti-social behaviour or an act of aggression to another person or animal, the following courses of action may be taken:

1. The police will make an application to the Magistrates Court for conditions to be placed on the dog, or for a Destruction Order for the dog.
2. Proceedings will be taken under the Dangerous Dog Act 1991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DO NOT SIGN THIS DOCUMENT IF YOU DO NOT AGREE TO THIS UNDERTAKING

DECLARATION

I confirm that I understand the meaning of this contract and that the consequences of breach of the contract have been explained to me.

PRINTED NAME
SIGNATURE
DATE

POLICE OFFICER

PRINTED NAME
SIGNATURE
DATE

PARTNER OFFICIAL

PRINTED NAME
SIGNATURE
DATE

Agency Reference Number:

그림 3-6 허용 행동 계약 예시 (2/2) ("Dealing with irresponsible dog ownership- Practitioner' s manual" ,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2014. 10. 33-34p.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64314/dog-ownership-practitioners-manual-annexes-a-d.pdf)

C. 법적 조치

○ 공동체보호고지 (Community Protection Notice)

- 문제 행위가 지속적(persistent, 2회 이상 발생)이고 해로운(detrimental, 누군가 피해를 입은) 경우 먼저 서면경고(written warning)를 발부하며, 이때 경고의 내용은 대부분 행

동을 바꾸도록 권고하는 데 그침.

- 서면경고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공동체보호고지(Community Protection Notice, CPN)를 발부하며, 이 경우 행동을 바꿔야 할 의무를 부과함.
- 고지를 이행하지 않음(Not complying with the notice) 죄목으로 기소 가능.
- 기소가 이루어지면, 검사는 범죄행위금지명령(Criminal Behaviour Orders, CBO)을 함께 발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음.
- 대개 서면경고-고지(CPN)의 순서를 따르지만, 예를 들어 개가 공원에서 하루에 여러 명을 공격하는 식으로, 통상적인 경고 대상 문제성을 상회하는 상황을 일으킬 경우, 곧바로 이 공원에 개를 다시 데려와서는 안 된다는 고지를 발부할 수도 있음.

공동체보호고지 (CPN)		
	설명	부가 정보
개념	반사회적 행위를 중시시키기 위해 발급하는 낮은 수준의 고지	무책임한 반려인을 규제하기 위함. 예) 통제 밖에 난 개(dog out of control), 계속되는 하울링 등
발부 주체 ⁷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 (Police officers) ● 공동체지원경찰관 (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s, 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우) ● 지역 공무원 ● 사회적 지주⁷³⁾ (Registered social landlords, 의회에서 지정한 경우) 	개 전문 공무원이 아닌 경우 개 전문 공무원/연락관(DLO)이나 외부 기관과 논의해야 함. 동물행동훈련회(The Animal Behaviour and Training Council)나 켄넬클럽공인강사(The Kennel Club Accredited Instructors)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발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들에게 '위해(detrimental effect)를 끼치는 행위 ● 반복, 지속되는 행위(persistent) ● 무책임한 행위 	이 기준은 광범위한 사례에 적용되며, 개를 노상에 방치하거나, 개가 불러도 반응하지 않거나 공격성이 우려되는 것 같은 문제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포함함.
발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6세 이상의 개인 ● 단체(a body) 	만 16세 이하의 경우 비법적 대응을 우선 고려하며, 필요할 경우 부모/소유자에게 고지를 발부함.
사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경고를 통해,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 <p>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공무원이 설명해줄 수 있도록 함. 또한 행정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단계로 기능함.</p>	반려인이 잠재적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경우, 먼저 문제에 대응할 기회를 줌. 예) 개가 분리불안으로 적절한 반응을 못 할 경우, 주인이 반려견 훈련을 시도하도록 해줌.
발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에게 특정 사항을 지키도록 요구 ● 개인에게 특정 사항을 금지시킴 ● 개인이 어떤 결과를 위한 단계를 밟도록 함. <p>요구 사항은 합리적이어야 함. 비합리적일 경우 항소 이유가 됨.</p>	<p>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칩, 중성화, 입마개, 목줄/몸줄 ● 반려견 훈련교육 이수 ● 반려견 행동교정 시도 ● 집 앞에 경고판 달기 <p>요구 사항이 적절한지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해야 함.</p>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이 고정벌금고지(Fixed Penalty 	벌금 부과는 개나 반려인의 문제 해결에

조치	<p>Notice) 100파운드(약 15만원)를 부과</p> <p>또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에 대한 기소⁷⁴⁾를 진행 ● 위반은 형법 상 범죄에 해당함. <p>개인은 최대 2,500파운드(약 370만원), 단체는 최대 20,000파운드(약 3천만원)의 벌금 부과</p>	<p>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는 않음.</p>
압수 여부	<p>위반을 사유로 법원이 개를 압수할 수 있음.</p>	<p>개를 압수하는 것은 다른 압수와는 다른 심각한 대응 단계이며,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함. 공동체보호고지의 낮은 수준 단계에서는 압수까지 잘 가지 않음.</p>
항소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 후 21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음. ● 발급 대상이 된 행위가 일어난 적이 없거나, 요구 사항이 비합리적인 경우 등에는 항소할 수 있음. 	<p>공공 안전이 가장 중요하나, 공무원들은 요구 사항이 동물복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함.</p>

표 3-12 공동체보호고지 (CPN)

72) Anti-social Behaviour, Crime and Policing Act 2014

<p>Anti-social Behaviour, Crime and Policing Act 20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4 Community Protection - Chapter1 Community Protection Notices - 53 Authorised Persons 	<p>반사회적행위및범죄단속법 20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장 공동체보호 - 제1부 공동체보호고지 - 제53조 권한이 있는 사람
<p>(1) A community protection notice or a fixed penalty notice may be issued b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a constable; (b) the relevant local authority (see subsections (2) and (3)); (c) a person designated by the relevant local authority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p>(2) For a community protection notice, “the relevant local authority” means the local authority (or, as the case may be, any of the local authorities) within whose area the conduct specified in the notice has, according to the notice, been taking place.</p> <p>(3) For a fixed penalty notice, “the relevant local authority” means the local authority(or, as the case may be, any of the local authorities) within whose area the offence in question is alleged to have taken place.</p>	<p>(1) 공동체보호고지 또는 고정벌금고지는 다음 사람에 의해 발부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경찰관 (치안 관련 공무원) (b) 관련 지역 공무원 (2항과 3항 참고) (c) 이 업무를 위해 관련 지역 공무원에 의해 지정된 사람 <p>(2) 공동체보호고지에 있어, “관련 지역 공무원”이란, 고지에 특정된 행동이 그 사람의 관할 안에서 일어난 지역 공무원(혹은, 경우에 따라, 기관들)을 말함.</p> <p>(3) 고정벌금고지에 있어, “관련 지역 공무원”이란, 혐의를 받는 범법행위가 그 사람의 관할 안에서 일어났다는 진술(의혹)이 있는 지역 공무원(혹은, 경우에 따라, 기관들)을 말함.</p>

73) 사회적 지주 (Registered social landlords) : 영국 정부가 시민들의 주택마련자금(대출금)의 규모를 줄여 주택 자가소유율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정부 주택공동소유 정책에서, 시민과 함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역할을 맡은 이를 ‘사회적 지주’라 함. 이들은 정부지원주택의 공동소유자 격으로, 거주 시민에게는 마치 임대주택의 집 주인 내지는 관리인과 비슷한 영향력을 갖게 됨.

74) 경찰관이 수사내용과 함께 기소를 요청하면 검사가 기소를 진행함. 영국은 경찰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며, 기소만을 전담하는 왕립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을 설립하여 이곳의 검사와 경찰이 협력하여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함. 검사는 경찰과의 관계에서 설명(inform), 상담(consult), 조언(advice)을 진행.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블로그 참고.

공해및불쾌감유발방지를위한금지명령 (IPNA)		
	설명	부가 정보
개념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하고 발생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민법(civil court) 상의 명령	보다 높은 수준의 문제를 다룸. 예) 개가 다른 동물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것
신청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 (영국교통경찰 포함) ● 지역 공무원 ● 사회적 지주 ● 국민건강공단(National Health Service)의 방어부서(Protect)⁷⁵ 또는 웨일스의 공공보건국(Public Health Wales) ● 환경국(Environment Agency)과 웨일스의 자연자원국(Nature Resources Wales) ● 런던 교통국의 신청이 있을 시 판사가 결정하여 발부⁷⁶) 	개 전문 공무원이 아닌 경우 개 전문 공무원이나 외부 기관과 논의해야 함. 동물행동훈련회(ABTC)나 켄넬클럽공인강사(KCAI), 수의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발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군가에게 공해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하거나 하려고 위협하는 개인 ● 재판부가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이 올바르고 편리할 것이라고 여기는 개인 	공동체보호고지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공무원은 사람이 개입했느냐와 같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음. IPNA는 개가 다른 동물을 공격하거나 위협했지만 위험한개법(Dangerous Dogs Act 1991)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함.
발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0세 이상의 개인 	만 18세 미만의 경우, 소년범대응팀(Youth Offending Teams)과 논의해야 함.
사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가능성이 충분한 근거를 수집하여 사건을 구성함. ● 만 18세 이상의 경우 지방법원(county court)에, 만18세 이하의 경우 소년법원(youth court)에 회부함. 	이 문제로 영향을 받았지만 보고하지 않았거나 다른 기관에 보고했던 여타의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것이 증거 수집에 도움이 됨. 공무원은 결과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지해야 하며, 수의사나 동료들과도 이해를 같이 해야 한다.
발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에게 특정 사항을 지키도록 요구 ● 개인에게 특정 사항을 금지시킴 ● 개인이 어떤 결과를 위한 단계를 밟도록 함. <p>요구 사항은 합리적이어야 함.</p>	<p>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칩, 중성화, 입마개, 목줄/몸줄 ● 반려견 훈련교육 이수 ● 반려견 행동교정 시도 ●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접근 금지 <p>요구 사항이 적절한지에 대해 적절한 전문가와 논의해야 함. 예) 개 관련법 담당 공무원, 동물행동훈련회(ABTC), 수의사, 여타 교육받은 공무원</p>
위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은 법정모독(contempt of court)임. ● 형법 상 범죄는 아님. ● 만 18세 이상의 경우, 최대 2년형 또는 상한액 없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만 18세 이하의 경우, 심각한 경우에는 보호관찰(supervision)이나 소년원 구류(detention)에 처해질 수 있음. 	

항소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의 경우 고등법원(High Court)에 항소 가능 ● 만 18세 미만의 경우 형사법원(crown court)에 항소 가능 	
-------	---	--

표 3-13 공해및불쾌감유발장기를위한금지명령 (Injunctions to Prevent Nuisance and Annoyance)

범죄행위금지명령 (CBO)		
	설명	부가 정보
개념	유죄 선고된 범법자의 반사회적 행위를 중지시키고 방지하며, 발생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명령	심각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와 연루된 반사회적 행위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왕립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 검찰)) 검사들만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청 ● 경찰관, 지역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판사가 결정하여 발부⁷⁷⁾ ● 형법 상의 유죄일 경우, 재판 도중이나 이후에 심리(hearing)가 열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령이 고려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필수적이지는 않음. ● 개와 연루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들이 기소 사건 구성에 도움이 될 것.
발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입증 책임 발생 시, 비록 재판부는 맥켄(McCann) 판결을 따라 형법을 적용할 확률이 높지만. ● 개인이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놀래키거나 곤란에 처하게 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해야 함. <p>그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한개법이나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때는 범죄행위금지명령을 내리지 않음. ● 개가 연루된 사건들이라 함은, 공격 위협, 공격성을 띠도록 훈련된 개, 다른 범죄에 이용된 개, 기타 대응하지 않을 경우 위험할 수 있는 여타의 사건들을 말함.
발부 대상	형법상의 범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사전 조치	만 18세 미만에 적용하려면 검사는 소년범대응팀(YOT)과 논의해야 함. 범죄행위금지명령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나 기관을 고려함.	범죄행위금지명령의 요구 사항은 감독받아야 한다. 범죄행위금지명령이 개와 관련된 반사회적 행위일 경우, 적절한 감독 주체는 연락관 혹은 동물복지 담당 공무원일 것이다.

75) 2019년 11월 현재 NHS의 Protect는 사기대응국(Counter Fraud Authority)으로 재편됨.

76) Anti-social Behaviour, Crime and Policing Act 2014

Anti-social Behaviour, Crime and Policing Act 2014 - Part1 Injunctions - 1 Power to grant injunctions	반사회적행위및범죄단속법 2014 - 제1장 금지명령 - 제1조 금지명령을 승인할 권한
(1) A court may grant an injunction under this section against a person aged 10 or over("the respondent") if two conditions are met.	(1) 판사(법원)는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이 법에 의하여 10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금지명령을 승인함.

발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 명령 ● 요구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적인 훈련 - 조연 구하기 ●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개의 수를 제한하기 ●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의 접근 금지 ● 마이크로칩/중성화/입마개 - 조연 구하기
지속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미만 : 1~3년 ● 만 18세 이상 : 최소 2년부터 평생(무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사항은 지속 기간 내내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행위의 원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함.
위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결 재판(Summary conviction) : 징역 6개월, 상한액 없는 벌금, 또는 둘 다 ● 정식 재판(Indicted conviction) : 징역 5년, 상한액 없는 벌금, 또는 둘 다 	
항소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법원/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⁷⁸⁾ : 형사법원에서 처음부터 재심 진행. ● 형사법원 : 고등법원에 항소 	

표 3-14 범죄행위금지명령 (Criminal Behaviour Order)

공공장소보호명령 (PSPO)		
	설명	부가 정보
개념	공공장소에서의 지속적인 반사회적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명령	공공장소보호명령은 개관리명령(Dog Control Orders, DCOs)을 대체하며, 비슷한 규제를 할 수 있음.
발부 주체 ⁷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trict, county, unitary 당국⁸⁰⁾ ● 런던의회 (Common Council of City of London) ● 런던 버로우(London borough) 의회 ● 실리 제도(Isles of Scilly) 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리명령과는 달리, 교구(parish), 시(town), 공동체(community)의 의회는 더 광범위해진 권한의 특성 때문에 공공장소보호명령을 발부할 수 없음. ● 주도 기관(lead authority)에 의해 공공장소보호명령이 발부된 경우, 이 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명령을 집행할 수 있음.
발부	●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 지역 주민들의	● 이 기준은 개관리명령이 금지하던 것과

77) Anti-social Behaviour, Crime and Policing Act 2014

Anti-social Behaviour, Crime and Policing Act 2014 - Part2 Criminal Behaviour Orders - 22 Power to make orders	반사회적행위및범죄단속법 2014 - 제2장 범죄행위금지명령 - 제22조 금지명령을 내릴 권한
(1) This section applies where a person (“the offender”) is convicted of an offence. (2) The court may make a criminal behaviour order against the offender if two conditions are met.	(1) 이 부분은 어떤 사람(“범죄자/범법자”)이 유죄 판결을 받을 시에 적용됨. (2) 판사(법원)는 두 조건에 해당할 경우 범죄행위금지명령을 발부함.

78) Magistrates Court (치안법원 혹은 경범죄 법원) : 잉글랜드와 웨일스에는 900여 개의 치안판사법원이 있으며, 3인의 비법률전문가인 명예직 치안판사가 합의를 구성하여 주재한다.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는 치안판사 보좌관으로부터 조언을 얻으며, 14세 미만의 아동에 관련된 사건과 14~17세의 청소년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소송사건의 심리를 담당하는 소년법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동법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형사법원(Crown Court)에서 다룬다.

기준	<p>삶의 질에 위해를 끼치고 있거나, 끼쳤거나, 끼칠 것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이 반복적, 비합리적이고 명령에 따른 규제가 정당화될 경우 	<p>같은 행동들을 다루지만, 지역 공무원들이 필요할 경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이 기준은 개관리명령, 어린이 놀이터 부근의 주류관리구역 규정과 같이 한 구역에 대한 다수의 고지 요구를 상쇄함.
사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장(Chief Officer of Police)과 논의 ●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 등 적절한 공동체 대표와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관행을 남길 수도 있지만, 지역 신문에 게시할 필요는 없음. ● 공공장소보호명령이 개나 반려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들과 논의해야 함. ● 켄넬클럽이 관계자들에게 단계적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임. thekennelclub.org.uk/kcdog
발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의 위해 효과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금지 혹은 요구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출입 금지 ● 배설물 수거 요구 ● 목줄 착용 ● 한 사람 당 동반 가능한 개 마리수 제한
지속 기간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장소보호명령 발효 이후 개관리명령은 더 이상 발부 불가 ● 당국은 3년 간 기존의 개관리명령을 공공장소보호명령으로 전환하게 됨.
사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어도 3년 마다 공공장소보호명령에 대한 내부 검토를 통해 갱신할지, 폐기할지, 대체할지 결정함. ● 표지판을 세우는 것이 좋음. ● SoS⁸¹)가 공공장소보호명령을 규정집으로 펴낼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국은 현존하는 요구 사항들이 개 관리를 증진하고 목표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음.
위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결 심판 - 제3수준의 벌금(1,000파운드) ● 고정벌금고지 - 최대 100파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리명령 때와 같으나, 벌금 상한액이 이제 100파운드로 상향됨.
항소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가 6주 안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장소보호명령에 대해서는 명확한 항소 절차가 마련돼 있음.

표 3-15 공공장소보호명령 (Public Spaces Protection Orders)

79) Anti-social Behaviour, Crime and Policing Act 2014

<p>Anti-social Behaviour, Crime and Policing Act 20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4 Community Protection - Chapter2 Public Spaces Protection Orders - 59 Powers to make orders 	<p>반사회적행위및범죄단속법 20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장 공동체 보호 - 제2부 공공장소보호명령 - 제59조 명령을 내릴 권한
<p>(1) A local authority may make a public spaces protection order if satisfied on reasonable grounds that two conditions are met.</p>	<p>(1) 지역 공무원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공공장소보호명령을 발부함.</p>

80)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구성 국가들로 나뉜다. 잉글랜드는 크게는 9개의 지역(region)으로 나뉘고 각 지역은 다시 총 48개의 주(county)와 326개 구(district)로 나뉜다. 웨일스는 22개의 주(unitary authority)로 나뉘고, 스코틀랜드는 32개의 주(council area), 북아일랜드는 26개 구(district)로 나뉜다. 위키백과 참고.

81) Secretary of State (장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5) 대응 결과

1) 위험한개법

○ 징역형

- 반려인의 통제 미흡으로 인한 개의 공격으로 누군가 사망했을 경우 최고 징역 14년, 부상입었을 경우 최고 징역 5년, 안내견 등의 사역견이 공격당했을 경우 최고 징역 3년

○ 벌금형 및 사회봉사 명령

- 공격에 대한 우려를 하게 만든 것과 같이 ‘위험한개법’이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가장 낮은 처벌의 수위는 주급의 50% 수준의 벌금과 약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혐의없음’ 판결 제외)

○ 개에 대한 안락사 명령

○ 개에 대한 관리 명령

○ 동물소유금지 명령

2) 반사회적행위및범죄단속법

가. 비법적 조치 결과

○ 서면

시정 권고를 담은 경고 성격의 서면

○ 허용행동계약

문제행동 시정 방안을 담은 내용의 계약을 경찰과 체결.

나. 법적 조치 결과 (반사회적행위및범죄단속법)

○ 마이크로칩(2016년 4월 6일부터 의무), 중성화, 입마개, 목줄/몸줄

○ 반려견 훈련교육 이수

○ 반려견 행동교정 시도

○ 집 앞에 경고판 달기

○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의 접근 금지

○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개의 수 제한

○ 특정 장소에 한 사람 당 동반 가능한 개 마리수 제한

○ 개에 대한 압수 등.

(6) 사례

반사회적 행위	문제점	대응 방법
이웃의 개가 옆집에 사람이 출입하는 등의 경우에 반복적으로 짖고 펜스에 달려들 (주변의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 ● 으르렁거림, 펜스에 달려드는 등 공격적 행동 동반 ● 이웃이 자신의 정원을 이용할 때 불편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보호고지 발부 (비공식적 대화를 통한 변화 유도 실패 시)를 통해 다음을 요구 가능 ● 개의 행동 수정을 위한 과정 이수 ● 개가 정원에 있을 수 있는 날의 수 혹은 시간대 제한 ● 이웃과의 펜스가 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의 탈출 방지를 위해 펜스 강화
한 집에서 너무 많은 수의 개를 키움 (주변의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니멀호당의 가능성 ● 동물복지 저해 우려 ● 소음, 악취 등 공해문제 발생 ● 개들 간의 싸움 발생 가능성 ● 적절한 케어 및 관계의 부재로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행동계약 작성 ● 공동체보호고지 발부 ● 공해및불쾌감유발방지를위한금지명령 발부 ● 공해및불쾌감유발방지를위한금지명령 발부를 통해 다음을 요구 가능 ● 공격적인 개(들)의 행동 수정을 위한 과정 이수 ● 한번에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개의 수 제한 ● 사유지 경계의 펜스 강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 일부 혹은 전체 개의 압수 ● 해당 개들은 입양가거나 안락사될 수 있음.
개를 풀어놓아 다른 이들을 위협함 (자신의 개를 목줄을 채워 산책시키다가 개가 공격당할 뻔 한 주민의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안전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행동계약 작성 (경미한 사건이었을 경우) ● 공동체보호고지 발부 (반려인의 태도가 합리적이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경우 등) ● 공해및불쾌감유발방지를위한금지명령 발부 (비슷한 문제가 계속된 경우)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공무원이 사안에 따라 방법 선택 ●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 개가 압수될 수 있고 ● 반려인은 일정 기간 동안 개를 키우지 못할 수 있음
개인이 너무 많은 수의 개를 산책시키는 경우 (위협 또는 불편을 느낀 주민이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들은 6마리를 초과하는 경우 개인이 한꺼번에 산책시키기 어렵다고 조언하고 있음. ● 개인이 다수를 통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보호고지 발부 (6마리 초과하는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이 한 두 명일 경우 각 개인에게 발부) ● 공공장소보호명령 발부

	<p>어려움으로 인한 문제(개 물림, 공격적 행동으로 인한 위협, 개들 간의 싸움 등) 발생 가능</p>	<p>(지역의 인구가 상당하여 6마리 초과하는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이 다수일 경우)</p> <p>위반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장소보호명령을 어길 경우 고정벌금고지를 통해 최대 100파운드의 벌금 낼 수 있음. ● 치안판사법원에 기소될 경우 제3 수준의 벌금(1,000파운드)에 처해질 수 있음.
<p>개가 적법한 방문자를 위협하는 경우 (사회복지사가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경찰관 등 업무 상 해당 집을 방문해야 하는 사람을 위협하여 업무를 방해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다치게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 교육 등의 비법적 방법 강구 (처음 일어난 일인 경우) ● 공동체보호고지 발부 (문제성의 수준은 낮으나 향후 문제가 심해질 수 있는 경우) ● 공해및불쾌감유발방지를위한금지명령 발부 (부상을 입힐 위험이 있고, 반려인이 별로 개입 의지 없이 무관심한 경우) <p>를 통해 다음을 요구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법한 방문자들이 올 경우 개를 잠시 옮겨둘 다른 곳을 마련하도록 함. ● 개의 사회화 교육을 시켜 문제행동을 고치도록 함.
<p>개가 집 앞을 지나는 행인을 위협하는 경우 (이웃이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의 영역보호성과 공격성이 강화된 상태일 수 있음. ● 업무의 일환으로 우체부, 택배 배달원, 가스검침원 등 업무 등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낌. ● 개들이 앞마당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두는 경우 지나는 이웃이 공격당할 위험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한개법(DDA 1991)에 따라 '위험하게 통제 밖에 난 개(dogs dangerously out of control)로 규정되어 형사 기소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범죄행위금지명령(Criminal Behaviour Order)을 발부할 수 있음.
<p>개가 주로 특정 장소에서 행인을 위협하는 경우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주는 부모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향해 짖고 돌진하려는 개를 데리고 다녀서 다른 학부모 혹은 교사가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를 포함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걱정시키는 명백한 위해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보호고지 발부를 통해 다음을 요구 가능 ● 접근 금지 (예. 학교가 여는 시간에 교문으로부터 몇 미터(킬로미터) 반경 이내에 개를 데려오지 못하게 함)
<p>개인이 개가 다른 사람을 위협하도록 방지하는 경우 (공원에서 위협받은 주민이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에는 맹견 혹은 그 믹스견을 이른바 '지위를 보여주는 개(status dog)'로서 데리고 다니면서 힘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주로 갱 멤버나 청소년)로 인한 문제가 존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한개법에 따라 형사 기소됨. ● 경찰관은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개의 관리 이슈를 장기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범죄행위금지명령(CBO)을 발부하도록 검사에게 요청해야 함.

	<p>● 의도적으로, 혹은 알콜이나 약물의 영향 아래에서 개가 배회하도록 방치하는 행동양상은 책임 있는 반려인의 자세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p>	
--	---	--

표 3-16 반사회적행위및범죄단속법 (Anti-social Behaviour, Crime and Policing Act 2014)의 집행주체를 위한 공무원 매뉴얼 ‘무책임한 반려인 대응책 Dealing with irresponsible dog ownership’에 제시된 사례 및 대응 방법

3. 미국 (캘리포니아 주)⁸²⁾

(1)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기에 앞서

○ 미국의 개물림 사고 및 문제행동 대응 기초

미국은 주법, 도시 또는 카운티의 조례 등을 통해 개물림 사고와 관련하여 ‘위험한 개 (dangerous dog)’에 초점을 두기보다, 반려인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미국의 개물림 사고 및 문제행동 대응 특징

미국의 개물림법은 배상 책임의 정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이는 원 바이트 법칙 (One bite rule), 개물림 엄격책임법(Dog bite strict liability law), 혼합형(Mixed dog bite law)으로 나뉘며 각각은 다음과 같음

- 원 바이트 법칙 (One bite rule): 개의 소유자가 동물의 위험하거나 공격적인 성향에 대해 알고 있거나 과거 사건이 있었던 동물로 인한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규칙. 따라서 개물림 사고 전적이 없고, 개의 소유자가 개의 공격성을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한 첫 번째 개물림 사고에서는 소유자의 책임이 면제됨.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개의 소유자가 개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제시함으로써 책임을 입증해야함.
- 개물림 엄격책임법(Dog bite strict liability law): 개물림 사고에 대해 개의 소유자에게 엄격 책임을 부여하여, 사건 발생시 개의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함.
- 혼합형 (Mixed dog bite law): 원 바이트 법칙과 엄격책임법을 결합한 중간 단계의 개물림 책임법. 원칙적으로는 원 바이트 법칙을 적용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엄격책임법을 적용하여 손해 배상을 충분히 하도록 함.

82) 참고자료 : 국회도서관(2019), 개물림사고 방지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99호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의 개물림사고 방지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엄격책임법(dog bite strict liability Law) 조항을 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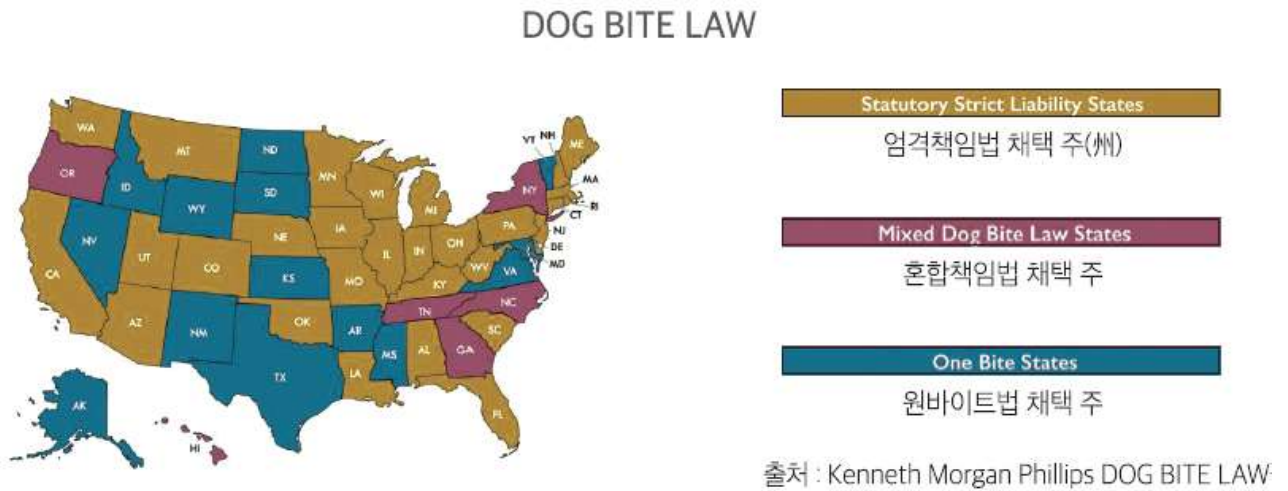


그림 3-7 미국의 개물림 관련법 구분 (국회도서관 (2019), 개물림사고 방지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99호)

(2) 미국의 개물림 사고 대응 체계

1) 대응 주체

- 경찰관
- 지역공무원
- 검사
- 판사
- 기타 - 반려동물 행동전문가 등

2) 주요 대응 근거

가. 식품농업법 (Food and Agricultural Code)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식품농업법’ 제14편, ‘개에 대한 규제와 등록 규정’에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Potentially dangerous dogs)’와 ‘포악한 개(Vicious dog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⁸³⁾ Potentially dangerous dogs	포악한 개 ⁸⁴⁾ Vicious dogs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발이 없었는데 3년 내에 2회 이상 집 밖에서 다른 사람이 상해를 막기 위해 방어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 개 - 도발이 없었는데 상해를 입힐 정도로 사람을 문 개 - 가축을 물어서 죽이거나 상해를 입게 한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발이 없었는데 사람을 공격하여 중상을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개 - 투견 목적으로 번식 및 사육되었거나 훈련된 개 - 과거 또는 현재 Los Angeles County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Potentially dangerous dog) 명단에 있는 개 또는 다른 관할구역에서 위험한 개 또는 포악한 개 (dangerous or vicious dog)로 지정이 되었으며, 소유자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10.37.020조에 명시된 행동을 보이거나 또는 Section 10.37.130에 의한 조건, 행정 처분, 법원 명령, 또는 다른 관할권에 의한 규제들을 위반했을 경우
--	--

표 3-17 식품농업법 제 14편에 따른 위험한 개 및 포악한 개의 정의

- 심각한 상해 (Severe Injury)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심각한 상해 (Sever Injury)”는 근육 파열, 여러 번의 봉합과 교정 및 재건을 위한 성형 수술을 요구하는 외형을 손상시키는 열상 등을 유발하는 모든 신체적인 손상을 의미함⁸⁵⁾.
- 각각의 시나 카운티에서 동물을 관리하는 “Animal Control department”를 운영함. “동물 관리부 (Animal control department)”는 카운티 또는 시의 동물을 관리하는 부서를 의미함. 만약 도시 또는 카운티에 동물관리부가 없다면, 동물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부서를 의미함 ⁸⁶⁾.
- “몰수(impounded)”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또는 포악한 개를 발견한 시 또는 카운티의 공공 동물 보호소, 동물관리부 또는 그 시 또는 카운티의 동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함⁸⁷⁾.
- 이 장(Chapter)은 인증된 쉼벨, 휴메인 소사이어티 보호소(Humane society shelters),

83) California Food & Agriculture Code, Division 14, Chapter 9. Potentially Dangerous and Vicious dogs.§ 31602. Potentially dangerous dog defined

84) California Food & Agriculture Code, Division 14, Chapter 9. Potentially Dangerous and Vicious dogs.§ 31603. Vicious dog defined

85) California Food & Agriculture Code, Division 14, Chapter 9. Potentially Dangerous and Vicious dogs.§ 31604. Severe injury defined

86) California Food & Agriculture Code, Division 14, Chapter 9. Potentially Dangerous and Vicious dogs.§ 31606. Animal control department defined

87) California Food & Agriculture Code, Division 14, Chapter 9. Potentially Dangerous and Vicious dogs.§ 31607. Impound defined

동물 관리 시설 또는 수의사,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또는 경관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 개에는 적용되지 않음⁸⁸⁾.

미국 캘리포니아주 식품농업법 제14편 '개에 대한 규제와 등록 규정'의 주요 내용

1. 사고 발생 신고 접수, 조사 및 신고 절차⁸⁹⁾

1) 만약 동물관리부 직원 또는 법집행관이 조사 후, 개가 잠재적으로 위험하거나 포악하다고 생각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때, 공공동물 보호소나 동물관리부의 최고책임자, 최고책임자의 직접적인 관리자 또는 지역의 법집행기관의 최고책임자나 최고책임자에 의해 지정된 자는 개가 소유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곳의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또는 포악한 개로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청원함. 이 절차는 민사사건으로 제한됨.

2) 시나 카운티는 이 장에 따라 청원 처리를 위한 행정청문절차를 실행함. 가능한 시간에, 시민으로부터 받은 모든 고소는 동물관리부 또는 법집행기관에서 상당한 근거를 찾기 위한 증거의 기반으로 역할 하며, 고소인(원고)에 의해 선서되고, 입증되며, 청원서에 첨부됨.

3) 공공 동물 보호소 또는 동물관리부의 최고책임자 또는 지역 법집행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상급 법원에서 행정 청문회가 진행될 것임을 통지해야 하며, 그 자리에서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가 왜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또는 포악한 개로 신고받으면 안 되는지 설명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

4)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문 통지 및 청원 서류 사본을 개인적으로 또는 특급 우편으로 제공받으며, 등기우편 수령 통지서가 요구됨. 청문은 개의 관리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된 후 평일 기준 5-10일 내에 신속히 열림.

5) 청문은 일반인에게 공개됨. 법원은 사고 보고서와 증인의 진술서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받고, 개시(discovery)의 범위를 제한하여, 기록 또는 증언을 위한 시간을 줄일 것임.

배심원은 없음. 법원은 개가 잠재적으로 위험하거나 포악한 개라는 증거가 우세함을 확인하면, 이 장에서 허가하는 다른 명령들을 내림.

2. 심리를 앞둔 동물의 포획 및 압수⁹⁰⁾

1) 동물관리부 또는 법 집행관이 공공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88) California Food & Agriculture Code, Division 14, Chapter 9. Potentially Dangerous and Vicious dogs. § 31609. Nonapplication of act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리 예정중인 개를 포획 및 압수할 수 있음. 만약 개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나 포악한 개로 판결될 때에는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포획과 그에 따른 관리 비용 부담에 책임이 있음.

2) 개가 압수되었고, 공공의 안전에 반하지 않는다면, 동물관리부 책임자는 개의 소유자의 부담 하에 동물관리부의 승인을 받은 동물 또는 수의학 시설에 격리하는 것을 허용함.

3. 판결, 통지 및 상소⁹¹⁾

1) 상소 신청

- 청문 후에,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판결과 명령을 서면으로 개별적 또는 법원에서 배송비를 지불한 특급 우편으로 통지받음. 만약 개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또는 포악한 개로 판결되었다면,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공 동물 보호소, 동물관리부, 또는 지역 법집행기관의 총책임자가 설정한 시간계획표에 따라 판결 이후 30일 이내 또는 우편으로 통지한 후 35일 이내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등록 및 예방 접종을 준수함(§ 31641*),

- 만약 청원자,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결정통지문 발송 이후 5일 이내 법원 또는 원심(제1심)의 결정에 상소함. 상소 비용은 Government Code 70626절 (b)에 명시된 비용으로서 법원 서기에 지불함. 31621절에 따른 원심(제1심)이 관할구역의 법원 외에서의 청원 이전이라면, 상급 법원에 상소함. 만약 원심이 상급 법원에서 진행되었다면, 상소는 청원을 들은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맡음. 청원자,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도 상소장을 개별적으로 또는 배송비를 지불한 특급 우편으로 제공해야 함.

* 등록 그리고 예방 접종;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지정 기록; 추가비용 (§ 31641)

모든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는 알맞게 등록되고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함. 등록을 담당하는 관청은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판결에 동의한 후 또는 법원에서 지정을 결정한 이후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지정 기록을 수록함. 시 또는 카운티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지정 기록 유지를 위한 주기적 등록 비용과 함께 잠재적 위험한 개 비용을 부과함.

2) 상소 심리 진행

- 상소를 공판하는 법정은 심리를 배심원 없이 처음부터 진행하고, 잠재적 위험 및 포악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제시된 증거에 따라 이 장에서 승인된 명령을 내림. 청문은 마찬 가지로, 31621절에 명시된 지정된 기간 내에 진행됨. 법원은 사고 보고서와 증인의 진술서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증거들을 받고, 개시(discovery)의 범위를 제한하여 기록 또는 증언을 위한 시간을 줄일 것임. 판결은 증거의 우세에 따라 결정됨. 만약 개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또는 포악한 개로 판결되었다면, 법원은 판결 이후 30일

이내 또는 우편으로 통지한 후 35일 이내에 이 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준수하기 위한 시간계획표를 설정함.

- 원심 또는 상소 심리를 진행하는 법원은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불참하더라도 그들에게 찬성 또는 반대하는 모든 쟁점들을 결정함.

- 상소 심리에서의 판결이 모든 당사자에 대해 최종 확정 판결임.

4. 판결 결과 및 관리

1)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판결 결과

- 등록, 예방 접종⁹²⁾

모든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는 알맞게 등록되고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함. 등록을 담당하는 관청은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판결에 동의한 후 또는 법원에서 지정을 결정한 이후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지정 기록을 수록함. 시 또는 카운티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지정 기록 유지를 위한 주기적 등록 비용과 함께 잠재적 위험한 개 비용을 부과함.

-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유지와 제거⁹³⁾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유지 내에서 탈출하거나 어린 아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실내에 있거나, 안전하게 울타리가 설치된 마당에 있어야 함.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가 소유자의 사유지를 벗어날 때에는 적당한 길이의 견고한 목줄을 착용하며, 개를 통제할 수 있는 성인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함.

- 사망, 판매, 이동 또는 영구적 제거 신고⁹⁴⁾

만약 개가 죽거나, 팔리거나, 이동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거주지에서 영구적으로 제거된 경우,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의 소유자는 동물관리부에 변경된 조건과 새로운 위치에 대해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지정 해제⁹⁵⁾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로 지정된 이후 36개월 이내에 31602절에 제시된 행동을 추가적으로 보인 사례가 없는 경우,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지정에서 해제됨.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반려견 훈련 같은, 상황의 변화나,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것을 동물관리부에 증명한다면 지정 36개월 이내에도 지정해제될 수 있음.

2) 포악한 개 판결 결과⁹⁶⁾

- 포악한 개 판결을 받은 개는 발견되고, 놓아줄 경우 공중 보건, 공공의 안전, 복지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동물관리부에 의해 처분됨.

- 만약 포악한 개 판결을 받은 개가 처분되지 않는다면, 사법기관은 공중 보건, 안전 복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부과함.

- 위에서 요구되는 모든 울타리를 친 장소는 31605절*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울타리를 친 장소(Enclosure)의 정의 (§ 31605)

‘울타리를 친 장소’는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잡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다른 방안과

함께, 어린 아이의 출입을 막고, 포악한 개를 가두는 울타리 또는 그러한 구조를 의미함. 울타리를 친 장소는 개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제작되어야 함. 동물은 형법 597t절에 따라 수용됨.

- 포악한 개로 판결된 개의 소유자는 개의 소유 또는 양육권을 갖는 것이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될 경우, 2조(31621절) 하에 3년간 어느 개라도 소유, 사육, 관리 또는 양육하는 것이 금지됨.

3) 벌금 및 제한⁹⁷⁾

이 장을 위반하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는 \$500을 넘지 않는 벌금이 부과됨. 이 장을 위반하는 포악한 개는 \$1000을 넘지 않는 벌금이 부과됨. 모든 벌금은 이 장의 수행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시 또는 카운티에 납부됨.

5. 예외 사항

1) 이 장(Chapter)은 인증된 쉼터, 휴메인 소사이어티 보호소(Humane society shelters), 동물 관리 시설 또는 수의사, 또는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또는 경관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 개에는 적용되지 않음⁹⁸⁾.

2)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또는 포악한 개 판결되지 않는 사유⁹⁹⁾

- 부상 또는 상해가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유지 내의 고의적인 무단 침입 또는 다른 불법 행위 중에 발생했거나, 개를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거나, 학대하거나 폭행을 하는 중이었던 경우, 또는 범행을 저지르려 하거나 저지르는 중이었던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또는 포악한 개로 판결되지 않음. 개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정당하지 않은 공격 또는 폭행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면,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또는 포악한 개로 판결되지 않음. 가축의 부상 또는 상해가 개를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거나 학대를 하거나 폭행을 하는 중에 일어난 경우,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또는 포악한 개로 판결되지 않음.

- 가축의 부상 또는 상해가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유지 내에서 또는 통제 하에 사냥, 목축, 또는 포식자를 막는 일을 하는 중에 일어난 경우, 그리고 개가 가한 상해가 그 일을 맡은 개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역할인 경우 개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또는 포악한 개로 판결되지 않음.

89) California Food & Agriculture Code, Division 14, Chapter 9. Potentially Dangerous and Vicious dogs. § 31621. Hearing on declaration of dog as potentially dangerous or vicious

90) California Food & Agriculture Code, Division 14, Chapter 9. Potentially Dangerous and Vicious dogs. § 31625. Seizure and impoundment pending hearing

91) California Food & Agriculture Code, Division 14, Chapter 9. Potentially Dangerous and Vicious dogs. § 31622. Determination and orders; notice; compliance; appeal, §31623. Failure of owner or keeper to appear; decision. §31624. Finality of determination

92) California Food & Agriculture Code, Division 14, Chapter 9. Potentially Dangerous and Vicious dogs. § 31641. Licensing and vaccination; potentially dangerous designation maintained in registration records; additional fee

93) California Food & Agriculture Code, Division 14, Chapter 9. Potentially Dangerous and Vicious

나. 민법 (Civil Code)

- ‘민법’ 제4부, 총칙. 1편. 경감. Title 2. 보상적 경감. 2장. 손실 측정. 2조에서 피해자에 대한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에 대해 다룸.

<p>‘민법’ 제4부, 총칙. 1편. 경감. Title 2. 보상적 경감. 2장. 손실 측정. 2조 주요 내용</p> <p>1.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 (군 또는 경찰 업무 제외)¹⁰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의 소유자는 개의 포악성 이력 또는 이러한 포악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과 관계없이 공공장소, 소유자의 사유지를 포함한 합법적인 개인의 사유지 내에서의 개에게 물린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짐. 이 절(section)에서 합법적인 개인의 사유지 방문이란, 그 사유지에서 이 주의 법률이나 미국의 우편 규정에 의해 부과된 업무를 수행중이거나, 주인의 초대를 받았을 경우임. - 군이나 경찰 업무에서 개를 이용한 정부 기관에 대하여, 개가 괴롭히거나 자극하는 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서 해당 기관의 직원을 돕는 동안 물린 일이 발생할 경우, (a)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음. (1) 피의자가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붙잡는 상황. (2) 범죄나 범죄 가능성에 대한 수사 상황. (3) 영장 집행 상황. (4) 경찰 또는 다른 사람을 방어하는 상황. - 물린 피해자가 군이나 경찰에서 개를 사용하게 한 행위나 행위에 당사자가 아니거나 참여자 또는 참여자로 의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 위에 나열된 예외 사항은 열거된 경찰 또는 군 업무에 대한 개의 필요와 적절한 사용에 관한 서면 정책을 채택한 군용 또는 경찰견을 이용하는 정부 기관이 근무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

dogs. § 31642. Keeping and controlling potentially dangerous dogs.

94) California Food & Agriculture Code, Division 14, Chapter 9. Potentially Dangerous and Vicious dogs. § 31643. Death, sale, transfer, or permanent removal; notice

95) California Food & Agriculture Code, Division 14, Chapter 9. Potentially Dangerous and Vicious dogs. § 31644. Removal from list of potentially dangerous dogs

96) California Food & Agriculture Code, Division 14, Chapter 9. Potentially Dangerous and Vicious dogs. § 31645. Destruction; nondestruction, conditions; enclosures, § 31646. Prohibition of owning, possessing, controlling, or having custody

97) California Food & Agriculture Code, Division 14, Chapter 9. Potentially Dangerous and Vicious dogs. §31662. Fines; limits, §31663 Fines; payment

98) California Food & Agriculture Code, Division 14, Chapter 9. Potentially Dangerous and Vicious dogs. §31609. Nonapplication of act

99) California Food & Agriculture Code, Division 14, Chapter 9. Potentially Dangerous and Vicious dogs. §31626. Circumstances under which dogs may not be declared potentially dangerous or vicious

2. 소유자의 의무 및 조치¹⁰¹⁾

1) 사람을 문 적이 있는 모든 개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2) 개가 적어도 두 번 사람을 물었을 때, 모든 개인, 지방 검사 또는 시 변호사는 개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 조치는 물림이 일어난 카운티에서 취해져야 함. 법원은 심리 후, 필요한 경우 동물을 그 지역에서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여, 물림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

3) 싸움, 공격 또는 살인을 훈련 받은 개가 사람을 물어 상당한 신체적 부상을 입힌 경우, 지방 검사나 시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개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의 소유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 조치는 물림이 일어난 카운티에서 취해져야 함. 법원은 심리 후, 필요한 경우 동물을 그 지역에서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여, 물림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

4) 이 조는 불법침입자에게 가해진 물림이나, 군이나 경찰 업무에 사용되는 개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물림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 않음.

다. 형법 (Penal Code)

○ 형법. 제1편. 범죄 및 처벌. Title 10. ‘공중 보건 안전에 대한 범죄’에서는 ‘물기’의 정의 및 소유자, 양육자의 과실 및 처벌에 대해 다룸.

형법. 제1편. 범죄 및 처벌. Title 10. ‘공중 보건 안전에 대한 범죄’ 주요 내용

1. 개물림 사고시 식별 정보 및 예방 접종 상태 제공, 벌금, 및 물기의 정의¹⁰²⁾

- 만약 동물을 소유하거나 양육하는 자가, 그 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는 것을 알거나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후 48시간 이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물림을 당한 상대방에게 이름,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등록 번호를 제공해야 함. 물린 당시 동물의 양

100) Civil Code, Division 4. General Provisions. Part 1. Relief. Title 2. Compensatory Relief. Chapter 2. Measure of Damages. Article 2. Damages for Wrongs. § 3342. Dog bites; liability of owner; military or police work excluded; limitations.

101) Civil Code, Division 4. General Provisions. Part 1. Relief. Title 2. Compensatory Relief. Chapter 2. Measure of Damages. Article 2. Damages for Wrongs. § 3342.5. Duty of owner; action; dogs trained to fight, attack, or kill; legislation by city and county

102) Penal Code. Part 1. Of Crimes and Punishments. Title 10. Of Crimes Against the Public Health

육권이나 통제권을 가진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대신 성인 소유자 또는 책임당사자의 신원 확인 또는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함. 만약 동물이 광견병 예방접종을 맞아야하는 경우, 동물을 소유하거나 양육 또는 통제하는 자는 물린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방에게 동물의 예방 접종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10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이 절의 목적상, 접촉이 물린 것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물린 사람의 피부가 찢어지거나 뚫려야 함.

2.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 상해를 일으키는 유해한 동물의 소유자, 양육권 또는 통제권을 가진 사람의 과실 및 처벌¹⁰³⁾

- 만약 성향을 알고 있는 유해한 동물을 소유, 양육 또는 통제하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동물을 풀어놓거나, 일반적인 관리 없이 보관하는 경우, 동물이 관리 없이 자유롭게 있는 동안 그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대처한 사람이 동물에 의해 죽었을 경우, 이는 중죄를 범하는 것임.

- 만약 성향을 알고 있는 유해한 동물을 소유, 양육 또는 통제하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동물을 풀어놓거나, 일반적인 관리 없이 보관하는 경우, 동물이 관리 없이 자유롭게 있는 동안 그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대처한 사람이 동물에 의해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는 경범죄 또는 중죄임.

3. 싸움, 공격 또는 살인을 훈련받은 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태만¹⁰⁴⁾

- 싸움, 공격, 살인을 훈련받은 개를 소유하거나 양육 및 통제하는 자는 경범죄 또는 중죄로 주 교도소에서 2년, 3년 또는 4년동안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그 자가 일반적인 관리를 하지 못한 결과로 개가 두 번 또는 한 번에 상당한 신체적 부상을 입히는 경우, 벌금과 징역 동시에 처함. 그러나, 개의 소유자가 개의 포악성이나 위험한 성향을 몰랐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

- 이 절을 위반한 개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 따라, 법원은 그 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물림이 일어난 당시의 관리 또는 격리 조건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개최함. 법원은 심리 후, 필요한 경우 동물을 그 지역에서 제거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이 조는 개를 도발함으로써 자신의 상해에 기여한 불법침입자에게 가해진 물림이나, 군이나 경찰 업무에 사용되는 개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물림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 않음. 이 항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도

발(Provocation)”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끈에 묶인 개가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위협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상황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4. 호주 (빅토리아 주)¹⁰⁵⁾

- 호주 빅토리아 주의 가축법(Domestic Animals Act 1994, 개정 2017)¹⁰⁶⁾과 가축조례(Domestic Animals Regulations 2015)¹⁰⁷⁾, 동물학대방지법(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ct 1986)¹⁰⁸⁾ 등은 동물의 방치와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들이 시민에게 야기할 수 있는 불쾌함이나 위협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서는 가축법 뿐 아니라, 형법(Crimes Act 1958)¹⁰⁹⁾에서도 범죄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빅토리아 주의 가축법과 가축조례(Domestic Animals Regulation 2015)는 위험한 개(dangerous dog)와 위협적인 개(menacing dog), 그리고 제한품종견/맹견(restricted breed dog)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음. 위험한 개나 위협한 개가 있는 부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주 전역에 걸친 교육,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개물림 예방 교육을 중시하고 있음.

and Safety § 398. Animal bite; provision of identifying information and vaccination status; fine; definition of bite

103) Penal Code. Part 1. Of Crimes and Punishments. Title 10. Of Crimes Against the Public Health and Safety § 399. Mischievous animal causing death or serious bodily injury; negligence of owner or person having custody or control; punishment

104) Penal Code. Part 1. Of Crimes and Punishments. Title 10. Of Crimes Against the Public Health and Safety § 399.5. Dogs trained to fight, attack, or kill causing injury; negligence of owner or custodian; hearing; exceptions

105) 참고자료

① 호주 빅토리아주 웹사이트 agriculture.vic.gov.au/pets/dogs/

② 호주 빅토리아주의 위험한 개 안내문(Factsheet) 'Things you should know - declared dangerous dogs

http://agriculture.vic.gov.au/_data/assets/pdf_file/0005/369509/Factsheet-declared-dangerous-dogs.pdf

106) Domestic Animals Act 1994 :

http://www.legislation.vic.gov.au/Domino/Web_Notes/LDMS/PubLawToday.nsf/a12f6f60fbd56800ca256de500201e54/4dd1540aebd48997ca258427001c5ad9!OpenDocument

107) Domestic Animals Regulations 2015 :

http://www.legislation.vic.gov.au/Domino/Web_Notes/LDMS/PubLawToday.nsf/855772f708126abdc a2576170080bd2d/38b0f5b17f3dfc08ca25842a00038498!OpenDocument&Highlight=0,Statutory,Rule

108)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ct 1986 :

http://www.legislation.vic.gov.au/Domino/Web_Notes/LDMS/PubLawToday.nsf/e84a08860d8fa942ca25761700261a63/7074021126606811ca25849c00286013!OpenDocument&Highlight=0,Act

109) Crime Act 1958

http://www.legislation.vic.gov.au/Domino/Web_Notes/LDMS/PubLawToday.nsf/a12f6f60fbd56800ca256de500201e54/d54d31c542710fa1ca25849b008162a5!OpenDocument

법 구조 및 일부 법문

(1) 반려인의 일반적 책무

- 빅토리아 주에서 개를 키우는 반려인은 가축법 및 관련 규약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be fined)되거나 기소(be prosecuted) 수 있음.
- 마이크로칩핑 (microchipping)
- 동물 등록(registration)
- 동물을 안전하게 소유지 안에 제한하기 (confinement ; 실외에 둘 때는 주로 펜스와 잠금장치가 설치된 뒷마당에 두기, To make sure your dog is properly confined, keep it in the backyard behind a locked gate)
- 방문자가 개의 방해 없이 안전하게 현관문에 이를 수 있게 하기 (visitors must have safe access to your front door, without being stopped by your dog)

한국어	영어 원문
<p>형법 195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범죄 ▶ 9AA 위험한 개, 위협적인 개, 품종규제건과 관련된 범죄와 사법권 ▶ 1. 범죄 • 319A 정의 • 319B 위험한 개, 위협적인 개, 품종규제건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 319C 위험한 개, 위협적인 개, 품종규제건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놓일 경우 ▶ 2.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금지 • 319D 법원이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금지 • 319E 법원 명령에 불응 시의 수색 명령 • 319F 이 법에 의한 수색 명령 신청과 관련된 가축법 조항 • 319G 319D에 의한 명령의 중지 • 319H 319D에 의한 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은 명령의 변경, 중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319I 법원이 319D에 의한 명령을 기타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 • 319J 12개월 이내에 명령의 변경, 중지, 해제를 2번 이상 신청할 수 없음 • 319K 319D에 의한 명령은 연속됨 • 319L 319D에 의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 - 위반 시 벌점 240점(한화로 약 3,200만원) 또는 징역 2년 	<p>Crime Act 195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 I - Offences ▶ Division 9AA - Offences connected with dangerous, menacing and restricted breed dogs and related court powers ▶ Subdivision 1 - Offences • 319A Definitions • 319B Failure to control dangerous, menacing or restricted breed dog that kills person • 319C Recklessness as to whether controlling dangerous, menacing or restricted breed dog may place another person in danger of death ▶ Subdivision 2 - Disqualification of person from owning or being in charge of control of a dog • 319D Court may disqualify person from owning or being in charge or control of a dog • 319E Search warrant for failure to comply with court order • 319F Certain sections of the Domestic Animals Act 1994 apply to search warrant under this section • 319G Order under section 319D may be suspended • 319H Person subject to order under section 319D may apply for variation, suspension or revocation of order • 319I Power of court to vary etc. order under section 319D • 319J Person may not make another application for variation, suspension or revocation of order for 12 months • 319K Orders under section 319D are to operate consecutively • 319L Person must comply with order under section 319D - 240 penalty units or imprisonment for 2 years.

- 동물복지 규정 준수 (health and welfare)
- 동물학대 하지 않기 (mistreat or fail to properly care)
- 동물 이동 규정 준수하기 (dogs on moving vehicles)
- 개똥 치우기 (clean up after your dog)
- 허용 마리 수 이상 키울 때는 허가 받기 (permits are required when there are more than a certain number of cats or dogs kept in a household)
- 주법 뿐 아니라, 주 내 각 시의회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중성화, 키울 수 있는 동물의 마리수 등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만18세 미만(under the age of 18 years)이 소유한 개는 그 부모 혹은 후견인의 개로 간주됨.

한국어	영어 원문
<p>최소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음식, 물, 보금자리, 수의학적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 개를 인도적으로 대해야 한다. • 주인이 아닌 사람이 개나 유기견을 데리고 있을 경우, 가능한 한 빠르게 지역 공무원에게 넘겨야 한다. • 개의 주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개를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 개를 영역 안에 제한해야 한다. - 계속 짖는 것과 같은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 공공장소에서는 (주법 혹은 지역의 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줄을 착용해야 한다. - 위험한 개, 위협적인 개, 제한품종견 등이 지켜야 할 요구 조건들을 지켜야 한다. • 개를 싸움에 이용하거나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하여 쫓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 법적으로 의무화된 곳에서는 마이크로칩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p>Minimum standard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wners must provide their dog with proper and sufficient food, water, shelter and veterinary treatment. • Dogs must be treated humanely. • Found or stray dogs in the possession of a person other than the owner must be handed over to the local Council as soon as possible. • Owners must abide by legislative requirements inclu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gs must be registered with, and identified as required by, the local Council; - dogs must be confined to their property; - dogs must not be allowed to create a nuisance problem e.g. constant barking; - dogs must be leashed in public places (as required by legislation or local laws); - requirements for dangerous, menacing and restricted breed dogs must be complied with. • Dog fighting or luring (with live animals) is illegal. • Dogs must be microchipped where required by legislation.

표 3-18 호주 빅토리아 주 최소한의 동물복지 규정¹¹⁰⁾

110) Code of Practice for the private keeping of dogs (개의 사적 소유에 대한 실행 규약) : 1986년 5월

(2) 관리 대상견의 분류

- 호주 빅토리아 주의 개물림 사고 대응(반려견 안전 관리) 시스템의 관리 대상견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

개념	한국어	영어 원문
위험한 개 (Dangerous dog)	무는 등의 공격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죽음 또는 심각한 부상 ¹¹¹⁾ 을 초래하여 의회에 의해 '위험한 개'로 등록된 개. '위협적인 개'의 주인이 규제 조건을 지키지 못해 2회 이상의 위반 고지를 받았거나, 다른 주 또는 지역의 관련법에 의해 '위험한 개'로 등록된 바 있거나, 규정된 여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의회에 의해 '위험한 개'로 등록될 수 있음.	a dog that the Council has declared dangerous because it has caused the death of or serious injury to a person or animal by biting or attacking. Councils can also declare dogs to be dangerous if the dog is a menacing dog and its owner has received at least 2 infringement notices for failing to comply with restraint requirements, if the dog has been declared dangerous under corresponding legislation in another State/Territory, or for any other reason prescribed
위협적인 개 (Menacing dog)	사람에게 돌진하거나, 사람을 쫓아가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심각하지 않은 부상을 초래하여 의회에 의해 '위협적인 개'로 등록된 개. '돌진'이라 함은 사람의 반경 3미터 이내로 위협적으로 접근한 것을 의미하며, 으르렁거리거나(growl),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거나(snarl), 등털(hackles)을 세우는 것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을 포함함.	a dog that the Council has declared Menacing due to it rushing or chasing a person, or causing a non serious bite injury to a person or animal. "Rush at" means that the dog has approached a person within 3 metres in a menacing manner, this includes displaying aggressive behaviour such as snarling, growling and raising the hackles.
경비견 (Guard dog)	비주거용 부지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두는 개의 경우 '가축법(Domestic Animals Act 1994)'에	a dog that is kept for the purpose of guarding non residential premises is

20일 실행된 동물학대방지법(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ct 1986) 아래의 실행 규약(또는 실행 지침, Code of Practice)으로 동물을 키우는 최소한의 기준과 권고 사항을 담고 있음.

출처 : Victoria State Government Agriculture > Pets > Dogs > Legal requirements for dog owners > Code of Practice for the private keeping of dogs

<http://agriculture.vic.gov.au/pets/dogs/legal-requirements-for-dog-owners/code-of-practice-for-the-private-keeping-of-dogs>

111) 심각한 부상(Serious injury)은 골절, 열상, 신체 일부의 감각이나 기능의 손상 혹은 부분적 손상, 성형수

	의해 자동으로 '위험한 개'에 포함됨.	automatically a dangerous dog under the Domestic Animals Act 1994.
제한품종견/맹견 (Restricted breed dog)	빅토리아주의 '승인 기준 ¹¹²⁾ '에 따라 다음 중의 하나로 판별된 개 - 아메리칸핏불테리어(또는 핏불테리어) - 페로드프레사카나리오(또는 프레사카나리오) - 도고아르젠티노 - 재패니즈도사 - 필라브라질리예로	defined as dogs that fit the Victorian "Approved Standard" for an American Pit Bull Terrier (or Pit Bull Terrier), Perro de Presa Canario (or Presa Canario), Dogo Argentino, Japanese Tosa, or Fila Brasileiro.

표 3-19 호주 빅토리아 주 개물림 사고 대응 시스템의 관리 대상견

(3) 개물림 사고 처벌 수위

한국어	영어 원문
<p>형법 1958</p> <p>▶ I. 범죄</p> <p>▶ 9AA 위험한 개, 위협적인 개, 품종규제견과 관련된 범죄와 사법권</p> <p>▶ 1. 범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9B 위험한 개, 위협적인 개, 품종규제견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소 대상 범죄로서 유죄이며, 5수준의 징역(imprisonment)(10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음. • 319C 위험한 개, 위협적인 개, 품종규제견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놓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소 대상 범죄로서 유죄이며, 6수준의 징역(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음. 	<p>Crime Act 1958</p> <p>▶ Part I - Offences</p> <p>▶ Division 9AA - Offences connected with dangerous, menacing and restricted breed dogs and related court powers</p> <p>▶ Subdivision 1 - Offenc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9B Failure to control dangerous, menacing or restricted breed dog that kills pers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 guilty of an indictable offence and liable to level 5 imprisonment (10 years maximum) • 319C Recklessness as to whether controlling dangerous, menacing or restricted breed dog may place another person in danger of death

술을 요하는 부상 등 의학적 혹은 수의학적 주의를 요하는 부상을 말함.

원문 : an injury requiring medical or veterinary attention in the nature of a broken bone, a laceration, the total or partial loss of sensation or function in a part of the body, or an injury requiring cosmetic surgery.

112) 빅토리아주에서 제한품종견(맹견)으로 지정한 아메리칸핏불테리어(또는 핏불테리어), 페로드프레사카나리오(또는 프레사 카나리오), 도고아르젠티노, 재패니즈도사, 필라브라질리예로의 품종으로 판별하는 기준. 2014년 1월 31일자 빅토리아주 관보(Gazette)에 자세한 판별 기준이 이미지와 함께 실림. 부록 참고.

	<p>- is guilty of an indictable offence and liable to level 6 imprisonment (5 years maximum)</p>
<p>가축법 199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장 - 개와 고양이 관리에 대한 특별 규정 ▶ 29 개의 공격과 관련된 범죄 및 책임 <p>(1) 제한품종견이나 비거주용 부지를 지키는 경비견이 아닌 위험한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물거나 공격한 경우, 해당 물음이나 공격이 일어날 당시의 개의 책임자는, 실제 소유주 여부에 상관없이, 6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벌점 120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 및 책임에 처해질 수 있음.</p> <p>(2) 제한품종견이나 비거주용 부지를 지키는 경비견이 아닌 위험한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물거나 공격한 경우, 해당 물음이나 공격이 일어날 당시의 개의 책임자가 소유주가 아니었으면, 소유주는 6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벌점 120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 및 책임에 처해질 수 있음.</p> <p>(3) 제한품종견이나 위험한개에 속하지 않는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물거나 공격하여 사망 혹은 심각한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물음이나 공격이 일어날 당시의 개의 책임자는, 실제 소유주 여부에 상관없이, 벌점 40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 및 책임에 처해질 수 있음.</p> <p>(4) 제한품종견이나 위험한개에 속하지 않는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물거나 공격하여 사망 혹은 심각한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물음이나 공격이 일어날 당시의 개의 책임자가 소유주가 아니었으면, 소유주는 벌점 40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 및 책임에 처해질 수 있음.</p>	<p>Domestic Animals Act 199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vision 2-Particular provisions for the control of dogs and cats ▶ 29 Offences and liability relating to dog attacks <p>(1) If a dangerous dog, that is not a guard dog guarding non-residential premises, or a restricted breed dog attacks or bites any person or animal, the person in apparent control of the dog at the time of the attack or biting, whether or not the owner of the dog,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to a term of imprisonment not exceeding 6 months or to a fine not exceeding 120 penalty units.</p> <p>(2) If a dangerous dog, that is not a guard dog guarding non-residential premises, or a restricted breed dog attacks or bites any person or animal, the owner of the dog, if not liable for the offence under subsection (1),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to a term of imprisonment not exceeding 6 months or to a fine not exceeding 120 penalty units.</p> <p>(3) If a dog that is not a dangerous dog or a restricted breed dog, attacks or bites any person or animal and causes death or a serious injury to the person or animal, the person in apparent control of the dog at the time of the attack or biting, whether or not the owner of the dog,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to a penalty not exceeding 40 penalty units.</p> <p>(4) If a dog that is not a dangerous dog or a restricted breed dog, attacks or</p>

(5) 제한품종견이나 위험한개에 속하지 않는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물거나 공격하여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물음이나 공격이 일어날 당시의 개의 책임자는, 실제 소유주 여부에 상관없이, 벌점 10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 및 책임에 처해질 수 있음.

(6) 제한품종견이나 위험한개에 속하지 않는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물거나 공격하여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물음이나 공격이 일어날 당시의 개의 책임자가 소유주가 아니었으면, 소유주는 벌점 10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 및 책임에 처해질 수 있음.

(7)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뒤쫓은 경우, 해당 사건이 일어날 당시의 개의 책임자는, 실제 소유주 여부에 상관없이, 벌점 4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 및 책임에 처해질 수 있음.

(8)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뒤쫓은 경우, 해당 사건이 일어날 당시의 개의 책임자가 소유주가 아니었으면, 소유주는 벌점 4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 및 책임에 처해질 수 있음.

(9) 이 장에 나열된 범죄에 대한 절차 중, 그 범죄가 다음 상황에 의해 일어났다면 방어로 소가 된다.

(a) 개가 놀림받았거나, 학대받았거나, 공격 받은 경우

(b) 사람이 개가 거주하는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c) 동물이 개가 거주하는 사유지에 들어온 경우

(d) 개 앞에서 개가 아는 사람이 공격받고 있었던 경우

bites any person or animal and causes death or a serious injury to the person or animal, the owner of the dog, if not liable for the offence under subsection (3),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to a penalty not exceeding 40 penalty units.

(5) If a dog that is not a dangerous dog or a restricted breed dog, attacks or bites any person or animal and the injuries caused by the dog to the person or animal are not in the nature of a serious injury, the person in apparent control of the dog at the time of the attack or biting, whether or not the owner of the dog,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to a penalty not exceeding 10 penalty units.

(6) If a dog that is not a dangerous dog or a restricted breed dog, attacks or bites any person or animal and the injuries caused by the dog to the person or animal are not in the nature of a serious injury, the owner of the dog, if not liable for the offence under subsection (5),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to a penalty not exceeding 10 penalty units.

(7) If a dog rushes at or chases any person, the person in apparent control of the dog at the time the dog rushed at or chased the first-mentioned person, whether or not the owner of the dog,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to a penalty of not more than 4 penalty units.

(8) If a dog rushes at or chases any person, the owner of the dog, if not liable for the offence under subsection (7),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to a

<p>(10) (3)~(8)에 해당하는 항목의 범죄에 대한 절차 중, 그 범죄가 개가 참여하는 사냥의 일환으로 벌어졌고, 동물학대방지법 1986을 위반하지 않고 일어났다면 방어요소가 된다.</p> <p>(11) 판사는 이 장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다른 명령과 함께 개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p> <p>(12) 판사는 이 장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범죄가 일어난 지역 의회에서 승인한 공무원을 통해 개를 안락사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다.</p>	<p>penalty of not more than 4 penalty units.</p> <p>(9) In any proceeding for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it is a defence to that offence if the incident occurred because-</p> <p>(a) the dog was being teased, abused or assaulted; or</p> <p>(b) a person was trespassing on the premises on which the dog was kept; or</p> <p>(c) another animal was on the premises on which the dog was kept; or</p> <p>(d) a person known to the dog was being attacked in front of the dog.</p> <p>(10) In any proceeding for an offence under subsection (3), (4), (5), (6), (7) or (8), it is a defence to that offence if the incident occurred as part of a hunt in which the dog was taking part and which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ct 1986.</p> <p>(11) If a person is found guilty of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with respect to a dog the court may, in addition to any other order made by the court, order that the person pay compensation for any damage caused by the conduct of the dog.</p> <p>(12) If a person is found guilty of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with respect to a dog, the court may order that the dog be destroyed by a Council authorised officer of the municipal district in which the offence occurred.</p>
--	---

표 3-20 형법과 가축법에서 개물림 사고를 처벌하는 수위

(4) 위험한 개 (Dangerous dog)

○ 가축법에 의거하여 위험한 개로 등록(declare ; 공포, 규정)되는 조건

- 개가 무는 등의 공격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죽음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여 의회에 의해 ‘위험한 개’로 등록된 경우
- ‘위협적인 개’의 주인이 규제 조건을 지키지 못해 2회 이상의 위반 고지를 받은 경우
- 개가 다른 주 또는 지역의 관련법에 의해 ‘위험한 개’로 등록된 바 있는 경우
- 비주거용 부지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를 두는 경우
-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착용하고 있거나 입고 있는 것을 물거나 공격하도록 개를 훈련한 경우
- 규정된 여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위험한 개 등록 예외 사유

- 개가 놀림받았거나(teased), 학대받았거나(abused), 공격받았을(assaulted) 경우
- 개가 거주하는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을 물어서 부상 입힌 경우
- 개가 거주하는 사유지에 들어온 동물을 물어서 부상 입힌 경우
- 개 앞에서 개가 아는 사람이 공격받고 있었던 경우
- 동물학대방지법을 위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냥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경우

○ 위험한 개를 키우기 위한 요구 조건

- 마이크로칩핑(Microchipping) : 규제에 맞는 ISO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야 함. (2003년 5월 20일 이전에 마이크로칩된 경우는 제외)
- 중성화(Desesing) : 공격으로 인해 ‘위험한 개’로 등록된 경우 중성화를 반드시 해야 함. 공격으로 인해 위험한 개에 새로 오른 경우, 건강 문제로 중성화 수술이 불가하다는 수의사의 소견서(certificate from a veterinarian)가 없는 한 즉시 중성화를 해야 함.
- 목줄(Collar) : 위험한 개의 경우 항상 규정된 목줄을 착용해야 함. 이 목줄은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됐으며, 밤에도 눈에 띄어 야광). 반려인의 소유지에서든 밖에서든, 언제든, 위험한 개는 멀리서부터 눈에 띄어 사람들에게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어야 함.

‘위험한 개’에게 착용할 목줄의 조건
- 20mm 이상, 30mm 이하의 빨간색 띠와 노란색 띠가 목줄 둘레에 사선으로 번갈아 들어간 무늬여야 함.
- 적어도 두 색 중 하나 이상은 야광이어야 함.
- 내구성 있는 재질로 만들어져야 함
- 안전하게(튼튼하게) 채울 수 있어야 함.
- 줄을 연결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함.
- 목줄의 너비는, 개의 몸무게가 40kg 이하일 경우 25mm 이상, 40kg 이상일 경우 50mm 이상이어야 함.

- 경고판(Signs) : 합당한 이유로 오가는 사람들(예를 들어 구급요원)이 위험한 개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은 중요함. 위험한 개의 주인은 부지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에 해당 부지에



위험하나 개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경고판을 규정에 따라 세워야 함. 의회에서는 위험한 개 경고판의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p>‘위험한 개’를 경고하는 경고판의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변의 길이가 40cm 이상인 사격형 모양이어야 함. - 내구성 있는 재질로 만들어져야 함. - 사용된 색 중 하나 이상은 야광이어야 함. - 가축규제법(Domestic Animal Regulations 2015)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

- 주거시설(Housing) :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든 개가 탈출할 수 없는 시설과 부지 내로 들어오는 방문자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집이나 실외건사는 둘 다 부지 거주인(occupier of the premises)의 보조 없이는 열 수 없도록 건설되어야 하며, 이 보조는 18세 이상의 사람이 제공해야 함. 실외 건사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p>‘위험한 개’의 실외건사의 조건</p> <p>실외건사(outdoor enclosur)의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방이 막혀 있어야 함. - 날씨에 상관없이 머물 수 있는 잠자리(sleeping area)가 있어야 함. - 위험한 개 한 마리 당 10m² 이상의 바닥(floor)이 제공되어야 함. - 높이가 1.8m 이상이어야 함. - 한 면의 너비가 1.8m 이상이어야 함. - 벽, 바닥, 배수시설(drain), 지붕, 규정에 맞는 문으로 건설되어야 함. <p>건사의 벽, 바닥, 지붕, 문의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사의 벽은 바닥에 고정되어야 하며, 바닥으로부터 5cm 이상 떨어져 건설되어서는 안 됨. - 건사의 벽, 지붕, 문은 벽돌재, 목재(timber), 철재(iron) 혹은 이와 비슷하게 견고한 재질과 망을 이용하여 건설해야 함. - 망의 경우, 3.15mm 철사를 사용하여 5cm 이내의 간격으로 만든 체인 망(chain mesh) 또는 4mm 철사를 사용하여 5cm 이내의 간격으로 만든 용접 망(weld mesh)을 사용할 수 있음. (망의 크기와 건설 방법까지 규제하는 이유는 동물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함과 동시에, 사람들, 특히 어린이가 손과 같은 신체의 일부를 안으로 넣지 못하게 하기 위함임.) - 건사의 바닥은 콘크리트로 시공되어야 하며, 배수시설을 위해 단차를 두어야 함. - 문에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달아, 개가 안에 있을 때 안전하게 가둘 수 있어야 함.

- 구속(Restraint) : 위험한 개는 주인의 거주지 혹은 건사 밖에서는 항상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함.

	
<p>그림 3-8 위험한 개의 목줄 예시 (© The State of Victoria, Department of Jobs, Precincts and Regions 2019)</p>	<p>그림 3-9 위험한 개의 경고판 예시 (© The State of Victoria, Department of Jobs, Precincts and Regions 2019)</p>
	
<p>그림 3-10 실외 견사의 예시 (© The State of Victoria, Department of Jobs, Precincts and Regions 2019)</p>	

○ 위험한 개가 풀려나서 돌아다닐 경우

- (공격으로 인해) '위험한 개'로 기구정된 개가 풀려나서 돌아다닐 경우, 잡혀서 압수될 수 수 있으며, 24시간 뒤에는 안락사에 처해질 수 있음. 개의 소유자가 개가 돌아다니게 된 합당한 경위에 대해 설명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압수 24시간 이내에 의회에 연락해야 하며, 합당한 경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개를 찾아갈(reclaim) 수 있음.

○ 위험한 개 관련 보고 의무 사항

- 개를 잃어버렸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위험한 개로 등록된 의회에 보고해야 함.
- 개의 주인이 바뀔 경우, 24시간 이내에 위험한 개로 등록된 의회에 보고해야 함.
- 주인의 주소나 개가 머무는 장소가 바뀔 경우, 24시간 이내에 위험한 개로 등록된 의회에 보고해야 함. (소속 지자체가 바뀌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떠났던 곳과 들어온 곳 모두 의회에 보고해야 함.)

○ 위험한 개의 관리 미비로 인한 형벌

형법(Crime Act 1958)에 따라, 위험한 개의 관리 미비로 다음의 사람은,

- 공격으로 인해 '위험한 개'로 등록된 개의 주인
- 공격 훈련을 받은 개의 주인
- 경비견의 주인
- '위협적인 개'로 등록된 의 주인
-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제한품종견인 개의 주인
- 위에 해당하는 주인이 만18세 미만(under)일 경우, 그 부모나 후견인(guardian)이 주인으로 간주되어 기소 및 형벌의 대상이 됨.

다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위험한 개의 공격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
- 위험한 개의 공격으로 사람이 생명을 위협했을 경우, 최대 징역 5년

위험한 개를 키우기 위한 다음의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

- 개가 머무는 곳의 주소 등 위험한 개와 관련된 고지 의무 (위반 시 벌점¹¹³⁾ 6~10점)
- 개를 보호하는 방법(enclosure requirements)에 대한 규정 (위반 시 벌점 20점)
- 항상 목줄을 하도록 하고,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하는 규정 (위반 시 벌점 40점 이하)
- 위험한 개 경고판 설치하기 (위반 시 벌점 5점, 반복 시 10점)
- 개를 판매할 때 위험한 개임을 서면으로 고지하기 (위반 시 벌점 5점)

○ 기타

- 위험한 개의 등록 혹은 전입 등 필요한 경우, 의회 공무원이 부지를 둘러보고 규정에 맞게 '위험한 개'를 키우는지 실시하게 됨.
- 위험한 개의 주인은 해당 개가 위험한 개임을 서면으로 먼저 알리기 전에는 판매하거나, 이동시키거나(transfer), 증여(give)할 수 없음.
- 의회는 공격을 이유로 위험한 개로 등록된 개의 등록을 받을 때는(registration fees), 보통 개의 최대 등록비보다 더 높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113) Penalty units (벌점) :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빅토리아 주의 벌점은 1점 당 165.22\$(호주달러)로 고지되어 있으며, 매년 7월 1일 이 금액은 상향됨. 2019년 12월 환율 기준, 벌점 1점은 132,900원 가량으로 벌점 5점은 664,505원, 40점은 5,316,040원에 달함.

<https://www.legalaid.vic.gov.au/find-legal-answers/finer-and-infringements/penalty-units>

- 개나 고양이 유기 시 벌점 10점(한화 약 1,329,000원)

(5) 위협적인 개 (Menacing dog)

○ 가축법에 의거하여 위협적인 개로 등록되는 조건 (공무원이 자체적인 권한으로 등록하거나 관사의 명령에 의해 등록함)

-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서 심각하지 않은 정도의 부상을 입힌 경우

- 사람에게 달려드는(Rush at) 경우.

‘달려드는’의 의미는 위협적인 태도로 사람의 3m 반경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가 으르렁거리거나,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거나, 등털을 바짝 세우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을 포함함.

- 사람을 쫓은(Chase) 경우

○ 위협적인 개 등록 예외 사유

- 개가 놀림받았거나(teased), 학대받았거나(abused), 공격받았을(assaulted) 경우

- 개가 거주하는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을 물어서 부상 입힌 경우

- 개 앞에서 개가 아는 사람이 공격받고 있었던 경우

○ 위협적인 개를 키우기 위한 요구 조건

- 마이크로칩핑(Microchipping) : 모든 개에게 해당되는 조건

- 입마개(Muzzle) : 주인의 소유지 밖으로 외출할 때는 누군가를 물어서 부상을 입히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마개를 착용할 것

- 줄(chain, cord, or leash) : 주인의 소유지 밖으로 외출할 때는 체인, 끈, 줄 등을 이용하여 개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할 것

- 다음의 경우 관할 의회에 24시간 내에 신고할 것

: 위협적인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쫓은 경우, 개를 잃어버린 경우, 주인의 주소가 바뀐 경우, 개를 보호하는 곳이 달라진 경우, 개의 주인이 바뀐 경우, 개가 소속된 관할구역이 바뀐 경우

○ 위반 시 벌칙

- 입마개 또는 줄 착용 위반 시 벌점 16점(한화 약 2,126,400원)

- 관할 의회 신고 의무 위반 시 벌점 20점(한화 약 2,658,000원)

- 위협적인 개로 등록된 개가 사람을 죽게 하거나 생명을 위협하게 만들면, 위험한 개와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그 주인은 피해자 사망 시 최고 징역 10년, 피해자의 생명이 위협 받았을 시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음.

○ 위협적인 개로 등록될 수 있는 사례

- 개가 담장 너머에서 뛰어오르면서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길에서 사람에게 접근하여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길에서 피하려는 사람을 쫓는 경우
- 사람을 심각하지 않은 정도로 문 경우

○ ‘위협적인 개’를 규정하는 것은 ‘위험한 개’나 ‘제한품종견(맹견)’과는 맥락이 다르며, ‘위협적인 개’는 규정하는 것의 목적은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심각하지 않게 물거나,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쫓는 문제행동을 보일 때 그 반려인에게 더 위중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시키기 위함임. 심각하지 않은 부상을 입히는 물음이나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쫓는 행위 역시 사람이 위협받았기 때문에 ‘공격’으로 간주되며, 위협적인 개로 등록된 개의 주인은 향후 공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준수해야 함.

○ 기타

- 위협적인 개의 주인이, 공공장소에서의 줄이나 입마개 착용과 같은 준수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2회 이상의 위반 고지를 발부받게 되면, 개는 ‘위험한 개’로 등록됨.
- 위협적인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쫓는 행위를 하는 원인을 고치기(remedy) 위해 주인이 일련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회가 판단하면, 위협적인 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위협적인 개로 등록된 것에 대해 주인은 빅토리아주민사행정법원(Victor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에 28일 내에 이의를 제기(appeal)할 수 있음.

제4절 개물림 사고 대응 방안 제안

1. 목적 및 목표

- 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안전의 위협이나 시민의 불쾌감을 방지함.
 - 개로 인해 공공안전의 위협이나 시민의 불쾌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인의 관리 책임을 강화함.
 - 개로 인한 위협이나 불쾌감에 단계별로 개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물의 방치와 학대를 방지함.
 - 개의 문제행동을 초래할 수 있는 반려인의 방치, 학대 등 문제적 실천 및 태도에 조기 개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을 통해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함.
 - 개의 행동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물림 사고 양상 및 예방 방법을 시민들이 인지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 안전을 위해 반려인의 강력한 책임 의식과 적극적인 통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모두의 인식을 제고함.

2. 대응 체계

(1) 관리대상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본 연구보고서의 ‘제2장 위험 평가 - 제3절 위험 평가 제도 제안’에서는 관리대상견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것을 제안하여, 개가 사람을 물거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사람의 공포와 방어적 행동을 유발하면 일단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이상의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소유자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

단계	개의 행동	사람의 피해	위험 평가 의무 부과 여부 및 안전관리 강화 조치
1 단계	도발이 없었는데도, 개가 으르렁거림, 이를 드러냄, 등털 세움 등 공격적 행동을 보이면서 개 몸길이의 5배 이내의 거리로 사람에게 접근	공포와 방어적 행동 유발	-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물려고 달려드나 물지는 않음		
	부상을 입히지 않은 입질 (개의 이와 사람의 피부가 접촉했으나 압력이 피부손상 등 부상을 유발할 정도로 세지 않음)		
2 단계	개의 이와 사람의 피부가 접촉하였고, 압력을 가하여 물음	멍, 긁힘 발생(경미한 피부손상)	- 위험 평가 의무 부과 - 외출 시 입마개 착용 혹은 맹견에 준한 관리
		열상 발생, 출혈	
		다발성 열상 발생	
3 단계	개의 이와 사람의 피부가 접촉하였고, 압력을 가하여 물음	- 골절, 수혈이 필요한 과다출혈, 신체기능이나 감각의 영구적 손상, 신체 일부 절단 등 심각한 상해 발생 - 사망 초래	-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가능성 높음 - 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맹견에 준한 관리

표 3-21 위험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 관리 강화 조치

- 아래의 표는 관리대상견을 분류하는 기타 해외 사례임. 이처럼 개물림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 설정 및 문제의 심화 발전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국가	관리대상견 단계 구분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Potentially dangerous dogs)	포악한 개 (Vicious do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발이 없었는데 3년 내에 2회 이상 집 밖에서 다른 사람이 상해를 막기 위해 방어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 개 - 도발이 없었는데 상해를 입힐 정도로 사람을 문 개 - 가축을 물어서 죽이거나 상해를 입게 한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발이 없었는데 사람을 공격하여 중상을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개
호주 빅토리아 주	위협적인 개 (Menacing dog)	위험한 개 (Dangerous do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서 심각하지 않은 정도의 부상을 입힌 경우 - 으르렁거림,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림, 등털 세우기 등 위협적인 태도로 사람의 3m 반경 이내에 접근한 개 - 사람을 쫓은(Chase)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가 무는 등의 공격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죽음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여 의회에 의해 ‘위험한 개’로 등록된 경우 - ‘위협적인 개’의 주인이 규제 조건을 지키지 못해 2회 이상의 위반고지를 받은 경우 - 개가 다른 주 또는 지역의 관련법에 의해 ‘위험한 개’로 등록된 바 있는 경우 - 비주거용 부지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를 두는 경우 -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착용하고 있거나 입고 있는 것을 물거나 공격하도록 개를 훈련한 경우 - 규정된 여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영국	(반려인의) 반사회적행위 (Anti-social Behavior)	위험하게 통제 밖에 난 개 (Dangerously out of contr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견으로 인한 모든 불편 신고 - 동물 간 물림 혹은 경미한 물림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 크기, 무게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위험하게 통제 밖에 나서 사람 또는 사역견에 부상을 입힌 개 - 종, 크기, 무게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위험하게 통제 밖에 나서 상대

		로 하여금 부상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게 만든 개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위험한 개 (Gefährliche Hunde) 중 품종을 제외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 사육, 교배된 개 - 형법상의 행동에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 사람을 문 개 - 사람에게 위험한 방법으로 뛰어오른 개 - 공격받지 않았고, 다른 개가 복종의 자세를 보였음에도 물어서 다른 개를 상해입힌 개 - 제어되지 않은 야생동물, 가축, 고양이 또는 다른 개를 쫓거나 물거나 할린 개 - 어깨높이가 40cm 이상 또는 몸무게 20kg 이상인 개 	

표 3-22 해외의 관리 대상견 분류 사례

- 안전관리 강화 조치의 대상이 되는 행동, 즉 공격성을 포함한 문제행동이 아니더라도 동물복지의 훼손이나 이웃의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개입하여 조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동물학대를 방지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경우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동물의 복지 훼손이 우려되고 이로 인한 이웃의 피해가 반복적으로(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무책임한 반려인(irresponsible dog ownership)'으로 규정하고 경찰과 지자체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무책임한 반려인으로 규정되는 예와 대응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음.

공격성 포함 여부	무책임한 반려인의 예	인지 경로	경찰과 지자체의 대응
공격성을 포함하지 않은 문제 행동	한 집에서 너무 많은 수의 개를 키움	주변의 신고 발생	교육적 방법, 허용행동계약, 공동체보호고지, 공해 및불쾌감유발방지를위한금지명령 등을 통한 규제
	개인이 너무 많은 수의 개를 산책시키는 경우	위협 또는 불편을 느낀 주민이 신고	공동체보호고지, 공공장소 보호명령
공격성을 포함한 문제 행동	개를 풀어놓아 다른 이들을 위협함	자신의 개를 목줄을 채워 산책시키다가 개가 공격당할 뻔 한 주민의 신고 발생	허용행동계약(경미), 공동체보호고지(반려인의 태도가 합리적이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경우), 공해및불쾌감방지를위한금지명령 (비슷한 문제가 계속된 경우)
	개가 적법한 방문자를	적법하게 방문하려던	면담, 교육 등 비법적 방법

위협하는 경우	사회복지사가 신고	강구(처음 일어난 일), 공동체보호고지(문제성의 수준은 낮으나 향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경우), 공해및불쾌감방지를위한금지명령(부상을 입힐 위험이 있고 반려인이 별로 개입의지 없이 무관심한 경우)
개가 주로 특정 장소에서 행인을 위협하는 경우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주는 부모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향해 짓고 돌진하려는 개를 데리고 다녀서 다른 학부모 혹은 교사가 신고	공동체보호고지를 통한 접근금지
개가 집 앞을 지나가는 행인을 위협하는 경우	이웃이 신고	위험한개법에 따라 형사기소
개인이 개가 다른 사람을 위협하도록 방치하는 경우	공원에서 위협받은 주민이 신고	위험한개법에 따라 형사기소

표 3-23 무책임한 반려인으로 규정되는 예와 대응방법의 사례

(2) 관리대상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

- 관리대상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반려견이 누군가를 다시 해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개가 사건의 반복을 통해 ‘공격적인 행동이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전략’이라는 배움을 얻도록 두어서는 안 됨. 따라서 관리대상견 소유자에게는 특히 다음의 내용¹¹⁴⁾이 포함된 기본적 핸들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갈등 상황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 올바르게 즉각적인 접근을 위한 고려 사항
 - 개가 공격성을 보인 대상
 - 개가 입힌 상해의 정도
 -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정도 (소유자의 핸들링 역량)
- 유의 사항
 - 신체적으로 개를 장악하려고 하지 말 것 : 과거에는 이런 조언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부적당하며, 소유자가 개를 때리려고 하면 소유자가 물릴 수 있어서 위험

114) Mills

함. 또한 개가 ‘공격성’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잘못된 학습을 하여 미래에 더욱 공격성을 보이게 만들 수 있음. 특히 공격적인 행동의 원인이 공포심이었다면, 개가 소유자를 두려워하여 행동학적 치료를 위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짐.

(3)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시의 조치

- 현재 우리나라 법은 동물보호법에 다음과 같이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 현행법에서는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 위반 시 다음과 같은 벌칙 및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¹¹⁵⁾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5.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2의6.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될 경우, 지자체의 관리대상견 위험 평가 및 안전관리 강화 절차와는 별도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지자체는 경찰 조사 및 이후 기소 과정에 협조할 일이 있을 경우 협조해야 할 것임.

- 개의 소유자등이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 위반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람을 사망케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이 때, 소유자등이 징역형 등으로 일시적으로 혹은 향후 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단 개물

115) 우리 대법원은 상해의 기준으로 첫째,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인지 여부, 둘째,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음.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iang21029&logNo=220835162817>

림 사고를 지자체에서 인지하여 관리대상견으로 포착된 개에 대해 내린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조치가 이후 소유자에게 적용되어, 개의 안전관리 공백을 대비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작용할 수 있음.

-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개가 소유자등에 의해 계속 보호되는 경우에는 (소유자, 평가자 등 그 개를 다루는 담당자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다고 당사자 전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위험 평가 진행 후 관리대상견 2단계에 준하는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을 것임.

(4) 반려견 몰수 혹은 안락사 명령

- 현재 동물보호법에 반려견 몰수형 혹은 안락사 명령과 관련된 규정은 부재함.
-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소유자등이 기소된 경우, 피해자 측 혹은 검사 측의 요청에 따라 재판에서 몰수 및 안락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수 있음.
- 몰수에 대한 판단은 소유자가 해당 관리대상견을 적절히 보호하거나 핸들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몰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지자체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호하면서 적절한 돌봄 및 핸들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입양시키도록 할 수 있음.
- 그리고 안락사에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개가 놀림이나 학대의 결과, 또는 누군가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판사가 충분히 확인한 후, 반려동물행동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3. 대응 주체

(1) 경찰

- 개물림 사고 신고 접수
- 관심대상견 물림사고맥락 조사 (진술 및 증거 검토를 통한 조사, 공무원 협업 요청 등)
- 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 관리

(2) 공무원

- 개물림 사고 신고 접수
- 관심대상견 물림사고맥락 조사 (진술 및 증거 검토를 통한 조사, 위험 평가 의뢰 등)
- 관심대상견 조치 (각종 의무에 대한 행정 명령 등)
- 필요한 경우 경찰 개입 요청

- 관심대상견 조치 이행 여부 관리
- 관심대상견 단계별 등록 유지 여부 추적 관리

(3) 검사

- 개물림 사고 조사 및 기소
- 개의 안락사 명령 신청
- 개의 몰수 혹은 동물 소유 금지 명령에 대한 신청

(4) 판사

- 양형 기준을 참고한 처벌 판결
- 전문가의 의견 청취 후 개의 안락사 명령 여부 결정

(5) 반려동물행동전문가

- 소유자 조언 및 개에 대한 행동 교육
- 위험평가전문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평가자로서 활동
- 검사, 변호인, 판사 등에 개의 행동에 대한 의견 개진
- 위험평가전문위원회 위원 등 제도 도입 및 시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역할 가능

1) 수의사

○ 학위소지자

- (반려)동물행동 관련 석·박사 학위 또는 전문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반려동물 행동진료 경험이 20건 이상 있는 수의사
- 현재 해외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3~4명, 국내 학위 소지자 1명, 총 4~5명 추정

○ 관련교육이수자

- 반려동물 행동 훈련사 자격증을 보유한 수의사
- 반려동물 행동 관련 국내·외 교육과정 및 세미나를 이수하고, 반려동물 행동진료 경험이 있는 수의사
- (규모) 서울특별시수의사회 산하 반려동물행동학연구회 소속 수의사 13인 등 총 15~20명 가량 추정

2) 훈련사

- 훈련사 직능에 대한 국가 표준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필요에 따라 일정 등급 이상 제도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때 동물의 행동과 감정을 평가하고, 공격성에 대해 평가하며, 필요 시 교육 및 훈련까지 담당하게 될 훈련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의 요구되므로, 반드시 동물학대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긍정강화방법을 사용하며, 윤리서약에 적극 임하는 등 높은 수준의 직능을 요구해야 할 것임.

○ 기존 훈련사 단체

- 애견협회 2급(931명), 애견연맹 2등(397명) 이상 훈련사의 경우 총 1,200여명
- 애견협회 1급(400명), 애견연맹 1등(93명) 이상 훈련사의 경우 총 500여명
- 이 수는 서로 중복될 수 있음.

○ 해외

- 현재 국내에는 6~7명의 해외 공인 파트너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수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6) 반려동물 소유자

- 개를 소유하고, 사적 관계를 형성하며, 동물복지의 원칙에 맞는 돌봄을 제공할 뿐 아니라, 공공 안전 및 복지를 위해 반려견의 안전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해야 함을 인지하고 노력
- 반려견의 문제 행동으로 타인의 피해 발생 시

(7) 이웃 및 전체 시민

-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에 대해 인지하고, 동물복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할 수 있음.
- 일반 시민의 역할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필요

4. 기타

(1) 공청회 및 시범 시행의 필요성

○ 제도 도입 과정은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예상되며, 제도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지지와 효과적인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청회 및 시범시행을 거쳐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정책안 마련 ▶ 공청회 ▶ 법 개정 ▶ 인력 및 예산 확보 ▶ 시범 시행 ▶ 시행 및 보완

○ 공청회는 전문가 공청회와 대시민 공청회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 및 절차에 대해 많은 이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공청회 : 정책안 초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를 실시하여 정책안 마련

- 대시민 공청회 : 정책안을 시민들에 소개하고 설득하는 과정

○ 시범 시행

- 제도의 정착률을 위하여 약 2년 정도의 시범 시행 기간을 가지면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위험 평가 전문위원회 구성 후, 전문성과 윤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문위원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초기 평가자 인원을 30-50명 정도 선정하여 2년 가량 시범 시행을 하면서 제도 정비 후, 종래에는 신청에 대한 연례 심사를 통해 평가자가 되는 길을 여는 방식으로 한다면 좋을 것임.

(2) 유관 인력 교육의 중요성

○ 유관 인력 교육의 중요성

- 공무원, 경찰, 위험 평가 전문위원회, 평가자 등 유관 인력에 대한 기초 교육과 매뉴얼의 제공, 보수 교육 등 인력의 양적 편성 뿐 아니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

○ 위험평가전문위원회 구성

- 특히 위험평가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험 평가자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정기 회의를 통해 위험 평가 제도 보완, 평가자 문의에 대한 자문 제공, 최신 전문자료 선정을 통한 평가자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제도 운용의 핵심 인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정보 수집 체계 마련

○ 개물림 사고 관련 데이터 수집 체계 마련

- 현재 개물림 사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주 통로는 경찰신고, 119신고, 그리고 EDIIS와 같은 대형병원 응급실 의료 데이터베이스 등임.
- 향후 개물림 사고 대응 제도의 확립과 함께 신고 채널 신설(예-동물보호 신고 및 상담전화 1588-5959 등) 및 신고 의무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물림 사고에 대한 정보 수집 체계 및 활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5절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1. 개물림 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

개물림 사고 예방 방법
<p><반려인에 대한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인의 책임 강화를 위한 반려인 교육 • 반려인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 (동물보호법의 동물복지 규정 등) • 개의 사회화 교육(특히 사회화 적기에 이루어지는 조기 교육) • 반려견 중성화 •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반려인의 역할에 대한 교육 <p><대시민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의 행동 특성(안전한 인사법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한 대시민 교육·홍보 • 개물림 사고 취약계층(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개물림 사고 방지 교육 •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부모, 교사 교육

-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와 대시민 교육임. AVMA는 이를 위해 ‘책임감 있는 반려인 가이드라인’에서 면허제도, 교육, 사회화 교육, 중성화, 그리고 적절한 환경과 수의학적인 치료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음. 시카고에서는 ‘반려동물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마련하여 반려인의 책임의식, 동물 통제, 사람에게 대한 동물의 공격 예방 등과 관련하여 역할하도록 함. 이 대책위원회는 “반려인의 책임 의식이 개의 공격성을 줄이는 열쇠”라고 결론내림.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 시행 후 미국 네바다 주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15% 가량 줄어들었음. 캐나다 캘거리 등지에서는 한 시간 씩 2~3차례 이루어지는 안전 교육만으로 개물림 사고가 최대 80%까지 줄어들었던 바 있음.¹¹⁶⁾
- 개물림 사고의 상당수는 개가 아니라 반려인, 피해자 등 개를 둘러싼 사람들의 행동 문제에서 시작되기에,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역시 사람에게 초점을 두어야 함. 실제로 Oxley가 영국에서 2018년에 온라인으로 636 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개물림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44.6%는 자신을 닮았으며, 39.9%는 개 주인을 닮았고, 그 누구의 닮도 아니라는 응답이 18.5%였음. 개를 닮은 비율은 12.7%밖에 되지 않았음.(기타 사람을 닮은 비율은 8.7%)¹¹⁷⁾

116) AVSAB(2014)

117) Oxley(2018)

- 다음 장의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콘텐츠의 핵심 내용을 추출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p>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적 교육 내용</p> <p><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의 공격성의 보편성과 일반성 (모든 개는 물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음) • 반려인의 책임감과 통제의 중요성 • 개와 안전하게 인사하는 방법 • 개가 싫어하는 상황 • 개의 행동과 감정 (스트레스 표현 행동, 공격 직전의 행동 등) • 개가 공격할 때 대응법 • 개물림 사고 발생 이후의 대처법 • 개의 사회화의 중요성 • 개물림 사고 신고 방법 및 관련법·제도 <p><반려인 대상 교육에 추가되면 좋을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물림 사고 발생 시나리오(가족구성원, 지인의 내방, 산책, 소형견vs대형견 갈등 상황 등) 및 예방법 • 개물림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이 있을 경우의 유의사항 (일상적인 감독의 중요성) • 개물림 사고 발생 시 반려인의 책무과 관련된 법·제도 • 개의 사회화 교육 및 문제 행동 치료·교육·훈련 방법 <p><어린이 대상 교육에 추가되면 좋을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물림 사고 발생 시나리오(자신의 반려견, 친척/친구/이웃의 개와의 만남, 산책 중인 개 발견, 묶여있는 개 발견, 유기견와의 마주침 등) 및 예방법 <p><교사 대상 교육에 추가되면 좋을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물림 사고 발생 시나리오(학교, 어린이집 또는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및 예방법 • 어린이들에게 필수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내용 • 교육 기관에서의 개물림 사고와 관련된 법·제도 (현행 맹견법 등) <p><대시민 정책에 추가되면 좋을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물림 사고 발생 시나리오(공원이나 길가에서 만난 개, 묶여있는 개 등) 및 예방법
--

2. 교육·홍보 내용

(1) 미국 질병관리센터 웹문서 ‘Preventing Dog Bites(개물림 예방)’¹¹⁸⁾

- 이 자료는 모든 개는 물 수 있다(Any dog can bite)”는 것을 전제로, 모든 반려인이 개물림의 가능성을 인지할 것을 촉구하며, 개물림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법, 개물림 발생시의 대처법, 개물림 발생이 초래할 수 있는 감염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는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상해나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른 부상들보다 개물림 사고가 유독 위험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개물림 사고의 특수성에 맞는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음.

<p>번역문 (한국어)</p> <p>(목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물림 가능성 인지하기 ○ 개물림 예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렇게 하세요 ● 이렇게 하지 마세요 ○ 낯선 개가 다가오는데 피하고 싶을 때 대처 방법 ○ 개가 물거나 공격하는 상황에서 대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 상처를 물과 비누로 씻어내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벼운 상처의 경우 - 깊은 상처의 경우 - 보건서비스 제공자를 방문하세요 ● 개물림 사고를 보고하세요 ○ 개물림으로 인해 걸릴 수 있는 질병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물림 가능성 인지하기 <p>아이들은 어른들보다 개에게 물리게 될 가능성이 더 높고, 물릴 경우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의 절반 이상은 집에서, 우리가 아는 개에 의해 일어납니다. 집에서 개를 키우면, 키우지 않는 경우보다 개에게 물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의 수가 많을수록 물릴 가능성도 늘어납니다. 2마리 이상의 개와 함께 사는 성인은 개에 물릴 가능성이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보다 5배나 높습니다. 또한 성인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물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물림 예방 방법

118) <https://www.cdc.gov/features/dog-bite-prevention/index.html>

- 이렇게 하세요

- 다른 사람의 개에게 다가갈 때는 항상 다가가도 괜찮을지 먼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 낯선 개가 접근해 온다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나무처럼 가만히 있기)
- 개가 달려들어 넘어졌다면, 둥글게 몸을 말고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귀와 목을 보호해요.
- 이상하게 행동하는 개나 유기견이 있다면 즉시 주변의 성인들에게 알려주세요.

- 이렇게 하지 마세요

- 낯선 개에게 다가가지 마세요.
- 개에게서 달아나지 마세요.
- 겁에 질려 큰 소리를 내지 마세요.
- 자고 있거나, 먹고 있거나, 새끼를 돌보는 개를 방해하지 마세요.
- 개가 당신을 발견하고, 먼저 냄새를 맡기 전까지는 개를 만지지 마세요.
- 반려견과 놀 때 공격적인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지 마세요.
- 작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감독 없이 혼자서 개와 놀도록 두지 마세요.

- 낯선 개가 다가오는데 피하고 싶을 때 대처 방법

- 꼼짝하지 마세요! 가만히 움직임을 멈추고 진정하세요.
- 겁에 질려 큰 소리를 내지 마세요.
- 개와 눈을 맞추지 마세요.
-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안돼” 또는 “집에 가”라고 말하세요.
- 몸의 측면이 개를 향하게 하세요. 정면으로 개를 바라보면 공격의사로 오해할 수 있어요. 대신, 몸을 살짝 혹은 완전히 돌려 옆을 향하세요.
- 천천히 손을 올려 목을 보호하고, 팔꿈치는 안쪽을 향하세요.
- 개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천천히 뒤로 물러나세요.

- 개가 물거나 공격하는 상황에서 대처 방법

-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 지갑, 가방, 자켓 등을 이용해 당신과 개 사이를 막으세요.
- 개가 달려들어 넘어졌다면, 둥글게 몸을 말고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귀와 목을 보호해요.

- 상처를 물과 비누로 씻어내세요

안전한 장소로 피한 이후, 즉시 상처를 물과 비누로 씻어내세요. 다음과 같이 의료적 조

치를 받으세요.

- 가벼운 상처의 경우

상처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내세요.

항생제 연고를 바르세요.

깨끗한 붕대로 상처를 보호하세요.

다음의 경우 의료인(healthcare provider)을 찾아가세요.

: 상처가 붉어지거나, 고통스럽거나, 온열감이 느껴지거나, 부어오르는 경우

: 열이 나는 경우

: 당신을 물은 개의 행동이 이상했던 경우

- 깊은 상처의 경우

출혈을 멈추기 위해 깨끗하고 마른 천으로 압박을 가하세요.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가급적 빨리 의료인을 찾아가세요.

- 의료인(healthcare provider) 찾아가기

심각한 부상(출혈이 멈추지 않음, 신체기능에 문제 발생, 극심한 고통, 근육이나 뼈의 노출 등)의 경우

상처가 붉어지거나, 고통스럽거나, 온열감이 느껴지거나, 부어오르거나, 열이 나는 경우

당신을 물은 개가 광견병 예방접종이 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할 경우

파상풍 예방접종을 맞은 지 5년 이상 지났고, 물린 상처가 깊은 경우

● 개물림 사고를 보고하세요

- 개에 물린 사람은 광견병에 감염되었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동물 관리 부서나 경찰서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신을 물은 개가 광견병 예방접종이 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할 경우

당신을 물은 개가 아파보이거나 이상하게 행동했던 경우

- 가능하다면, 당신을 물은 개의 반려인에게 연락을 취해 그 개의 광견병 접종 여부 및 유효성 확인합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허가 번호, 접종한 수의사의 이름, 반려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개물림으로 인해 걸릴 수 있는 질병들

개물림 사고는 부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개로부터 사람에게 세균 감염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로 인해 박테리아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는 18%에 이릅니다. 개의

입 안에서는 60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발견되지만, 이 중 소수만이 질병을 유발합니다. 개물림 사고로 인해 다음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견병은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걸릴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의 하나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개물림 사고로 광견병에 감염되는 일은 매우 드물지만,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광견병은 뇌에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로, 한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대부분 치명적입니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개물림이나 감염된 동물의 침을 통해서 주로 퍼집니다. 이 질병은 개에 예방접종을 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은 광견병 예방접종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인을 만나보아야 합니다.
- 카프노사이토포가(Capnocytophaga) 박테리아는 사람, 개, 고양이 등의 입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개나고양이에 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드물지만, 카프노사이토포가 박테리아는 사람이 사람을 물거나 핏대를 흘리는 사고를 통해서, 혹은 개나 고양이와의 접촉을 통해서 퍼질 수 있고,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와 접촉해도 아프게 되는 일이 없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몸이 감염과 싸우는 게 힘들기 때문에 아파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파스튜렐라익스터널(Pasteurella External)은 개물림 상처의 절반 이상에서 발견되는 유형의 박테리아입니다. 파스튜렐라는 대개 물린 부위에 고통스럽고 붉은 감염을 야기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더 심각한 질병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분비샘 부기, 관절 부기 그리고 거동의 불편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 MRSA(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는 특정 항생제류에 내성을 보이는 유형의 포도상구균 감염을 말합니다. 개나 다른 동물들은 아무런 증상 없이도 MRSA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피부, 폐, 요로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MRSA가 혈액이나 폐에 침투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파상풍(Tetanus)은 파상풍균(Clostridium tetani)이라고 불리는 유형의 박테리아에 의해 생산되는 독소를 말합니다. 이 독소는 사람에게 경직 마비를 일으키며, 깊게 물린 상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호주 빅토리아주 농림부(Agriculture Victoria) 웹문서 ‘공동체/가정에서 발생하는 개에 의한 공격 예방하기(Preventing attacks in the community/home)’¹¹⁹⁾

- 이 자료는 호주의 법, 반려문화(마당이 있는 집에서 개를 키우는 등)에 기반하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지만, 반려인의 책임있는 행동이나 개물림 사고에 대한 예방 혹은 대처 방법

119) 빅토리아주 농림부(Agriculture Victoria) 웹사이트의 메뉴 ‘Pet > Dogs > Dog attacks, dangerous and menacing dogs > Dog attacks FAQs’ 하에 Preventing attacks in the community, Preventing attacks in the home’ 두 웹문서가 존재함.

출처

<http://agriculture.vic.gov.au/pets/dogs/dog-attacks-dangerous-and-menacing-dogs/dog-attacks-faqs/preventing-attacks-in-the-community>

에 대해 다른 자료와 중복되는 내용을 확인하여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할 핵심 정보를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

○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개에 의한 공격 예방하기(Preventing attacks in the community)

<p>번역문 (한국어)</p> <p>(목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주인의 역할 ○ 공격적인 개가 접근해 올 때 대처 방법 알기 ○ 개에게 안전하게 접근하는 방법 알기 ○ 개가 공격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주인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개는 영역보호의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개물림 사고 대부분은 개의 영역 앞에 있는 보도나 길에서 일어났습니다. - 개가 자신의 영역 안에만 있도록 제어하면, 공공장소에서의 개물림 사고는 80% 가량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반려견을 안전하게 제어하지 않거나, 개가 다른 사람 혹은 동물에게 달려들거나 공격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원에는 닫을 수 있는 문과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담장을 설치해야 하며, 방문자가 현관 앞까지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공격적인 개가 접근해 올 때 대처 방법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망가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세요. - 손을 몸의 양 옆에 붙이세요. -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있으세요. - 개와 눈을 맞추지 말고, 땅을 쳐다보세요. - 개가 흥미를 잃었다면, 천천히 뒤로 물러나세요. ○ 개에게 안전하게 접근하는 방법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와 인사하고 싶을 때는 항상 반려인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 개의 앞이나 뒤에서부터 접근하지 말고, 옆쪽에서부터 다가가세요. - 손등을 위로 하고 손가락을 살짝 구부린 채로 천천히 팔을 펴서 개가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머리 위는 만지지 말고) 가슴 옆부분이나 어깨, 혹은 턱 아래를 쓰다듬어주세요. - 개가 물러나거나 손 냄새를 맡지 않으려 할 때는 계속 접근하지 마세요. ○ 개가 공격하는 이유

크기나 품종에 상관없이 모든 개는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친화적인 개들도, 특히 반려인이 옆에 없을 때는 더,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개물림 사고 대부분은 개의 영역 경계에 있는 보도나 길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를 안전하게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가 누군가에게 달려들거나 뒤쫓는다면, 반려인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개가 '위협적인 개(meanacing dog)'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한다면, 벌칙으로 재판, 벌금, 손해배상 등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개가 '위험한 개(dangerous dog)'로 규정될 수 있고, 안락사될 수도 있습니다.

개에게 안전하게 접근하는 방법과 공격적인 개를 만났을 때의 대처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개 주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울 필요가 있고, 부모들은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만4세 이하의 아이들이 심각한 개물림 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입원이 필요했던 개물림 사고의 80%는 개인의 집에서 그들의 개, 혹은 친구나 이웃의 개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 가정에서 발생하는 개에 의한 공격 예방하기(Preventing attacks in the home)

번역문 (한국어)
(목차)
○ 문제점
○ 해결 방법
○ 개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문제점
- 아이들이 차사고로 입원하는 것보다 개물림으로 입원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만4세 이하의 아이들이 개물림 사고에 가장 취약하며, 그 다음은 만5-9세의 아이들입니다.
- 아이들이 개에게 물린 경우, 대부분 자신의 개나 아는 개에 의해 물렸으며, 함께 놀거나, 만지거나, 먹이를 줄 때 물렸습니다.
- (입원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개물림 사고는 대부분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 해결 방법
- 적극적인 감독이 핵심입니다. 절대 아이들(특히 만4세 이하)을 개와 혼자 두지 마세요.
- 아이들이 개와 거칠게 놀거나, 개를 놀리거나, 구석으로 몰거나, 목 주변을 안지 못

하게 하세요.

- 개가 두렵거나 화났을 때의 경고 신호와 공격적인 개와 마주쳤을 때의 행동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 개를 혼자 두어야 할 때가 있음을 알려주세요. (예시) 개가 자고 있거나, 먹고 있거나, 아프거나(unwell), 새끼들과 있거나, 묶여있거나, 반려인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차에 있을 때, 담장이나 문 뒤에 있을 때

○ 개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놀리지 마세요.
- 아플 때 건드리지 마세요.
- 화난 개에게 다가가지 마세요.
- 정면으로 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 잘 때 방해하지 마세요.
- 먹을 때 방해하지 마세요.
- 두려워하는 개에게 다가가지 마세요.
- 개가 파티하는 사람들 근처에 가지 않도록 하세요.
- 새끼랑 있을 때 건드리지 마세요.
- 담장을 타넘지 마세요.

(3) 기타

- 반려동물행동학연구회가 2016년에 출간한 「반려동물 임상행동의학 실전매뉴얼」의 부록 ‘소유자용 설명자료’에는 영국의 동물행동전문수의사 Dr. Sophia Yin과 일러스트레이터 Lili Chin의 유명한 안내자료를 한글화하여 인용하고 있음. 다음의 목차로 이루어진 해당 자료 역시 참고할 만함.

(목차)

- 아기가 함께 있는 집
- 목줄 하고 매너 있게 걷는 법 가르치기
- 강아지에게 인사하는 잘못된 방법
- 처음 만나는 개들을 위한 안내서
- 하지 말아야 할 것(성견편)

제4장 결론 : 효과적 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

제1절 위험 평가 및 관리대상견 관리 제도

-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 평가와 그를 통한 안전관리 제도가 필요함. 위험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견을 선정하고, 개의 행동 및 사육환경을 토대로 개물림 사고 발생 위험을 예측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반려인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안 개발이 필요함.
- 위험 평가 과정에서, 개가 보이는 공격성 혹은 질병에 의해 유발된 것은 아닌지 점검하도록 해야 함. 내과 및 외과적 신체 질환이 공격성을 유발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며, 한 연구에서는 공격성으로 행동치료동물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1/4 이상이 의학적인 질환에 의한 공격성을 보였다고 조사된 바 있으므로,¹²⁰⁾ 질환성 공격성을 보이는 개의 경우 질환 치료로 전환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함.
- 또한 개의 행동 평가 시, 증거에 기반한 최첨단의 행동학 지식을 바탕으로 공격성이 나타나는 원인과 그 정도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과 잠재적 위험성, 치료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하여 위험 평가 방법에 대한 기준 설정과 전문 인력풀의 양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 이미 현존하는 여러 동물병원과 동물행동 관련 기관들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중장기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이웃의 신고로 개의 문제행동이 신고될 경우, 공무원이 조사를 통해 기질평가를 받게 할 수 있으며, 각 주법에 따라 인증 받은 행동전문 수의사들이 기질평가를 진행하여 향후 조치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니더작센주의 경우 독일 내에서 유일하게 일괄적인 매뉴얼을 제공하여 상황 재연을 통한 표준화된 기질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영국은 반려견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에 다양한 층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규를 가지며, 반려견이 아니라 ‘반려인(ownership, individual)’에 집중함. 개가 계속 짖음으로써 유발되는 소음 문제부터, 공원에서 산책하는 다른 개를 위협하는 공격적인 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우를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개의 행동을 통제해야 할 반려인의 의무를 강화하여 개가 ‘위험하게 통제 밖에 나서(dangerously out of control)’ 누군가 부상입히는 경우 뿐 아니라 상대가 위협을 느끼기만 해도, 그 반려인은 기소될 수 있음. 위험 평가의 경우, 영국은 독일의 니더작센처

120) Beaver, B. V. "Clinical classification of canine aggression." Applied animal ethology 10.1-2 (1983): 35-43.

럼 일괄적 장치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고, 각각의 반려동물행동전문가들이 개별 사건에 대응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독일과 영국의 위험 평가 방식을 비교하고, 상황 재연을 통한 일원화된 평가를 시범 시행해본 결과, 독일 니더작센의 표준화된 기질평가와 같은 방식은 개의 평소 행동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 상황 재연을 위한 충분한 자원(평가자 포함 5인 이상의 인력 및 2마리 이상의 개)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평가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위험 평가 방식은 문제행동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리대상건을 선정하고, 전문성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평가자를 선정하며, 평가대상건의 행동 및 사육환경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위험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반려견 안전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전문가(위험평가전문위원회)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완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위험 평가는 개물림 사고 방지 정책의 일환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개물림 사고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계획되어야 함.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건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책의 효과성 뿐 아니라 동물복지 역시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함.
- 우리사회에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개의 행동과 욕구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임. 동물복지 선진국의 개물림 사고 대응 기조는 ‘모든 개는 물 수 있다’이며, 따라서 반려인이 책임지고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임. 효과적인 개물림 사고 대응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시민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반려동물 번식 기준을 외모에만 둠으로써 공격성이나 유전병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량생산에만 몰두해 온 생산업계의 무책임한 영업방식에 대한 규제도 시작해야 할 것임.

제2절 반려인의 책임의식 강화 정책

- 반려견의 행동은, 마치 아동의 행동이 그렇게 이해되듯이,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람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음. 개물림 사고를 비롯한 개의 문제행동 역시 대부분 개를 키우는 사람의 몰이해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에서 시작됨. 2018년에 Oxley가 영국에서 진행한 조사에서, 개물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고의 원인으로 개를 지목한 비율은 12.7%에 그친 바 있음. (44.6%는 자신을, 39.9%는 개 주인을, 8.7%는 기타 사람을 탓함.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응답은 18.5%였음.)

- 미국의 개물림 사고 전문가 Janis Bradley 역시 효과적으로 개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 책임성 있는 개 소유자 의식(Responsible Dog Guardianship)과 이에 대한 공동체의 광범위한 지원을 강조함. 책임성 있는 개 소유자 의식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책 무는 아래 표와 같음.¹²¹⁾

영역	요소
인도적인 돌봄 (Humane care)	적절한 음식과 물 의학적 돌봄 사회화교육 및 훈련
인도적인 보호 (Humane custody)	반려인 면허 취득 반려동물 등록
인도적인 관리 (Humane control)	목줄/몸줄을 할 의무 준수 개가 공동체에 위협 또는 불쾌감 요소가 되지 않도록 제어하기

표 4-1 책임성 있는 개 소유자 의식의 영역 및 요소

※ 미국 수의학협회(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는 여기에 더해 ‘중성화 수 술’을 강조하고 있음.

1. 반려인 교육의 중요성

- 반려인의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반려견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반려인에 대한 교육에 적극 나서는 것임. 미국 네바다 주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시행 후 개물림 사고가 15% 가량 줄어들었다.¹²²⁾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적 교육 내용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의 공격성의 보편성과 일반성 (모든 개는 물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행동의 연장선 일 수 있음) • 반려인의 책임감과 통제 중요성 • 개와 안전하게 인사하는 방법 • 개가 싫어하는 상황 • 개의 행동과 감정 (스트레스 표현 행동, 공격 직전의 행동 등) • 개가 공격할 때 대응법 • 개물림 사고 발생 이후의 대처법 • 개의 사회화의 중요성

121) Janis Bradley(2014)

122) AVSAB(2014)

- 개물림 사고 신고 방법 및 관련법·제도

<반려인 대상 교육에 추가되면 좋을 내용>

- 개물림 사고 발생 시나리오(가족구성원, 지인의 내방, 산책, 소형견vs대형견 갈등 상황 등) 및 예방법
- 개물림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이 있을 경우의 유의사항 (일상적인 감독의 중요성)
- 개물림 사고 발생 시 반려인의 책무와 관련된 법·제도
- 개의 사회화 교육 및 문제 행동 치료·교육·훈련 방법

- 특히 반려견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이해와 사회화 적기, 즉 강아지 시기의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2. 해외 성공 사례

- 캐나다 알버타 주의 캘거리 시는 반려인의 책임의식 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펴고 있는 지역의 실례를 보여줌. 1985년부터 2008년까지 인구는 62만명에서 104만명으로 증가했음에도 개물림 사고는 621 건에서 대략 200여 건으로 감소함.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쫓거나, 물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들에 대한 불편 신고 역시 주목할 만큼 줄어들음.¹²³⁾
- 이를 위해 캘거리 시가 강력한 조례(bylaws, ordinances)를 통해 품종에 상관없이 모든 개의 반려인을 대상으로 펼친 정책의 기초는 다음과 같음.¹²⁴⁾
 - 허용되는 개의 행동을 명확히 규정함.
 - 반려인들의 준법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 법을 못 지키거나 안 지킨 이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구체적으로는, ‘책임감 있는 반려인 규칙’에 의해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위반 시 엄격한 벌금을 부과하여, 2010년 등록율이 약 90%에 이름. (북미 대부분의 도시를 능가하는 등록율) 등록비와 벌금을 통한 수익은 동물관리부서(Animal Services Department)의 비용과 공공 교육 등에 사용함.¹²⁵⁾
- 1985년에서 2012년 사이, 캘거리에서는 공격적인 개에 대한 신고가 50%나 감소했고, 한 시간씩 2~3차례 이루어진 안전 교육만으로 개물림 사고를 줄임. 캘거리 시의 모델은

123) Janis Bradley(2014)

124) Janis Bradley(2014)

125) AVSAB(2014)

실효성이 있는 선례(품종에 기반한 평가가 아닌, 개체별 행동을 통한 평가)로서 다른 도시의 귀감이 됨.

- 미국 시카고 주에서도 ‘반려동물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마련하여, 반려인의 책임의식과 동물에 대한 통제, 사람에게 대한 동물의 공격 예방 등에 관한 역할을 하도록 함. 이 대책위원회는 “반려인의 책임 의식이 개의 공격성을 줄이는 열쇠”라고 결론내림.

제3절 안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제반 정책

- 위험 평가 및 관심대상견 관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여, 개물림 사고가 줄어들고 안전한 반려문화가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아래의 인접 정책들의 선행, 혹은 병행이 필요할 것임.

1. 반려견 개체수 조절

(1) 생산 두수 제한 및 동물복지 제고

- 궁극적으로는 반려동물의 대량생산, 대량판매를 제한하고,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반려 목적의 다양한 야생동물의 수입 역시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는 개, 고양이의 과잉 공급을 멈출 뿐 아니라, 동물을 물건처럼 자유로이 판매하고 구입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위한 것이며,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야생동물 밀렵 및 거래를 줄임으로써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성, 윌헬스의 가치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2) 입양 활성화

- 반려동물의 대량생산, 대량판매를 규제하는 정책은 입양의 활성화와 궤를 같이 함. 반려동물복지센터 혹은 입양센터 설치 등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거나, 막대한 수의 유기동물이 건강상의 이유 없이 안락사에 처해지는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특히 유기동물 입양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유인책이 필요함. 동물병원 수가를 책정할 때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 5~10%의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가를 책정하는 등, 유기동물 입양을 통해 사회의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시민들에게 보상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게 입양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임.

(3) 중성화 보편화

- 개에 대한 중성화는 반려동물 복지의 향상 및 반려견 개체수 조절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 사람도 그렇듯이, 개 역시 현대 사회의 생활양식에 맞게 사회화가 잘 이루어질 때 더 안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물론 이는 반려인의 책임 의식과 그에 대한 사회의 지지를 전제로 한 것임. 중성화를 통해 수컷 개는 고환암 및 전립선 질병을, 암컷 개는 유선종양, 자궁축농증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번식 욕구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완화함으로써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용이하게 해 줌. 따라서 반려동물 등록 시 9개월 이내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중성화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중성화를 의무화하거나, 향후 동물병원 수가 책정 시 중성화한 동물에게는 일정 비율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식의 강력한 지원책을 통해 중성화의 보편화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4) 브리딩 원칙 제시

- 반려동물의 대량생산을 제한하는 것과 더불어, 생산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 제시를 통해 동물복지 및 공공안전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생산 규모 대비 투입 인력 기준 등 제한적인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모견·종견에 대한 건강 및 행동 평가를 통해 유전병이 있거나 뚜렷한 환경적 요인 없이도 심한 공격성을 보이는 개의 경우 상업적 번식을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5) 유기동물 감축 및 인수제 도입

- 국내 유기동물 수에 대한 가장 최근의 발표¹²⁶⁾에 따르면, 2018년 전국의 유기동물은 집계 이후 최초로 12만 마리를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75.8%는 개였음. 반려동물 의무등록제 시행 및 유기 시의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 수는 늘어만 가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 개선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등록 비율을 높이고 반려동물 선택 시 유기동물 입양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 적극적 유인책이 필요할 것임.
- 유기동물의 감축을 위해서는 인수제를 통해 반려동물의 위기에 대응함으로써 유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경제사정 악화, 질병, 사망 등 반려인이 겪는 위기는 곧 반려동물의 안위와 직결됨. 현재는 이러한 경우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반려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경제적 사정과 주변의 인간관계 등 자원의 유무에 따른 편차를 돌볼 수 없으며, 이는 동물의 방치 및 유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반려인이 동물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이를 받아안아 재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사람과 동물 모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임.

126) 농림축산검역본부(2019), 2018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2019년 7월 22일

2. 반려동물복지 제고

(1) 사육환경 제고

- 음식과 보호처의 제공 뿐 아니라 산책, 치료, 교육, 교감 등 동물의 만족을 위한 돌봄도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사회의 많은 반려인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동물보호법에 충분히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동물복지를 위한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동물의 고통 뿐 아니라, 반려인의 무책임한 행동이 유발할 수 있는 소음, 악취, 공격성, 스트레스 등의 사회적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반려동물의 사육환경에 대한 상향된 기준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음.

(2) 반려견 사회화 문화 정착

- 개의 사회화란, 개가 사람 위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될 때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함.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아하는 간식이나 장난감과 같이 경험하게 하는 것임. 이때 강아지 혼자 모든 것에 노출되는 건 사회화가 아니며, 소유자가 강아지의 사회화 방법을 잘 모를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필요함.¹²⁷⁾

반려견 '사회화 교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새로운 것'

새로운 사람

- 개가 원할 때만,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기다림)
- 진짜 좋아하는 것과 새로운 사람을 연관시켜주세요.
- 강아지와 다른 사람의 만남은 부드럽게 해주어야 함을 기억하세요.
- 다양한 직업과 연령을 경험.

다른 동물

- 다른 동물과 만나기 전에 개를 좋아하는지 꼭 확인
- 규칙을 정하고 잘한 행동엔 보상, 흥분하거나 당기면 다른 길로
- 성견이 다른 개와 놀기 싫어해도 문제 없음. 사람이 그렇듯
- 공원이나 길거리, 사람이 많은 곳에서 구경만 해도 도움이 됨

새로운 물건과 환경

- 소음에 대한 공포를 예방하기 위해 소음 발생 시 작은 간식을 주기
- 다양한 바닥의 느낌을 알려주기
- 다양한 운송수단을 경험하고 수의사나 미용사에게 간식을 얻어먹고 만질 수 있게 병원을 방문

127) 서울특별시수의사회 (2016) 반려동물 임상행동의학 실천 매뉴얼

- 입마개를 간식바구니처럼 활용하여 입마개를 좋아하도록 가르치기

- 강아지의 사회화 적기는 전문가에 따라 주장이 다를 수 있지만, 이르면 3주부터 시작되어 12주에서 17주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함. 한국은 생후 2개월 이상의 강아지를 판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는 사회화 적기의 상당 시기, 즉 3주에서 8~9주까지의 중요한 시간을 반려동물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의 관리 하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음. 특히 이 시기는 젖을 먹으면서 면역력을 키우고, 어미의 보호와 돌봄 아래에 동기들과 상호작용하고, 또 사람과 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사회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함.

(3) 반려동물 압수제 및 소유제한제 도입

- 표창원 의원은, 동물학대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소유자의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 또는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 선고를 시·도지사가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019년 9월 18일 발의한 바 있음.¹²⁸⁾ 이는 무책임한 반려인으로부터 동물을 압수할 수 있는 제도로,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압수된 동물의 재입양이 활성화된다면 국내 반려동물 복지 증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임.
- 반려동물 압수제에 더하여, 동물학대,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반려동물을 일정기간, 혹은 심한 경우 영원히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유제한제 역시 도입될 필요가 있음. 2008년 호주의 한 연구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피학대 여성과 피학대 경험이 없는 여성을 비교한 결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52.9%가 자신의 반려동물도 학대를 당했다고 답변한 반면, 가정폭력을 겪지 않은 이들 중에는 반려동물 학대를 보고한 이가 전혀 없었음.¹²⁹⁾ 이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통찰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28) 뉴스1, 김연수 기자, “자기 동물 때린 사람 소유권 제한”...표창원, 동물보호법 발의, 2019년 9월 18일 <http://news1.kr/articles/?3722134>

129) 한겨레, 최우리 기자, 동물학대와 인간폭력은 어떻게 연결돼 있나, 2018년 9월 10일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861417.html

제5장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논문/단행본

- 국회도서관(2019), 개물림사고 방지 입법례(김나영), 최신외국입법정보, 제99호
- 반려동물행동학연구회(2016), 반려동물 임상행동의학 실전매뉴얼, 서울특별시 수의사회
- 김영기 외(2009), 진도개의 행동 테스트에 의한 에소그램, 한국임상수의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지 26.3 (2009): 238-245.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5),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 정영수(1998), 교사와 교육, 문음사
- 조성자(2019), 미국 동물법 발전현황과 시사점 - 미국 개물림법(Dog Bite Law)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65호,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2) 기사/웹문서

- 김기범 기자, 2019년 11월 21일, "반려견 훈련소에서 훈련받던 반려견 폭행치사" 동물구조119,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1211749001
- 뉴스1, 김연수 기자, “자기 동물 때린 사람 소유권 제한”...표창원, 동물보호법 발의, 2019년 9월 18일<http://news1.kr/articles/?3722134>
- 서지형 기자, 2016년 7월 1일, [서지형의 클릭클릭] 클릭커 트레이닝, 무엇이 다른가, 노트펫,
- (상)
https://www.notepet.co.kr/news/article/article_view/?groupCode=AB400AD921&idx=5312&page=1
- (하)
https://www.notepet.co.kr/news/article/article_view/?idx=5313&groupCode=AB400AD921
- 교원임용고시 카페 - 1. 전문성의 개념 / 2. 교직 전문성의 영역
<http://cafe.daum.net/study-plan/FvSJ/505?q=%EC%A0%84%EB%AC%B8%EC%84%B1%EC%9D%98%20%EA%B0%9C%EB%85%90>
- 카라(2014), 반려동물 대량생산과 경매, 그리고 식용도살 실태보고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현 동물권행동 카라)
- 카라(2018),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 자료집, 동물권행동 카라

- 한겨레, 최우리 기자, 동물학대와 인간폭력은 어떻게 연결돼 있나, 2018년 9월 10일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861417.html
- <https://ko.wikipedia.org/wiki/치안법원>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8), 2018 반려동물보고서 -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양육실태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iang21029&logNo=220835162817>

2. 해외문헌

(1) 논문/단행본

- Janis Bradley(2014), Dog Bites : Problems and Solutions (Revised 2014), Animal and Society Institute
- Beck and Jones(1985), Unreported Dog Bites in Children, Public Health Rep., Vol.100, 315-321
- Cornelissen and Hopster (2010), Dog bites in The Netherlands: A study of victims, injuries, circumstances and aggressors to support evaluation of breed specific legislation, The Veterinary Journal, 186, 292-298
- Guy(2001), Risk Factors for dog bites to owners in a general veterinary caseload, Applied Animal Behaviour Science, 74, 29-42
- Mills, Daniel, and Carri Westgarth. Dog bites: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5M Publishing, 2017.
- Kubinyi, Enikő, Borbála Turcsán, and Ádám Miklósi. "Dog and owne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og personality trait associations." Behavioural Processes 81.3 (2009): 392-401.
- Lansberg, Hunthausen, Ackerman(2013), Behavior Problems of the Dog and Cat, Sanders
- Netto, Willem J., and Doreen JU Planta. "Behavioural testing for aggression in the domestic dog." Applied animal behaviour science 52.3-4 (1997): 243-263.
- Nose, Izuru, and Miki Kakinuma. "Japanese version of the Dog Personality Scale: Reliability and validity based on owner and dog instructor evaluation and behavioral observation." Applied Animal Behaviour Science (2019).
- Oxley(2018), Contexts and Consequences of Dog Bites Incidents, Journal of Veterinary Behavior, 23, 33-39
- Oxley(2018), What is a dog bite? Perceptions of UK dog bite victims, Journal of Veterinary Behavior, 29, 40-44
- Park(박중환)(2019), Dog-bite injuries in Korea and risk factors for significant dog-bite injuries: A 6-year cross-sectional study, PLOS ONE

- Patronek GJ, Sacks JJ, Delise KM, et al. Co-occurrence of potentially preventable factors in 256 dog bite-related fatalities in the United States (2000-2009). *J Am Vet Med Assoc* 2013;243:1726-1736 doi:10.2460/javma.243.12.1726
- Beaver, B. V. "Clinical classification of canine aggression." *Applied animal ethology* 10.1-2 (1983): 35-43.
- Camps, Tomas, et al. "Pain-related aggression in dogs: 12 clinical cases." *Journal of Veterinary Behavior: Clinical Applications and Research* 7.2 (2012): 99-102.
- Affenzeller, Nadja, et al. "Human-directed aggressive behaviour as the main presenting sign in dogs subsequently diagnosed with diskospondylitis." *Veterinary Record Case Reports* 5.4 (2017): e000501.
- Aronson, Linda P., and W. Jean Dodds. "The effect of hypothyroid function on canine behavior." *Proc. Int. Vet. Beh. Med* (2005).
- Schalke, Esther, et al. "Is breed-specific legislation justified? Study of the results of the temperament test of Lower Saxony." *Journal of Veterinary Behavior* 3.3 (2008): 97-103.
- Bram, Maya, et al. "Evaluating aggressive behavior in dogs: a comparison of 3 tests." *Journal of Veterinary Behavior* 3.4 (2008): 152-160.
- Hsu, Yuying, and James A. Serpel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questionnaire for measuring behavior and temperament traits in pet dogs." *Journal of 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23.9 (2003): 1293-1300.
- Landsberg, Gary, Wayne Hunthausen, and Lowell Ackerman. *Behavior Problems of the Dog and Cat-E-Book*. Elsevier Health Sciences, 2011.

(2) 기타/기사/웹문서

- American Veterinary Society of Animal Behavior(AVSAB)(2014), Position Statement on the Breed-Specific Legislation, AVSAB
-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2014), Dealing with irresponsible dog ownership - Practitioners' manual, Llywodraeth Cymru Welsh Government
-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2018), Guidance on Dog Control and Welfare for Police and Local Authorities
- <https://www.gov.uk/courts>
-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1/65/contents>
- <http://www.legislation.gov.uk/ukpga/Vict/34-35/56/section/2>
- <https://www.gov.uk/government/news/dangerous-dogs-owners-face-tougher-sentences-for-attacks>
- <https://deednotbreed.org.uk/index.php/0-dog-laws/dangerous-dogs-act-section-3>
- <https://www.cdc.gov/features/dog-bite-prevention/index.html>

- <http://agriculture.vic.gov.au/pets/dogs/dog-attacks-dangerous-and-menacing-dogs/dog-attacks-faqs/preventing-attacks-in-the-community>
- <http://www.donga.com/news/voice/article/all/20170921/86450694/9>
-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explanatory-material/magistrates-court/item/fines-and-financial-orders/approach-to-the-assessment-of-fines-2/3-definition-of-relevant-weekly-income/>
- Karen Pryor(2005), Why Can't I Just Use My Voice?, Karen Pryor Clicker Training <https://clickertraining.com/node/275>
- Karen Pryor Academy, About us <https://karenpryoracademy.com/about/>
- Parliament of Victoria
Home > Economy and Infrastructure > Inquiry into the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Relating to Restricted Breed Dogs > Hearings and Transcripts
<https://www.parliament.vic.gov.au/404-eic-lc/inquiry-into-the-legislative-and-regulatory-framework-relating-to-restricted-breed-dogs/2623-hearings-and-transcripts>
- Ryan Jestin(Director, Animal & Bylaw Services, City of Calgary), Animal & Bylaw Services – Information for Australian Parliament (Victoria), 2015년 11월 18일
- Victoria State Government Agriculture <http://agriculture.vic.gov.au/pets/dogs>
- Victoria State Government – Things you should know – declared dangerous dogs http://agriculture.vic.gov.au/__data/assets/pdf_file/0005/369509/Factsheet-declared-dangerous-dogs.pdf
- Victoria Law Today Library : Crime Act 1958
http://www.legislation.vic.gov.au/Domino/Web_Notes/LDMS/PubLawToday.nsf/a12f6f60fb56800ca256de500201e54/d54d31c542710fa1ca25849b008162a5!OpenDocument
- Victoria Law Today Library : Domestic Animals Act 1994
http://www.legislation.vic.gov.au/Domino/Web_Notes/LDMS/PubLawToday.nsf/a12f6f60fb56800ca256de500201e54/4dd1540aebd48997ca258427001c5ad9!OpenDocument
- Victoria Law Today Library : Domestic Animals Regulations 2015
http://www.legislation.vic.gov.au/Domino/Web_Notes/LDMS/PubLawToday.nsf/855772f708126abdca2576170080bd2d/38b0f5b17f3dfc08ca25842a00038498!OpenDocument&Highlight=0,Statutory,Rule
- Victoria Law Today Library :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ct 1986
http://www.legislation.vic.gov.au/Domino/Web_Notes/LDMS/PubLawToday.nsf/e84a08860d8fa942ca25761700261a63/7074021126606811ca25849c00286013!OpenDocument&Highlight=0,Act
- Victoria Legal Aid : Fines and infringements > Penalty units
<https://www.legalaid.vic.gov.au/find-legal-answers/fines-and-infringements/penalty->

units

- BBC News Online(2015), Claire Jones, Kennelling seized dogs places 'burden' on police budgets, 2015년 9월 6일 <https://www.bbc.com/news/uk-england-33009044>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umbers-of-dogs-on-the-index-of-exempted-dogs>
- https://www.victoriaadvocate.com/news/crime/victoria-neighbors-fed-up-with-dogs-owner-animal-control/article_6cb444ac-468f-11e9-b5bf-8f8e0bd373bd.html
- <https://www.comparethemarket.com.au/dog-breeds-aussies-love/>
- <https://www.petcare.com.au/dog-breed/labrador/>

제6장 부록

제1절 행동 평가 국외 연구 동향

○ 미국에서 고안된 Canine Behavioral Assessment and Research Questionnaire (C-BARQ)는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행동 평가 방법으로, 총 7개의 section, 101개의 질문으로 구성됨. C-BARQ는 소유자가 작성하는 질문지 형식으로, 낯선 사람에 대한 공격성, 소유자에 대한 공격성, 개에 대한 공격성 등에 대해 타당성이 확인됨.¹³⁰⁾ 다양한 환경에서 개의 행동 성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그 외 American Temperament Test Society Temperament Test, SAFER(Safety Assessment For Evaluation Rehoming), Assess-a-Pet 등의 평가 방법이 있으며, 이들은 보호소내 유기견의 전반적인 성향 뿐 아니라 공격성을 예측하는 목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음.

1.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ASPCA)의 SAFER Test>

- Test 평가자 : 개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험있는 사람이 평가자로 참여하며, 평가자는 개의 대한 행동 이력을 모르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어야 함.
- Test는 다음과 같은 7개의 하위 검사로 이루어지며, 각 항목의 점수는 1-5단계로 평가됨.

항목	내용	평가기질
쳐다보기	평가자는 개의 얼굴을 살짝 잡은 후 위협적이지 않은 눈빛으로 개를 바라본다.	낯선 사람의 약간의 체지 및 눈빛에 대한 반응
민감성 평가	평가자는 손을 펴서 어깨부터 골반까지 전반적으로 털과 피부를 마사지하듯 주무른다.	개의 접촉에 대한 민감도 및 새로운 경험에 대한 공포심
Tag	평가자는 활발한 목소리와 함께 움직이며 놀이를 유도한다. 목줄은 느슨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손으로 개의 몸을 살짝 누르면서 놀이를 시작하도록 유도한다.	움직임과 소리 자극에 대한 반응, 우월 공격성 및 공포에 기반한 공격성
주무르기	한쪽 다리를 들어서 발쪽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발가락 사이까지 주무른다.	민감성에 대한 반응, 물기 억제력, 불쾌한 상황에 대한 참을성
음식에 대한	캔사료와 건사료가 섞인 밥그릇을 개가	음식 공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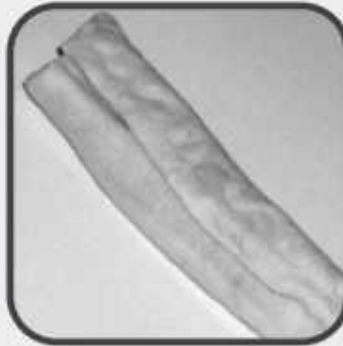
130) Hsu, Yuying, and James A. Serpel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questionnaire for measuring behavior and temperament traits in pet dogs." Journal of 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23.9 (2003): 1293-1300.

행동	먹도록 한 후, 모형 손을 밥그릇 안으로 넣어서 밥그릇을 당겨본다. 다시 먹도록 유도한다. 모형 손을 이용해서 개의 머리를 밥그릇 밖으로 밀어내거나, 머리카락 목을 살짝 친다.	
장난감에 대한 행동	평가자는 장난감을 개에게 넘겨준 후 개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유도한 후, 모형 손을 이용해서 장난감을 다시 뺏는다.	소유 공격성
다른 개에 대한 행동	목줄에 묶인 안정적이고 무반응한 개와 관찰자가 있는 방으로 테스트를 받는 개가 목줄을 한 채 평가자와 입장한다.	개를 대상으로 한 공격성

표 6-1 SAFER Test 평가 항목 및 목적

**two to three toys**

For the toy behavior item, two to three toys should be presented such as a rope toy, squeaky toy or ball (big enough to be removed from the dog's mouth). The toys should be of varied textures and shapes. Minimally, we recommend a rope and a squeaky.

**new unbasted rawhide per dog**

The rawhide item requires an unbasted rawhide. It should be large enough that it can be touched with the Assess-a-Hand[®] when the dog has his mouth fully around it. Ideally, a new rawhide should be used with each dog.

**buckle or martingale collar**

During the assessment, the dog must wear a collar with a buckle or plastic clasp that does not tighten when the leash is tugged. If your shelter fits all incoming dogs with semi-martingale collars (also known as Premier collars), there is no need to change them for the assessment. However, the buckle collar is preferred.

**six-foot leash**

The leash must be six feet long and size-appropriate for the dog. Cotton web, nylon or leather leashes 1/2 inch to 5/8 inch in width are both strong and easy to handle for most Assessors.

**clipboard**

A clipboard is used by the Observer to hold the SAFER[™] worksheet.

**optional sound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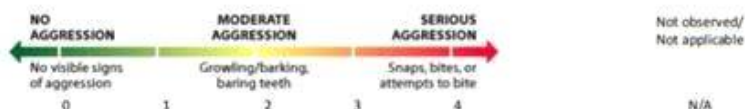
Many facilities have difficulties controlling external sound around the assessment room. Sound machines that emit white noise (sounds like the static on your radio) can be quite effective in buffering noise outside the assessment room.

그림 6-1 행동평가 실험 준비물 예시. SAFER[®] test 준비물 (SAFER[™] manual and training guide, ASPCA[®], 2010, 16p)

2.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Canine Behavioral Assessment and Research Questionnaire (C-BARQ)

Section 2: Aggression

Some dogs display aggressive behavior from time to time. Typical signs of moderate aggression in dogs include barking, growling and baring teeth. More serious aggression generally includes snapping, lunging, biting, or attempting to bite. By writing in the appropriate number from the scale, please indicate your own dog's recent tendency to display aggressive behavior in each of the following contexts:



9. When verbally corrected or punished (scolded, shouted at, etc.) by you or a household member.	
10. When approached directly by an unfamiliar adult while being walked/exercised on a leash.	
11. When approached directly by an unfamiliar child while being walked/exercised on a leash.	
12. Toward unfamiliar persons approaching the dog while s/he is in your car (at the gas station, for example).	
13. When toys, bones or other objects are taken away by a household member.	
14. When bathed or groomed by a household member.	
15. When an unfamiliar person approaches you or another member of your family at home.	
16. When unfamiliar persons approach you or another member of your family away from your home.	
17. When approached directly by a household member while s/he is eating.	
18. When mailmen or other delivery workers approach your home.	
19. When his/her food is taken away by a household member.	
20. When strangers walk past your home while your dog is outside or in the yard.	
21. When an unfamiliar person tries to touch or pet the dog.	
22. When joggers, cyclists, rollerbladers or skateboarders pass your home while your dog is outside or in the yard.	
23. When approached directly by an unfamiliar male dog while being walked/exercised on a leash.	
24. When approached directly by an unfamiliar female dog while being walked/exercised on a leash.	
25. When stared at directly by a member of the household.	
26. Toward unfamiliar dogs visiting your home.	
27. Toward cats, squirrels or other animals entering your yard.	
28. Toward unfamiliar persons visiting your home.	
29. When barked, growled, or lunged at by another (unfamiliar) dog.	
30. When stepped over by a member of the household.	
31. When you or a household member retrieves food or objects stolen by the dog.	
32. Towards another (familiar) dog in your household.	
33. When approached at a favorite resting/sleeping place by another (familiar) household dog.	
34. When approached while eating by another (familiar) household dog.	
35. When approached while playing with/chewing a favorite toy, bone, object, etc., by another (familiar) household dog.	

그림 6-2 C-BARQ 중 Aggression 평가 문항 목록 (©2015 James A. Serpell. All rights reserved. University of Pennsylvania Vet Med)

3. Missouri 주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American Temperament Test Society (ATTS)의 Temperament test

- ATTS의 기질 평가 기준 : 안정성, 공포, 공격성, 친밀성, 보호 본능
-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을 재현하여 개가 살고 있는 동네나 근처 공원을 산책시키며 다양한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자극에 노출시킴. 이 때 익숙하거나, 위협적이거나 중립적인 경험을 하게 되며 개가 위협적인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그리고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을 각각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관찰하여 평가
- ATTS의 기질 평가를 위해서는 최소 18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소요시간은 약 8-12분. 개는 약 180cm 리드줄에 묶고, 테스트를 수행하는 동안 수행자는 개에게 말을 걸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음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음 : 공격성이 유도되지 않는 경우, 공황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는 경우, 테스트를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 Test의 5개의 평가분야 및 세부적인 10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음.

평가분야	항목	내용	평가기질
낮선 사람에 대한 행동	중립적으로 다가오는 사람	낮선사람이 수행자에게 다가와 악수를 하고 짧은 대화를 한다. 이 때 개는 무시한다.	개의 보호본능과 수동적인 사회화 능력을 평가한다.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	낮선사람이 개를 보며 친근하게 다가온 후 쓰다듬는다.	개의 능동적인 사회화 능력을 평가한다.
청각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	보이지 않는 소리	조수가 돌이 담겨있는 철바구니를 흔든 후 수행자가 오는 길에 바구니를 내려놓는다. 필요시 개가 바구니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수행자의 관심은 개가 아니라 바구니에 있어야 한다.	개의 호기심과 경계심을 평가한다.
	총소리	수행자가 개와 함께 지정된 곳에 멈추면 조수가 3차례 총을 발사한다.	갑작스런 소리에 대한 개의 회복능력을 평가한다.
시각적인 자극	우산	조수가 우산을 땅과 평행하게 들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수행자가 약 150cm 앞까지 다가오면 우산을 펼친다. 필요시 개가 우산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수행자의 관심은 개가 아니라 우산에 있어야 한다.	갑작스런 시각 자극에 대한 개의 반응을 평가한다.
촉각적인	플라스틱	수행자와 개가 같이 플라스틱(257cm	익숙하지 않은 곳을

자극	위 걷기	× 183cm) 위를 걷는다.	걷는 것에 대한 반응을 살핀다.
	철망 위 걷기	수행자와 개가 같이 접혀있는 철장 (365cm × 90cm) 위를 걷는다.	
보호본능	비위협적인 상황	수행자와 개가 표시해둔 곳에 멈추면 이상한 옷을 입은 낯선 사람이 약 1km앞에서 지나간다.	익숙하지 않는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위협적인 상황	수상한 사람이 위협적인 태도로 약 300m 다가온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위협적인 상황으로 바뀌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공격성	수상한 사람이 위협적인 태도로 수행자와 개의 550m 이내로 다가온다.	보호본능을 평가한다.

표 6-2 ATTS 기질 테스트의 평가 항목 및 목적

4. Dutch Socially Acceptable Behaviour (SAB) – test

– 네덜란드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농림부에서 개의 위험 평가 방법 연구를 지원하였고, 그 결과 Dutch Socially Acceptable Behaviour (SAB) – test가 고안됨. 2001년부터 SAB-test를 통해 위험성이 있는 품종 및 위험 평가에 사용되었으며, 검사 과정은 다음과 같음.¹³¹⁾

- 1) 두 명의 시험 진행자는 개가 탑승해 있는 개와 소유자의 차로 접근하고, 이 중 한 명의 시험 진행자는 개를 응시함; 한 명의 시험 진행자는 차의 창문에 노크를 하고 문을 달그락거림.
- 2) 소유자는 20m의 거리에서 목줄을 착용한 개와 실외를 걸음.
- 3) 소유자는 개에 “앉아”라고 명령; 소유자는 개가 앉은 자세를 20초간 유지하도록 함, 필요시 목줄 같은 보조 수단 이용.
- 4) 소유자는 개에 “엎드려”라고 명령; 소유자는 개가 엎드린 자세를 20초간 유지하도록 함, 필요시 목줄 같은 보조 수단 이용.
- 5) 20m의 거리의 울타리 뒤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3마리의 암개(지배적이지 않은)가 짖는 자극; 소유자는 개와 함께 울타리를 따라 걷고, 울타리로부터 1m의 거리에서 다시 돌아감

131) Netto, Willem J., and Doreen JU Planta. "Behavioural testing for aggression in the domestic dog." Applied animal behaviour science 52.3-4 (1997): 243-263.

6) 소유자 없이 개는 울타리 뒤에서 지배적인 수컷이 짝짓는 자극에 직면; 시험견은 1.5m 길이의 줄에 울타리 1m 떨어진 곳에 묶여있음

위의 과정을 마친 후 개는 인접한 시험 진행 실내 공간으로 이동(그림 참고)하며, 이 공간에서 나머지 모든 시험 과정이 진행됨. 6번 문은 관찰자와 시험 진행자를 가리기 위해서 닫힐 수 있음. 시험 진행자는 2번문과 3번문을 이용해서 시험 공간으로 들어가며, 시험견은 2번문을 이용해서 들어감.

7)-9)의 과정은 소유자 존재 하에 공간 a에서 개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안 진행됨.

7) 소유자는 “이리와”라고 명령함.

8) 소유자는 익숙한 장난감을 이용해 1분간 개와 놀이를 함.

9) 소유자는 익숙하지 않은 장난감을 이용해 1분간 개와 줄다리기 놀이를 함(장난감은 줄다리기 놀이를 하기에 적합한 장난감).

10)-19)는 소유자 존재 하에 개는 공간 b에 위치한 상태에서 진행됨.

10)-12)와 16)-19)에서 소유자는 개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음.

10) 시험 진행자는 손전등을 개의 눈 앞에서 켜서 개의 눈을 바라봄 (개는 공간 b에 위치; 소유자는 개의 머리를 잡음); 이 과정은 개가 안정제를 먹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진행.

11) 시험 진행자는 9번 과정에서 이용했던 같은 장난감을 이용해서 개와 줄다리기 놀이를 함.

12) 시험 진행자는 모형 손을 이용해서 개를 만짐; 모형 손은 외형적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보이는 강한 플라스틱 재질임; 모형 손에 막대기를 부착하여 이용; 막대기는 모형 손을 잡은 시험 진행자의 손을 가리기 위한 소매로 가려짐.

13) 소유자는 개를 응시함.

14) 소유자가 개의 주둥이를 두 손을 이용하여 잡음.

15) 소유자가 개를 배가 보이도록 눕히고,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 손 또는 두 손을 개의 가슴에 올림.

16) 소유자는 비교적 세게 개의 엉덩이 부분의 피부를 짝 잡음.

17) 모형 손을 이용하여, 시험 진행자는 개가 좋아하는 음식 또는 상업 브랜드의 건사료가 들어있는 개의 밥그릇을 끌어당김.

18) 모형 손을 이용하여, 상업 브랜드의 건사료가 들어있는 개의 밥그릇을 끌어당김.

19) 시험 진행자는 소유자를 향해 걸어가서 소유자와 힘차게 악수하고, 다소 위협적인 느낌으로 큰 소리로 말함.

20)-28)은 소유자의 부재 하에 공간 b에서 진행함.

20) 시험 진행자는 공간 b의 경계에서 개 앞에서 달그락거림.

21) 시험 진행자가 공간 b의 경계에서 개 앞에서 자동 우산을 갑자기 펼침.

22) 시험 진행자가 공간 b의 경계에서 개 앞에서 스티로폼 조각이 가득 찬 큰 플라스틱 가방을 끌고, 이는 특유의 소음을 유발함.

23) 시험 진행자는 이상하게 보이는 여성처럼 옷을 입고, 막대기와 함께 걸어서 개에게 접근하고, 모형 손을 이용하여 개를 만지려고 시도하고, 이상한 높은 톤의 목소리로 말을 걸음.

24) 작은 바퀴들 위의 판자에 서 있는 65cm 높이의 실물 크기의 인형이 시험 진행자에 의해 걷는 속도로 개를 향해 끌려오며, 이 때 시험 진행자는 개의 시야 밖에 있음.

25) 시험 진행자는 인형을 잡고 인형의 손을 이용하여 개를 만지려 함.

26) 시험 진행자는 개를 응시함.

27) 시험 진행자는 개 앞에서 손뼉을 크게 칩.

28) 시험 진행자는 개에 닿지 않는 거리 내에서 개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듯한 움직임으로 개를 위협함.

29)-43)은 소유자 존재 하에 진행됨.

29) 등을 바닥에 댄 채로 바닥에 팔다리를 펼친채로 누워있는 남성 모델(190cm; 평범한 옷차림, 모자; 모델은 무릎 높이로 회전 가능)이 소유자가 목줄을 한 개와 함께 문을 통해 들어올 때 일으켜 세워짐(그림에서 개와 소유자는 4번 문을 통해 나가고 5번 문을 통해 모델 바로 앞으로 들어옴).

30)-34)에서 개는 공간 c에 위치, 소유자는 개의 목줄을 잡고 옆에 서있음.

30) 세 명의 사람이 한 걸음씩 개를 향해 접근하여 개를 둘러쌌; 소유자는 개 옆에 서있음.

31) 30)과 같은 상황에서, 세 명의 사람이 신속하게 개에 접근하고 둘러쌌.

32) 개는 시험 진행자와 빗자루로 위협을 받음; 시험 진행자는 공간 c내의 개 앞에서 바닥에 빗자루를 내리치며 소리를 지름; 만약 개가 빗자루를 물면 시험이 계속 됨.

33) 시험 진행자가 소유자에게 소리를 쳐 위협을 하고, 소유자를 모형 손으로 밀침.

34) 개와 소유자는 두 명의 사람이 목줄을 잡고 있는 세 마리의 개를 보게 됨; 그 중 한 마리는 지배적인 수컷이고, 나머지 두 마리는 순종적인 수컷들임; 개들은 짓도록 자극 받음; 자극견들은 공간

c 0.5m 이내로 오도록 허락됨.

35)-43)에서 개는 공간 b에서 소유자와 함께 있으며, 소유자는 개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음;
36)-40)에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유자가 앉아있는 의자는 멀리 위치함.

35) 낯선 지배적인 수컷의 목줄을 잡고 시험 진행자는 개에게 접근하고, 공간 b의 경계에서 0.5m의 거리에서 멈춤.

36) 지배적인 수컷의 목줄을 잡고 시험 진행자는 소유자에게 걸어오고, 소유자는 자신의 개는 무시한 채 자극견을 만지도록 지시받음.

37) 개는 지배적인 수컷개로부터 0.5m의 거리에서 공간 b내에서 소유자에 의해 밥 그릇을 받음.

38) 소유자는 공간 b의 경계에서 0.5m 떨어진 거리에서 지배적인 수컷개에게 자신의 개의 밥그릇을 줌.

39)-42)는 35)-38)과 같으나 낯선 다소 지배적인 암컷 자극견들과 진행함; 만약 시험 대상 견이 수컷이라면, 39)-42)를 35)-38)보다 선행하여 진행함.

43) 공간 b에서 소유자는 개를 그의 이불 또는 침구 위에 눕힘; 시험 진행자는 공간 b에서 개에게 접근하여 모형 손을 이용하여 개를 만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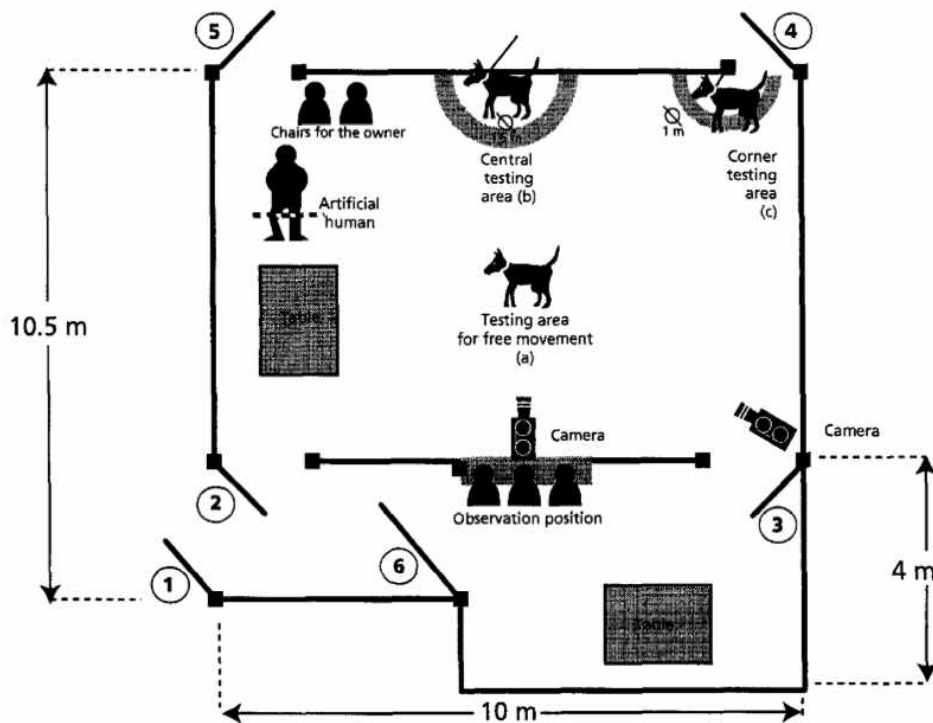


그림 6-3 SAB-test의 위험 평가 공간 구성도

제2절 현장조사 세부 결과

(1)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목적

- 동물복지 선진국의 반려견 안전관리 및 위험 평가 정책, 물림사고 행정 처리 절차 등을 조사하여 국내에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현장조사 내용

- (기준 연구)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개의 기준, 개의 위험 평가 척도 등
- (현황 조사) 국외 개의 위험 평가 현황, 국외 개물림 사고 이후의 행정 처리 절차, 위험 평가 수행 기관 등
- (정책안 도출) 개의 위험 평가 관리 정책안 등

○ 현장조사 대상

- (독일) 기질평가(Wesenstest) 전문가, 동물복지연구소, 수의국
- (영국) 행동치료전문병원, 런던 Wandsworth 공무원, 동물보호단체(RSPCA)

(2) 현장조사 결과

현장 조사 (1)	일시	2019년 9월 29일 (일)
	장소	독일 Schönbach 기질평가 장소 (야외공간)
	참석	Esther Schalke, 이해원, 김가희, 박아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senstest (기질평가) 개발 과정 - 니더작센 주 Wesenstest 방법 및 비용(260유로) - Wesenstest 수행 인력 및 관리방안 - 개물림 이후 경찰 조사 및 정부(안전유지국)의 요구에 따라 Wesenstest 를 하게 되는 과정 - 반드시 off-pain 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실시. - 시민 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 - Wesenstest 결과 안락사를 권하는 경우 - Wesenstest에 적합한 환경 탐방
현장 조사 (2)	일시	2019년 10월 1일 (화)
	장소	뮌헨 동물복지연구소
	참석	Angela Bartels, 이해원, 김가희, 박아름
	내용	- 바이에른 주 Wesenstest 방법과 니더작센과의 차이점 (대상견의 집을 방

		<p>문하여 평소의 환경 속에서 평가하도록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물림 이후 Wesenstest를 바로 진행하기보다 행동치료수의사를 먼저 만나도록 함. - Wesenstest 결과 안락사를 권하는 경우 - 맹견법 품종을 증명하는 것의 어려움 - 시민 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
현장 조사 (3)	일시	2019년 10월 1일 (화)
	장소	윈헨 수의국
	참석	Florian Walsch, 이해원, 김가희, 박아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에른 주의 개물림 사고 인지 통로 - 바이에른 주의 개물림 사고 이후 절차 - Wesenstest 결과에 따른 조치의 종류 - Wesenstest 결과지에 포함되는 내용 - 바이에른 주의 맹견법 - 바이에른 주의 반려인 면허 도입 가능성
현장 조사 (4)	일시	2019년 10월 3일 (목)
	장소	Behavioural Referrals (10 Rushton Dr., Upton, Chester)
	참석	Sarah Heath, 김가희, 박아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havioural Referrals 의 행동 평가 기조 (개의 감정적, 정서적 상태, 행동을 일으키는 감정적 원인에 집중) - Behavioural Referrals 의 행동 평가 원칙 (자극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가족과 생활공간을 방문하면서 인터뷰 시작) - 질환성 공격성 비율 (약 70~75%) - 문제 행동 대응 기조 (첫째, 소유자 교육, 둘째, 환경 변화, 셋째, 개 훈련 및 약물 치료) - 시민 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 - 강아지 훈련 방향 (사회화, 정서적 지능 제고 등) - 영국의 맹견법에 대한 의견 (법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개를 평가내리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현장 조사 (5)	일시	2019년 10월 3일 (목)
	장소	6593+P4, Mickle Trafford, Chester
	참석	Laura Francis, Simon Robinson-Stynes, 김가희, 박아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havioural Referrals 의 행동 평가 방법 - Behavioural Referrals 의 행동 평가 공간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 평가 시 사용하는 도구 견학 - 개의 복지를 고려한 행동 평가 공간 설계 - 개의 훈련이 필요할 경우의 인력 연계 방법 - 고양이 행동 평가 방법
현장 조사 (6)	일시	2019년 10월 4일 (금)
	장소	Warren Station 인근 (126 Tottenham Court Rd, Fitzrovia, London)
	참석	Paul Littlefair, 김가희, 박아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SPCA 동물복지조사관 (Animal Welfare Inspector)과 지역 공무원의 역할 차이 - 개물림 문제에 대한 조사를 위한 전문가 추천 및 섭외 - 맹견법에 대한 RSPCA의 입장 - 시민 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
현장 조사 (7)	일시	2019년 10월 7일 (월)
	장소	Dogs Trust (17 Wakley St., The Angel, London)
	참석	Jenna Kiddie, Charlotte Longster, 김가희, 박아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gstrust 입소시 행동 평가 과정 - 개물림사고 발생시 체계화된 절차의 필요성 - 행동평가자의 자질 평가/인증 시스템 필요성 - 현재 영국 맹견법에서 개선해야하는 점 (개물림 사고에 관한 자세한 정보 수집, 맹견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형성 개선) - 시민 교육, 특히 어린이 - 및 소유자 교육을 통한 개물림 사고 예방의 중요성 - 미디어가 개물림 사고를 다루는 관점에 있어서 문제점
현장 조사 (8)	일시	2019년 10월 8일 (화)
	장소	Sudbury House (Wandsworth High Street, London)
	참석	Mark Callis, 김가희, 박아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물림 사고 인지 통로 - 개물림 사고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방법 -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 - 안락사 판결 사례 - 맹견법에 대한 의견 - 반려인 면허제도에 대한 의견 - 시민 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
현장	일시	2019년 10월 9일 (수)

조사 (9)	장소	RSPCA (Wilberforce Way, Southwater, Horsham)
	참석	Sam Gaines, 김가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를 관리하는 영국 법안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의견 - 기질 평가에서 증거기반 접근의 중요성 - 기질 평가의 전문성 표준화의 중요성 - 기질 평가에 대한 RSPCA의 입장 - 개물림 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통한 연구의 필요성 - 정부 주도 시민 교육의 필요성 - 반려인 책임의식 강화 기조와 반려인 면허제도에 대한 RSPCA의 지지

제3절 시범시행 세부 결과

○ 시행 결과

- 총 20마리의 참여견을 모집하였으며, 기본 정보는 아래와 같음.

- (연령) 연령 3살 미만 5마리, 3살 이상 7살 미만 13마리, 7살 이상 2마리 였으며, 최소값 1살, 최댓값 12살 2개월, 평균 4살 4개월임.
- (입양 시 연령) 3개월령 이하일 때 입양 한 경우 18마리이며, 나머지는 1살 이전 1마리, 파악 불가 1마리임.

3개월령 이하	4개월령 이상 ~ 1살 이하	파악 불가	총
18	1	1	20

표 6-3 참여견의 입양시 연령

- (입양처) 펫샵 및 가정 분양 10마리, 유기견 보호소 입양 5마리, 지인 또는 본인 반려견의 출산 4마리, 파악 불가 1마리임.

펫샵 및 가정 분양처	유기견 보호소	지인 또는 본인 반려견의 출산	파악불가	총
10	5	4	1	20

표 6-4 참여견의 입양처

- (체중) 체중 5kg 미만 7마리, 5kg 이상 10kg 미만 8마리, 10kg 이상 5마리 였으며, 최소값 2kg, 최댓값 39.25kg, 평균 8.935kg임.

5kg 미만	5kg 이상 ~ 10kg 미만	10kg 이상 ~	총
7	8	5	20

표 6-5 참여견의 체중

- (성별 및 중성화 여부) 중성화 한 암컷 5마리, 중성화를 하지 않은 암컷 3마리, 중성화 한 수컷 11마리, 중성화를 하지 않은 수컷 1마리임.

	중성화 함	중성화 하지 않음	총합
암컷	5	3	8
수컷	11	1	12
총합	16	4	

표 6-6 참여견의 성별 및 중성화 여부

- (중성화 수술 시기) 중성화를 한 16마리 중 7개월령 이전에 중성화를 한 경우 6마리, 8개월령 이상 2년령 이하 시기에 중성화를 한 경우 7마리, 2년령 초과 시기에 중성화를 한 경우 2마리, 확인 불가 1마리임.

7개월령 이전	8개월령 이상 ~ 2년령 이하	2년령 초과~	확인불가	총
6	7	2	1	16

표 6-7 참여견의 증성화 수술 시기

- (품종) 포메 5마리, 믹스견 3마리, 진도견 2마리이며, 보더콜리, 말티푸, 테리어, 요크셔테리어, 코카스파니얼, 푸들, 닥스훈트, 진도견, 웰시코기, 폼피츠, 그레이트 피레니즈가 각 1마리임.
- (훈련 여부) 문제 행동 치료를 위한 훈련을 받은 경우 3마리, 성견 기본 훈련을 받은 경우 3마리, 퍼피클래스에 참여한 경우 1마리 였으며, 나머지 13마리 (65%)는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었음.

퍼피클래스	성견 기본 훈련	문제 행동 치료를 위한 훈련	훈련 경험 없음	총
1	3	3	13	20

표 6-8 참여견의 기 참여 훈련

- (동거견) 참여견 외의 동거견이 있는 경우 9마리, 동거견이 없는 경우가 10마리였으며, 동거견이 증성화가 안된 경우가 5마리임 (5마리 중 2마리는 동거견이 5개월 이하임). 특히 증성화가 안된 경우 중 1마리는 참여견 뿐만 아니라 3마리의 동거견 모두 증성화를 하지 않았음.

동거견 없음	증성화 수술을 한 동거견이 있음	증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동거견이 있음	파악 불가	총
10	4	5	1	20

표 6-9 참여견의 동거견 현황

- (거주 환경) 도시 내 아파트, 빌라에서 살고 있는 경우 18마리, 도시 외곽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1마리,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1마리임.

도시 내 아파트, 빌라	도시 외곽	농촌 지역	총
18	1	1	20

표 6-10 참여견의 거주 환경

- 24시간 중 집안에서 22시간 이상 시간을 보내는 참여견은 12마리, 20시간 이상 22시간 미만의 시간을 보내는 참여견은 6마리, 20시간 미만의 시간을 보내는 참여견은 2마리임.
- (산책 횟수) 일 2회 이상 산책하는 경우 8마리, 일 1회 이상 2회 미만 산책하는

하루 24시간 중 22시간 이상을 집에서 보내는 참여견	하루 24시간 중 20시간 이상 ~ 22시간 미만을 집에서 보내는 참여견	하루 24시간 중 20시간 미만을 집에서 보내는 참여견	총
12	6	2	20

표 6-11 참여견의 하루 중 실내 머무르는 시간

경우 11마리, 산책하지 않는 경우 1마리임.

일 2회 이상 산책하는 참여견	일 1회 이상 ~ 2회 미만 산책하는 참여견	산책하지 않는 참여견	총
8	11	1	20

표 6-12 참여견의 산책 횟수

- 참여견이 일 3시간 미만으로 집에 혼자 있는 경우 5마리,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혼자 있는 경우 5마리, 6시간 이상 혼자 있는 경우 10마리임. 실험견 중 2마리는 혼자 집에 있을 때 크레이트 안에 있어야 하거나 목줄로 묶어두었음.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총
5	5	10	20

표 6-13 참여견의 하루 중 소유자 없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

- (사료 급여) 자유 급식을 하는 2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18마리는 일 2회 이하 급여 하였음.
- (간식 급여) 참여견 중 16마리에게는 매일 간식을 급여하였으며, 매일 사람이 주는 음식을 주는 경우도 2마리 있었음.
- (교배 경험) 참여견 20마리 모두 교배 경험은 없었으나, 1마리는 소유자가 교배시 킬 계획이 있었음.
- (명령어 훈련) 6가지 명령어 (앉아, 옆드려, 이리와, 기다려, 가져와, 내려놔) 중 가르친 명령어에 대부분 잘 반응하는 확률이 70% 이상인 경우가 16마리 였으며, 나머지 4마리는 명령어에 대한 반응율이 60% 이하였음.
- (크레이트 훈련) 참여견 20마리 중 13마리는 크레이트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며, 그 중 8마리는 계속 사용하고 있음.
- (경찰 신고 및 법적 조치) 물림 사고로 인해서 경찰에 신고된 경우는 없었으며, 법적인 조치를 받은 경우도 없었음.

- 총 20마리 참여견의 반려인 정보는 아래와 같음.

- (반려인) 미취학 아동 반려인이 있는 경우 2마리임.

반려인 중 미취학 아동 있음	반려인 중 미취학 아동 없음	파악불가	총
2	17	1	20

표 6-14 참여건의 반려인 중 미취학 아동의 유무

- 현재 소유자 이전에 거친 소유자 수가 3명 이상인 참여건 3마리 모두 공포 및 불안 항목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불안 행동을 보였음.
- (과거 경험) 참여건의 소유자 20명 중 10명은 이전에 다른 개를 성견까지 키워본 경험이 있었으며, 10명은 그렇지 않았음.
- 참여건의 부모나 형제, 자매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소유자는 4명, 부모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소유자는 2명, 형제, 자매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경우 6명, 전혀 모르는 경우 11명임. 부모와 형제, 자매에 대해 알고 있는 소유자 4명 중 3명은 참여건의 가족 중 성격이 예민하거나 공격적인 개가 있다고 알고 있음.

부모견과 동배견에 대해 모두 알고 있음	부모견에 대해서만 알고 있음	동배견에 대해서만 알고 있음	아는 바 없음	총
4	2	6	11	20

표 6-15 참여건의 부모견/동배견에 대한 정보 확인 정도

- 반려견 교육과 관련된 책을 읽어본 소유자가 13명, 그렇지 않은 소유자는 5명, 파악 불가 2명임.
- 안락사 또는 파양을 고민해 본적 있는 소유자는 3명이었으며, 이 소유자의 참여건 중 2마리는 중성화를 하지 않은 상태임.

- 기왕력 및 건강검진 결과

- (수술 및 입원)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은 경우가 6마리이며 그 중 4마리는 수술을 진행하였음. 골절로 인한 정복 및 플레이트 제거술을 한 경우 1마리임. 성대수술을 한 경우가 1마리, 채식염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가 1마리임.
- (내과) 만성 질환 중 하나인 알러지성 피부염에 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1마리 있음.
- (복용 약물) 영양제가 아닌 처방 약물을 장기 복용 중인 경우는 없음.
- (방사선 촬영 결과) 허리 디스크 의심 소견을 보이는 경우 2마리임. 고관절 아탈구 소견을 보이는 경우 1마리임. 방광결석 확인된 경우 1마리임. 관절염이 있는 경우 4마리임. 관절염을 보이는 4마리 모두 무릎에 관절염이 있었으며, 그 중 2마리는 각각 고관절과 어깨에도 관절염 소견이 있었음. 단, 허리 디스크의 경우 방사선 촬영으로 확진은 불가함.
- (혈액 검사) 20마리 중 BUN¹³²⁾ 수치가 정상 보다 높은 경우 2마리, 갑상선 호르

디스크 의심 소견	고관절 아탈구	관절염	방광결석
2	1	4	1

표 6-16 참여건의 방사선 촬영 결과

문 수치가 정상보다 낮은 경우 1마리 있음. 해당 참여건에 대해서는 추후 모니터링 및 후속 검사를 통해 내재질환 진단이 필요할 수 있음.

- 공격적인 행동 전반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공격 행동 첫 발생 시기) 12개월 이하에서 발생한 경우 10마리, 12개월 초과 2살 이하에서 발생한 경우 5마리, 2살 초과에서 발생한 경우 4마리, 파악 불가 1마리 임. 중성화를 하지 않은 4마리 중 2마리는 12개월 이하에서 첫 공격 행동이 발생 하였으며 2마리는 1살 초과 2살 미만에서 발생하였음.

12개월령 이하	12개월령 초과 ~ 2년령 이하	2년령 초과 ~	파악불가	총
10	5	4	1	20

표 6-17 참여건의 첫 공격 행동 발생 시기

- (공격 행동의 빈도) 자극 시 마다 공격하는 경우 8마리, 1주에 3회 공격하는 경우 3마리, 1주에 1회 공격하는 경우 1마리, 2주에 1회 공격하는 경우 1마리, 1개월에 1회 공격하는 경우 3마리, 가끔 공격하는 경우 2마리, 1회 공격한 경우 1마리, 파 악 불가 1마리임.

자극 시 마다 공격	주 1회 이상 공격	월 1회 이상 공격	거의 공격하지 않음	총
8	4	4	3	19

표 6-18 참여건의 공격 빈도

- (공격 정도) 대상에게 피가 날 정도로 문 적이 있는 경우 15마리, 그렇지 않은 경 우 5마리임.
- (피가 날 정도의 공격 빈도) 피가 날 정도로 문 적이 있는 경우 중 2주에 1회 정

132) BUN이란, Blood Urea Nitrogen의 약어로 혈액 내 요소질소를 의미한다. 요소는 체내에서 단백질 분해될 때 생산됩니다. 암모니아 형태로서의 질소는 단백질 분해될 때 간에서 생산됩니다. 질소는 간에서 다른 화학 물질과 결합하여 요소노폐물을 생성합니다. 요소는 혈류로 방출되어 신장에 도달하며, 신장에서 혈액이 걸러 지면서 요소는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건강한 신장은 체내에서 생산된 요소의 90% 이상을 제거하므로 혈액의 요소질소 농도는 신장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장이나 간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질환은 혈액 내 요소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간에서 생산된 요소의 양이 증가하거나 신장에서 제거되는 요 소의 양이 감소한다면 혈액 요소 농도는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중대한 간손상이나 간질환으로 인해 요소의 생산이 감소한다면 BUN (혈액요소질소) 농도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진단검사의학회 labtestsonline.kr/tests/bun)

피공격자에게 피가 날 정도로 공격	그렇지 않음	총
15	5	19

표 6-19 참여견의 공격 정도

도 무는 경우는 1마리, 1달에 1회 정도 무는 경우는 6마리, 3개월에 1회 정도 무는 경우 1마리, 총 5회 이상 문 경우 1마리, 3회 이하로 문 경우 4마리임.

월 1회 이상	3개월에 1회 가량	총 5회 이상 또는 그 이하	파악불가	총
7	1	5	2	19

표 6-20 참여견의 출혈을 동반한 공격 빈도

- 주로 보인 공격적인 대상 및 상황 전반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상 특정화) 참여견이 무는 대상을 주 소유자, 가족 구성원 (사람), 가족의 지인, 낯선 사람, 낯선 개, 흥분 상황에서 옆에 있는 사람 및 강아지로 분류 하였을 때, 1가지 분류 대상에게만 공격성을 띄는 경우가 9마리, 2가지 분류 대상에게 공격성을 띄는 경우 4마리, 3가지 이상 분류 대상에게 공격성을 띄는 경우가 7마리임.

1가지 분류 대상에게만 공격	2가지 분류 대상에게 공격	3가지 이상 분류 대상에게 공격	총
9	4	7	20

표 6-21 참여견의 공격 대상

- 공격 대상이 주 소유자인 경우 7마리, 가족 구성원 (사람)인 경우 10마리, 가족의 지인인 경우 7마리, 낯선 사람인 경우 9마리, 낯선 개인 경우 3마리, 흥분상황에서 옆에 있는 사람 및 강아지 인 경우 1마리임 (복수 응답 가능).
- 참여견 20마리 중 가족의 지인이나 낯선 사람은 물지 않고 가족만 공격한 경우가 6마리였음.
- (대상 연령) 공격 대상이 성인인 경우 15마리, 영유아 3마리, 어린이 2마리, 남자 1마리, 전연령 1마리임 (복수 응답 가능).

영유아	어린이	성인	전연령
3	2	15	1

표 6-22 참여견의 공격 대상 연령

- 참여견 중 미취학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2마리 였으며, 2마리 모두 미취학 아동을 문 적이 있었음. 미취학 아동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4마리가 미취학 아동을 문 적이 있었으며, 미취학 아동을 마주친 적이 없지만 마주치면 물 것

같다고 응답한 경우도 2마리 있었음.

- 참여견 중 65세 이상의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없었음.
- 7가지 동일한 행동을 친숙한 사람과 낯선 사람이 했을 때 무는 경우 (피부나 옷에 닿음)를 비교하였을 때 친숙한 사람을 무는 경우가 더 많았던 참여견이 5마리 였으나 그 중 4마리는 일부 항목을 낯선 사람이 행동한 적이 없었던 경우였음. 2마리의 참여견은 동일 행동을 하였을 때 친숙한 사람 보다 낯선 사람을 무는 경우가 더 많았음.
- 친숙한 사람의 행동이 참여견에게 직접적이고 강압적일수록 참여견의 공격 행동의 양상이 커졌으나, 낯선 사람의 경우 해당 상황을 겪은 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행동의 직접성과 상관 없이 참여견의 공격 행동이 유사하게 나타났음. 7가지 모든 행동에서 낯선 사람에게 공격 행동의 양상이 더 컸음.
- 참여견 중 15마리는 참여견을 향한 행위가 아닌 주위 사람들 끼리의 고성 또는 폭력에 공격 행동을 보였음.
- (보호본능) 친숙한 사람이나 다른 개로부터 음식 및 다른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는 공격 행동은 다른 개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음.

- 가장 공격적으로 반응한 것

- 설문 문항을 4가지 공격성 유형별 (갈등 기반 공격성, 공포 기반 공격성, 보호 본능 공격성, 놀이 공격성) 분리하여 각 공격성 별 공격 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상위 25%에 해당하는 참여견을 확인한 결과 4가지 공격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마리, 3가지 공격성에 해당하는 경우 1마리, 2가지 공격성에 해당하는 경우 2마리, 1가지 공격성에 해당하는 경우 3마리였음.
- 슬개골탈구 교정술이나 골절 정복술을 받은 6마리 참여견 모두 1개 이상의 공격성 유형에서 상위 25%에 해당하였음.

제4절 독일 니더작센 주의 개소유법에 대한 QnA

※ 니더작센 주의 개소유법에 대한 QNA

니더작센의 개소유법(Niedersächsisches Gesetz über das Halten von Hunden, NHundG)

질문과 답변(2015년 7월 버전) *현재 최신 버전

다음 질문과 답변들은 소유자, 훈련사, 조사관, 시험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에게 NhundG를 실행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함.

1. 니더작센 주의 개 소유자들은 자격을 취득해야 하나요?

네, § 3 NHundG에 따르면 2013년 7월 1일부터 개를 처음 키우는 사람은 자격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자격 취득을 위해 개를 소유하기 전에 이론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개를 소유하고 1년 이내에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비 과정도 있으며, 이는 의무가 아니기에 개 소유자는 예비 과정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개 소유 자격 취득시험은 한 번만 통과하면 됩니다.

2.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자격을 취득해야 하나요?

아니오, 오직 소유자(질문 30, 31 참고)만 자격을 취득하면 됩니다. 소유자는 가족구성원, 그리고 개를 산책을 시키는 사람과 같은 제 3자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개를 맡기는 상황에 대한 책임도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한 마리의 개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모든 소유주가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아닌 가족구성원(예를 들어 자녀, 배우자)이 가족을 떠나 다른 개를 소유하게 될 때에는(또는 2011년 7월 이후에 개를 소유하게 된 경우), 이들도 새로운 소유자로서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3.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NHundG 제3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에 해당하며 또한

- 1) 휴업 없이 최근 10년 간 영업해 온 켄넬 또는 법인에서 최소 2년 이상 개를 돌봐온 사람,
- 2) 연방 수의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의학 영역에서 일시적 활동을 위해 허가받은 수의사 또는 수의사 면허를 가진 자,
- 3) 사냥견 사역테스트를 받았거나 비슷한 시험을 개가 성공적으로 합격하였을 때
- 4)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육부에 인증을 받은 다른 시험 또는 동등한 시험(현재는 인정되는 시험이 없음) 에 통과한 자,
- 5) 동물보호법(TierSchG) 제11 조 제 1 항 제 2, 2 b호에 따라 동물보호소에서 개를 보호하거나, 유사한 시설에서 개를 보호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개를 훈련하는 곳을 허가받은 자,
- 6) 법조계 관계자를 보호하는 사역견에 책임이 있는 자 ,
- 7) 시각장애인안내견 또는 장애인의 반려견

4. 이미 개를 소유한 지 몇 년이 지났다면 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하나요?

요구되는 자격증은 개를 소유하기 전 지난 10년 이내에 적어도 2년동안 계속해서 개를 키운 사

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2013년 7월 1일 이후에 개를 소유하며, 지난 10년동안 2년을 연속해서 개를 키운 적이 없는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5. 니더작센 자격증 시험은 무엇입니까?

전문가 실무 집단 (working group)은 균일한 이론 및 실기 시험을 위한 요구사항을 개발해왔습니다. 개소유자들은 2013년 7월부터 공인된 심사위원(시험관)으로부터 필기시험을 온라인 또는 종이 형태로 치를 수 있습니다.

실기 시험 또한 2013년 7월부터 공인된 심사위원(시험관)에 의해 수행됩니다.

개 소유자들의 이론 시험

이론 시험은 개를 소유하기 이전에 응시해야 합니다.

이론 시험은 개소유자가 온라인 또는 종이 시험으로 응시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답형의 35 문항입니다. 주제는 교육, 훈련, 공포 및 공격성, 자세, 관리, 건강; 교배, 번식, 경주, 의사소통 그리고 관련된 법들입니다. 단답식 문항 시험은 지정 중앙 본부에 의해 제공됩니다.

개 소유자들의 실기 시험

실기 시험은 개를 소유하는 동안 1년 안에 응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꼭 소유한 개와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더작센 주 시험의 중점은 그 개의 훈련 상태를 복습하는 거나 개와 소유자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관리자의 전문 지식을 검증하는 것 입니다. 만약 소유자가 성공적으로 실기 시험을 통과했다면, 다른 개를 입양할 때 다시 시험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맹견으로 지정된 개를 소유하는 상황에는, 개는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24, 25, 26번 질문 참고).

6. 나의 자격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이론 및 실기 시험 통과 인증

개 소유자의 인증은 개를 데리고 나갈 때 소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증이 요구되지 않는 사람(질문 3번 참고)은 반드시 그들의 전문성을 관련된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납세 증명서, 수의학 인증서 등).

2013년 7월 1일 이전 인증서를 보유한 개 소유자: 인증서/ 니더작센 주 심사 위원에게 성공적으로 시험에 통과했음을 인증하는 인증서 역시 인정됩니다.

7. 시험에서 누가 평가를 합니까?

인정되는 심사 위원 목록

니더작센 주의 전문가 시험은 인정된 심사위원에 의해서만 행해집니다. 관련당국에 인증된 심사위원은 교육부에 보고되고 목록에 등록됩니다. 2013년 7월부터, 인증된 심사위원 목록은 정보보호규제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유지됩니다.

8. 심사위원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개 소유자 인증 허가를 위한 심사위원

전문가 시험을 응시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NHundG 제3조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을 증명해야 합니다.

니더작센 수의사회는 시험을 평가하는데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입증하는 인증을 위탁하여 맡깁니다. 소위 니더작센 수의사회에 의한 개 훈련사 인증은 자격을 인증받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인증은 지역 수의사회에 의한 Schleswig-Holstein에 의한 훈련사 인증과 비슷합니다.

인증 시험은 교육부에 의해 확정되고 니더작센 수의사회에 의해 발행된 “전문가 증명을 위한 시험 요구사항”에 따라 행해지며 이는 수의사회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시험은 이론 부분, 기술 논의, 실기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인증을 받고 싶은 사람은 니더작센 수의연합에 응시를 위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니더작센 수의사회는 지원자를 시험에 청합니다. 시험 통과 인증은 개인적으로 발행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한 NHundG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인증됩니다. 특히, 이들은 독일 개 연합 (Association for German Dogs (VDH), 상공회의소의 개 훈련가 행동학 조연가, 개 교육가 및 행동학 조연 전문가 연합 (IHK / BHV), BHV 개 훈련사 면허증의 심사위원, VDH 개 훈련사 면허증 심사위원, 동물 행동학 전문 수의사, 동물 보호 과학 전문 수의사, 개 소유자 인증 (Dog Owners Qualification (DOQ) 시험 2.0 시행 인증 수의사 뿐 아니라 추가적인 행동 치료 수의사 등의 공인된 심사위원들입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조직들의 사람들은 심사위원으로 역할하기 이전에 반드시 관련 당국에 인증되어야 합니다.

9. 인증된 심사위원으로 어떻게 인정됩니까?

NHundG 제3조 제1항에 따른 소유자 인증을 위한 인증된 심사 위원의 승인

니더작센 수의연합의 인증은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기술 당국(지역구/독립시)에 제출하기 위한 인증 신청서와 함께 합니다. 인증은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시험을 응시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NHundG 제3조 제3항 제2호 (8번 질문 참고)에 따라 인증된 위에 언급된 사람들은 지원자의 거주지가 당국에 의해 인지되어야합니다. 지역 확인은 오직 인증된 사람과 관련될 때 가능합니다.

10. 니더작센의 전문가 인증 외에도 다른 인정되는 시험이 있습니까?

NHundG에 따른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시험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심사위원은 2013년 7월부터 NHundG 제3조 제2항 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시험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NHundG의 제3조 제6항 제4호에서는 필요한 전문지식은 또한 교육부 또는 동등한 곳으로부터 인증받은 또 다른 시험을 통과했음을 입증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용가능하다고 명기합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인정된 ‘다른 시험들’입니다:

■ **동물보호소분야의 동물관리자를 위한 최종 시험** - 2003년 7월 3일 동물관리자의 직업 교육 법령 § 10에 따라 (BGBl. I p. 1093)

■ **BHV 개 훈련사 면허시험 1단계와 BHV 개 훈련사 면허시험 2단계** - 2001년과 2014년 1월 1일부턴의 시험 규칙 후 BHV 전문가 연합의 개 훈련사와 행동학 상담사 시험

■ **수의 working group(Veterinary Working Group)의 개를 소유하기 위한 시험 2.0 (the D.O.Q.-Test 2.0)** - 각각 2013년 8월 15일 이후 이론 시험 부분의 시험 규칙과 실기 시험 부분의 시험 규칙에 따름

■ **IBH에 따른 개 훈련사 면허 e.V 전문 인증 가이드라인** - 2014년 01월자로 IBH e.V에 따른 개 면허 시험과 전문 인증 시험에 따른 “IBH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 훈련 면허를 위한 실습

시험”과 함께 “IBH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문 인증”으로 이루어짐

위에 언급된 완전한 이론 및 실기 시험이 전문가로 인증되는데에 인정됩니다.

심사위원은 NHundG 자격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자격이 있다고 고려되기 때문에, 이전에 인증된 심사위원에 의해 인정된 2013년 7월 1일 이전에 통과된 시험은 충분한 자격 증명으로 간주합니다(7번 질문 참고).

11. 인증된 심사위원이 없는 훈련학교에 참가해도 됩니까?

네. 각각의 훈련학교는 자격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전하기 위한 과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NHundG에 따른 능숙함 증명을 위한 시험은 오직 인증된 심사위원에 의해서만 행해집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행하기 위해 심사위원이 그 훈련학교로 초대될 수 있습니다.

12. § 13 NHundG에 의해 자격이 주어진 수의사가 동시에 니더작센 인증 시험을 행할 자격을 가집니까?

기본 시험 통과 자격은 자동적으로 개소유를 위한 니더작센 전문가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 3 NHundG에 따르면 동물 행동학 전문 수의사, 동물 보호 과학 전문 수의사, 추가적인 행동 치료 수의사 인증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관련 당국으로부터의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13. 중앙등록부는 무엇입니까?

§ 16 NHundG에 따른 중앙등록부

§ 16 NHundG에 따르면 중앙등록부의 설립은 법에 의해 요구됩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모든 개 소유자는 § 6 NHundG에 따라 7개월령이 되기 전에 강아지의 소유자 정보와 강아지의 정보를 중앙등록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6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기 시작했다면, 개를 소유한지 1달 이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가 다른 등록지에 소유된 소유자도 역시 중앙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GovConnect GmbH (이전 Kommunales Systemhaus Niedersachsen GmbH (KSN))는 중앙등록부를 유지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개 소유자는 온라인, 서면, 또는 전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4. 개 소유자는 왜 중앙등록부에 등록비를 내야하나요?

중앙 등록부의 기본 등록비

등록은 니더작센주를 대신하여 GovConnect GmbH (이전 KSN GmbH)에 의해 수행됩니다 (13번 질문 참고). GovConnect GmbH는 § 6 (1) NHundG에 따라 통지를 받고 처리하기 위한 일회성 요금을 청구합니다. 이 수수료는 § 6 (2) NHundG에 따른 변경에 적용됩니다. 수수료 금액은 일반 요금 규정(AllGO)의 부속에 따른 비용 관세와 관련하여 니더작센 행정비용법(NVwKostG)의 §§ 1, 3, 5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수수료 내역은 2014년 3월 12일부터 비용 관세의 17.2.1 및 XVII.2.2번호로 대체되었습니다(소비자 보호 및 수의학 분야에서 관리 수수료 요금표 1의 부록 1에 해당(Nds. GVBI. S. 318)). 모든 온라인 등록에 대해 €14.50와 19%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전화 또는 서면 등록비용은 €23.50와 19%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서면 또는 전화로 전송되는 정보는 더 높게 부과되므로 더 비쌉니다.

15. 이미 다른 동물등록소에 등록되어 있는 개를 중앙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나요?

네, 다른 등록소에 등록된 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개를 중앙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6 NHundG).

16. 왜 개 세금 징수를 위해 수집된 정보가 중앙등록소로 전송되지 않습니까?

개 세금은 지방세입니다. 정보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제의 정보를 중앙등록소로 전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7. 모든 개 소유자는 개를 중앙등록소에 보고해야 하나요? 또는 현재 소유자 정보가 중앙등록소에 접수됩니까?

§ 6 NHundG에 따르면 모든 개 소유자는 그들의 개를 중앙등록소에 스스로 등록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 소유자 정보의 등록은 불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개 세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 지방자치제의 정보를 중앙등록소로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중앙등록소에서 제공받는 정보들은 개 세금 징수를 위해 수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에 비해 더 포괄적입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이크로칩 번호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8. 내 개에 표시를 부여해야 하나요?

개에 표시하기

네, 니더작센 주에서 6개월령 이상의 모든 개는 등록 번호를 통해 전자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transponder / microchip). 트랜스폰더는 기술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표준 ISP 11785, 코드 구조와 정보 내용과 관련하여 표준 ISO 11784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모든 트랜스폰더/칩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트랜스폰더를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사용한 개는 괜찮습니다. 이 경우, 개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트랜스폰더에 대한 리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신으로 표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19. 나의 개가 표시 목걸이를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표시 목걸이는 개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많은 도시와 지역에서 개가 표시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트랜스폰더/칩은 표시 목걸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 개에 대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니더작센 주에서는 6개월령 이상의 개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개인 상해에 대해 보험료 500,000 유로, 재산 피해에 대해 250,000 유로의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5 NHundG). 책임 보험 가입 의무는 개의 크기, 나이 등과 무관합니다.

21. 책임 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추가 정보는 보험 회사 또는 독일 보험 연합(the German Insurance Association (GDV)), Wilhelmstraße 43/43 G, 10117 Berlin, Tel .: 030-2020 5000, E-mail: berlin@gdv.de.로 문의하십시오.

22. 책임 보험 인식은 칩 번호를 기반으로 합니까?

칩에 등록된 번호는 가입된 책임 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개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23. 위험한 개란 무엇입니까?

위험한 개 acc. § 7 NHundG

사람이나 동물을 물었거나, 자연스러운 단계를 넘어서는 공격 준비태세, 공격성, 날카로움을 보이는 개, 또는 자연스러운 단계를 넘어서는 공격성, 공격 준비태세, 날카로움을 보이도록 번식, 훈련된 개, 또는 관할 기간 (지역/도시)에서 평가에 따라 공격적이라고 분류되는 동등한 특성을 갖는 개

24. 위험한 개를 소유해도 됩니까?

위험한 개 소유 허가 acc. § 8 NHundG

§ 7에 따라 공격성이 인정된 개를 소유하는 것은 관련 당국의 허가를 요구합니다.

개가 기질 평가(26번 질문 참고)를 성공적으로 통과했을 경우에만 소유될 수 있습니다. 기질 평가의 일부로서, 개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행동하는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25. 위험한 개로 분류된 개의 소유자가 자격 시험을 통과한다면 현재 진행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개가 § 10NHundG에 따라 위험한 개로 분류된 후, 개 소유자는 § 3에 따라 자격증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실기 시험은 인증됨 심사위원회에 의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26. 니더작센에서 기질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니더작센에서 기질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은 수의사들입니다.(NHundG § 13). 개의 행동 과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행동 치료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수의사들만이 합법적으로 기질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NhundG에 의거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기질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수의사들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 개정된 법안에는 왜 맹견 품종 리스트가 없나요?

하노버수의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품종을 이유로 공격성이나 위험성을 분류하는 것이 근거가 없다고 밝혀져서 맹견 품종 리스트는 폐기되었습니다.

28. 개를 키우는 것이 금지될 수도 있나요?

범죄행위로 인해 60일 이상의 금고형에 처해진 사람,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또는 마지막 판결이 내려진 형이 시작된 지 5년이 도과하지 않은 기결 사건의 범법자의 경우에 지자체가 해당 범법자가 개를 사육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와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거나, 탈출이 불가한 실외 견사에서 개를 키워야 하거나, 개를 키우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지는 해당 건에 따라 공무원의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29. 가능한 규제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국은 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 철저한 교육과 같이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

력”, 알콜중독 혹은 마약중독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당국은 명시적으로 탈출 불가능한 실외 견사에서 개를 키우도록 하거나 개 소유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해당 견에 따라 공무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30. 개 소유주라 함은 누구인가요?

가축의 주인은 가축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이를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
- 동물의 가격에 관심을 갖고 나타난 사람
- 동물의 일반적 가치와 이득을 요구하는 사람
- 손실을 입을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람

비록 소유권과 동물 소유권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동물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소유주일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 104 ff. BGB가 적용됩니다.

개는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해당 사건 정황에 따라 책임질 소유주를 판단합니다.

31. 어린이도 개를 소유할 수 있나요?

7세 이상이 되면 제한적인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는 개별 사례에서 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개 소유 권한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 104 ff. BGB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2. 니더작센에서 개와 함께 휴가보내기 - 소유주가 알아야 할 것

NHundG는 니더작센에서 개를 소유하기 위한 근본적인 요건들을 제시합니다.

다른 도시에 살아가면서 개와 함께 이룰테면 휴가를 위해 니더작센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니더작센에 당도한 개는 마이크로칩이 필요하고,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 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국에 의해 위험한 개로 분류된 개의 경우 다른 조건이 적용됩니다.(§ 14 NHundG).

33. 중앙등록부에 개를 등록할 때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중앙등록부의 운영 비용으로만 쓰여집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점검됩니다. 지출이나 수입이 다른쪽을 일정 한도 이상 초과하게 되면 비용이 조정됩니다.

34. NHundG에 따르면 몇 살부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개를 소유할 수 있으며, 시험에 응시하는 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도 향후의 개 소유를 염두에 두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권리의 제한 때문에 자동적으로 개 소유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30, 31번 참고)

35. 다른 지역의 거주지나 훈련기관에서 검사자였던 사람이 니더작센의 검사자가 될 수 있나요?

니더작센에서 검사자를 관리하는 곳은 니더작센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입니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6. 개를 키우기 위해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장애인들로 하여금 개를 키우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만들지는 않나요?

아니오. 입법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 특히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평등권을 침해하는 부정적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휠체어나 보행보조기 이용자도 실기 시험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37. 이론 시험이나 실기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 모두 원하는 빈도, 원하는 간격으로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볼 때마다 비용을 내야 합니다. 실기 시험은 이론 시험을 정히 통과한 후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실기 시험은 개를 소유하기 시작한 지 1년 이내에 통과해야 합니다.

38. 자격증을 항상 소지해야 하나요?

아니오. 자격 여부는 당국이 요구할 때 제시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개를 산책시킬 때까지 소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39. 실기 시험에서는 어떤 것들이 요구되나요?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실기 시험은 꼭 자신의 개와 함께 치르지 않아도 되며, 개에게 줄을 착용해도 됩니다. 시험보게 되는 상황은 보통의 핸들러 시험 과정에 상응하는 내용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앉아”, “이리와”, “일어서”, “기다려” 등의 명령을 통해 개를 통제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시험 과정에서 검사자가 다시 해보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방해 요소가 적은 곳, 개가 마음껏 뒹 수 있는 곳(예를 들어, 공원의 들판 등), 대중교통(예를 들어, 시내 등), 이렇게 세 부류의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시험 중 소유자는 개를 잘 다루고,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그러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유자는 개가 위해나 불쾌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잘 통제해야 합니다.

40. 개 소유 자격 취득 시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종이로 치는 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 비용은 서류와 자격증까지 다 하여 40€ 입니다. 온라인 이론 시험이 도입된다면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시험 참여 시 비용을 즉시 내야 합니다. 예비 과정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의무는 아닙니다.

제5절 LA County 조례(133)

- LA County에서는 Animal Care & Control Department에서 포악한 개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개물림 사고 조사,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또는 포악한 개 선정을 위한 탄원 등을 진행함.
- LA County의 Animal Care & Control Department는 Critical Case Processing Unit(CCP)을 운영함. CCP는 개물림 사고를 조사하고, 조사 담당자는 행정수행관(판사)의 검토를 위한 심리를 청구함. 판사는 가해견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 개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건과 제한을 부과함. 이 절차에 관해서는 County 조례 Section 10.37에서 다루고 있음.

1. 사고 발생 신고 접수 및 조사

1) 조사 담당자는 신고 접수 후 사고 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함.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 또는 담당 부서의 공무원 또는 법 집행관은 Section 10.12.210*에 의해 사유지에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음.

* 점검을 위한 출입 권한 (Section 10.12.210)

A. 자치주에서 정식으로 인가된 직원 또는 법 집행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구내를 조사하기 위해 건물 또는 사유지에 들어갈 수 있음.

1. 권한을 부여받은 County의 직원 또는 법 집행관이 그들의 자격을 설명하고, 출입과 점검의 이유에 대해 설명한 후에 건물 또는 사유지의 소유주 또는 거주자가 출입 및 조사에 동의함; 또는
2. 권한을 부여받은 County 소속 직원 또는 법 집행관이 민사소송법의 Section 1822.50- 1822.57에 의해 건물 또는 사유지에 출입 및 점검할 영장을 발부 받음; 또는
3. 권한을 부여받은 County 소속 직원 또는 법 집행관이 그 사유지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이 유해하고 안전하지 못하며, 위험하여 동물 보호와 공공의 보건 및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만한 합당한 원인이 있음. 이러한 상황 하에, 가능하다면 직원 또는 법 집행관은 그들의 자격을 소유주 또는 거주자에게 설명한 후, 직원 또는 법 집행관은 즉시 그 건물 또는 사유지로 들어가 점검하기 위해 합당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

B. 이 Section은 권한을 부여받은 County 소속 직원 또는 법 집행관이 이 Division 1 또는 해당되는 다른 법을 위반하여 자유롭게 달리는 동물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부서의 관할권 내의 사유지를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음. 통제 없이 달리고 있는 동물을 포획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함.

2)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한 동물의 포획 및 압수

조사 담당자는 동물이 공공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개를 포획하고 압수할 수 있음

133) Los Angeles County 조례(Code of Ordinances), Title 10 - Animals, Division 1 - Animal control, Chapter 10.37 - Potentially dangerous and vicious dogs

만약 개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나 포악한 개로 판명될 때에는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포획 비용 부담에 책임이 있음. 포획 비용은 개가 석방되기 전에 납부되어야 하며, 개가 석방될 준비가 된 시점에서 14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함. (Section 10.37.100. Subsection A)
개가 압수되었고 공공의 안전에 반하지 않는다면 관리자는 소유자의 부담 하에 부서의 승인을 받은 동물 또는 수의학 시설에 감금할 수 있음. (Subsection B)

3)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선정 검토

근거가 있다면, 개가 잠재적으로 위험한지 결정하기 위한 제기를 하는 장소에서, 담당자는 개를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로 유지할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그 담당자는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압수 조치를 유지하는 의도의 서면 통지서를 줄 것임. 14일 이내에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로 지정된 것과 요구 조건에 동의하거나 Section 10.37.110.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명할 기회를 요구하는 서면 통지서를 제출함. (Section 10.37.105)

2.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또는 포악한 개 신고 절차

1) 심리 (Section 10.37.110. Subsection A)

동물 관리관 또는 법 집행관이 조사 후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또는 포악한 개의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신고할지 결정하기 위해 관리자는 개가 소유되거나 사육되고 있는 재판관할구역 내의 상급 법원에 심리 또는 행정 청문을 위한 신청을 함.

2) 청문 통지 및 진술 (Section 10.37.110. Subsection B)

가능한 한, 동물 관리관 또는 법 집행관이 상당한 근거를 찾을 증거가 되는 근거의 역할을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부터의 불평이 선언되고, 원고에 의해 증명되며, 진술에 포함될 것임. 관리자는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상급 법원에서 심리 또는 행정 청문회가 진행될 것임을 알려야 하며, 그 자리에서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가 왜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또는 포악한 개로 신고받으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 관리자는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문 통지 및 청원 서류 사본을 개인적으로 또는 특급 우편으로 제공할 것임. 심리는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된 후 평일 기준 5-10일 내에 신속히 열릴 것임. 이 장(Chapter)의 목적으로 문서가 우편으로 부쳐지는 순간 또는 직접 전달되면 업무는 종결됨.

3) 심리 진행

- 심리는 행정 청문 또는 민사 소송법 Section 85에 따라 민사 사건으로 진행되며 일반인에 공개됨. 법관 또는 행정 수행관은 사고 보고서와 증인의 진술서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증거들을 받음. 배심원은 없음. 법관 또는 행정 수행관은 개가 잠재적으로 위험하거나 포악한 개라는 충분한 증거를 찾고, 이 장(Chapter)에 의해 공인되거나 요구되는 다른 명령이나 판결을 내림. 법관 또는 행정 수행관은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심리에 불참하더라도 그들에게 찬성 또는 반대하는 모든 쟁점들을 결정함. (Section 10.37.110. Subsection C)

- 심리는 중립적인 행정수행관(판사)에 의해 진행됨. 만약 수행관이 진술을 하거나 개를 포획, 압수를 지시한 사람과 동일 인물이 아닌 경우,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낮은 직급이 아닌 경우에 부서는 심리를 진행할 직원을 자체적으로 승인하며, 대안으로, 부서는 수행관을 부서 외부에서 구할 수 있음. (Section 10.37.110. Subsection D)

3. 결정 통지, 법정 심리에 항소

1) 상소 신청 (Section 10.37.120. Subsection A)

심리 이후 당사자(피고)는 판결과 명령을 문서로 개별적으로 또는 법원에서 배송비를 지불한 특급 우편으로 통지받음. 만약 피고가 판결에 불복한다면, 결정통지문 발송이후 14일 이내, 상급 법원의 결정에 상소하며, 청원을 들은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맡음. 상소 비용은 식품농업법 Section 316221(a)에 명시된 비용으로서 균서기에 지불함. 상소를 하는 피고는 반드시 다른 당사자에게도 상소장을 개별적으로 또는 배송비를 지불한 특급 우편으로 제공해야 함.

2) 상소 심리 진행 (Section 10.37.120. Subsection B)

- 상소를 공판하는 법정은 심리를 배심원 없이 처음부터 진행하고, 잠재적 위험 및 포악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제시된 증거에 따라 이 장(Chapter)에서 승인된 명령을 내림. 심리는 마찬가지로, Section 10.37.110.에 명시된 지정된 기간 내에 진행됨. 법정은 사고진술서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증거를 받음. 판결은 증거에 우세에 따라 결정됨. (Section 10.37.120. Subsection B)

- 상소 심리에서 법관 또는 행정 수행관은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심리에 불참하더라도 그들에게 찬성 또는 반대하는 모든 쟁점들을 결정함. (Section 10.37.120. Subsection C)

- 상소 심리에서의 판결이 모든 당사자에 대해 최종 확정 판결임. (Section 10.37.120. Subsection D)

3) 판결 통보와 행정적 결정의 사법 심사 (Section 10.37.121)

- Section 10.37.110에 의하여 진행된 행정 청문 이후, 판결 통지문은 청문 이후 10일 이내에 부서와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개별적으로 또는 특급 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함. 만약 당사자 중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상소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판결 이후 14일 이내에 판결의 사법 심사를 구할 의도가 있음을 문서로 알려야 함. 상급 법원의 사법 심사를 요하는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1094.5 이하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Section 10.37.121)

4. 판결 결과

1)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판결 결과 (Section 10.37.130)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로 판결된 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됨:

- 개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돌아가기 전까지 그들의 비용으로 알맞게 등록되고, 마이크로칩을 장착해야 하며,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함. 만약 개가 압수되지 않았다면,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한 개라는 판결 또는 법원 명령 후 14일 이내에 개가 등록되어있고, 마이크로칩을 장착했으며, 예방 접종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함. 부서는 법원이나 심문관의 지정이 개에 적용되는지 판단한 후, 그 지정을 개의 등재기록에 포함할 수도 있음. (Section 10.37.130 Subsection A)

- 개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유지 내에서 개가 탈출하거나 어린 아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실내에 있거나, 안전하게 울타리가 설치된 마당 또는 둘러싸여있는 곳에 있어야 함. 부서는 개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돌려지기 전에 마당 또는 울타리 쳐진 장소를 점검하고, 서면 허가를 인가해야 함. 개가 압수되지 않았었다면, 부서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판결 또는 법원 명령 이후 14일 이내 마당 또는 울타리 쳐진 장소*를 점검하고, 서면 허가를 인가해야 함. (Section 10.37.130 Subsection B)

* 울타리를 친 장소 (Enclosure)의 정의 (Section 10.37.050)

“울타리를 친 장소 (Enclosure)”는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잡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다른 방안과 함께, 어린이의 출입을 막고, 잠재적으로 위험하거나 포악한 개를 가두는 울타리 또는 구조를 의미함. 울타리를 친 장소는 개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제작되어야 함.

- 개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유지를 벗어날 때에는 입마개와 6피트가 넘지 않는 견고한 목줄을 착용해야 하거나, 개를 잡고 통제할 수 있는 성인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함.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유지 밖에서 개는 혼자 방치되어서는 안 됨. (Section 10.37.130 Subsection C)

-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만약 개가 벗어났거나 사람, 다른 반려 동물, 가축을 공격했을 때에는 즉시 부서에 알려야 함. 만약 개가 더 이상 기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게 될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증 형벌에 입각하여, 개의 새로운 위치의 부서에 알려야 하고, 새로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를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로 지정한 행정적 처분 또는 법원 명령의 사본을 제공해야 함. 뒤이은 각각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역시 효력을 갖는 기간 동안 새로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판결 또는 법원 명령의 사본을 제공해야 함. 마찬가지로, 만약 개가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동할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새 관할 구역의 동물 통제 당국에 효력을 갖는 기간 동안 판결 또는 법원 명령의 사본을 제공해야 함. (Section 10.37.130 Subsection D)

-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가 석방된 후 60일 이내에 개와 함께 최소 10시간의 복종 훈련 과정을 마쳐야 하며 이 비용은 스스로 부담함. 훈련과정은 개가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석방되기 전에 부서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함. 만약 개가 압수되지 않았다면, 개의 소유

자 또는 관리인은 개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라고 지정된 판결 또는 법원 명령 이후 14일 이내 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함. (Section 10.37.130 Subsection E)

- 개는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석방되기 전에 중성화되어야 하며, 비용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함. 만약 개가 압수되지 않았다면,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라고 지정된 판결 또는 법원 명령 이후 30일 이내에 개가 중성화된 상태라는 것을 증거를 제출해야 함. (Section 10.37.130 Subsection F)

-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또는 포악한 개에 의한 기물 파손, 신체 상해를 부담하는 포괄단일한도 \$300,000의 배상 책임 보험을 유지해야 함. 만약 보험을 유지해야한다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라고 지정된 판결 또는 법원 명령 이후 14일 이내에 보험 증서를 보여야 함. (Section 10.37.130 Subsection G)

- 부서에서 진행하는 업무의 모든 비용과 모든 벌금은 개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석방되기 이전 또는 모든 업무가 진행되거나 비용 및 벌금이 청구된 후 14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함. 만약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를 데려가지 않거나 모든 업무가 진행되거나 비용 및 벌금이 청구된 후 14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는 버려진 것으로 간주되고, 부서에서 처분함. (Section 10.37.130 Subsection H)

- 만약 Section 10.37.020하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라는 판결이 법정 심리 이후 내려졌다면, 법원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판결이 해당하는 각각의 상황/경우들에 대해 각 \$500까지의 벌금을 부과해야 함. 벌금은 이 장(Chapter)의 수행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부서에 납부됨. (Section 10.37.130 Subsection I)

- 법관 또는 행정 수행관은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타당한 조건들을 부과할 수 있음. (Section 10.37.130 Subsection J)

2) 포악한 개 판결의 결과 (Section 10.37.140)

- 포악한 개로 판결된 개는 10.37.110조에 따라 실행된 심리 후에 공중 보건, 공공의 안전 및 복지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부서에 의해 처분됨. (Section 10.37.140. Subsection A)

- 만약 포악한 개 판결을 받은 개가 처분되지 않는다면, 법관 또는 행정 수행관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Section 10.37.130에 의해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에 요구되는 조건들과 공중 보건, 안전, 복지를 위해 필요한 다른 조건들을 부과해야 함. (Section 10.37.140. Subsection B)

- Section 10.37.130의 Subsection B에서 요구하는 울타리 쳐진 공간은 사방이 막혀있으며, 자물쇠로 잠겨야 함. 지붕과 시멘트 바닥이 요구됨. 울타리 쳐진 공간은 개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석방되기 전에 부서에 의해 서면으로 허가 받아야 함. 개가 압수되지 않았다면,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포악한 개라고 지정된 판결 또는 법원 명령 이후 14일 이내 부서에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함. (Section 10.37.140. Subsection C)

- 포악한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미연방우체국(United States Post Office) (지역지부)과 개가 거주하는 지역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모든 공익 기업에 포악한 개 판결을 서면 통보를 해야 함.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압수된 개가 석방되기 전에 부서에 통지서 사

본을 제출해야 함. 만약 개가 압수되지 않았다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포악한 개라고 지정된 행정 심리 또는 법원 판결 이후 14일 이내에 부서에 소집 통지 사본을 제출해야 함. (Section 10.37.140. Subsection D)

-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사유지에 포악한 개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서가 승인하는 위치에 적어도 하나 이상 붙여야 함. 표지판은 포악한 개라고 지정된 행정 심리 또는 법원 판결 이후 14일 이내에 붙여져야 함. (Section 10.37.140. Subsection E)

- 만약 Section 10.37.030하에 포악한 개라는 판결이 법정 심리 이후 내려졌다면, 법관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판결이 해당되는 각각의 상황/경우들에 대해 각 \$1000까지의 벌금을 부과해야 함. 벌금은 이 장(Chapter)의 수행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부서에 납부됨. (Section 10.37.140. Subsection F)

- 포악한 개로 판결된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심리에서 개를 소유하거나 양육권을 가질 경우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경우, 3년간 어느 개라도 소유, 사육, 관리, 통제, 또는 양육하는 것이 금지됨. (Section 10.37.140. Subsection F)

3) 예외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잠재적 위험한 개 또는 포악한 개로 지정되지 않음:

- 부상 또는 손해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유지 내의 고의적인 무단 침입 또는 다른 불법 행위 중에 발생했거나, 개를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거나, 학대하거나 폭행을 하는 중이었던 경우, 또는 범행을 저지르려 하거나 저지르는 중이었던 경우(Section 10.37.170 Subsection A);

- 개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정당하지 않은 공격 또는 폭행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경우(Section 10.37.170 Subsection B);

- 그 개를 향해서 먼저 공격이 시작된 상황에서 입은 상해인 경우(Section 10.37.170 Subsection C);

- 개가 사냥, 목축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통제 하에 포식자 통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경우; 그리고 개가 가한 손해가 그 일을 맡은 개에게 적절한 업무일 경우 (Section 10.37.170 Subsection D)

5. 판결 후 관리

1) 조건 준수 및 조건 위반 결과 (Section 10.37.150)

-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또는 포악한 개를 판결하기 위해 청원을 들은 심문관 또는 법관은 부과된 모든 조건들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후속 심리 일정을 잡음.(Section 10.37.150. Subsection A)

- Section 10.37.110 또는 Section 10.37.120에 따른 심리 후 석방된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Section 10.37.130 또는 Section 10.37.140에 준해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는 다음에 한정되지 않으나 다음 사항들을 포함함(Section 10.37.150 Subsection B);

1. 조건 위반은 \$1000을 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 이내 자치주 교도소 구속 또는 벌금과 구속을 통해 처벌할 만한 경범죄임;
2. 행정적 처분 또는 법원 명령 불이행은 판결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을 금지하기 위한 금지명령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의 대상임. 금지명령구제 소송제기와 기소는 법적으로 다른 조치를 취하는 자치주의 권한과 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3.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판결 이후에 행정적 처분 또는 법원 명령 불이행은 Section 10.37.030 Subsection C에 의해 포악한 개 판결을 위한 소송을 야기할 수 있음.

2) 지정 해제 (Section 10.37.160)

-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 포악한 개. Section 10.37.030. A에 의해 포악한 개로 판결된 개는 개가 2년령 이상이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자에게 개가 다른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1년 후에 지정 해제됨.

제6절 호주 빅토리아주 제한품종견(Restricted Breed Dogs) 기준

○ 2014년 1월 31일자 빅토리아주 관보(Gazette) N.22

1. 아메리칸핏블테리어

이 파트에서는 공무원이 개를 아메리칸핏블테리어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여겨 제한품종견으로 선언할 때 따라야만 하는 체계(regime)를 제공한다. 첫 번째 단계는 아래의 면제 항목(Categories of Exemption)에 해당되어 면제되어야 하지 않는지 결정하는 일이다.

1) 면제 항목

면제 항목

- 개의 소유주가 개가 아메리칸스테폴저테리어라고 명시하는 아래 증명서 중 하나를 갖고 있을 경우
 - 전호주켄넬위원회(Australian National Kennel Council)의 품종 증명서
 - 전호주켄넬위원회 회원 기관의 품종 증명서
 - 전호주켄넬위원회에 등록된 전국적인 품종 위원회의 품종 증명서
 - 수의사가 서명한 증명서
- 눈이 푸른색일 경우
- 개의 털이 대리석(blue merle) 무늬이거나 순수한 흰색인 경우
- 꼬리가 등 위로 말려있을 경우

개가 면제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메리칸핏블테리어 품종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 대신, 면제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개가 다음의 누적 요건(Cumulative Requirements)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다음 단계이다.

2) 누적 요건

- 신체구조 기준(Conformation Criteria) 3개 이상 부합
- 신체특징 기준(Physical Characteristics Criteria) 10개 이상 부합
- 추가 신체특징 기준(Supplementary Physical Characteristics Criteria) 10개 이상 부합

이 장의 누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메리칸핏블테리어로 선언할 수 없다.

면제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고 누적 요건에 해당되는 개는 아메리칸핏블테리어의 승인 기준에 부합하는 개다.

3) 신체구조 기준

신체구조 기준 (사진 1 참고)

- 바닥에서 기갑(withers)까지의 높이는 암컷과 수컷(bitches and dogs) 경우 43~53cm
- 몸무게의 경우 암컷과 수컷 모두 14~36kg
- 주둥이(muzzle)는 머리뼈(skull)에 비해 2:3 비율로 약간 짧다.
- 품종의 전체적인 체형(overall outline)을 보면, 길이(어깨에서 엉덩이까지)가 높이(바닥에서 기갑까지)보다 약간 길다. 암컷이 수컷보다 약간 더 길다.
- 기갑에서 팔꿈치(elbow)까지의 길이와 팔꿈치에서 바닥까지의 길이는 대체적으로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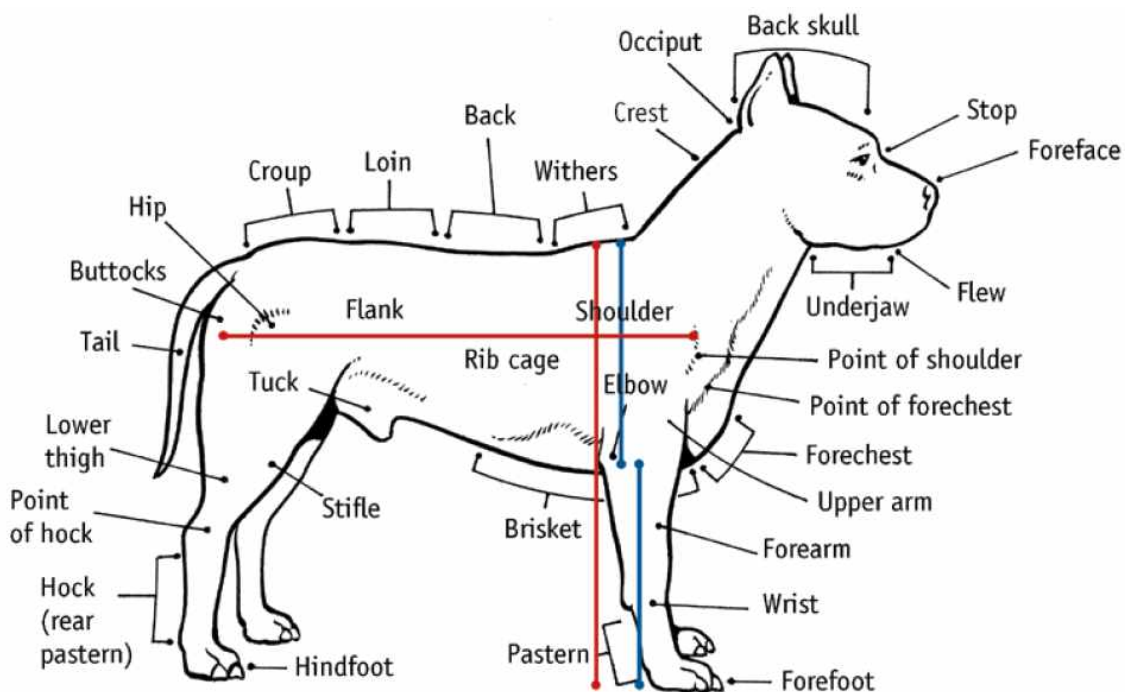


사진 1 신체구조 기준

4) 신체특징 기준

○ 일반적 외형

이 개의 일반적인 외형은 근육이 잘 발달한 강골의(strongly built) 중형견(medium sized dog)이다. 이 품종은 뛰어오르는 능력(climbing ability)과 그 후의 후반신(hindquarter)의 힘으로 유명하다.

신체특징 기준

머리

- 머리는 개의 크기에 비례한다. (사진 2 참고)

- 머리의 일반적인 모양은 무딘 썰기(blunt wedge) 형태로서 크고 넓다. (사진 3 참고)
- 두개골과 주둥이는 평행의 각도(parallel plains)를 갖되, 살짝 깊은 스톱(stop)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사진 4 참조)
- 두개골은 크고, 상당히 평평하며, 넓고 깊으며, 스톱 쪽을 향하면서 점점 가늘어진다(tapering).(사진 4 참조).
- 주둥이는 넓고, 깊고, 역세며(powerful), 코를 향하면서 살짝 가늘어지며, 눈 아래에서 살짝 밑으로 떨어진다(falls away slightly under the eyes). (사진 5 참조)
- 스톱에서 후두(occiput)로 가면서 알아지는 미간 주름(furrow)이 있다. (사진 6 참조)
- 치근육(Cheek muscles)이 두드러지고, 주름이 없다. (사진 6 참조)
- 개가 긴장하면(is alerted) 이마에 주름이 생긴다. (사진 6 참조)
- 입술은 깨끗하고 단단하다(tight). (사진 6 참조)
- 치아가 크고, 윗니가 아랫니와 완전히 맞물리고 치아가 턱과 사각을 이루는(upper teeth closely overlapping the lower teeth and set square to the jaws) 가위턱(scissor bite)이다. (사진 7 참조)
- 귀는 두개골 위로 높이 세워져 있고, 크지 않으며, 반쯤 접혀 있거나(half pricked) 장미 모양(rose shaped), 즉 뒤로 접혀 귀의 안쪽 면을 노출시키는 형태이다. (사진 8 참조).



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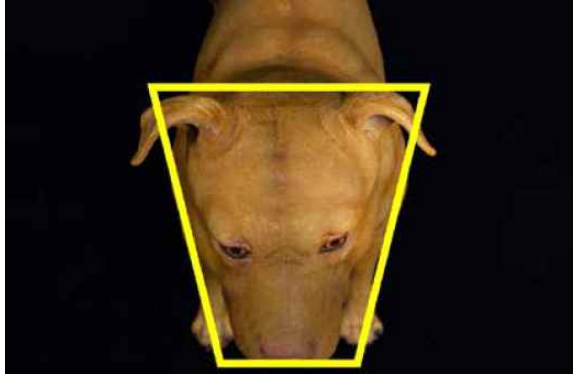


사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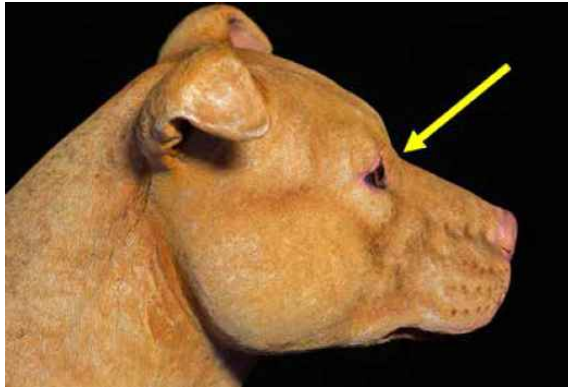


사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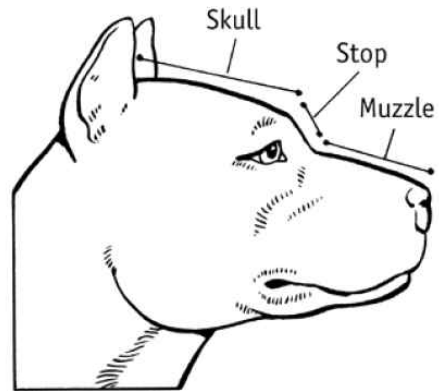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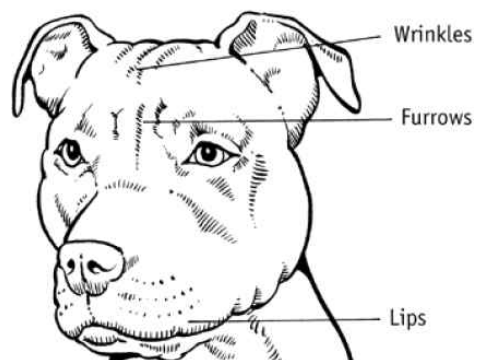


사진 5



사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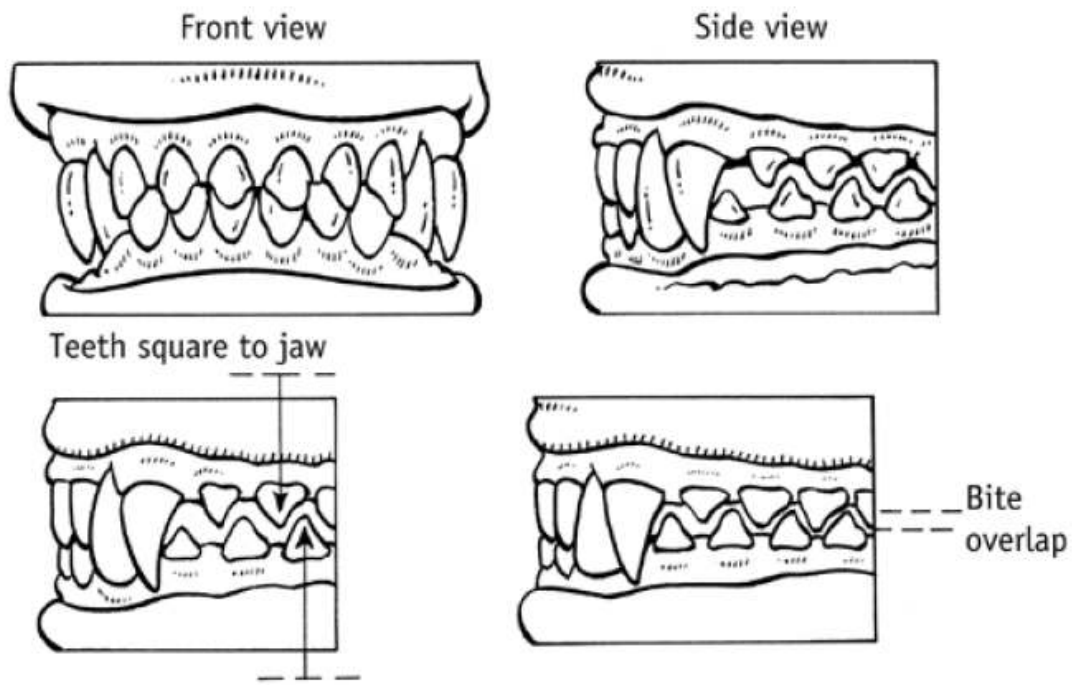


사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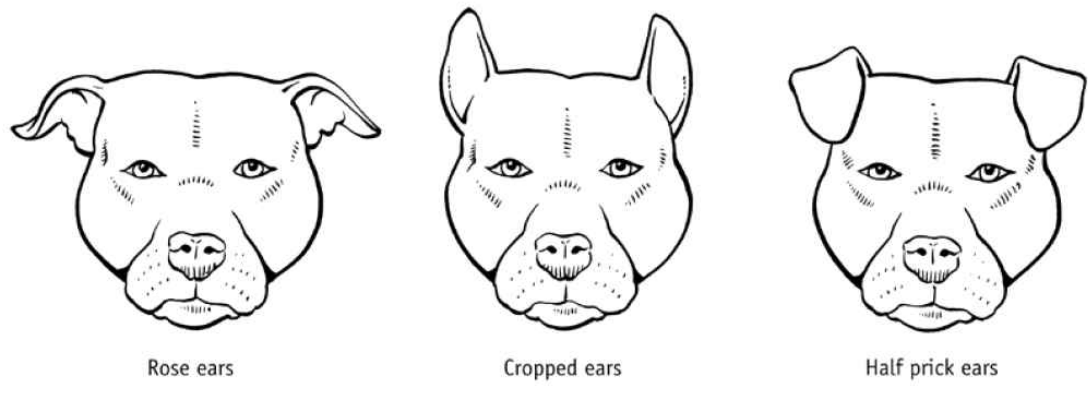


사진 8

신체특징 기준

목

- 목의 길이는 적당하고(moderate length), 힘은 매우 강하여 머리부터 어깨까지 가늘어진다. (사진 9 참조).
- 목에는 느슨한 피부(loose skin)나 처진 살(dewlap)(목 밑으로 느슨하게 늘어지는 피부)이 없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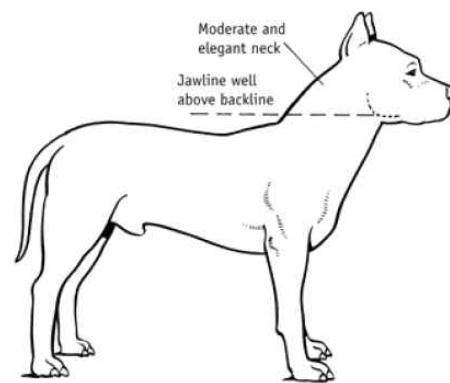


사진 9

신체특징 기준

전반신, 후반신, 꼬리, 털

- 개의 전반신은 앞다리가 튼튼하고, 골격이 좋고(well boned), 근육질이며, 팔꿈치가 몸체에 바짝 붙어 있다. (사진 10 참조).
- 후반신은 튼튼하고, 근육질이며, 전반신과 균형이 잡혀 있다.
- 허벅지는 잘 발달된 근육질이다. (사진 11 참조)
- 꼬리는 등선을 따라 있으며(set in line with the back),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사진 11 참조)
- 꼬리의 길이는 대략 호크 조인트(hock joint)에 이르러야 한다. (사진 12 참조).
- 털은 짧고, 매끄러우며(smooth), 광택이 있고(glossy), 역센 질감으로(harsh texture), 속털(undercoat)은 없다.



사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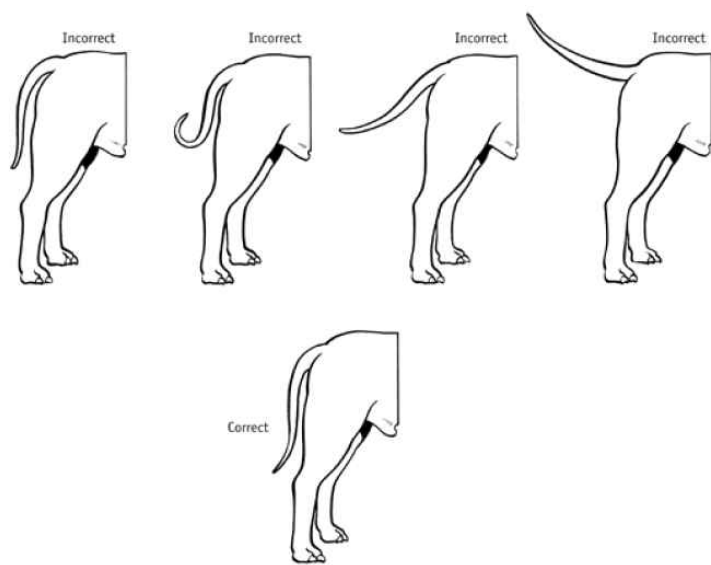


사진 11



사진 12

○ 추가 신체특징 기준

추가 신체특징 기준

- 코는 크고, 콧구멍이 넓으며, 색상이 있을 수 있다. (사진 13 참조)
- 눈은 크기가 중간이고, 모양이 둥글며, 머리의 아랫부분에 위치하여 두드러지지 않는다.
- 목은 뒷목(crest)이 약간 아치형이다. (사진 1과 2 참조)
- 앞다리는 적당히 떨어져서 지면에 일직선으로 놓여진다. (사진 14 참조)
- 다리는 곧으며, 발목 쪽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some flexibility in pasterns). (사진 14 참조)
- 몸통은 가슴이 깊고, 너비가 적당하다(moderate width). (사진 14 참조)
- 발목은 짧고, 상당히 곧지만, 변화폭(flexibility)이 있을 수 있다. (사진 15 참조)
- 앞가슴은 어깨 지점이나 팔꿈치 아래로 멀리 뻗어서는 안 된다. (사진 16 참조)
- 개의 늑골은 잘 형성돼 있고(well ribbed), 등은 살짝 접힌다(back with moderate tuck up). (늑골 끝에서 허리(waist)쪽으로 가면서 몸의 굴곡이 위쪽으로 오목한 언더라인을 형성)
- 등은 넓고, 튼튼하며, 단단하고, 수평인데, 기갑쪽은 살짝 경사져 있다. (사진 17 참조)
- 허리(loin)는 짧고 깊어서 엉덩이(croup)까지 약간 경사져 있다. (사진 17 참조)
- 호크 조인트(hock joint)는 잘 굽혀져 있고, 뒷 발목(rear pasterns)은 지면에 가깝

고, 양쪽이 수직 및 수평을 이룬다. (사진 18 참조)

- 발은 둥글고, 개의 크기와 균형이 잡혀 있으며, 아치모양으로 구부러져 있고(well arched), 단단하다(tight). (사진 19 참조)
- 패드는 단단하고(hard) 쿠션이 좋다.
- 발톱은 튼튼하다.
- 꼬리는 편안할 때 낮게 유지되며, 흥분하면 들어 올릴 수 있다.
- 단색의 개라도 발이 희거나 가슴에 흰털이 있을 수 있다.
- 눈가(eye rims)는 피부색과 같은 색이다.
- 눈 위의 아치는 윤곽이 뚜렷한 편이지만(well defined), 돌출되어 있지는 않다(not pronounced).



사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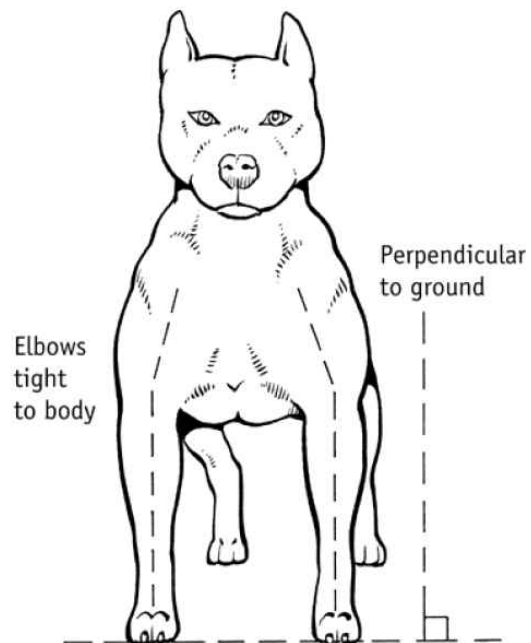


사진 14



사진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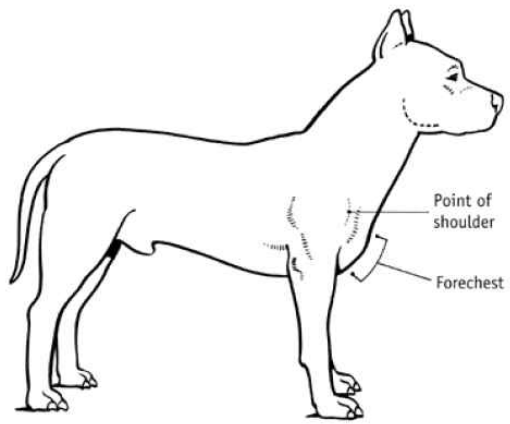


사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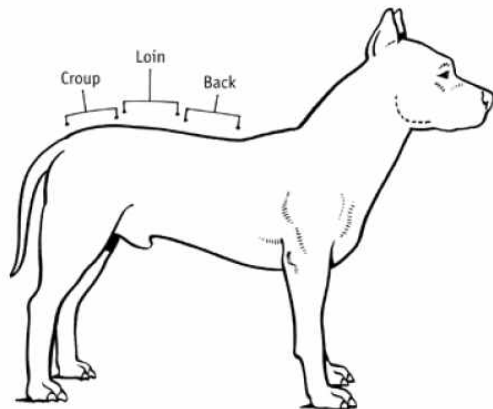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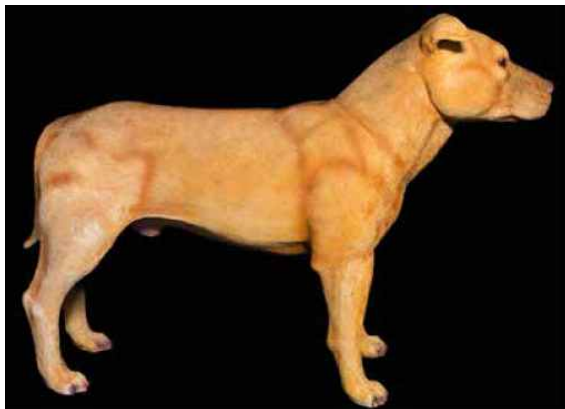


사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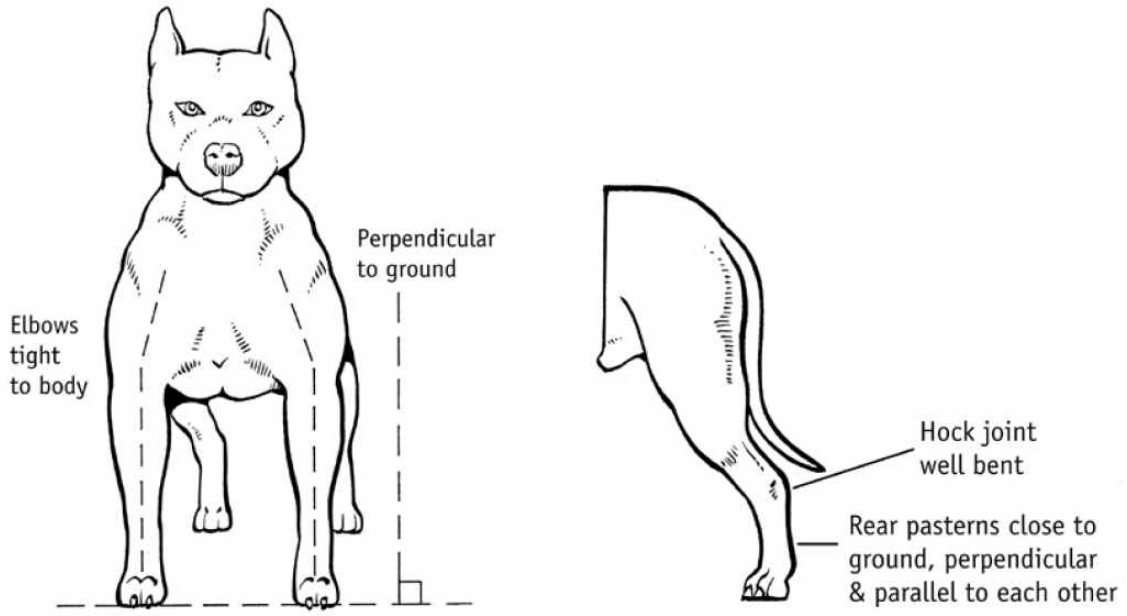


사진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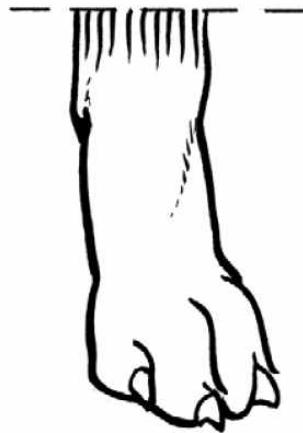


사진 19

2. 도고 아르헨티노(DOGO ARGENTINO) (아르헨틴 마스티프(Argentinean Mastiff))

이 파트에서의 묘사를 충족하는 개는 도고 아르헨티노이다.

(1) 일반적인 외형과 특징

- 도고 아르헨티노는 일관되고 탄력적인 피부 아래 강력한 근육을 가진 활동적인 대형견이다.
- 기갑의 높이는 엉덩이 높이와 동일하다.
- 흉부의 깊이는 기갑의 높이의 절반이다.
- 체장은 기갑의 높이보다 조금 더 길다.

(2) 머리

- 머리는 두드러지는 각도나 뚜렷한 굴곡 없이 강하고 강력해 보인다.
- 옆얼굴은 두개골(저작근의 두드러짐으로 인한)과 목에서 볼록하고; 앞얼굴에서 약간 오목하다.
- 머리는 강한 근육 아치를 형성하며 목으로 이어진다.

1) **두개골:** 앞쪽에서 뒤쪽으로,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조밀하고 볼록하다. 뒤통수 뼈는 매우 두드러지지 않는다. 두개골의 중앙 골짜기는 약간 두드러지고 그 끝은 약하게 윤곽이 보인다.

2) **주둥이:** 두개골과 비슷한 길이. 위쪽 선은 약간 오목하다.

3) **턱/이빨:** 뚫는 교상이나 찢는 교상이 가능하게 하는 강한 턱과 단단하게 심어진 큰 이

4) **코:** 약간 위를 향하는 큰 콧구멍, 검은 색소.

5) **입술:** 모서리가 없는 적당히 두껍고, 짧고 단단함.

6) **볼:** 크고 비교적 편평함.

7) **눈:** 어둡거나 녹갈색, 아몬드 모양.

8) **귀:** 높고, 넓고, 두껍고, 편평하고 끝이 둥글고 매끈한 털로 덮임. 빅토리아주에서는 귀를 자라는 것이 금지되어있으나, 이 종에서는 국제적으로 잘린 귀가 흔하기 때문에 RBD의 가능성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

(3) 목

- 중간 길이의, 강하고, 꼳꼳하며, 근육이 잘 발달하고, 뒷선이 약간 볼록하다. 이것은 근육 아치에서 머리와 이어진다.

(4) 1/4반부

- 전체적으로, 뼈와 근육의 튼튼하고 견고한 구조를 형성한다.
- 앞쪽이나 옆쪽에서 볼 때 곧고 수직이다.
- 발목은 넓고 앞다리와 일직선이고, 발은 둥글고 짧고 튼튼하며, 발가락은 매우 조여있다.

(5) 몸통

- 1) 흉부: 넓고 깊음. 어깨 관절의 끝과 흉곽의 흉골선이 있는 흉골 끝은 팔꿈치 선과 수평을 이룬다.
- 2) 뒷선: 기갑과 엉덩이의 궁둥이 뼈는 같은 높이에 있다.
- 3) 등: 강하며, 허리쪽으로 약간의 경사를 만드는 완전히 발달된 근육과 함께 크고 강함.
- 4) 허리: 척추를 따라 기장을 형성하는 발달된 요추 근육에 의해 숨겨져 있음.

(6) 후반신

- 강력하고 견고하며 평행임. 아래 허벅지는 일반적으로 윗 허벅지보다 약간 짧다.

- 1) 꼬리: 중간 높이, 사브르 모양, 두껍고 길며, 무릎 관절에 닿음.
- 2) 피모: 균일하고 짧고 평평하며 매끄럽고 평균 길이는 1.5-2cm임. 기후에 따라 다양한 밀도와 두께로 자라며 속털이 있을 수 있다.
- 3) 색깔: 눈 주위에 검은 색 또는 어두운 색의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완전히 흰색임.
- 4) 크기: 기갑에서의 높이: 60-68cm

3. 필라 브라질레이로(FILA BRASILEIRO) (브라질리안 마스티프(Brazilian Mastiff), 브라질리언 가드 독(Brazilian Guard Dog), 카오 데 필라(Cao de Fila))

이 파트에서의 묘사를 충족하는 개는 필라 브라질레이로이다.

(1) 일반적인 외형과 특징

- 체형이 직사각형이고 단단한 대형견.

(2) 머리

- 머리는 크고 무겁지만 몸 전체에 비례한다. 위에서 볼 때, 배 모양이 삽입되는 사다리

꿀 모형과 유사하다.

- 1) **두개골**: 강아지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윤곽이 뚜렷한, 후두까지 이어지는 매끈한 곡선.
- 2) **스톱**: 앞에서 봤을 때 거의 보이지 않는다. 중앙 홈은 경미하다. 옆에서 봤을 때 스톱은 아주 미약하게 보인다.
- 3) **주둥이**: 주둥이는 두개골보다 아주 약간 짧다.
- 4) **입술**: 윗입술은 두껍고 축 늘어지고, 곡선을 그리며 아랫입술과 포개진다; 아랫입술은 이빨까지는 딱 조이고 단단하며, 그 위부터는 느슨하다.
- 5) **이빨**: 이빨들은 길기보다는 넓고, 대부분 보통 찢는 교상이나 평평한 물음도 가능하다.
- 6) **코**: 넓은 콧구멍, 검은색.
- 7) **눈**: 아몬드 모양, 중간에서 깊게 위치해 있고, 일반적으로 어두운 갈색에서 노란색이며 항상 피모의 색을 따른다. 개체들은 처진 낮은 눈꺼풀을 보일 수도 있다.
- 8) **귀**: 펜던트 모양의, 크고 두꺼운 V모양. 기저부는 넓으며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둥근 끝을 가짐.
- 9) **목**: 강하고, 짧은 목의 인상을 주는 근육질. 윗면에서 약간 구부러져있고, 두개골에서 잘 분리되어 있다. 목구멍위치에 굳덕.

(3) 1/4반부

- 지면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다리의 길이는 지면에서 기갑까지보다 훨씬 짧다.

- 1) **앞다리**: 다리는 직선 뼈와 약간 비스듬한 발목과 평행하다.
- 2) **몸통**: 강하고, 넓고, 깊고 두껍고 느슨한 피부로 덮여있다. 흉부는 복부보다 길다.
- 3) **흉부**: 팔꿈치까지 다다르는 깊고 넓은 흉부.
- 4) **등**: 기갑은 엉덩이보다 낮게 위치한다. 기갑 뒤쪽으로 윗선은 방향을 바꿔 엉덩이까지 매끈하게 상승한다.

5) 꼬리: 뿌리 부분에서 매우 넓고, 급격히 좁아지며 발목까지 이른다.

(4) 다리

1) 후반신: 앞다리에 비해 뼈의 육중함이 덜하다.

2) 피부: 몸 전체에 걸쳐서 두껍고, 느슨하며 주로 목에서 두드러지는 군턱을 형성하며 이는 가슴과 복부까지 이를 수 있다. 어느 개체들은 머리 측면 주름과 기갑에서 어깨까지 이어지는 주름을 갖고 있다.

3) 발: 아치형으로 잘 발달된 발가락은 서로 너무 가깝지 않게 위치한다. 뒷다리 발가락은 앞다리 발가락에 비해 조금 더 타원형일 수 있다.

4) 피모: 짧고, 매끈하고, 밀도 있으며 몸과 가깝다.

5) 색깔: 단색 또는 단단한 코트와 어두운 줄무늬와 함께 얼룩 무늬. 검은 얼룩은 존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발, 가슴, 꼬리 끝에 흰색 얼룩이 있을 수도 있다.

(5) 크기 및 무게:

1) 기갑에서의 높이: 60-75cm

2) 무게: 수컷: 최소 50kg, 암컷: 최소 40kg

4. 일본 도사(JAPANESE TOSA) (도사 이누(Tosa Inu), 토사 켄(Tosa Ken), 토사 파이팅 도그(Tosa Fighting Dog), 일본 파이팅 도그(Japanese Fighting Dog), 일본 마스티프(Japanese Mastiff))

이 파트에서의 묘사를 충족하는 개는 일본 도사이다.

(1) 일반적인 외형과 특징

늘어진 귀, 짧은 털, 사각의 주둥이, 시작부위가 굵은 꼬리가 늘어진 대형견.

(2) 머리

1) 두개골: 두드러지는 스톱과 함께 넓으며, 긴 주둥이.

2) 이빨: 찢는 교합.

3) 코: 크고 검은색.

4) 눈: 작고 일반적으로 어두운 갈색.

5) 귀: 작고, 얇으며, 두개골 측면에 높게 위치하고, 볼까지 늘어진다.

(3) 목

- 근육질이며, 굳어 있다.

(4) 1/4반부

1) 앞다리: 곧고, 적당히 길고 강하다.

2) 발목: 약간 경사지고 단단하다.

(5) 몸통

1) 등: 평평하고 곧으며 엉덩이에서 약간 아치형을 이룬다.

발

서로 조여 모여있다.

꼬리

뿌리부분에서 두껍고,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꼬리를 내리면 발목까지 다다른다.

피모

짧고 단단하며 밀도있다.

색깔

주로 붉고, 얼은 황갈색, 살구색, 검은색, 얼룩. 가슴과 발에 흰색 얼룩이 있을 수 있다.

크기:

기갑에서의 높이는 다양하며 암컷은 최소 55cm, 수컷은 60cm.

5. 페로 드 프레사 카나리오(PERRO DE PRESA CANARIO) (프레사 카나리오(Presa Canario))

이 파트에서의 묘사를 충족하는 개는 페로 드 프레사 카나리오이다.

(1) 일반적인 외형과 특징

- 페로 드 프레사 카나리오는 검은 마스크를 가진 대형견이다. 몸통은 기갑에서의 높이 보다 길고, 이는 암컷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2) 머리

- 탄력 있고 느슨한 피부로 덮여 있으며 크다. 모양은 약간 길쭉한 육면체 모양이다.

1) **두개골:** 두개골의 앞얼굴은 60-40%. 두개골의 폭은 전체 머리 길이의 3/5이다. 두개골은 약간 볼록하고 전두골은 평평하다. 너비는 길이와 거의 동일하다. 두드러진 광대뼈를 갖는다.

2) **스톱:** 스톱은 두드러지고, 전두엽 사이의 고랑은 확연하고 이는 두개골 크기의 약 2/3이다.

3) **주둥이:** 두개골보다 짧으며 보통 머리의 총 길이의 40%이다. 폭은 두개골의 2/3이다.

4) **입술:** 윗입술은 앞면에서 봤을 때 축 늘어져 있으며, 윗입술과 아래 입술은 만나 거꾸로 된 V모양을 만들어낸다. 입술 안쪽은 일반적으로 어두운 색깔이다.

5) **이빨:** 뚫는 교합이나 찢는 교합. 아래턱이 살짝 나올 수 있다.

6) **코:** 넓고, 검은 색.

7) **눈:** 약간의 타원형이며, 중간에서 큰 크기이다. 움푹 들어가거나 돌출하지는 않는다. 눈꺼풀은 검은색이고, 팍 조여 처지지 않는다. 색은 피모 색에 따라 어두운 갈색에서 중간 갈색까지 다양하다.

8) **귀:** 중간 크기의 짧고 미세한 털을 갖는다. 귀는 머리의 양쪽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진 다. 만약 접혀있다면, 장미 모양으로 접혀있다. 귀는 눈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귀를 자라는 것이 금지되어있으나, 이 종에서는 국제적으로 잘린 귀가 흔하기 때문에 RBD의 가능성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

(3) 목

머리 길이보다 짧다. 아래 부분의 피부는 느슨하여, 약간의 군턱을 형성한다. 단단하고 직선이며, 원통형이고 근육질이다.

(4) 1/4반부

1) **팔꿈치:** 지면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는 수컷에서 기갑 높이의 절반이고, 암컷에서는 그보다 작다.

2) **발목:** 매우 단단하고 약간 경사져있다.

(5) 몸통

- 기갑에서의 높이보다 길고 직선의 등선은 기갑에서 엉덩이로 미약하게 올라간다.

(6) 후반신

- 일관되게 강하며, 평행임.

1) 발

둥그런 발가락과 함께 고양이 발 같으며, 서로 너무 가까이 붙어있지 않는다.

2) 꼬리

뿌리는 두껍고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며, 발목에 이른다.

3) 피부

두껍고 탄력 있다. 목 주변에서는 느슨하다. 경계 시에는 머리에 있는 피부가 전두엽사이의 고랑에서부터 퍼지는 대칭적인 주름을 형성한다.

4) 피모

짧고 거칠고, 고르며, 속털은 없다(목 주변 또는 허벅지 뒤쪽에는 속털이 있을 수 있다.). 만지면 다소 거칠다.

5) 색깔

모든 색깔의 얼룩, 또는 얼은 황갈색에서 얼은 갈색. 가슴, 목 또는 목구멍, 앞발과 뒷발가락에 흰색 얼룩이 있을 수 있고, 얼굴이 검은색이다.

(7) 크기 및 무게

1) 기갑에서의 높이: 56-65cm

2) 무게: 다양. 일반적으로 수컷은 최소 50kg, 암컷은 최소 40kg.